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책임연구원

김지연

공동연구원

정소연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책임연구원 : 김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정소연(서울여자대학교·교수)

▶ 연구보조원 : 이용해(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10명 중 1명 이상이 가출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성인과 달리 청소년의 가출행동은 그 이유와 관계없이 비행, 일탈로 접근하여 여전히 관련법에서는 가출청소년을 우범소년(虞犯少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 가출행태와 동향을 보면 청소년기 가출행위를 예방하는 것 보다는 청소년이 가정의 보호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과정, 가출 이후 '가정 밖'이라는 취약한 상황, 그리고 거리에서 생존하는 과정에서 겪는 부정적인 사회 경험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정책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정부가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 지올해로 10년을 맞았습니다. 가출청소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저출산·고령화,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등 우리사회의 신사회적 위험에 따른 사회균열을 막기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과업입니다. 또한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이들의 생애준비를 도와서 발전의 선순환 동력을 확보하고 미래사회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가출청소년은 선도대상이 아니라 인권을 위협받는 지원대 상이며, 정책추진의 효율과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개편과 예산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정책은 비행예방이라는 기존의 접근전략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인권, 사회권 보호를 위해 보다 세심하고 전향적인 접근과 정책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연구진을 포함하여 연구의 각 단계마다 도움을 주신 현장, 학계, 그리고 정책담당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보고서는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지난 10년간의 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현장여건을 개선하고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되어 보다 통합적인 사회로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노 혁 드림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에 따른 주요 연구내용은 첫째, 가출청소년의 유형과 특성 분석, 둘째, 가출청소년 지원, 넷째,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요구 분석, 다섯째,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등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최근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2차 자료 분석을 통한 가출청소년의 집단 분류 및 특성 분석, 노숙청소년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현장전문가 포럼 운영, 전문가 자분, 정책협의회, 정책세미나 등 다양한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책대상의 범위,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정책 추진 시비행예방보다 '가정 밖'이라는 상황에 초점을 두고 가출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낙인 예방, 인권과 사회권 보호 차원에서 접근이 요구된다. 정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정책에 정부 예산이 투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청소년쉼터 운영'에 국한되어 있고,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확대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정책추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기에는 청소년쉼터 확충 및 적정 인력 배치, 중앙지원기관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아웃리치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한다. 한편 가출청소년 보호지원과 관련한 국제적 동향을 고려할 때 가출, 홈리스를 포괄한 정책 추진, 탈위기, 탈빈곤이가능하도록 24세까지 연장 지원, 학습권 보장, 주거지원, 자립지원, 사례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노숙청소년은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어 가출 상황에서 청소년쉼터 이용을 제고하기 위한 아웃리치와 홍보 강화, 쉼터 입소 후 자립보다 회복우선 지원, 성별 격차를 고려한 개입전략이 요구된다.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과 인프라구축은 양극화, 불평등으로 인한 우리사회의 균열을 막아 장래의 사회적 부담을 예방하고 미래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정책 개선을 위해 관련법률의 제·개정을 통한 정책추진 기반 마련,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전달체계 정비, 청소년쉼터 확충 및 운영지원 개선, 가정 밖 청소년 지원제도 및 서비스 확대를 제안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핵심어: 가출청소년, 홈리스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청소년쉼터, 청소년복지시설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국정과제 "청소년 역량 개발 및 건강한 성장 지원"의 주요 추진계획인 '청소년 위기 예방 프로그램 확대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현행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연구내용

- 가출청소년의 유형과 특성 분석
-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 주요국의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 가출청소년 보호지워 실태 및 요구 분석
-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3.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청소년 가출의 원인과 특성, 가출 영향요인, 접근방식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함. 특히 정책대상인 가출청소년의 유형화와 집단분류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연구 및 정책보고서, 관련 자료와 문건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함.
- 2차 자료분석 : 청소년 가출의 동향과 특성을 파악하고,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가출 관련 주요 기준(가출원인, 가정생활만족도, 가출빈도, 가출 후 보호시설 이용 유무, 성별, 쉼터 유형)에 따른 가출청소년의 집단분류, 특성 분석을 시도함.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의 2012년도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의 위기청소년 데이터, 2013년 가출팸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기존 행정통계를 재분석함.

- 의견조사: 현행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정책은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국한됨. 이에 청소년쉼터 어건 분석 및 정책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쉼터 전수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적 개선과제를 도출함.
- 심층면접조사 : 홈리스를 포함한 노숙청소년은 기존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음.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이들의 주거, 일과 자립, 관계(생활, 의식), 지원 요구, 사회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노숙청소년 20명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함.
- 현장전문가 포럼 :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관련 현황 및 쟁점을 파악하고, 정책개선 요구와 추진과제 검토를 위해 청소년쉼터 종사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포럼을 개최함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등 관련기관 종사자와의 협의를 병행하여 현안 파악과 정책 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함.
- 전문가 자문 : 연구 설계 및 내용 확정, 주요 현안 파악,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안 검토를 목적으로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이를 반영함.
- 정책협의회: 정책과제의 국가정책기여도 제고를 위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수차례 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함. 특히 '가정 밖' 청소년의 대안양육 차원에서 논의가 요구됨에 따라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정책협의를 병행함.
- 정책세미나: 국정과제의 주요추진계획과 관련하여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국회와 공동으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도출된 내용을 추진과제 및 우선순위에 반영함.

4. 주요결과

- 정책대상의 범위와 유형
- '가출청소년'은 중장기적으로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로 대체해야 함. 이 연구에서 정책대상인 가출청소년은 '가출'이라는 행위보다는 '가정 밖'이라는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귀가하지 않거나,

상당 기간 동안 일정한 거주지 없이 주거 적절성이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정의함. 이는 가출청소년 지원정책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가출청소년에 대한 관점과 접근방식에 있어 국제적 동향은 청소년 가출의 비범죄화 (非 犯罪化)를 기반으로 차별과 낙인 예방, 인권 보호, '가정 밖'이라는 상황에 초점을 둔 포괄적인 자립지원이 강조됨. 이는 청소년기 가출원인의 '다층성(multitude)'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함.
- 우리나라 중·고교생 10명 중 1명 이상이 가출을 경험하고 있는데, 최근 연구동향을 볼 때 정책대상인 가출청소년의 집단분류와 특성 분석을 통해 정책추진 방향 도출이 요구됨

○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석

-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적용하여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정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책 효율,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달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이 요구됨. '가정 밖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수혜자 관점에서 기존 인프라와의 관계 설정이 필요함.
- 시·도별 가출청소년 발생율, 가출청소년 보호율을 산출한 결과 청소년쉼터의 확충, 쉼터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일시쉼터의 아웃리치 기능의 대폭 확대가 요구됨
- 광역단위에 쉼터가 확충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쉼터 유형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침상 불비에 해당하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를 통해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의 연속성 담보가 요구됨.

○ 주요국의 가출청소년 지원정책과 사례

- 정책대상의 범위와 특성: 가출, 실종, 홈리스, 무의탁(무연고) 등 정책대상 구분은 비생산적임. 오히려 가정 밖 청소년의 특성을 감안하여 20대 중반까지 정책지원 대상에 포함함. 가출청소 년의 실태조사, 관련 통계 확보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조기 발굴하여 이차적인 위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법제 현황과 서비스 전달체계: 미국, 프랑스 등은 가출, 홈리스 청소년 지원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고 정부 주도의 정책을 추진, 독일은 민간 주도이나 중앙지원기관 설치, 전국적 조직을 운영함. 이들 국가는 가출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주거지원, 자립지원,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함. 미성년 자녀의 가출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 정도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나 프랑스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보호시설에서 생활할 경우 보호자 양측에 양육비용으로 월 710유로(한화 100만원)까지 청구하여 적절한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사례: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는 가출청소년의 욕구 사정(needs-assessment), 발달에 초점두기, 훈련된 전문가 배치, 참여 및 신체·정신건강 보호, 학업지원, 개별적 맞춤 지원, 가족 및 지역사회 참여 등임.

○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 2차 자료분석을 통해 가출청소년의 집단별 특성을 확인한 결과 가출원인, 가정생활만족도, 가출빈도, 가출 이후 보호시설 이용경험 유무, 성별, 가출 후 이용중인 쉼터 유형에 따라서로 다른 특성이 발견됨. 가족관련 이유로 가출한 경우 여자청소년의 비율이 높고, 생활만족도 수준이 가장 낮음. 가정생활만족도 불만족 집단은 여자청소년, 양친 부재, 저소득 가정청소년 비율이 높게 나타남. 가출빈도가 2회 이상인 경우 가정환경, 정신건강, 비행 등모든 영역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가출이 1회 이하인 경우와 서로 다른 정책대상임이일부 확인됨. 가출 이후 보호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연령, 가정생활만족도 수준이더 낮은 반면 상담을 포함한 관련 서비스 이용률은 더 높은 특징을 보임. 마지막으로일시, 단기, 중장기쉼터 유형별로 가출청소년의 특성에 차이를 보인 것은 부모요인에 불과함즉 일시는 양친가정, 단기는 한부모가정, 중장기는 양친 부재 가정의 비율이 높았는데, 공급자 관점에서 입소기간을 기준으로 시설을 옮기는 방식보다 문제와 욕구의 사정을통해 적절한 쉼터에 배치하고 연속성 있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 노숙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조사 결과, 2차 자료 가출청소년과 노숙청소년은 각각 다른 정책대상이라 볼 수 없고, 가출청소년의 성별 격차를 고려한 개입전략이 필요함. 노숙청소년 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거리에서 생존권을 위협받으며 주거 취약성이 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가출 이후 인간관계 전반에 변화가 생겨 또래 가출청소년, 성인에 의한 범죄 가·피해 사례가 빈번함. 현행 쉼터의 아웃리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쉼터의 체질변화가 요구되며, 쉼터 입소 후 낙인 문제, 충분한 회복시간 주기 등 섣부른 자립지원보다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인큐베이터 기능이 우선되어야 함.
- 청소년쉼터 전수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법과 지침을 준수한 운영지원이 요구됨. 기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등 전달체계의 구축과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 인프라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함. 쉼터에서 보호하는 고위기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양육비 지원이 요구됨.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을 대안양육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유사 시설에 비해 지자체 지원 등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등 쉼터의 정체성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5. 정책제언

-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국정과제 및 주요추진계획에 따른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정책 개선을 위해 4개 정책과제와 19개 세부추진과제를 제안함. 위기청소년 인프라 확충에는 의무지출이 수반됨에 따라 예산 과제인 경우 소요예산(안)을 포함함.
- ① 관련법률 제·개정을 통한 정책추진 기반 마련과 관련한 세부추진과제로 ①「사회복지사업법」개정, ②「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 ③「소년법」개정, ④「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개정, ⑤「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 특별법」제정을 제안함.
- ②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전달체계 정비에 따른 세부추진과제로 ① 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 설치, ②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및 지정, ③ 청소년쉼터 유형 탄력 운영, ④ 쉼터, CYS-Net 간 연계 강화를 제안함.
- ○③ 청소년쉼터 확충 및 운영지원 개선에 따른 세부추진과제로 ① 청소년쉼터 확충 계획 수립, ② 아웃리치센터(일시쉼터) 증설, ③ 자립지원요원 배치, ④ 법정 배치인력 기준 준수, ⑤ 종사자 근로기준법 준수를 제안함.
- ④ 가정 밖 청소년 지원제도 및 서비스 확대에 따른 세부추진과제로 ①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수혜율 개선,② 가정 밖 청소년 최저양육비 지원 도입,③ 가정 밖 청소년 주거지원 확대, ④ 가정 밖 청소년 학업중단 예방 지원,⑤ 청소년복지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도입을 제안함.

목 차

l . 서론 ······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2. 연구내용	. 5
1) 가출청소년의 유형과 특성 분석	. 5
2)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석	. 6
3) 주요국의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석	. 6
4)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욕구 분석	. 6
5)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 6
3. 연구방법	. 7
1) 문헌연구	. 7
2) 2차 자료 분석	. 7
3) 청소년쉼터 종사자 의견조사	. 7
4) 심층면접조사	. 8
5) 기타 연구방법	. 9
4. 연구추진체계	12
II. 이론적 배경 : 정책대상의 범위와 유형 ·····	13
1. 가출청소년의 개념과 범위	
2. 가출청소년에 대한 관점과 접근 방식	17
1) 가출의 비행화에 대한 접근과 변화	17
2) 가정 밖 인권 사각지대 청소년에 대한 접근	20
3. 가출청소년의 현황과 유형	21
1) 청소년의 가출경험과 행태	21
2) 가출의 원인과 가정복귀 영향요인	25
3) 가출청소년 유형화와 집단 구분	27
4. 가출청소년 연구 동향	35

Ⅲ.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석	39
1. 정책과정 :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법제의 태동과 변화	42
2. 정책산물 :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설계와 내용	44
1) 사회적 할당	44
2) 급여 형태	47
3) 전달체계	51
4) 재원조달 방법	56
3. 정책평가 : 가출청소년 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	61
1) 정책산출 평가	61
2) 정책산물의 적정성 평가	65
4. 소결	70
Ⅳ. 주요국의 가출청소년 지원정책과 사례	73
IV. 주요국의 가출청소년 지원정책과 사례 1. 정책대상의 범위와 특성	
	75
1. 정책대상의 범위와 특성	75 75
1. 정책대상의 범위와 특성 ···································	75 75 76
1. 정책대상의 범위와 특성 1) 미국 2) 프랑스	75 75 76 79
1. 정책대상의 범위와 특성 1) 미국 2) 프랑스 3) 영국	75 75 76 79 83
1. 정책대상의 범위와 특성 1) 미국 2) 프랑스 3) 영국 4) 독일	75 76 79 83 83
1. 정책대상의 범위와 특성 1) 미국 2) 프랑스 3) 영국 4) 독일 5) 일본	75 76 79 83 83 84
1. 정책대상의 범위와 특성 1) 미국 2) 프랑스 3) 영국 4) 독일 5) 일본 2. 법제 현황과 서비스 전달체계	75 75 76 79 83 83 84 84
1. 정책대상의 범위와 특성 1) 미국 2) 프랑스 3) 영국 4) 독일 5) 일본 2. 법제 현황과 서비스 전달체계 1) 미국	75 76 79 83 84 84 85
1. 정책대상의 범위와 특성 1) 미국 2) 프랑스 3) 영국 4) 독일 5) 일본 2. 법제 현황과 서비스 전달체계 1) 미국 2) 프랑스	75 75 76 79 83 83 84 84 85 90
1. 정책대상의 범위와 특성 1) 미국 2) 프랑스 3) 영국 4) 독일 5) 일본 2. 법제 현황과 서비스 전달체계 1) 미국 2) 프랑스 3) 독일	75 76 79 83 84 84 85 90

	2	2) 프랑스	• 97
	ć	3) 독일	. 99
	4	4) 기타 국가의 거리아동 지원사업	100
4	1.	시사점	108
	1	1) 정책대상의 범위와 특성	108
	2	2) 법제 현황과 서비스 전달체계	109
	3	3)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사례	110
		가 <mark>출</mark> 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	
-	L.	가출청소년 유형과 특성 분석	117
	1	1) 표본의 특성	117
	2	2) 분석방법	118
	9	3) 변수측정	120
	4	1) 분석결과	122
2	2.	노숙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지원요구 분석	178
	1	1) 조사개요	178
	2	2) 분석결과	183
	3.	청소년쉼터 보호지원 여건 분석	241
	1	1) 조사개요	241
	2	2) 응답자 및 청소년쉼터 일반 현황	242
	ć	3) 분석결과	245
4	1.	시사점	276
	1	1) 정책대상의 특성	276
	2	2) 가출청소년의 생활실태	277
		3) 정책추진 여건	279

VI.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	281
1. 정책제안 배경	283
2. 정책과제	284
1) 관련법률 제·개정을 통한 정책추진 기반 마련 ·····	284
2)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전달체계 정비	292
3) 청소년쉼터 확충 및 운영지원 개선	302
4) 가정 밖 청소년 지원제도 및 서비스 확대	318
참고문헌	333
부록	345

표 목 차

⟨₩	Ⅰ-1〉청소년쉼터 종사자 의견조사 개요 8
⟨₩	I -2〉심층면접조사 개요 ······ 9
⟨₩	I-3〉정책협의회 개요 ·······10
⟨₩	Ⅰ-4〉가출청소년 보호지원 관련 국정과제11
⟨₩	I -5〉정책세미나 개요 ······· 11
⟨₩	Ⅱ-1〉가출인 발생 현황
⟨₩	Ⅱ-2〉실종아동 귀가 현황
⟨₩	Ⅱ-3〉생애가출경험률 - 집단 비교 24
纽	Ⅲ-1〉가출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한 통합적 분석틀 42
纽	Ⅲ-2〉청소년쉼터 운영 발전과정 44
纽	Ⅲ-3〉가출청소년 지원정책 대상 45
纽	Ⅲ-4〉청소년쉼터 유형과 특성 49
纽	Ⅲ-5〉일시쉼터의 이용 대상 및 서비스 요소 50
纽	Ⅲ-6〉단기, 중장기쉼터 서비스 주요 내용 및 절차 50
纽	Ⅲ-7〉청소년회복센터(사법형 그룹홈, 법무부) 53
纽	Ⅲ-8〉아동자립지원사업단의 자립지원시설 54
纽	Ⅲ-9〉청소년쉼터와 관련 보호시설·기관 현황 비교(1) 57
纽	Ⅲ-10〉청소년쉼터와 관련 보호시설·기관 현황 비교(2) 58
纽	Ⅲ-11〉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예산 현황 59
纽	Ⅲ-12〉청소년쉼터 종사자 직종별 배치기준 60
⟨₩	Ⅲ-13〉쉼터 유형별 예산배정 기준(2014년) 60
纽	Ⅲ-14〉청소년쉼터 운영실적61
纽	Ⅲ-15〉고정형 일시쉼터 대상 분류
⟨₩	Ⅲ-16〉단기 및 중장기 청소년쉼터 입소자 및 이용자 현황(2014.4.2. 기준) · 65

田〉	Ⅲ-17〉지역별 가출청소년 발생율과 보호율 추정 67
纽	Ⅲ-18〉중앙정부단위 지원기관 설립 사례69
纽	Ⅲ-19〉자립지원 담당기관 역할 및 기능(보건복지부) 70
纽	IV-1〉 청소년 가출경험률(영국, 각 연도별) ····· 80
纽	Ⅳ-2〉가출 기간 중 도움 요청 정도(영국) 81
扭〉	Ⅳ-3〉가족구조와 가출경험률(영국) 83
扭〉	Ⅳ-4〉2001년 이후 예산 집행 내역 94
(표	Ⅳ-5〉아동, 청소년 수혜 규모 95
田〉	Ⅳ-6〉수혜 아동, 청소년 연령 분포(2010년)96
田〉	Ⅳ-7〉 안전 및 적절한 출구(Safe and Appropriate Exits) 현황 ······ 96
田〉	Ⅳ-8〉전환생활 프로그램(TLP)의 출구로서 생활환경 ······ 96
田〉	V-1〉 표본의 특성 ······ 118
田〉	V-2〉가출청소년 집단분류 기준 ····· 121
田〉	V-3〉판별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 및 측정 방법 121
纽	V-4> 가출원인에 따른 3개 집단에 대한 판별분석 결과 123
⟨₩	V-5〉판별함수에 의한 가출원인 집단분류 결과 124
纽	V-6〉가출원인에 따른 3개 집단 판별분석결과: 정준판별함수 계수 &
	구조행렬 125
纽	V-7> 가출원인에 따른 3개 집단 평균의 동질성 검정 ······ 125
(丑	V-8> 가출원인에 따른 3개 집단 통계량 ······ 126
(丑	V-9〉가정생활만족도에 따른 3개 집단에 대한 판별분석 결과 ······ 128
(丑	V-10〉판별함수에 의한 가정생활만족도 집단분류 결과 ······ 129
(丑	V-11〉가정생활만족도에 따른 3개 집단 판별분석결과: 정준판별함수
	계수 & 구조행렬 130

⟨丑	V-12⟩	가정생활만족도에 따른 3개 집단 평균의 동질성 검정	130
⟨丑	V-13⟩	가정생활만족도에 따른 3개 집단의 통계량	131
纽	$V-14\rangle$	가출빈도에 따른 2개 집단에 대한 판별분석 결과	134
纽	V-15⟩	판별함수에 의한 가출빈도 집단(1회 이하 vs. 2회 이상) 분류 결과	134
纽	V-16⟩	가출빈도에 따른 2개 집단 판별분석결과: 정준판별함수 계수 &	
		구조행렬	135
(丑	V-17⟩	가출빈도에 따른 2개 집단 평균의 동질성 검정	135
〈丑	V-18⟩	가출빈도에 따라 구별된 2개 집단의 통계량	136
〈丑	V-19⟩	보호시설 이용경험에 따른 2개 집단에 대한 판별분석 결과	138
(丑	V-20⟩	판별함수에 의한 보호시설 이용경험에 따른 집단분류 결과	138
纽	V-21⟩	보호시설 이용경험에 따른 2개 집단 판별분석결과: 정준판별함수	
		계수 & 구조행렬	139
纽	V-22⟩	보호시설 이용경험에 따른 2개 집단 평균의 동질성 검정	139
纽	V-23⟩	보호시설 이용경험에 따른 2개 집단의 통계량	140
纽	V-24⟩	남·녀 가출청소년 집단에 대한 판별분석 결과	142
纽	V-25⟩	판별함수에 의한 가출청소년 남·녀 집단분류 결과	142
纽	V-26⟩	가출청소년 남·녀 집단에 대한 판별분석결과: 정준판별함수 계수	&
		구조행렬	143
纽	V-27⟩	남·녀 가출청소년 집단 평균의 동질성 검정	143
纽	V-28⟩	남·녀 가출청소년 집단의 통계량	144
纽	V-29⟩	쉼터 유형에 따른 3개 집단에 대한 판별분석 결과	146
〈丑	V-30⟩	쉼터유형에 따른 3개 집단에 대한 판별함수의 분류 결과	146
〈丑	V-31⟩	쉼터유형에 따른 3개 집단에 대한 판별분석결과: 정준판별함수	
		계수 & 구조행렬	147

扭〉	V-32⟩	쉼터 유형에 따른 3개 집단 평균의 동질성 검정 147
纽	V-33⟩	쉼터 유형에 따른 3개 집단의 통계량 148
纽	V-34⟩	가출청소년 집단분류 및 하위집단의 특성 검증 결과 요약 150
〈丑	V-35⟩	변수 및 측정방법(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데이터) 152
〈丑	V-36⟩	변수 및 측정방법(가출팸 실태조사 데이터) 153
〈丑	V-37⟩	가출원인에 따른 세 집단의 특성(교차분석) 154
〈丑	V-38⟩	가출원인별 세 집단의 특성(일원분산분석) 155
纽	V-39⟩	가출원인별 세 집단의 첫 가출시기 및 비행행위(일원분산분석) 156
〈丑	V-40⟩	가출원인별 세 집단의 가출 후 가족연락 및 서비스 이용(교차분석) … 157
〈丑	V-41⟩	가정생활만족도별 세 집단의 특성(교차분석) 158
〈丑	V-42⟩	가정생활만족도별 세 집단의 특성(일원분산분석) 159
纽	V-43⟩	가정생활만족도별 세 집단의 첫 가출시기 및 비행행위(일원분산분석) 160
〈丑	V-44⟩	가정생활만족도별 세 집단의 가출 후 가족연락 및 서비스 이용
		(교차분석) 161
田〉	V −45⟩	가출빈도별 두 집단의 특성(교차분석) 162
纽	V-46⟩	가출빈도별 두 집단의 특성(t-검정)
〈丑	V −47⟩	가출빈도별 두 집단의 첫 가출시기 및 비행행위(t-검정) 163
〈丑	V-48⟩	가출빈도별 가출 후 가족연락 및 서비스 이용(교차분석) 164
〈丑	V-49⟩	보호시설 이용경험별 집단의 특성(교차분석) 165
〈丑	V-50⟩	보호시설 이용 여부별 집단의 특성(독립집단 t-검정) 166
纽	V-51⟩	보호시설 이용 여부별 첫 가출시기 및 비행행위(독립집단 t-검정) 166
(표	V-52⟩	보호시설 이용 여부별 가족연락 및 가출관련 상담경험(교차분석) · 167
纽	V-53⟩	성별 특성(교차분석) 167
⟨∓	V −54>	성볔 특성(t-검정) ····································

纽	V−55>	성별 비행행위(t-검정) ·····	168
⟨₩	V-56⟩	성별 정신건강 특성(t-검정)	169
⟨₩	V−57⟩	쉼터 유형별 집단의 특성(교차분석)	170
纽	V-58⟩	쉼터 유형별 집단의 특성(일원분산분석)	170
纽	V-59⟩	쉼터 유형별 세 집단의 비행행위(일원분산분석)	171
〈丑	V-60⟩	쉼터 유형별 세 집단의 정신건강 특성(일원분산분석)	172
纽	V-61⟩	가출청소년 하위 집단의 특성 검증 요약(1)	173
田〉	V-62⟩	가출청소년 하위 집단의 특성 검증 요약(2)	174
⟨₩	V-63⟩	노숙청소년 면접대상 사례수(N=20)	179
⟨₩	V-64⟩	노숙청소년 심층면접 주요 내용	180
⟨₩	V-65⟩	심층면접 대상 노숙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82
纽	V-66⟩	노숙청소년 주거 관련 심층면접 내용 요약	199
⟨₩	V-67⟩	노숙청소년 일과 자립 관련 심층면접 내용 요약	211
⟨₩	V-68⟩	노숙생활로 맺어지는 새로운 관계	217
纽	V-69⟩	노숙청소년 관계 관련 심층면접 내용 요약	229
纽	V-70⟩	노숙청소년 지원정책 관련 심층면접 내용 요약	240
纽	V-71⟩	응답자의 일반 현황	243
⟨₩	V-72⟩	청소년쉼터의 기본 현황	244
⟨₩	V-73⟩	청소년쉼터 (전체)세입현황	246
纽	V-74⟩	청소년쉼터 국비 및 광역시·도비 현황(세입) ·····	247
纽	V-75⟩	청소년쉼터 자치구 및 법인전입금 현황(세입)	248
纽	V-76⟩	쉼터 유형별 인력배치 현황	249
纽	V-77⟩	종사자 자격증 소지 현황(중복응답)	249
⟨₩	V −78>	시설 유형별 입소자·이용자 현황	250

纽	V-79〉 가출청소년 보호단계별 관계기관 연계 현황	253
纽	V-80〉 지역 내 타 쉼터 간 연계 정도	254
纽	V-81〉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간 상호협력 정도(n=109) ····································	255
纽	V-82〉쉼터 업무수행 관련 연계 기반 평가(n=110) ···································	257
⟨莊	V-83〉 현행 쉼터 유형 구분 개선 사유(중복응답) ······	266
⟨莊	V-84〉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사후관리	270
纽	V-85〉 수요가 가장 많은 쉼터 서비스(중복응답, 1~4순위)	272
纽	V-86〉정부 추가예산 지원이 필요한 쉼터 서비스(중복응답, 1∼4순위) …	273
⟨莊	VI-1〉관련 법률 제·개정을 통한 정책추진 기반 마련 세부 추진과제 ·····	285
⟨莊	Ⅵ-2〉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개정(안)	286
⟨莊	Ⅵ-3〉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287
纽	Ⅵ-4〉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개정(안)	288
纽	Ⅵ-5〉소년법 제16조 개정(안)	289
纽	Ⅵ-6〉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2조 개정(안) ·	291
纽	Ⅵ-7〉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 특별법 제정(안)	292
纽	Ⅵ-8〉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전달체계 정비 세부 추진과제	293
纽	Ⅵ-9〉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 조직(안)	294
纽	Ⅵ-10〉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295
纽	Ⅵ-11〉청소년쉼터 확충 및 운영지원 개선 세부 추진과제	303
纽	Ⅵ-12〉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 보호율 및 증설 수(추정)	304
纽	Ⅵ-13〉일시쉼터 기능 추가에 따른 지원액(2014년)	305
纽	Ⅵ-14〉일시쉼터 유형별 단가(2014년)	305
纽	Ⅵ-15〉아웃리치센터(일시쉼터) 증설 수 및 소요예산 추산	306
⟨₩	Ⅵ-16〉자립지워요워 배치 소요예산 및 역할(안)	307

Œ	VI−17⟩	쉼터 유형별 상담원 1인당 담당 청소년 수	309
〈丑	VI-18⟩	현행 쉼터 유형별 소요 인건비 산출	310
〈丑	VI-19⟩	쉼터 보호상담원 교대인력 소요(안)	317
纽	VI-20⟩	가정 밖 청소년 지원제도 및 서비스 확대 세부 추진과제	319
〈丑	VI-21⟩	청소년쉼터 유형별 보호인원 및 보호비용 산출	321
〈丑	VI−22>	양육비 산정기준(2014.5.30일 기준)	322
〈丑	VI-2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26
⟨₩	VI−24>	가춬청소년 보호지워 정책과제 추진계획(안)	332

그 림 목 차

【그림 -1】연구추진체계 12
【그림 -2】연구추진절차 12
【그림 II-1】가출청소년의 개념적 특성
【그림 II-2】생애가출경험률(2009~2012) ····· 23
【그림 II-3】가출청소년의 가출기간 24
【그림 II-4】가출의 원인
【그림 Ⅲ-1】실종 및 가출 아동·청소년 관계법 및 주관부처 47
【그림 Ⅲ-2】청소년쉼터 인지도 및 이용경험 63
【그림 Ⅳ-1】가출 이력과 경험 간의 관계 82
【그림 Ⅳ-2】홈리스청소년(unaccompanied youth) 개입 모형 97
【그림 V-1】가출원인에 따른 3개 집단의 판별함수 산점도127
【그림 V-2】가정생활만족도에 따른 3개 집단의 판별함수 산점도133
【그림 V-3】가출경험 빈도에 따른 2개 집단의 산점도 ······ 137
【그림 V-4】보호시설 이용경험에 따른 집단의 산점도 ······ 141
【그림 V-5】남·녀 가출청소년 집단 산점도 ······ 145
【그림 V-6】쉼터유형에 따른 3개 집단의 판별함수 산점도 ······ 149
【그림 V-7】조사지 개발절차 ····· 242
【그림 V-8】조사영역 및 주요내용 ····· 242
【그림 V-9】법인시설 운영 청소년시설 현황(개소) ······ 245
【그림 V-10】쉼터 유형별 평균 입소자 수 ······ 251
【그림 V-11】청소년쉼터중앙지원 설치 필요성(%) ····· 251
【그림 V-12】중앙지원단 기능의 시급성(7점) ····· 252
【그림 V-13】쉼터의 CYS-Net 운영위원회 참여 여부 256
【그림 V-14】쉼터 입소자 현황(조사시점 기준) ······ 257

【그림	V-15]	쉼터 입소자의 위기 유형(중복응답)	258
【그림	V-16]	쉼터 입소자·이용자의 가출원인	259
【그림	V-17]	쉼터 입소자·이용자의 경제적 여건	260
【그림	V-18]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제도 인지 여부	261
【그림	V-19]	특별지원 필요 정도(긍정응답률)	262
【그림	V-20]	특별지원 필요 정도(7점 기준)	262
【그림	V-21]	쉼터 입소자·이용자 중 특별지원 필요 대상	263
【그림	V-22]	교육청 지원 여부	264
【그림	V-23]	위탁형 쉼터 및 학교 밖 지원센터 신청 의향	264
【그림	V-24]	입소 기간에 따른 쉼터 유형 구분 적절성	265
【그림	V-25]	관내 쉼터 추가 설치 필요 여부	267
【그림	V-26]	쉼터의 여건 및 환경(긍정응답률)	268
【그림	V-27]	쉼터 유형별 운영 프로그램	269
【그림	V-28]	쉼터 퇴소자 사후관리 평균 기간	271
【그림	V-29]	쉼터 퇴소자 사후관리 방법(중복응답)	271
【그림	V-30]	수요가 가장 많은 쉼터 서비스(중복응답, 1~4순위)	272
【그림	V-31]	정부 추가예산 지원이 필요한 쉼터 서비스(중복응답, 1~4순위) …	274
【그림	V-32]	쉼터의 공공요금 지원(중복응답)	274
【그림	V-33]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제도 개선(긍정응답률)	275
【그림	VI-1]	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 전달체계(1안)	296
【그림	VI-2]	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 전달체계(2안)	297
【그림	VI-3]	청소년쉼터 유형 운영(안)	300
【그림	VI-4]	청소년쉼터 특별지원 신청 경로 개선(안)	320

제 I 장

서 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 연구내용
- 3. 연구방법
- 4. 연구추진체계

제 **l** 장 서 론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출청소년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정부의 공식 통계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찰청의 18세 미만 실종아동 통계와 청소년의 생애 가출 경험률을 이용한 규모 추정치가 활용되고 있다. 가출을 포함하여 실종으로 신고 접수되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매년 1만 명을 넘고 있고, 중·고교생의 생애 가출 경험률은 2002년 8.5% 수준에서 10년 만에 12.2%로 증가하여 중·고교생 10명 중 1명 이상이 가출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경찰청, 2014; 여성가족부, 2012, p.143).

가출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1991년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청소년쉼터'가 처음 설치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2004년에 이르러 「청소년 복지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청소년쉼터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를 근거로 국고에 의한 쉼터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져,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정책이 추진된 지 올해로 10년을 맞이한다. 그 동안 2004년 드롭인센터(일시쉼터) 설치, 2005년 중장기쉼터 설치, 2011년 일시쉼터의 거리상담 전담인력 배치, 2012년 의료특화 이동형 쉼터 설치 등 쉼터 운영 형태가 다각화되고 개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10월 현재 총 109개 쉼터가 설치·운영 중이다. 그러나일시쉼터 21개소를 제외한 단기, 중장기쉼터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정원은 9백 여 명에 불과하여가출청소년의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기 가출은 지위비행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사실상 가출 행동은 심각한 비행, 일탈, 범죄로 가는 통로(gate-way)이자 가출청소년은 선도 대상 우범소년(虞犯少年)으로 규정되어 왔다. 이로 인해 기출의 원인과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경찰단계에서 선도와 귀가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청소년쉼터의 성과지표에도 가정복귀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과 접근은

¹⁾ 이 장은 김지연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함.

가정복귀가 불가하여 홈리스(homeless) 상태인 청소년의 반복가출을 유발하고, 공적인 지원체계 를 떠나 거리에서 생존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범죄의 가 피해자로 전락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실제로 쉼터 이용 청소년 가운데 가정복귀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10명 중 4명(33.9%)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여성가족부, 2011). 최근 청소년 가출의 특징적인 동향은 저연령화, 장기화, 다양화로. 요약되는데 일명 '가출팸(가출과 family의 합성어)' 뿐 아니라 부모가 허락한 가출팸을 지칭하는 '독립팸', 인터넷을 통해 불시 만남을 반복하며 가출생활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온라인팸', 가출상황에서 학교에 재학 중인 '가출학생', 그리고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한 '노숙청소년' 등 가출원인과 행태, 상황이 매우 다양하다. 이들은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으로 생존과 자립지워이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가출청소년 지원정책은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에 국한되어 있다. 이는 지금까지 정책대상인 가출청소년을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으로 규정하여 그들의 취약한 상황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비행 관점에서 접근하여 정책대상의 개념과 범위가 모호하고 정책내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편 청소년쉮터는 「청소년복지 지워법」을 근거로 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이지만 「아동복지 법」에 근거한 아동복지시설과는 달리「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복지시설에서 제외되 어 있다. 이로 인해 쉼터가 가정 밖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안양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준한 자립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또한 쉼터 이용

최근 노숙인의 인권과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2011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듬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18세 이상 노숙인을 지원대 상으로 한다. 이에 가정해체와 보호자의 양육능력 상실로 보호와 지도감독이 필요한 집 없는 청소년'을 청소년쉼터 이용 대상에 적극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일부개정 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으나》 '가출청소년의 개념을 보다 확대하여 가정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대상을 법에서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침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여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우선입소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역시「아동복지법」을 근거로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성인기에 접어든 기출, 홈리스청소년의 보호지원에

는 사실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²⁾ 이는 20세 이상 가출청소년이 쉼터 이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용을 원할 경우에도 현장의 수 용능력이나 보호와 지도체계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주요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 21세, 영국 25세, 호주 21세 등 만 21~25세에 해당하는 성인기에 접어든 가출청소년은 자립이 불가능하여 사회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 하여 청소년쉼터 입소 및 서비스 이용을 별도 지원하고 있다(백혜정 외, 2009, p.222).

³⁾ 의안번호 2899(2012.12.3 이자스민 의원 대표 발의).

받지 못하는 청소년으로 볼 수 있고, 현행「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을 통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폐기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90년대 후반 구제금융 관리체제 이후 신빈곤층이 급증하였고, 이로 인해 가정불화, 가족해체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가정 내 돌봄 공백 문제가 여전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해체된 가정 속에서 아동·청소년은 성인역할 수행을 요구받거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되어 급기야 가정을 탈출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2011년 노숙인 실태조사에서 29세 이하 청년 노숙인은 거리노숙인의 3.7%, 노숙인시설 거주자의 2.5%, PC방이나 사우나 등 비숙박용 다중이용시설 거주자의 5% 등 3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서종균, 김준희, 박효영 외, 2011). 이는 청소년기 가출을 비행으로 바라보는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가출의 원인과 맥락의 변화와 취약한 상황 개선에 초점을 두고 다각적인 정책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가출청소년을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은 행위를 한 청소년'으로 규정한(여성가족부, 2012, p.143) 기존 연구와 달리 사실상 '돌아갈 집이 없는' 홈리스청소년의 존재에 주목하였다. 이는 정책대상의 개념과 범위를 재해석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 것이며, 가출 행위 자체보다는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상황에 주목하고 정책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 현황을 검토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우리사회의 신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에 대비한 취약·위기 청소년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2. 연구내용

1) 가출청소년의 유형과 특성 분석

청소년의 가출 관련 행태를 분석하고 가출원인, 가정생활만족도, 가출빈도, 성별, 보호시설 이용 경험 유무, 쉼터 유형에 따른 가출청소년 집단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 가출 관련 제반 현황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정책대상의 개념과 범위를 재설정하고자 하였다.

2)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석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관련 법제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의 복지정책 분석들을 연구목적에 맞게 적용하여 정책과정, 정책산물, 정책평가를 시도하였다. 이와 함께 현행 기출청소년 지원정책은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쉼터를 중심으로 전달체계, 운영지침, 유사시설과의 관계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3) 주요국의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석

정책대상의 범위 설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 프로그램 운영 사례와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주요국의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현황과 사례를 검토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라 가출청소년 뿐 아니라 홈리스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미국, 주거취약 계층 청소년을 위한 선진적인 주거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를 포함하여 일부 유럽 국가의 사례를 포함하였다. 이와 함께 거리아동을 위한 민·관 협력 프로그램의 시사점을 얻고자 개발도상 국의 거리아동 지원에 관한 국제기구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4)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욕구 분석

가출청소년, 홈리스 등 정책대상의 생활실태와 지원 요구를 파악하고 정책 추진 여건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차 자료 분석, 노숙청소년 심층면접, 청소년쉼터 종사자 의견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과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5)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현행 가출청소년 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개선과제와 추진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여기에는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관련 법률 개정 방안과 전달체계 및 지원내용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하였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청소년 기출의 원인과 특성, 가출의 영향요인, 가출청소년에 대한 접근방식 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특히 정책대상으로서의 가출청소년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선행연구의 동향과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책 현황을 고찰하기 위하여 국내·외 연구 및 정책보고서, 관련 자료 및 문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2) 2차 자료 분석

가출청소년의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차원의 공식적인 조사는 부재하여 경찰청, 통계청의 실종아동 현황 등이 정부통계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 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청소년의 가출 경험과 행태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가출청소년의 유형과 집단별 특성 분석을 위하여 2012년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 태조사 자료에 대한 2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가출청소년의 생활실태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목적으로 여성가족부로부터 2013년 가출팸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제공받아 함께 분석하였고 기존 행정통계를 재분석하였다.

3) 청소년쉼터 종사자 의견조사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쉼터의 운영 여건과 정책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에는 시설의 일반 현황, (가칭)청소년쉼터중앙지원단 설치 필요성과 주요 기능, 가출청소년의 발견(발굴), 보호, 퇴소단계별 관계기관 간의 연계 현황, 쉼터에서 보호하는 청소년의 위기 정도와 특성 등을 주요 항목으로 포함하였다(표 I-1).

표 | -1 청소년쉼터 종사자 의견조사 개요

구분	주요 내용		
모집단	• 전국 청소년쉼터(n=110)		
표집틀	표집틀 • 청소년쉼터 행정지원시스템(입력 자료)		
표본수	• 110명(각 쉼터별 시설장 혹은 선임상담원 1인)		
표집 및 조사방법	• 표집방법: 기관별 할당표집(quota sampling), 유의표집 (purposive sampling) • 조사방법: 청소년쉼터 행정지원시스템 활용 온라인 자기기입식(self-report)조사, 이메일 조사 병행		
조사 시기	• 2014년 6월~7월 (2개월간)		
주요 내용	• 일반 현황, (가칭)청소년쉼터중앙지원단, 관계 기관 연계 현황 및 특성, 가출청소년의 특성, 쉼터 운영 여건 및 지원현황 등		

4) 심층면접조사

그간 쉼터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양적, 질적 연구는 여러 차례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쉼터를 이용하지 않고 노숙경험이 있는 가출청소년, 노숙인시설 입소 청소년을 포함하여 사실상 홈리스 상태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쉼터를 이용하지 않는 홈리스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이들의 의식과 직면한 문제, 일반화와 범주화가 어려운 정책 사례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면접 대상을 아동·청소년기에 상당기간 노숙을 경험한 적이 있는 29세 이하 청년층으로 확대하고 이들의 회고를 토대로 홈리스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성인기 이행에 따른 사회화 과정을 주거, 일과 자립, 관계(생활, 의식), 지원정책 요구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표 I-2).

표 1-2 심층면접조사 개요

구분	주요 내용
면담참여자 섭외과정	• 서울, 대전, 부산, 대구 지역 노숙인시설 종사자 추천 • 일시청소년쉼터를 거점으로 노숙경험이 있는 청소년 섭외 병행 • 조사기간(5~6월)을 정하고 기간 내 목표표본을 채우는 방식으로 접근
면담참여자 수	• 노숙(경험)청소년 20명(서울, 대전, 부산, 대구 지역별 각 5명)
면담참여자 특성 개요	 노숙인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 일시청소년쉼터를 가끔 활용하고 있으나 장기 노숙경험이 있고 주거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 아동·청소년기에 상당기간 노숙을 경험한 적이 있는 29세 이하 청소년
면담방식	• 반구조화된 1:1 개별 심층면담 • 시설 종사자 면담 병행(면담 참여자가 해당 시설 종사자 추천일 경우)
면담 시간	• 2시간 내외/1회
면담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 기록·녹음 후 전사
면담자	• 연구진, 노숙인 면접 경험이 있는 면접조사원
주요 내용	• 주거(주거경험, 현재 주거 상태, 주거지원 욕구), 일과 자립(근로 상황, 근로 및 자립여건, 자립 지원 정책 욕구), 관계·생활·의식(개인적-지속적 인간관계, 긍정적 사회관계, 부정적 사회관계, 사회의식 및 일상생활), 지원정책(가장 필요했던 지원, 현재 가장 필요한 지원, 가장 도움이 된 지원과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지원, 지원에 대한 정보 습득 방법) 등
연구윤리 확보 노력	• 면담, 녹음, 기록에 대한 청소년 본인의 서면 동의와 시설 종사자 동의 확보 • 미성년자(4명)의 경우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시설 종사자 동의로 대체

5) 기타 연구방법

(1) 현장전문가 포럼

청소년쉼터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이 요구되는 쟁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쉼터협 의회를 통해 쉼터 종사자8명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세 차례의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사법형 그룹홈 등 가출청소년과 관련한 주요 기관 종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현안 파악과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전문가 자문

연구 설계 및 내용을 확정하고 현안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안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회의 및 서면 검토 방식으로 자문을 받고 이를 반영하였다.

(3) 정책협의회

현행 가출청소년 지원정책의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다. 그러나 가출청소년의 개념 안에는 실종아동, 홈리스(보건복지부)가 혼용되고 있어 '가정 밖' 청소년의 대안양육 차원에서 논의가 요구된다. 또한「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홈리스청소년(법무부), 가출 상황에서 학교에 재학 중인 가출학생(교육부) 등 가출청소년이 처한 상황과 특성을 고려할 때, 타 부처의 관련 정책과의 종합적인 협의와 법제 개선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뿐 아니라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담당자와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정책 개선안에 이를 반영하였다(표 I-3).

표 | -3 정책협의회 개요

차수	주요내용	참석	개최시기	비고
1차	연구 방향 및 내용 협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자립지원과)	1/28	
2차	가출학생 지원 방안	교육부(학교폭력대책과)	6/13	
3차	보호처분 대상 가출청소년을 위한 사법형 그룹홈, 청소년자립지원관 현황과 과제	법무부(소년과) 한국소년보호협회	8/7	
4차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발전방향 세미나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10/7	토론

(4) 정책세미나

청소년기 가출의 원인이 다차원적인 만큼 가정, 학교에 대한 예방적 접근과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면 관련 국정과제의 범위는 매우 넓다. 정책세미나에서는 가출청소년 보호지원과 직접관련된 국정과제인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 가운데 주요추진계획인 '청소년 위기예방 프로그램 확대 및 인프라 구축'으로 논의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 현안과 입법과제를 제안하였으며,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장,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쉼터 소장 등의 토론 내용을 참고하여 주요 내용을 보완하였다(표 I-4, 표 I-5).

표 | -4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관련 국정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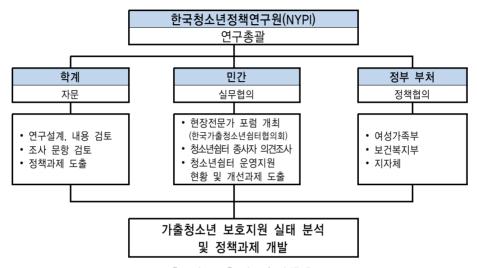
국정	국정	국정	주요추진계획
목표	전략	과제	
맞춤형고용복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청소년 역량 개발 및 건강한 성장 지원	①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청소년 체험활동 접근성 강화를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프로그램 확대 및 지도사 배치 등으로 자기주도적인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② (청소년 위기 예방 프로그램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CYS-Net), 청소년 쉼터, 상설인터넷 치유학교 등 위기청소년 상담 ·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및 인프라 구축 ③ (청소년 · 가족서비스 연계모형 개발 및 시범운영) 복합적이고 연관성이 높은 청소년과 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청소년 수련관에 청소년 · 가족통합지원서 비스 제공 ④ (청소년정책의 실효성 강화) 범부처 차원의 청소년정책 전반을 심의 · 조정할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의 기능 강화 및 청소년정책 분석 · 평가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표 1-5 정책세미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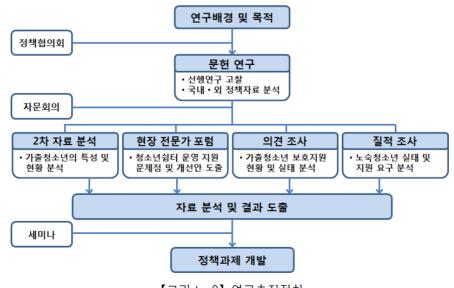
횟수	주요내용	주관	개최시기 비	고
1회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과제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국회입법조사처 NYPI	9/19	

4. 연구추진체계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총괄 추진하고, 정책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학계의 지문과 현장 종사자와의 실무협의, 관계 부처 담당자와의 정책협의를 주요 추진체계로 활용하였 다. 연구의 추진체계와 추진절차를 도식화 한 것이 【그림 I-1】, 【그림 I-2】이다.



【그림 I - I】연구추진체계



【그림 | -2】연구추진절차

제 I 장

이론적 배경

- : 정책대상의 범위와 유형
 - 1. 가출청소년의 개념과 범위
 - 2. 가출청소년에 대한 관점과 접근 방식
 - 3. 가출청소년의 현황과 유형
 - 4. 가출청소년 연구 동향

제 📗 징

이론적 배경 : 정책대상의 범위와 유형4)

1. 가출청소년의 개념과 범위5)

가출(家出, runaways)은 말 그대로 집을 나온 상황이다. 가출청소년의 개념과 연령은 학자마다,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가출을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은 행위'로 정의한다(여성가족부, 2012, p.143). 즉 청소년이 집을 나온 행위를 비행, 일탈로 규정하여 가정에서 이탈한(runaway from home) 청소년을 귀가(return to home) 시키는데 개입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와 같이 지위비행의 관점에서 가출 '행위'에 초점을 두고 정책대상의 개념을 정의할 경우 이들이 놓인 '상황'을 간과하기 쉽다. 즉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폭력·방임을 포함하여 부모나 보호자가 청소년기자녀의 가출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돌아갈 가정이 없는 홈리스청소년 등 노숙청소년(street children) 지원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가출 및 홈리스청소년법(The 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 PL 108-96)」에서 가출, 홈리스를 모두 명시하여 두 집단의 상이한 욕구와 특성을 기반으로 정책지원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쉼터와 같은 시설생활을 하는 청소년도 주거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홈리스의 범주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다. 즉 가출청소년의 행위보다는 이들의 '취약성 (vulnerability)'에 초점을 두고 정책대상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가출청소년 지원과 관련한 세계적 경향 역시 가출 뿐 아니라 거리아동(street children, 이하 거리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다양한 욕구(needs) 충족을 지원 목표로 설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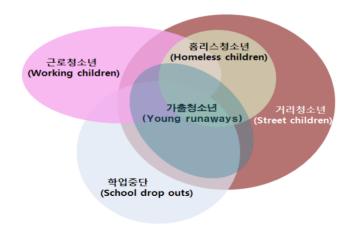
거리청소년의 규모는 해당 국가의 사회자본과 배제(social capital and social exclusion) 정도를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거리청소년은 세계적으로 약 1억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의 규모는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들은 ①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근로청소년

⁴⁾ 이 장의 1절, 2절, 4절은 김지연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절은 김지연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소연 교수(서울여자대학교)가 집필함.

⁵⁾ 이 부분은 김지연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함.

(working children), ② 주거지원 부족으로 홈리스가 된 경우, ③ 부모의 학대와 방임, 지도감독의 부재로 인한 가출, ④ 학업중단, ⑤ 군사적 충돌, 천재지변, 난민 등 사회문제로 인해 부모로부터 이탈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거리청소년은 물질적인 궁핍보다 가족 간의 의사소통 결여, 정서적인 문제가 고립과 탈선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Volpi, 2002, pp.1~6).

World Bank의 보고서에서 Volpi(2002, p.7)는 거리청소년을 '거리가 보금자리 혹은 생활수단임과 동시에 보호자의 지도와 감독을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사회적위험에 노출된 피해자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는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역량강화(empowerment)와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하였다. 거리청소년은 다양한 이유로 보호자와 가정으로부터 이탈된 경우로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대리양육이 필요한 정책대상이다. 거리청소년 가운데 상당수는 돌아갈 가정이 없거나, 주거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곳에서 숙식하거나 생활을 하는 경우, 쉼터와 같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홈리스에 해당한다. 또한 이들 중 일부는 학업중단 청소년이거나 생존을 위해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며 불법적이고 착취에 가까운 근로 환경에 놓이는 등이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그림 Ⅱ-1 참조).



* 출처: Volpi(2002), p.3.

【그림 Ⅱ-1】가출청소년의 개념적 특성

^{6)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 최저연령을 15세 미만으로 두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이는 이 시기가 의무교육 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고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 해 직종을 지정하여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근로할 수 있다. 또한 18세 미만(연소자)의 경우도 근로할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요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개정으로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면서 가출청소년의 정책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동법 제16조). 여기에는 가출에 대한 예방적 접근과 가정복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상담, 청소년쉼터 설치·운영, 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을 포함한다. 다만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쉼터 이용 대상은 24세 이하 가출청소년이나, 쉼터 운영 지침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여 입소 대상자 선정 시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1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을 2순위로 명시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a, p.390). 이로 인해 정책대상의 개념 뿐 아니라 연령 범위도 모호한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가출청소년'이라는 용어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 귀가하지 않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현행 정책대상은 행위에 초점을 둔 지엽적이고 협의적인 정의라는 것을 전제로 가출청소년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상황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기인한다.

2. 가출청소년에 대한 관점과 접근 방식기

1) 가출의 비행화에 대한 접근과 변화

먼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의 가출을 '지위비행(地位非行, status offender)'으로 보는 관점을 들 수 있다. 즉 음주, 흡연과 같이 성인이 아닌 청소년, 학생이라는 사회적 신분으로 인해 사회의 도덕과 법규에 어긋나는 일탈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비행은 위법행위인 범죄와 분명하게 구분되며, 그 자체로 사회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전조 현상으로 간주되어「범죄백서」,「경찰백서」등에서 비행 통계로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행청소년은 행위자 중심으로 볼 때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구분하는데, 형벌법령에 저촉되지 않지만 그러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우범소년에 해당한다. 현행「소년법」에서 10세

⁷⁾ 이 부분은 김지연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함.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 가운데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을 우범사유로 규정하는데(동법 제4조). 이들은 범죄소년, 촉법소년과 동일하게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호처분의 기본 취지는 차지하고라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구속을 포함하여 제재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청소년의 가출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그 자체가 우범행위로 간주되어 왔다. 이는 가출과 다른 비행과의 높은 상관관계, 청소년기 비행 경험과 성인기 범죄 행위와의 관련성에 대한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 이로 인해 경찰은 전국 보호시설과 도서지역 및 PC방, 공·폐가, 찜질방 등을 대상으로 '일제수색'을 실시하고 발견된 실종아동 및 가출청소년을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선도활동을 꾸준하게 전개하고 있다.8)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결국 공공장소에서 이들을 몰아내고 이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되어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사회적인 불가시성(social invisibility)은 이들의 취약성(vulnerability)을 가속화하는 반면 사회복지사(social worker)가 이들을 발견하고 아웃리치(out-reach)하기는 더욱 어렵게된다. 따라서 가출을 지위비행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공공 보복주의(revanchism)》에 불과하며 청소년이 특정한 장소에 머무를 수 있는 권리를 처벌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가출청소년의 다층성(multitude)에 따른 차별적인 개입과 접근이 필요하다(Gibson, 2011). 가정에서의 학대와 방임, 가족 내 갈등, 가족해체, 시설퇴소와 빈곤 등 환경적 문제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탈출'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기 때문이다. 즉 가정으로 복귀 시켜도 가출과 가정복귀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순히 바깥이좋아서 문제가 없는 편안하고 안락한 집을 떠나 거리에서 생존의 위협과 싸워가며 살기를

⁸⁾ 소년업무처리규칙에서 '불량행위소년(소년풍기사범)'에 대하여 주의, 조언, 제지, 보호자 연락 등 경찰단계에서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관련하여 경찰은 전국 보호시설 및 도서지역 일제수색을 통해 실종아동, 가출청소년, 집단합숙소(일명 꿀 림방), 온라인 상 가출청소년 사이트를 발견하여 실종아동과 가출청소년은 가족에 인계하고 해당 사이트는 바로 폐쇄, 게 시판에 올라온 청소년 성매수 등 글에 대해서는 내사하는 등의 청소년 선도 및 청소년범죄 예방 노력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2년도 일제수색을 통해 가출청소년 2,278명 발견(전년 대비 214명 증가), 집단합숙소 14개소 발견(전년과 동일) 등의 수색 성과를 보고한 바 있다(경찰청, 2012, 경찰청 브리핑 제3회 전국보호시설 및 도서지역 일제수색 결과, http://www.police.go.kr/portal/bbs/view.do?bbsld=B0000011&ntlld=8521&menuNo=200067). 다만 2013년에 소년업무규칙을 제정하면서 '불량향위소년'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면서 우범소년을 소년부로 송치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청소년 가출 사안은 경찰단계가 아닌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⁹⁾ 거리아동·청소년의 경우 사소한 위반이나 위협에도 경찰로부터 벌금을 부과받거나 공공장소에서 떠날 것을 종용당하고 떠나지 않으면 체포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가출청소년이 점점 더 눈에 보이지 않고 위험한 활동으로 내몰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노숙청소년의 75%가 경찰에 체포된 경험이 있고 일년 중 1/3 이상을 구속 상태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웃리치 워커가 청소년을 만날 기회를 줄이고 아웃리치의 효율과 효과성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다(Gibson, 2011).

택하는 일은 거의 없으며, 비행친구와의 어울림 등이 가출을 실행하는 즉각적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 역시 가족과의 유대와 통제에서 멀어지는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김지혜, 2013, p.45).

무엇보다 가출 행위 자체보다는 가출 이후 스스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정에서 절도, 성매매 등 범죄가 생존전략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가출 상황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부당 대우를 당하는 등 위험 상황에 노출되기 쉽다. 이러한 이유로 가출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인 요인들에 주목하고 가출 청소년이 비행, 범죄로 진입하는 경로와 과정에 대한 연구도 다수 이루어졌다(김지혜, 2005b; Miles, et al, 2008; 윤선미·이나영, 2012). 이들 연구는 가출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가출의 다양한 원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가출 이후의 낙인(stigma), 부정적인 인간관계와 사회경험을 포함한 다중 위험요인(multiple risk factors)에 대한 개입이 오히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유엔총회는 1994년 12월 거리아동의 증가와 이들이 처한 어려움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각국이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인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후 2011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는 거리아동에 대한 차별과 낙인, 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와 이들에 대한 범죄화(criminalization) 중단을 국가 우선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의 요청으로 2012년 1월에 제출된 유엔인권최고대표고서에서는 거리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경찰 검거는 결과적으로 이들이 폭력에 쉽게 노출되고 형사제도로 향하게 되므로 각국은 최소한의 조치로 가출과 같은 생존행위를 비범죄화하고 거리아동이 생존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 검거하거나 범죄자나비행소년으로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이에 앞서 "1990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유엔소년비행예방지침(The riyadh Guidelines)에서는 소년에 대한 일탈(deviant), 비행(delinquent), 우범(pre-delinquent)으로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결국 범죄로 이행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성인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범죄시, 낙인화 하는 입법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이후 같은 맥락에서 2007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일반논평 제10호(소년사법에서의 아동 권리)에서도 지위비행 규정 철폐를 권고하였다(UN Human Right Council, 2011; UN General Assembly, 1990; UN Committee on the Right of the Child, 2007; 김지혜, 2013, pp.35~42 재인용). 이와 같은 논의는 가출 행위는 그 자체로 사회의 도덕과 법규에 어긋나는 행위라 볼 수 없고, 청소년의 가출을 비행으로 규정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에 불과하며 가출 이후 청소년이 당면하게 되는 상황에 개입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2) 가정 밖 인권 사각지대 청소년에 대한 접근

가출이 '탈출'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가출의 비행화는 타당하지 않다. 선행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절도, 갈취, 폭행, 성매매 등 범죄 행위는 가출 이전보다 가출 이후에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가출 이후 청소년이 직면하는 문제는 저학력, 낮은 자존감, 정서장애, 또래나 성인으로부터의 폭력, 착취, 원하지 않는 조기 임신, 성병, 약물남용 등이 공통적인 사안으로 지적된다. 또한 가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조기개입(early intervention)이 필요한데(Volpi, 2002, pp.6~7), 가출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성과 관계없이 가출 상황 자체가 생존을 위해 범죄행위에 연루되기 쉬운 고위기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 상당수가 가출 기간 동안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경험이 있거나 잘 곳을 찾지 못해 노숙하거나 밤새 돌아다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죄 피해를 입더라도 강제 귀가 조치가 두려워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자신의 피해 경험을 이유로 다른 가해행위를 정당화할 가능성이 크고 노동시장에서 착취피해 경험은 합법적 노동에서 멀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혜, 2005a, pp.119~120; 김지혜, 2005b; 윤선미, 이나영, 2012; 유서구 외, 2012). 이러한 논의는 가출청소년의 문제는 더 이상 비행행위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가출할 수밖에 없는 가정 내 환경에 대한 예방적접근과, 생존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밖 청소년의 권리와 인권 보호 문제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현행「민법」에서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률행위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子)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913조). 이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과 지도감독의 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적절한 양육과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는 법률행위 뿐 아니라 근로활동을 포함한 독립적인 생계유지 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성년자가 가출하여 정당한 근로활동을 할 수 없어 생존을 위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 이는 미성년자의 미성숙을 전제로 설계한 보호 논리에서 기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책임을 전제로 유엔총회에서도 1994년 12월 23일 거리청소년의 곤경(The plight of street children)이라는 결의안에서 거리청소년이 범죄, 약물, 성매매에 연루되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고 이들이 적절한 음식, 주거, 의료, 교육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UN이동권리협

약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UN General Assembly, 1994; 김지혜, 2013, p.51 재인용). 결국 가출 청소년에 대한 국가정책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의 생존과 안전,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적절한 대안양육의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전향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 가출청소년의 현황과 유형10)

1) 청소년의 가출경험과 행태

그간 가출청소년의 현황은 경찰에 접수된 가출 신고 건수를 일부 활용하였다. 2005년 12월 1일「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14세 미만 아동은 실종아동으로 분류하고,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14세 이상 19세 이하는 가출청소년, 20세 이상은 성인 가출인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2013년 6월 실종아동법의 개정으로 대상 아동의 연령이 18세 미만으로 상향조정되면서 2014년 7월부터는 18세 미만 가출청소년은 실종아동 통계를, 18세 이상 가출청소년은 기출인 통계를 활용해야 한다. 이로 인해 18세, 19세 기출청소년 통계는 성인 가출인 통계에서 별도 추출해야 하는 실정이다.

실종아동의 연령이 상향조정 된 것은 정책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동시에 실종아동으로 신고접수 된 18세 미만 가출청소년의 경우 발견 즉시 실종아동에 준하여 경찰신고 와 보호자 인계 등 귀가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청소년쉼터 종사자는 실종아동에 대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보호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11) 그러나 현행 사업지침에 이와 관련한 업무지침은 찾아보기 어렵다.

2009년 이후 18세 미만 실종아동 신고 사례 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최근 5년 간 매년 1만 명을 유지하고 있다(표 II-1). 주목할 점은 최근 5년 간 실종아동의 귀가 현황을 보면 미귀가 사례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표 II-2). 이는 약취(略取), 유인(誘引), 유기(遺棄)

¹⁰⁾ 이 부분은 김지연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소연 교수(서울여자대학교)가 집필함.

¹¹⁾ 다만 청소년쉼터에서 실종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실종아동법 제7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간주한다면 미신고 보호행위로 볼 수 없겠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혹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이후 발견, 복귀가 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자발적인 가출 등 발견 이후에도 귀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12)

표 ||-| 가출인 발생 현황

(단위 : 명)

									(EIII · O)
연도	가출인(전체)			가출 청소년 -18세 미단			18세 이상		
	발생	남	여	발생	남	여	발생	남	여
2009년	56,324	23,489	32,768	13,210	4,906	8,237	43,114	18,583	24,531
2010년	60,393	18,937	41,370	16,386	5,882	10,418	44,007	18,937	25,070
2011년	65,050	28,442	36,608	16,678	6,259	10,419	48,372	22,183	26,189
2012년	66,457	29,686	36,771	16,457	6,496	9,961	50,000	23,190	26,810
2013년	69,022	32,379	36,639	11,279	4,719	6,560	57,743	27,660	30,079

* 출처: 경찰청.(2014) 내부자료 (2014년 3월 6일 정보공개 청구)

* 주: 1)「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2013.6.4. 개정, 2014.7.29. 시행)를 기준으로 연령 구분함. 단. 기존 통계(경찰백서)에서 가출청소년은 「청소년보호법」제2조1호에 의거 14~19세로 집계하였음.

표 II-2 실종아동 귀가 현황

(단위 : 명, %)

연도		실종아동(14-18세 미만)	
전도	발생	귀가 ¹⁾	미귀가
2009년	13,210	13,143	67 (0.50)
2010년	16,386	16,300	86 (0.52)
2011년	16,678	16,570	108 (0.64)
2012년	16,647	16,457	190 (1.14)
2013년	11,279	11,153	126 (1.11)

* 출처: 경찰청(2014), 내부자료 (2014년 3월 6일 정보공개 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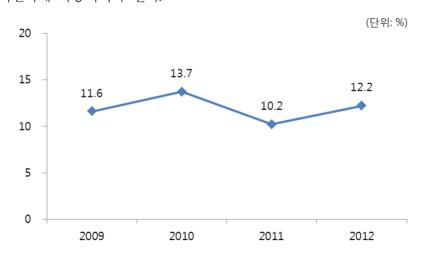
* 주: 1) 귀가의 경우는, 가출청소년 발견 당시 바로 귀가하지 않고 추후에 귀가한 사례 등이 누적되어 있는 것임.

한편 기출청소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 현황과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여성가족부)' 등을 통해 규모를 추정할 경우 열 배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중·고생 청소년의 가출이 지속적으로

¹²⁾ 영국의 The children's society(2011)는 가출청소년의 상당수는 경찰에 실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출청소년을 위한 필수 서비스(vital services)는 실종이 아닌 모든 가출을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 의뢰,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의 모니터링 노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는 반복 가출과 도움 요청 정도 등 지역 자료(local data)의 수집을 포함하는데, 이는 지역 수준에서 가출과 관련한 사안들의 개선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척도이기 때문이다(Rees, 2011, p.40).

증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그림 II-2). 그러나 2009년 이후 우리나라 중·고교생의 생애 가출 경험률은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한 번이라도 가출을 경험한 적이 있는 청소년이 중·고교생 10명 중 1명에 달한다(여성가족부, 2012). 같은 자료에서 우리나라 중·고교생의 가출 경험률은 122%에 달하는데 이를 적용할 경우 가출 경험이 있는 중·고교생은 약 4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자료에서 초등 5~6학년의 기출 경험률은 6.1%, 위기청소년(소년원생)의 가출 경험률은 728%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출 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기출 경험률이 재학생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가출 경험률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고 위기청소년의 경우 10명 중 7명(72.8%)이 가출을 경험하다는 점이다(표 II-3).

그간 청소년의 가출 행동은 지위비행, 일탈로 간주되어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책 개입 역시비행청소년의 선도, 가정복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고생 10명 중 1명이상이 생애기간 중 가출을 경험하고 있고, 가출 행위 자체가 위기상황으로부터의 탈출인경우가 적지 않으며 가출 이후 생계형 범죄의 가피해자로 전략하게 되는 경로에 주목할 필요가있다. 즉 가출청소년은 선도 대상으로서의 비행청소년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으로 정책대상을 재개념화할 필요가 있고, 청소년기 가출로 인한 각종 위험과 사회적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 학교, 환경 체계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그리고 가출 이후 보호지원 안전망이 적절하게 가동되어야 한다.



* 출처: 여성가족부(2012). p.144.

* 주: 가출: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은 행위

【그림 Ⅱ-2】생애가출경험률(2009~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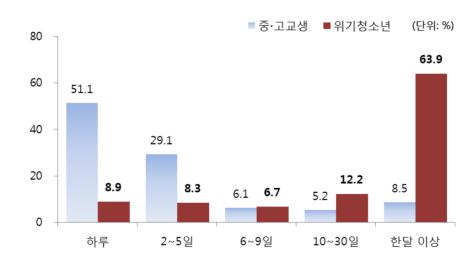
표 II - 3 생애가출경험률 - 집단 비교

	사례수(명)	있다	없다
초등학생(5~6학년)	1,515	6.1	93.9
중 · 고교생	15,350	12.2	87.8
위기청소년	1,347	72.8	27.2

* 출처: 여성가족부(2012), p.197.

* 주: 위기청소년은 소년원에 보호조치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함.

같은 자료에서 가장 최근의 가출 경험을 기준으로 가출기간을 조사한 결과 '하루'라는 응답이절반을 넘었으나 '10일 이상' 가출한 경우도 가출청소년 10명 중 1명(13.7%)에 달한다. 위기청소년의 경우 한 달 이상 장기간 가출자의 비율이 63.9%에 달하여 위기 여부에 따라 가출의 빈도와기간 등 가출행태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성을 보인다(여성가족부, 2012, pp.197~198). 가출기간이 길어지면서 가출팸을 형성하는 경우도 많아져 가출청소년의 가출팸 경험률은 약 10%에 달하고 상시적으로 거리생활을 하는 가출팸 청소년의 실인원은 약 1만 3천명으로 추산된다(유서구 외, 2012).



* 출처: 여성가족부(2012). p.198.

* 주: 1) 가장 최근에 가출을 한 기간을 기준으로 함.

2) 위기청소년은 소년원에 보호조치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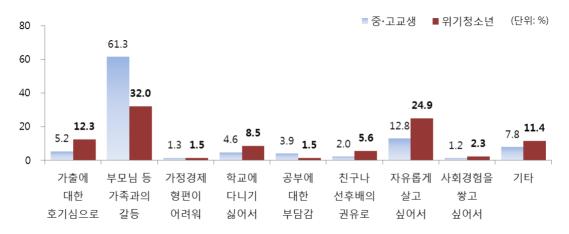
【그림 ||-3】가출청소년의 가출기간

위와 관련하여 영국 The children's society(2011)은 가출과 청소년의 주관적 복지(well-being), 그리고 문제행동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교우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아 또래관계의 질이 현저하게 낮았다. 또한 가출청소년 절반 이상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학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대학 진학 희망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역시 가출경험 유무에 따라 응답률이 4배 이상 격차를 보여 가출경험이 생활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가출을 반복하게 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가족 요인(family factors)은 가출의 결정적 요인이며, 친밀감(warmth)이 낮고 갈등(conflict)은 높은 가정환경에서 청소년 가출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출 예방을 위한 전략에서는 가족관계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Rees, 2011, pp.32~39).

같은 연구에서 청소년의 생애 가출경험률이 다소 개선되더라도 청소년 한 명 당 가출 횟수나 가출청소년의 위험, 피해 정도가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그리고 실종신고나 전문기관 의뢰 비율이얼마나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Rees, 2011, p.39). 또한 가출청소년은 교우관계, 가족관계, 학교 및 생활 전반의 복지수준이현저하게 낮으므로 가출 자체를 위기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의 계기(trigger)로 다루어야 한다고지적하였다. 특히 청소년은 가출 이후 친구, 친구의 부모, 친지, 이웃 등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전문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공식적 네트워크에 있는 이들 스스로가 가출청소년의 잠재적인 원조 체계임을 자각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가출 이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 통로(routes)를 개선하고 가출 이후범죄의 피·가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숙박시설(emergency accommodation)을 제공하는 것이효과적이라고 지적하였다(Rees, 2011, p.40).

2) 가출의 원인과 가정복귀 영향요인

가출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주된 요인으로 가족요인을 들고 있다(백혜정, 방은령, 2009; 김용길 외, 2011; 여성가족부, 2012; 유서구 외, 2012; 문재우, 2012).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에서도 위기 여부에 관계없이 가출의 원인 중 1순위는 '부모 등 가족과의 갈등'으로 나타났다. 2순위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3순위는 중·고교생의 경우 '학교에 다니기싫어서', 위기청소년은 '가출에 대한 호기심' 순이었다(여성가족부, 2012, p.147).



* 출처: 여성가족부(2012), p.198.

* 주: 가장 최근에 가출을 한 기간을 기준으로 함.

【그림 II-4】가출의 원인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서구 등(2012)의 연구에서는 학교요인 가운데 학교생활에 흥미가 없거나 성적 및 학업 부담, 교사의 체벌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고, 친구요인은 '친구와 늦게까지 놀고 싶어서', '친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친구가 부추겨서', 사회요인은 '집 밖에서 노는 것이 집 안에서 노는 것 보다 재미있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개인요인으로 '답답해서', '짜증나서', '독립하기 위해' 등이 가출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 외 가정 내 생물학적인 부모의 존재여부나 거주지역의 특성(도시, 농촌)이 청소년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anchez, et al., 2006, pp.778~781).

한편 가출은 가족, 친구, 학교, 낮은 존중감(disrespect), 불안, 생활의 불안정성, 지역사회특성과 제도적 특성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나 가출행태 뿐 아니라가출 이후 대처전략은 가출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Miles & Okamoto, 2008, pp.425~441; Chun & Springer, 2005, p.57). 위기청소년은 가출빈도와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가출 이후 생계유지 등을 목적으로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경우가 2명 가운데 1명에 달한다. 반면 위기청소년의 경우 일반 청소년에 비해 청소년쉼터 등 관련 기관(시설)과 각각의 제도에대한 인지도와 이용 경험은 상대적으로 높다(여성가족부, 2012, pp.201~202). 따라서 일반 청소년의 가출 관련 지원시설(제도)에 접근성을 높이고 위기청소년의 보호지원 효과를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가 주요 과제로 지적된다.

가출 이후 가정복귀 가능성 역시 가출의 원인과 상황적 특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 가출청소년의 성별, 학교재학 유무, 양부모 동거가정 유무, 부모학대 유무, 부모의 보호의지 정도, 경제적 빈곤 정도, 가출 저위험군, 주변 친구의 영향력 정도, 충동성 수준, 자존감 수준 등이 가정복귀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다(유서구 외, 2012). 그러나 현장에서 상용하는 평정척도는 부재하며, 쉼터의 유형도 가정복귀 가능성 여부가 아닌 입소 기간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어 개별적인 맞춤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생존형' 가출청소년을 어떻게 규정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3) 가출청소년 유형화와 집단 구분

가출청소년을 학문적 영역에서 유형화하려는 시도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Homer(1973), Shellow 등(1967)의 연구들이 대표적인데 가출청소년을 탈출형가출(Running away from)과 추구형가출(Running toward) 등 2~3개 범주로 유형화하였다. 이후 가출청소년 유형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유형화 체계가 다양화되었다. English(1973)는 가출청소년 300명을 인터뷰하고 질적 자료를 바탕으로는 뜨내기(Floaters), 반복가출자(Runaways), 분열자(Splitters), 거리족(Hard road freaks)으로 구분한 바 있고, Dunford와 Brennan(1976)은 군집분석을 통해 '잘 적응한 가출청소년(well-adjusted runaway youth)', '가정과 학교모두에서 실패한 심각한 비행행위자(double failures: high delinquency involvement)' 등 6개의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 가출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하려는 노력은 현재까지도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다. Zide와 Cherry(1992)는 판별분석을 활용하여 청소년가출을 추구형(Running to), 탈출형 (Running from), 추방형(Thrown out), 유기형(Forsaken)으로 분류하였고 최근에는 Toro 등(2011)이 단절되지 않은 떠돌이 집단(Transient but connected), 고위험(High-risk) 집단, 저위험 (Low-risk) 집단 등으로 가출청소년 집단을 유형화한 바 있다. 이들 연구는 청소년기 가출의 원인과 특성을 밝히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가출청소년 유형화 연구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진행된 것에 반해 특정 유형 체계를 지지하는 것으로 수렴되지 않고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는 것은 기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된다. 이와 함께 가출청소년을 유형화 하는 작업 자체가 갖는 근본적인 어려움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즉 가출청소년은 다양한 요인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화, 유형화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Dunford & Brennan, 1976; Jones, 1988)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 연구가 가출청소년의 특성 요인을 고려하여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分類)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면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한 기준에 따라 가출청소년의 특성을 몇 가지의 갈래로 나누는 구분(區分) 방식을 적용하여 가출청소년의 상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 가출의 원인에 대한 예방적 접근과 가출 이후 개입서비스 제공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청소년기 가출 관련 주요 변인 가운데 청소년의 가출원인, 가정생활만족도, 가출빈도, 성별, 가출 후 보호시설 이용 경험 유무, 청소년쉼터 유형 등 6가지를 선별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구분된 집단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1) 가출원인

가출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원인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다 (Jones, 1988; Slensnick, 2004). 다만 청소년기 가출에 대한 선행연구에 근거할 때 왜 청소년들이 가출하는지 그 이유는 가족관련 문제로 인한 가출, 학교관련 문제로 인한 가출, 기타 문제로 인한 가출 등 크게 3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가족관련 문제는 청소년 가출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김향초, 2001; Fernandes-Alcantara, 2013). 전통적으로 가출은 청소년의 일탈, 부적응 행동으로 인식되었으나 청소년기 가출을 청소년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가족의 갈등, 역기능의 결과로 조명하기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Zide & Cherry, 1992). 미국의 가출청소년 위기전화 서비스를 이용한 청소년들의 약 1/3이 가족관련 문제를 호소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Pegamit, Ernst, Benoit-Bryan, & Kessel, 2010).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가출청소년의 63%가 가출충동의 첫 번째 이유로 가족을 지목하였고(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7), 쉼터 청소년 대상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무려 75.6%에 달하고 있다(남미애, 홍봉선, 육혜련, 2012).

가족관련 문제는 다양한 이슈를 포괄하는데 선행연구에서는 학대와 방임(김향초, 2001; 문재우, 2012; Slensnick, 2004), 가족 구성원 간 갈등(류종훈, 2005; 방은령, 2007; Hammer, Finkelhor, & Sedlak, 2002), 가족구조의 결손과 경제상황(김진숙, 김현아, 2008; 박명숙, 2006; 문재우, 2012)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경험한 청소년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는 가출충동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김진숙, 김현아, 2008). 또한 이러한 범주에 속한 청소년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자신을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여 자존감이

낮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약물오남용이나 자살시도와 같이 자기파괴적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김향초, 2001).

다음으로 학교관련 문제 역시 다양한 이슈를 내포한다. 성적에 대한 압박감, 교사와의 갈등, 학교 공부에 대한 권태감, 학교 규율이나 통제에 대한 거부감이 대표적이다(박명숙, 2006; 백혜정, 방은령, 2009). 최근 쉼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남미애 외, 2012)에서는 학교요인을 가출의 제 1요인으로 보고한 청소년이 전체의 7.6% 정도였는데, 학교생활에 흥미가 없다(3.9%), 교사의 차별대우 및 체벌(1.9%), 성적이나 학업 부담감(0.8%) 순이었다. 이는 위기청소년은 학교요인 중 학교생활에 권태를 느낄 때 가출충동을 느끼는 데 반해 일반 청소년은 학업에 대한 부담이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류종훈, 2005)와 같은 맥락이다. 즉 학교문제로 인해 가출을 감행한 청소년은 '학교생활부적응' 차원에서 유사한 특성을 공유할 수 있지만 학업에 대한 동기나 이를 뒷받침하고 지지하는 가정환경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기타 요인으로는 친구나 개인 요인이 대표적이다. 쉼터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 한 남미애 등(2012)의 연구에서 친구요인을 '친구가 하자고 해서', '이성친구와 놀다가 너무 늦어서', '이성친구와 살고 싶은 욕구'로, 개인요인을 '새로운 경험을 쌓기 위해', '자유롭고 싶어서', '돈 벌고 싶어서', '계획하 것을 이루기 위해', '충동적으로' 등으로 세분화 하 바 있다. 다만 선행연구를 종합할 때 개인요인, 친구요인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예로 Jones(1988)는 친구들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가출을 감행한 청소년을 하나의 유형으로 제시하면서 이 유형의 청소년들은 견디기 어려운 아동학대, 방임, 심각한 가족갈등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또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 가출을 한다고 묘사하였다. Slensnick(2004) 역시 가출청소년의 자유롭고 싶은 욕망과 또래와의 결속감에 주목하고 가정, 학교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청소년은 자신과 여러 측면에서 유사한 또래와 친분을 쌓게 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또래와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또래들이 가출을 제안할 때 거부하기 쉽지 않고 오히려 하나의 기회로까지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이들은 가정환경, 학교생활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역기능적 특성이 약하며 가출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Jones, 1988). 따라서 가정, 학교 차원의 요인이 가출원인으로 두드러지지 않은 경우를 기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2) 가정생활만족도

가출의 원인이 되는 가족관련 이슈는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가출청소년의 특성을 분석하는 시도는 의미가 있다. 가족관련 요인 가운데 가족구조, 거주 지역 등물리적 환경보다는 학대 여부를 포함하여 가족관계와 기능적 특성이 청소년 가출의 주요한 예측 요인이다(Toro, et al., 2011). 사실상 가족관계와 역기능적 특성을 정확하게 사정(assessment) 하기 위해서는 척도에 의한 전문가의 검사, 평가가 요구되나 간소한 방법으로 청소년에 가정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질문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상당수 청소년이 가족 요인을 가출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하지만 그들 모두 가족과 관계가 나쁘거나 가정생활이 불만,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정생활만족도를 근거로 집단을 구분하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가출청소년을 탈출형(Running away from), 추구형(Running toward)으로 유형화했던 전통적인 분류와 유사한 면이 있다.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은 가출청소년은 여러 면에서 추구형에 가깝다. 추구형 가출 청소년은 가정 및 학교환경에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역기능이 있어 가출하기보다 모험, 흥미, 자유를 찾아 가출을 감행하기 때문에 가출 이후 가용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가족의 지지도 기대할 수 있다(English, 1973; Homer, 1973; Zide & Cherry, 1992). 이들 가운데 일부는 높은 자존감, 부모와 긍정적이고 친밀한 관계,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 원만한 교우관계 등의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Dunford & Brennan, 1976). 이들은 가정생활에 큰 불만, 불만족이 없기 때문에 가출 후에도 가족과 연락을 취하면서 가출이 장기화되기 보다는 단시일 내 귀가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가정생활만족도가 낮은 가출청소년은 탈출형과 공통점이 많다. 탈출형 가출은 견디기어려운 여러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가출을 의미하는데(English, 1973; Homer, 1973). Jones(1988)는 이러한 상황을 파괴적인 상황으로부터의 도피, 가족갈등으로부터의 도피, 가족위기로부터의 도피, 공유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한 도망, 도움 요청을 위한 가출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예로 알콜문제를 가진 부모, 신체적 및 성적 학대를 포함한 방임, 부부폭력을 포함한 아동학대와 같이 파괴적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가출, 그리고 부모의 지나친통제와 간섭, 비효과적인 훈육방법, 역기능적 의사소통 등 부모와의 심각한 갈등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출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우 가정환경이 안정되어 있다 보기 어렵고 약물사용, 비행 등에 연루될 위험성이 높고 상습, 만성적인 가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Fernandes-Alcantara, 2013).

(3) 가출빈도

가출빈도는 일시적, 충동적인 가출과 만성 가출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1회성 가출과 반복가출을 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연구표본과 조사시점 등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인다. 12세부터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최근의 한 종단연구에서는 18세가 되기 전까지 19%의 청소년이 가출을 시도하고 가출경험 청소년 가운데 1회성 가출과 반복가출을 한 비율은 각각 50%정도로 균등하였다. 또한 가출을 시도한 청소년의 평균 가출횟수는 3회로 확인된 바 있다(Pergamit, 2010). 다만 일반청소년이 아니라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만을 표본으로 한다면 평균 가출빈도는 높아질수밖에 없는데 쉼터청소년의 경우 남자는 평균 9.1회, 여자는 7.1회로 각각 보고된 바 있다(남미애외, 2012).

일반적으로 반복적 가출을 하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또래들에 비해 욕구가 높고 위험요소를 더 많이 가진 집단으로 간주된다. 상습적인 가출을 하는 청소년들이 대체로 가정환경이불안정하고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며(Fernandes-Alcantara, 2013), 집을 나온 뒤 거리에서스스로 생존하는 법을 습득하였을 뿐 아니라 거리생활을 흥미롭게 생각하며, 사회 규범과는거리가 있는 그들만의 하위문화를 형성하는 등 가출 만성화에 따른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백혜정, 방은령, 2009; Jones, 1988). 특히 주목할 점은 가출 이후 거리에서 보낸 시간이 길면 길수록학업중단, 약물사용, 위험한 성(性)적 행위, 자살시도 등 위험하고 부정적인 문제들과 관련될가능성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점이다(류종훈, 2005; Toro, et al., 2011). 또한 가출을 반복적으로행하는 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역기능적이고 만족스럽지 않은 가정환경에놓여 있고 정신건강을 포함한 여러 측면에서 문제와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다.

(4) 보호시설 이용경험

가출한 모든 청소년이 쉼터와 같은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남미애 외, 2012)에서 조차 가출기간 중 잠을 잔 장소로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이 '친구나 아는 사람의 집(남자 44.8%, 여자 49.8%)'이라고 응답하였고, '쉼터'라는 응답은 10명 중 1명(10.4%, 1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에도 쉼터를 필요로 하는 가출청소년은 연간 1백 3십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반해 이들 중 약

30%만이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US House of Representatives, 1992). 가출한 모든 청소년이 쉼터 이용을 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가출 이후 쉼터와 같은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몇 가지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추정은 충분한 논거가 있다. 이미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보호시설의 보호 하에 있는 가출청소년을 가출자, 유기자, 거리청소년과 구별되는 별도의 범주로 유형화한 바 있다(Toro, et al., 2011).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가출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이 다를 것이라는 추정의 근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가출청소년은 상대적으로 공적서비스에 대해 거부감과 규율 준수, 통제에 대한 거부감이 덜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호시설은 청소년을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정해진 규칙과 체계에 따라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가출청소년은 초기면접을 받고 시설 입소가 결정되면 규칙을 포함한 시설 이용 안내를 받고 여기에는 규칙을 어겼을 때의 벌칙 규정도 포함한다. 이러한 관리와 통제는 일부 청소년에게 안정과 신뢰를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나, 일부에게는 거부감과 견디기 힘든 제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Slensnick, 2004). 이로 인해 후자의 경우 쉼터 이용에 부정적이고 쉼터에 입소하더라도 무단 퇴소하거나 반복적인 규칙 위반으로 쉼터를 옮겨 다니는 이른바 '쉼터돌이' 생활을 하기도 한다.

둘째, 보호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가출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가용 자원 활용이나 대처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가출청소년이 쉼터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중에는 '그러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쉼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서', '그런 서비스가 존재하는지 몰라서' 이다(Pegamit, et al., 2010). 실제로 우리나라 일반청소년 가운데 51.7%, 위기청소년의 27.9%가 청소년쉼터를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일반청소년의 47%, 위기청소년의 34.6%가 청소년쉼터를 알고는 있으나 위치, 이용방법을 모른다고 보고하였다(백혜정, 방은령, 2009). 이와 같은 결과는 보호시설을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할지라도 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가출청소년은 가용 자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셋째, 보호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가출청소년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 가출청소년에 비해 범죄와 같은 문제에 가담하거나 문제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쉼터청소년 가운데는 쉼터 입소 전에 하루도 길거리에서 밤을 보낸 적이 없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Slensnick, 2004). 즉 쉼터청소년은 쉼터를 이용한 적이 없는 가출청소년에 비해 공적 지원체계와 안전망 밖에서 거리를 떠돌며 생활하는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고 이는 범죄와 같은 다른 문제에 연루될 가능성을

줄이는데 기여한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주거가 없어 거리에서 지내는 가출청소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위험요인에 노출되기 쉽고(Rew, 2002) 여기에는 약물사용, 성적 착취와 각종 범죄의 가·피해를 포함한다. 실제로 거리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1/4 정도가 임상적으로 정상 범주를 넘어서는 수준의 우울증 문제가 있고, 1/4에서 1/3정도는 약물이나 법적으로 금지되는 물질을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일반청소년에 비해 행동문제를 하거나 범죄에 가담할 위험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ernandes-Alcantara, 2013).

(5) 성별

가출청소년의 성별 격차는 조사 지역과 조사 대상에 따라 편차를 보인다(Fernandes-Alcantara, 2013). 가출청소년의 성별 격차는 거의 없다는 연구(Hammer, et al., 2002)와 남자가 더 많다거나(문 재우, 2012; 백혜정, 방은령, 2009; Slensnick, 2004) 여자가 더 많다는 연구(류종훈, 2005)가 동시에 존재한다. 가출청소년의 남녀 비율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출에 있어 성별은 주요 변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으나(Pegamit, et al., 2010) 이는 인구의 양적규모만 강조한 접근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실제로 가출청소년의 성별은 이들이 가출을 결심하고 실행하는 과정과 가출 이후의 삶의 방식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Slensnick, 2004) 가출청소년의 유형화 기준으로도 가치가 높은 변수이다(Toro, et al., 2011).

먼저 가출원인을 성별에 따라 분류한 남미에 외(2012)의 연구에 따르면 가정요인을 가출의 첫 번째 원인으로 지목한 여자청소년의 비율(78.4%)은 남자청소년(72.9%)에 비해 다소 높았는데 학교요인을 선택한 여자청소년의 비율(4.2%)은 남자청소년(10.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인다. 또한 친구요인을 가출의 주원인으로 선택한 비율은 여자청소년이 다소 높았는데(여자 6.3%, 남자 4.7%) 개인요인은 남녀 비율이 유사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들에 비해 가정환경 요인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고 또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반면 학교환경 요인에는 덜 취약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남미애외, 2012).

가출과 관련하여 성별 격차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학대문제이다. 피학대 경험이 있는 남자 가출청소년은 신체학대를 호소한 사례가 많은 반명 여자 가출청소년은 성적학대를 호소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Slensnick, 2004). 또한 성별은 가출원인 뿐 아니라 가출 이후 행동양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일부 연구에서는 거리에서 생활하는 가출청소

년은 남자청소년의 비율이 높고, 쉼터 거주 청소년은 여자청소년의 비율이 높았는데 여자청소년 은 성폭력 등에 취약하여 안전한 숙소를 찾고자 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Slensnick, 2004; Fernandes-Alcantara, 2013). 가출 이후 아르바이트 활동에도 성별 차이를 보이는데 남자청소년은 주유소,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여자청소년은 편의점, 다방 및 카페, 노래방 등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또한 여자 가출청소년 가운데 쉼터에 입소하지 않고 숙식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쉽게 돈을 벌기 위해 노래방 도우미를 하거나 윤락행위 및 성매매에 나서는 경우도 있는데(백혜정 외, 2009), 남미애외(2012)의 연구에서는 가출청소년들 중 성매매 및 성병 감염을 경험한 비율은 여자청소년이 높고 가출 중 흡연, 음주, 환각제 사용, 성관계, 돈 뺏기, 폭행(가해) 등 성매매를 제외한 다른 비행행위에서는 남자청소년의 경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출청소년의 유형화를 새롭게 시도한 Toro 등(2011)은 단절되지 않은 떠돌이 집단 (Transient but connected), 고위험집단, 저위험집단으로 유형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은 '성별'이 가출청소년의 집단 구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하면서 여자청소년은 주로 떠돌이집단에, 남자청소년은 고위험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고위험 집단은 학교중도탈락의 위험이 높고 물질사용, 성비행, 문제 행동 정도가 보다 심각하며 만성화된 가출 경력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단절되지 않은 떠돌이 집단은 거주지 및 학교와의 관계가 불안정하긴하지만 물질사용이나 정신건강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고 가족이나 성적 파트너와 상대적으로 강한 결속감을 가진다는 것이다(Toro, et al., 2011).

(6) 쉼터 유형

현행 청소년쉼터는 입소 기간을 기준으로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 구분하고 있다. 일시쉼터의 표적 대상은 가족이나 사회와의 유대가 약화되어 거리를 배회하거나 거리에서 노숙하는 청소년이며 일시쉼터의 주요 기능은 '청소년을 거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가출과 가출의 장기화를 예방'하며 '청소년을 사회체계와 연결하는 것'이다. 일시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 은 가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가정, 학교로 복귀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이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런 점에서 일시쉼터 이용 청소년은 Jones(1988)가 제시한 가출 유형 가운데 미수(未遂)성 가출(abortive runaways) 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가끔 가출을 감행하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행동이라기보다 충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스스로 혹은 경찰 등의 개입으로 짧은 기간 내에 귀가가 이루어진다. 또한 이들은 가족과의 유대가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다(Jones, 1988).

단기쉼터는 최장 9개월까지 보호를 제공하는데 표적대상은 갈등가정 및 해체가정의 청소년이다. 즉 가정이 청소년 양육, 보호 기능을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상실한 경우인데, Jones(1988)의 분류에 의하면 뜨내기형 또는 위기탈출형(Floaters & Crisis Runaways)에 가장 가깝다. 이들의 가출은 가족의 갈등을 피하는 수단이 되며 집을 떠나 있으면서 가출이 가족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지 가늠해보거나 자신이 가족을 떠나서 살 수 있는지를 시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가 있다. 이들은 비록 가족 간의 갈등과 문제로 가출을 감행하지만 가족과의 유대가 없지는 않기 때문에 조기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귀가를 포함한 문제 해결이효과적일 수 있다(Jones, 1988).

마지막으로 중장기쉼터는 2년 이상 보호를 제공하며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돌아갈 가정이 없는 가출청소년을 표적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가정에서 내몰리거나(thrown out) 홈리스 상태로 장기간의 가출로 거리에서 생활하는 방법을 습득하였거나, 생존을 위해 불법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기도 한다. 이들 가운데는 부모의 알콜중독, 가정폭력 등 병리적 문제를 포함하여 귀가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청소년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고 가족 역시 이들의 귀가에 관심이 없거나 노력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상당수가 가족과 완전히 단절된 관계에 놓여 있다. 이들 가운데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별도의 개입이 필요하거나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경험을 포함하여 범죄 경력을 가진 경우도 상당수 있다(Zide & Cherry, 1992).

4. 가출청소년 연구 동향13)

그간 청소년 가출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는 가출의 원인 규명, 가출에 따른 문제, 가정복귀 영향요인, 가출에 대한 관점과 대응방안 등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80년 대 이후 가출의 원인과 문제점을 규명하는 다수의 연구가 꾸준하게 이루어졌으며 가정(부모)요인은 가출 시작과 빈도 및 기간, 가정복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¹³⁾ 이 부분은 김지연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함.

이들 연구에서는 가정(부모)요인은 일회성, 만성, 장기 탈출형 등 가출 행태와 특성 뿐 아니라 재가출, 방임 등 가정복귀 이후의 예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가족의 여건을 고려한 차별화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백혜정, 방은령, 2009; 박윤희, 이상균, 2010; 김용길외, 2011).

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가출을 비행과 사회문제의 관점에서 조망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연구에서는 가출청소년이 저학력·비숙련 상태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처우와 이탈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범죄의 가해, 피해에 연루되는 것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다(김지혜, 2005a; 김지혜, 2005b; 윤선미, 이나영, 2012). 또한 정보화의 영향으로 가출 후 가출팸을 형성하기 쉬운 여건이 조성된 만큼 가출팸 형성과이후 비행이나 범죄에 가담하거나 가출팸을 이탈하게 되는 경로에 관한 연구도 일부 이루어졌다(세계빈곤퇴치회, 2012; 유서구 외, 2012). 이와 함께 가출 이후 생활에서의 성별격차와 인권침해문제, 보건·건강지원을 강조한 연구도 이루어진 바 있다. 이들 연구는 여학생의 경우 가출이후 인권상황과 폭력피해 정도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가출의 성별 영향을 고려한지원이 필요하고, 인권 보호 노력과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건·건강지원 확대를 강조하였다(김지혜, 2006; 국가인권위원회, 2012; 서울시, 2012; 변혜정, 김효정, 이진영, 황유나, 2012).

가정복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로 먼저 김용길 외(2011)는 가정복귀 가능성 지표로 성별(남학생), 재학생, 양친부모 동거, 보호자의 보호의지(강한 경우), 학대위험(낮은 경우), 빈곤 여부(비빈곤), 가출빈도(적은 경우), 친구 영향력 정도(낮은 경우), 충동성(낮은 경우), 자존감(높은 경우) 등 10개 지표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저위험군은 가정복귀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중위험군은 무조건적 귀가보다는 단계적으로 원인을 해결한 후 귀가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며 고위험군은 자립지원, 학업지원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김은영과 송민경(2009)은 학업상태, 대인관계기술, 가출청소년이 인지하는 가족의 경제적 지위, 가족구조, 가출동기, 가출횟수, 쉼터 입소경로가 귀가 결정요인이기 때문에 가출청소년의 개인특성과 가출 관련 요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가정복귀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출 기간이 장기화되고 반복될수록 인권침해와 범죄 피해, 학업중단에 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조기개입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청소년 가출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는 청소년쉼터 운영 모델에 관한 연구와 가출의 비범죄화 논의가 대표적이다. 2000년대에 이후 청소년쉼터의 기능 다각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면서 일시, 단기, 중장기 등 보호기간을 기준으로 한 청소년쉼터의 유형화 필요성과 차별화된 운영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유형화에 재논의를 포함하여 청소년쉼터의 양적 확대에 따른 운영 내실화 방안에 관한 논의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이용교, 2003; 정익중 외, 2009; 남미애 외, 2012). 최근 연구동향 중 주목할 점은 청소년 가출에 대한 관점에 관한 논의, 그리고 가출을 예방하는 소극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가출 이후 인권, 권리 보장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이다. 김지혜(2013)는 가출을 더 이상 비행, 범죄의 행태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가정 밖 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하는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청소년의 가출원인, 가정복귀 가능 여부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예방과 가출 이후 개입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가출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유형적 분류가 실증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다. 즉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성별, 가출원인, 가정복귀 가능성, 가출빈도 등에 따라 정책대상으로서 가출청소년을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집단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드러나 주요 변인을 활용하여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가출청소년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유형별 주요 특성과 차이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제 Ⅲ 장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석

1. 정책과정 :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법제의 태동과 변화

2. 정책산물 :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설계와 내용

3. 정책평가 : 가출청소년 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

4. 소결

Ш

제 III _장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석¹⁴⁾

이 연구에서는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석을 위해 통합적 정책분석틀(An integrated policy Analysis)을 적용하였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정책 분석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준거틀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할당(social allocation), 급여 형태(social provision), 전달체계(the strategies of the delivery), 재원조달 방법(the methods of financing) 등 정책선택의 4가지 차원과 정책평가를 위한 몇 가지 질문을 포함하였다(Karger & Stoesz, 2002; Gilbert & Terrell, 2002; 현안나, 2008; 정규석 외, 2013, pp.132~139). Karger 등(2002)은 정책분석틀은 "정책의 바람직성 (desirability)과 실행가능성(viability)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를 분석하기위해 사용하는 일련의 질문들"로 규정한 바 있다(Karger & Stoesz, 2002, p.31). 또한 선행연구에서 정책분석은 사실(fact)의 문제라기보다는 해석과 가치(value)의 문제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이 장에서는 정책의 해석과 가치 평가를 목적으로 통합적 분석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가출청소년 지원정책의 정책과정, 정책산물, 정책평가를 시도하였다.

먼저 정책과정은 정책형성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분석이라 할 수 있으며 정책형성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인 문제(사건)은 무엇인지, 정책형성 이전에는 사안이 어떻게 처리되어 다루어졌는지, 정책이 처음 태동한 시기는 언제이고 변화과정은 어떠한지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정책산물은 정책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정책의 기본적인 설계(내용)에 영향을 미친 가치(value)를 의미하며, 앞서 언급한 정책분석의 준거틀에 따른 네 가지 차원의 분석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책평가는 수혜자 수, 서비스 제공 결과 등 정책의 산출에 대한 평가로, 정책산물의 효과성과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의미한다. 정책산물, 정책평가 부분에서는 5장에서 제시하는 청소년쉼터 종사자의견조사 결과를 일부 활용하였다. 가출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한 통합적 분석들을 요약한 것이표 Ⅲ-1이다.

¹⁴⁾ 이 장은 김지연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함.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 석

표 Ⅲ-1 가출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한 통합적 분석틀

구분	주요 분석 항목 및 질문
l T	T프 단기 6억 및 클리
정책과정	· 정책형성과정의 역사적 배경과 정책형성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문제(사건)은 무엇인가? · 정책의 태동 시기와 변천과정은 어떠한가?
정책산물	· 사회적 할당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가? 정책 대상자는 누구이며 선정기준은 어떠한가?) · 급여 형태 (어떤 형태로, 어떤 종류의 서비스가 제공되는가?) · 전달체계 (어떤 절차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서비스 전달전략은 무엇인가?) · 재원조달 방법 (서비스·프로그램 재원은 무엇인가?)
정책평가	· 정책산출 (서비스 유형, 수혜자 수 등) · 서비스 수혜 결과는 어떠한가? · 정책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산물은 적절한가?

1. 정책과정 :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법제의 태동과 변화15)

현재 우리나라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독립된 법률은 부재하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제16조), (가출)청소년쉼터와 자립지원관을 청소년복지시설에 포함하고 있다(제31조). 현행 가출청소년 지원정책은 사실상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국한되어 있어 정책형성과정은 청소년쉼터의 발전과정에 대한 검토를 전제로한다.

청소년쉼터의 발전과정은 도입기, 확대기, 성숙기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1990년대는 시범운영과 제도 도입기로, 1991년 「청소년기본법」제정을 계기로 1992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YMCA 청소년쉼터가 최초로 개소되었다. 이 당시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을 10일 미만 동안 보호하고 귀가하는 형태였으나 19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보호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시설이 생겨났다. 1996년 이후 광역시를 중심으로 설치가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1998년 '국민의 정부'에서 '청소년 선도 예방활동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같은 해 전국 5개 광역시에 청소년쉼터가 설치되었다.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에서는 '가출청소년쉼터 확대'가 대선공약으로 추진된 바 있고, 이듬해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제정됨으로써 청소년쉼터의 법적 설치근거가 마련되었다. 즉 가출청소년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이 자체 예산으로 청소년쉼터를

¹⁵⁾ 이 부분은 김지연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함.

Ш

운영한 것이 정책형성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고, 청소년쉼터 운영 필요성을 정부가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관련법이 후속적으로 마련되었다. 이와 같이 2000년대 초반은 근거법 마련을 통한 확대기라 할 수 있고 2000년대 중반 이후는 쉼터 유형의 다양화를 모색한 성숙기로 구분된다. 2001년 「청소년기본법」의 개정 이후 쉼터의양적 확대와 더불어 유형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가출 청소년의 상황과욕구를 고려하여 보호지원 내용의 차별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4년에 가출청소년의 긴급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보호시설인 '일시쉼터(드롭인센터)'가 서울, 인천, 대전에 각각 설치되었고, 중장기적인 보호 필요성에 따라 이듬해부터 중장기쉼터가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단체나 종교단체가 자체적으로 일시, 단기쉼터를 운영한 반면 중장기쉼터는 지자체가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2006년 이후에는 청소년쉼터의 정체성과 전문성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되면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6년에는 청소년쉼터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 유형을 구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청소년쉼터 평가사업'이 시작되면서 예산 지원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종사자 워크숍 및 역량강화 연수, 청소년쉼터 주간(최초 쉼터 설치일인 10월 28일이 속해 있는 주) 운영 등 서비스 질 관리와 청소년쉼터에 대한 홍보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청소년쉼터가 증가하여 2007년 72개소, 2008년 76개소, 2009년 81개소, 2010년과 2011년 각각 83개소로 정체하다, 2012년(92개소)과 2013년(103개소)에 20개의 쉼터가 설치되었고 2014년 현재 10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2011년에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접근과 개입을 위해 거리상담 전담인력을 전국 일시쉼터에 배치하기 시작하였고, 2012년에는 일시쉼터 야간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특화 이동형 쉼터를 설치·운영하였다. 이후 청소년상담복지센터(CYS-Net)에서도 위기청소년 발굴의 일환으로 아웃리치를 실시하며 긴급구조 후 필요 시 일시보호소에서 가출청소년을 24시간에서 최대 1주일 간 보호가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청소년쉼터 이용 실적은 청소년쉼터 전산망인 '행정지원시스템'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청소년쉼터의 발전과정을 요약한 것이 아래 표 Ⅲ-2이다.

표 Ⅲ-2 청소년쉼터 운영 발전과정

,	시기	주요내용
	1991	- 「청소년기본법」제정
도입기	1992	- 최초 청소년쉼터(서울 YMCA) 설치·운영
<u> </u>	1998	- 국민의 정부 출범 - 5개 광역시 청소년쉼터 설치·운영
	2001	- 「청소년기본법」개정
ālrii ai	2003	- 참여정부 출범 - 「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쉼터 운영 법적근거 마련(2005.2 시행)
확대기	2004	- 일시쉼터(드롭인센터) 설치·운영 - 청소년쉼터 운영 국가보조금 지급
	2005	- 중장기쉼터 설치·운영
	2006	- 정체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시행 착수
성숙기	2011	- 거리상담 전담인력 전국 일시쉼터 배치 -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안 발의(기간만료 폐기)
	2012	- 의료특화 이동형 쉼터 설치·운영(일시쉼터 야간보호 기능 강화)
	2014	- 전국 109개 쉼터 설치·운영

^{*} 출처: 여성가족부(2013a), p.133을 참고로 재구성함.

2. 정책산물 :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설계와 내용16)

1) 사회적 할당

사회적 할당은 결국 정책대상이 누구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출청소년 의 개념과 범위가 다소 모호하다. 가출청소년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인「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지침에도 정책대상으로서의 가출청소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¹⁶⁾ 이 부분은 김지연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함.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 중 가출 상황에 있는 청소년을 정책대상으로 볼 수 있다. 즉 가출청소년 지원정책은 개인의 기여(contribution)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을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정책이다. 다만 현행 지침에서는 청소년쉼터 입소 대상 선정 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 만19세 미만 청소년을 1순위, 19~24세 청소년을 2순위로 명시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a, p.390). 이는 법과 지침에서 정책대상의 우선순위를 달리 정의하고 있어 24세 이하 모든 청소년에게 보편적인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지침에서 일시쉼터 이용대상으로 '노숙청소년', '배회 청소년'을 구분하여 특성을 명시하고 있다(표 III-3). 그러나 법과하위법령에서 정책대상의 개념,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혼란의 여지가 있다.

표 Ⅲ-3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대상

구분	정책대상의 특성 ¹⁾
노숙청소년	· 가족, 사회와 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되어, 가출 후 오랜 시간을 보냄. · 거리에서의 생존방식에 익숙해져 있고 보호시설 등 사회서비스에 거부적 태도를 보임.
배회청소년	 가족과의 관계 약화가 경미한 수준임. 가출, 사회부적응 위험이 있지만 거리에서의 생존방식에 익숙하지는 않음. 사회서비스에 대한 탐색과 이용의사가 있어 간단한 예방적 접근으로 건강한 상태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음. 외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표출되지 않음(일반 청소년 집단을 포함할 수 있음).

^{*} 주: 1) 여성가족부(2014a), p.430을 참고로 재구성함.

현행 가출청소년의 개념에는 실종, 홈리스의 개념이 혼용되고 있어 정책대상의 개념 정의를 위해서는 관련 법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은 당초 13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3년 개정으로「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한 아동의 연령(18세 미만)과 동일하게 정책대상을 확대하였다. 즉 실종아동으로 신고접수 된 18세 미만 가출청소년의 경우 발견 즉시 경찰 신고 와 보호자 인계 등 귀가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청소년쉼터 종사자는 실종아동에 대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보호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17)

¹⁷⁾ 다만 청소년쉼터에서 실종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실종아동법 제7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간주한다고 볼수는 있을 것이다.

가 출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 석 「실종아동법」제2조(정의)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 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제6조(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이하 "경찰신고체계"라 한다)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1.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 2.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3.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 4.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 6.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등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제1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실종아동등의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 전국 청소년쉼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쉼터 입소(이용) 시 실종아동으로 신고 된 사례인지 반드시 확인한다'는 쉼터는 전체의 69%에 달하였다. 그러나 적절한 지원과 개입 없이 단순 귀가조치만 이루어질 경우 재가출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보호자가 실종으로 신고하였으나 사실상 자발적인 가출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실종아동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실종아동으로 신고접수된 경우라 하더라도 방임을 포함한 학대사례라면 별다른 조치 없이 가정복귀가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오히려 '아동학대'의심사례로 별도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현행청소년쉼터 운영지침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우선입소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음에도 가출청소년 보호에 있어 실동아동 신고의무 이행과 이에 따른 업무 처리 원칙은 찾아보기 어려워 개선이요구된다.

한편 가정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한 홈리스청소년의 지원근거는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18세이상 홈리스청소년의 경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노숙인시설은 일반적으로 중·장년층 노숙인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침에서 19세 미만 가출청소년을 쉼터 우선입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성년기에 접어든 24세 이하 청소년의 보호에는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요약하면

현행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정책에서 있어 정책대상인 '가출청소년'의 개념이 모호하고 이로 인해 가출, 실종, 홈리스 등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다른 법률과 정책대상의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 가출청소년 관련 법률인 「실종아동법」,「청소년보호법」,「청소년복지 지원법」,「노숙인지원법」의 정책대상 연령 범위는 모두 상이하다(그림 Ⅲ-1 참조).



【그림 Ⅲ-l】실종 및 가출 아동·청소년 관계법 및 주관부처

* 주: 보건복지부의「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전)」의 대상은 실종 당시 14세 미만 아동으로 13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3.6.4. 개정)」은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으로 17세, 여성가족부의「청소년 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으로 19세,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로 9~24세 이하,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정의함.

2) 급여 형태

급여의 형태는 정책대상인 가출청소년에게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어떤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현재 가출청소년 지원정책은 '청소년쉼터 운영'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18) 즉 정부는 청소년쉼터라는 생활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쉼터를 통해 아웃리치, 일시보호, 상담, 사례관리, 가정복귀 및 사회복귀 지원, 가족상담, 자립지원 등의 생활지원과 돌봄 및보호 등 사업과 프로그램 형태로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에게(대상) 일시적으로(보호기간) 생활지원, 보호(서비스), 가정·사회로의 복귀(단기목표), 학업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중장기목표)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시설 유형)'을 의미한다(여성가족부, 2014a, p.390). 운영지침에서 청소년쉼터의 역할은① 가출청소년

¹⁸⁾ 여기에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 제15조 등 가출청소년을 간접적으로 포함하는 관련 정책과 제도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② 가출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③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④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지원(아웃리치)활동, ⑤ 그 밖에 ①항 내지 ④항의 각 활동에 따른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활동, 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와의 연계협력 강화, ⑦ 청소년전화 1388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및 보호서비스 확충 등 크게 7가지로 규정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a, p.390).

한편,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며, 법에서 단일 유형으로 명시한 반면(법 제31조) 지침에서는 보호기간을 기준으로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 종류를 구분하고 유형별 운영 사항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행 청소년상담복지센터(CYS-Net) 내에 일시보호소를 두는 경우 일시쉼터와 대상, 기능이 중복된다. 일시보호소를 포함하여 쉼터 종류와 특성을 요약, 비교한 것이아래 표 Ⅲ-4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청소년기본법」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 2. 청소년자립지원관 :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쉼터 유형별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시쉼터는 노숙청소년, 배회청소년을 대상으로 거리생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와 가출 예방, 그리고 자원 연결을 목표로 개입한다. 일시쉼터는 고정형 외에 이동형을 운영하여 조기개입, 현장지원, 연계활동을 주요 서비스로 제공한다(표 Ⅲ-5). 단기쉼터의 경우 3개월 이내 보호를 원칙으로 최장 9개월까지 가정복귀와 사회복귀를 위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의식주, 의료·법적지원, 문화여가활동, 생활지도, 정서지원 등의 보호서비스와 가족상담, 가족지원, 귀가지원, 생활지원 등 가정복귀 지원, 그리고 학업 및 기타 사회적응 지원이 포함된다(표 Ⅲ-6). 중장기쉼터의 서비스 내용도 단기쉼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2년 내외의 범위에서 최장 3년간 보호하면서 학업, 자립지원을 목표로 한다. 현재 남·여 중장기쉼터가 각각 1곳 이상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도가 5곳에 달하고 있어 장기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보호에 한계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표 Ⅲ-4 청소년쉼터 유형과 특성

	일시보호소 ²⁾		청소년쉼터	
구분	(CYS-Net)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보호 기간	24시간 ~7일 이내	24시간~7일 이내 일시보호	3개월 이내 단기보호 * 3개월씩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최장 9개월)	2년 이내 중장기보호* 1회 1년에 한하여 연장 가능(최장 3년)1)
이용 대상	위기청소년 (9~19세미만)	가출·거리배회 청소년	가출청소년	자립의지가 있는 가출 청소년
핵심 기능	긴급구조 일시보호	일시보호 및 거리상담 지원 (아웃리치)	사례관리를 통한 연계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
기능	 긴급구조 아웃리치 초기개입 숙식제공 긴급상담 응급치료 시설연계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가출청소년 조기구조·발견, 단기청소년쉼터와 연계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제공 등 	 가출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상담・치료, 예방활동 의식주, 의료 등 보호 서비스제공 일시・중장기 청소년 쉼터와 연계 가정 및 사회복귀 대상 청소년 분류, 연계서비스* 저연령청소년(13세이하)은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 기관 등에 연계 권장 	-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자립 지원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 저연령 청소년(13세이하)은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 전문 기관 등에 연계 권장
위치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내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유동지역)	주요 도심별	주택가
지향점	긴급구조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 개입 및 보호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원
비고	인적사항 확인 관리	-	반드시 남·녀용 쉼터를 분	리 운영

^{*} 출처: 여성가족부(2014a), pp.191~201, p.391.

^{*} 주: 1) "중장기쉼터 퇴소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자립지원관'이 개소·운영되지 않는 시도는 쉼터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단위로'계속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쉼터 보호기간 3년을 넘은 입소생으로 인하여 정원을 초과하게 된다 하더라도 정원 초과를 이유로 다른 청소년의 입소를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²⁾ CYS-Net에서 위기청소년 발굴·보호(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의 일환으로 아웃리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일 시보호소를 운영

표 Ⅲ-5 일시쉼터의 이용 대상 및 서비스 요소

목표	주요요소	서비스내용 및 절차	노숙청소년	배회청소년
거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현장지원	거리위험 대처교육휴식제공피복제공위생서비스음식제공의료서비스	적극적 보호, 직접적·물질적 지원 위주	소극적 보호, 자기보호능력 향상 위주
가출 및 가출의 장기화 예방	조기개입	- 사회성향상지원 - 정서지원 - 거리상담	가출의 장기화 예방, 거리로부터의 탈출 중점	가출예방에 중점, 가출 직후 위기개입
사회체계와 연결	연계	- 지역사회연계서비스 - 서비스 정보제공 - 지역사회교육 - 귀가지원	적극적·직접적인 연계, 보호시설 연계 중점	현재 존재하는 연계 강화, 정보제공에 중점

^{———} * 출처: 여성가족부(2014a), pp.431∼434 요약 재구성.

표 Ⅲ-6 단기, 중장기쉼터 서비스 주요 내용 및 절차

서비스 요소	서비스 내용	세부사항 (예시)
	의식주	숙식, 의복 제공, 샤워, 이·미용, 휴식 등
	의료지원	건강검진(발달상태, 성병 등), 응급치료, 질병치료, 임신테스트 등
ㅂ늗	법적지원	법적 옹호, 법률연계, 법률행정지원 등
보호	문화여가활동	다양한 문화체험, 취미생활지원, 봉사활동 캠프 등
	생활지도	자치회의, 일상생활 훈련 등
	정서지원	개별상담, 집단상담 등
-17147	가족상담	가정방문, 부모교육 및 상담, 가족과의 전화연결 등
가정복귀 지원 사회복귀	가족지원	가족서비스 관련 자원에 대한 정보제공과 연계 등
	귀가지원	귀가계획세우기, 귀가준비상담, 가족생활적응 상담 등
	진로상담	적성검사, 진로설계지도, 진로관련 상담 등
	사회적응지원	약물, 성교육, 분노 조절, 사회성 훈련, 직장동료관계 프로그램, 예절교육, 대화기술 훈련, 인권교육 등
지원	교육지원	학교생활지도, 학습지도, 학교연계 등
	직업지원	직업탐색, 직업학교 연결, 취업연결 등
	대안생활지원	중장기 쉼터 연계, 독립생활 지원 등

^{*} 출처: 여성가족부(2014a), p.439.

^{*} 주: 일반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대응 : 배회청소년에 일반청소년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일시쉼터는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위기 청소년에게 접근하도록 지도할 것

3) 전달체계

가출청소년 지원정책의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로,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지침과 서비스 개발, 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추진주체로서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침을 시행하고, 직영 또는 위탁 형태로 청소년쉼터 수탁자 선정, 운영관리 및 보조금 집행관리 전반을 수행한다. 또한 가출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는 각 지역에 설치된 청소년쉼터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현재 청소년쉼터 운영을 지원하는 중앙지원기관이 부재하여 정책의 전달체계는 여성가족부 - 시·도(시·군·구) - 시설(법인, 개인)의 형태로, 다수의 쉼터가 민간위탁 혹은 개인시설로 사실상 공공성과 효율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청소년쉼터 설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신고제로 운영하여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담당자가 신고기준에 따라 시설설비와 종사자 요건을 확인하고 신고증을 발부한다(동법제32조). 지자체 직영 혹은 법인 형태의 시설에 비해 개인시설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규모로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쉼터의 운영주체는 다양한 반면 지역 내에서 이를 조정하는 기능은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정익중 외(2009, p.142)는 동일 법인에서 여러 개의 쉼터를 운영하도록하거나 지역 내 쉼터들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아웃리치(발굴, 발견), 가정복귀, 장기보호,자립 등의 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청소년쉼터가 통합적 형태로 운영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단기쉼터가 2개 이상의 이동형 일시쉼터(drop in center), 2개 이상의중장기쉼터(치료형 그룹홈)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중장기쉼터의 경우라도 경찰 등 긴급요청을 받은 갈 곳 없는 청소년의 입소를 거부해서는 안 되며 3일 이내에 적격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a, p.445). 그러나 입소 청소년을 2년 이상 보호하는 중장기쉼터의 특성상 일시보호가 필요한 가출청소년을 적극 보호하기가 쉽지 않다. 사실상 현행과 같이 일시,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는 것은 최소한 광역 단위에서일시 - 단기 - 중장기 쉼터 인프라가 모두 설치된 것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도가여전히 존재하여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와 같은 입소기간을 기준으로 한 쉼터 유형 구분은 서비스 특화, 전문화에는 기여하였으나 입소 청소년의 특성과욕구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가출을 포함한 홈리스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법무부, 일부 지방법원 등 관리·운영주체가 다원화되어 있다. 이들 시설은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이탈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대안양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먼저 법무부는 소년보호협회 산하에 청소년자립생활관(이하 자립생활관)을 운영하고 있다. 소년원 출원생 중 가출, 가족해체 등 무의탁 퇴원자의 일시보호, 보호자인도, 보호시설 알선 및 자립지도를 목적으로 하며 전국 8개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19) 입주기간은 6개월 이내로 취업, 사회적응 및 사회복귀 준비 미흡 등의 사유로 자립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시설운영비는 국고에 의한 민간경상보조금을 원칙으로 하며 2014년 예산은 12.1억(국고 10.9억, 협회지원 1.2억) 규모로 인력은 관장, 생활지원, 사무원(취사업무병행)을 각 1인씩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 8월 현재 104명의 청소년이 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일부 지방법원이 운영하는 청소년회복센터(사법형 그룹홈)를 들 수 있다. 청소년회복센터는 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법」제3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1호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이 가출, 무의탁으로 보호자의 지도가 불가한 경우 감호위탁(監護委託)하는 시설이다. 2014년 8월 현재 부산(7개), 경남(6개), 경기도(1개) 등 전국 14개 시설이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93명의청소년이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위탁보호를 받고 있다(표 III-7 참조). 보호기간은 6개월이며 무의탁 청소년의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보호하고 있다. 일부 지방법원에서 그룹홈을 지정하여운영하는 방식인데 청소년 1인 당 월 40만원을20) 지원하고 있으나 근거법이 부재하여 인건비,운영비 등 일체의 지원은 없고, 입소자의 대다수가 미성년자 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관라감독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1호 보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하는 처분으로, 소년위탁보호위원(少年委託保護委員)은 소년의 신병을 인수하지 않고 감호하는 신병불인수(身柄不引受) 소년위탁보호위원과 신병을 인수하여 감호하는 신병인수(身病引受) 소년위탁보호위원과 신병을 인수하여 감호하는 신병인수(身病引受)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 구분된다. 즉 청소년회복센터 운영자는 신병인수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되어 보호소년을 위탁받게 되는데 2010년 11월 창원지방법에서 청소년회복센터를 처음 지정·운영하였다. 청소년회복센터는 보호처분을 받은 가출, 무의탁 청소년의 경우 쉼터 입소 및 이용이쉽지 않아 대안으로 재범예방을 위한 중간처우(halfway house)의 기능을 강조한 시설로 1년 내 재비행율(약 30%)이 전체 보호소년의 처분 후 1년 이내 재비행율(약 44%)에 비해 낮은수준을 보인다(천종호, 2014). 회복센터의 보호 청소년은 가출, 무의탁 소년이라는 점에서 쉼터

¹⁹⁾ 수용정원은 126명이며 2014년 9월 현재 현원은 104명이다. 자립생활관 1곳 당 정원은 12~18명이다.

²⁰⁾ 청소년 1인당 지원하는 월 40만원은 식비, 임대료, 교육비, 인건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음.

입소 대상과 다르지 않고 다만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소년 전담 시설이라는 점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쉼터 혹은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특화 형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표 Ⅲ-7 청소년회복센터(사법형 그룹홈, 법무부)

시도	시설명	시설구분	입소현황
	두드림청소년회복센터	남자	12
	둥지청소년회복센터	여자	8
부산광역시	라파청소년회복센터	남자	11
	비전청소년회복센터	남자	_
	어울림청소년회복센터	남자	12
	열린청소년회복센터	남자	3
	예람청소년회복센터	여자	7
	새빛청소년회복센터	남자	9
	샬롬청소년회복센터	남자	8
74 4 61 6 6	소망청소년회복센터	남자	11
경상남도	엘림청소년회복센터	여자	_
	연지청소년회복센터	여자	4
	자운영청소년회복센터	남자	8
경기도	어게인청소년회복센터	남자	_

^{*} 출처: 천종호(2014). 인터넷자료(http://cafe.daum.net/mansaboy, 인출일 : 2014년 8월 25일) 활용 재구성함.

세 번째로 보건복지부 사업인「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들 수 있다. 공동생활가정은 대규모 양육시설의 폐해를 줄이고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5~7명 내외를 양육하는 대안가정으로 2013년 12월 현재 전국에 489개 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2013년 자료에 따르면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 10명 중 3명(29.3%)이 피학대아동이고 부모이혼(28%), 빈곤(15.2%), 부모사망(4.4%) 등이 주요 입소 사유로 가출, 비행을 사유로 입소한 경우(1.9%)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연, 이경상, 2013). 현행 공동생활가정은 시설장, 보육교사(보육사)를 각각 1인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데²¹⁾ 중장기쉼터와 입소 대상의 특성 시설운 영의 목적, 기능이 유사하다. 이로 인해 공동생활가정과 중장기쉼터의 경우 우선적인 기능

^{*} 주: 시설명, 시설구분, 입소현황은 자료인출일 현재 시점 기준임.

²¹⁾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2015년 8월 6일까지 0~2세 아동의 경우 2명당 보육사 1인, 3~6세 아동은 5명당 보육사 1인, 7세 이상 아동은 10명 당 보육사 1인을 배치하는 등 연령별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보건복지부, 2009, p.132).

이 외「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로 각 지자체에 설치된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이 있다. 현재 전국에 12개 시설이 운영 중에 있는데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가운데 일정기간 숙소제공이 필요한 경우 시설장의 추천으로 소재지 관할 구청장이 입소신청을 하게 되어 있다. 쉼터의 경우 아동복지시설과 법적 근거가 달라 중장기쉼터 퇴소자는 자립지원시설 이용이 불가한 명백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표 Ⅲ-8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의 자립지원시설

시도	시설명
	돈보스꼬 자립생활관
서울특별시	상록여자 자립생활관
	청운 자립생활관
부산광역시	미네르바의 집
대구광역시	삼덕동 SOS 자립생활관
네T 등 극시 	검사동 SOS 자립생활관
광주광역시	무등 자립생활관
대전광역시	인애 자립생활관
충청북도	현양 자립생활관
충청남도	향림 자립생활관
전라북도	삼성 자립생활관
전라남도	목포 자립생활관

^{*} 출처: 아동자립지원사업단 홈페이지의 자립지원 시설 현황 참고 (http://www.jarip.or.kr/adong/sub02_4.asp?menuCategory=2) 인출일자(2014, 11, 11)

마지막으로, 최근 설치·운영된 교육부의 가정형 Wee센터를 들 수 있다. 가정형 Wee센터는 가출, 가정폭력 등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가출학생'을 위한 기숙형 시설로 2014년 8월 현재 전국에 12개 시설이 운영 중에 있고 연내 3개를 추가 설치할 예정에 있다.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 가운데 초·중·고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은 10명 중 4명22), 재학생은

^{*} 주: 1) 운영목적 :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게 일정기간 숙소제공으로 안정된 자립기반 조성

²⁾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³⁾ 이용기간 : 만 18세 ~ 만 25세

⁴⁾ 서비스 내용 : 주거, 상담, 정서, 자립서비스 지원 등

^{22) 2014}년 6월 기준 청소년쉼터 입소자 1,114명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은 418명으로 37.5% 수준이었다.

10명 중 6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현행 쉼터가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예방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쉼터와 가정형 Wee센터의 보호 대상, 시설의 기능, 목적은 매우 유사하다. 다만 기출을 하더라도 학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와 학업을 중단한 경우는 서비스 욕구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정형 Wee센터는 가출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특화형 쉼터의 성격이 강하다.

이와 같이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위기청소년 보호시설의 기능과 목적, 입소 청소년의 위기수준은 대체로 비슷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설의 법적근거와 관리·운영 주체가 다원화되어 있어 청소년이 어떤 경로로 어느 시설에 입소하느냐에 따라 지원 내용에는 상당한 편차가발생하고 있다. 예로 가출청소년이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다 퇴소할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제39조), 자립지원계획 수립(제39조), 자립지원시설 입소(제52조) 지원을 받을수 있으나 청소년쉼터를 포함하여 자립생활관, 청소년회복센터 등에 입소했다면 아동복지시설과설치·운영의 근거법이 다르므로 퇴소 시 위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23)

요약하면 현재의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전달체계는 민관 협업이 미흡하고, 개인 운영 시설로 인해 공공재임에도 정부 재정이 과감하게 투입되기 어려운 구조인데다 지역사회 내 쉼터 간의 서비스 연계가 쉽지 않고 인프라의 설치에서도 지역 간 편차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정부와 시설을 연계하고 개별 시설에 대한 지원과 지도감독을 수행하는 '중앙지원기관'이 부재하여 정책 취지가 양질의 서비스로 연결되기 쉽지 않다. (사)한국청소년쉼 터협의회가 중앙지원기관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는 있으나 사단법인의 특성상 비회원 기관까지 아우르기가 쉽지 않고 최소인력과 필수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이 부재하여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23)「}아동복지법」제28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도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자립생활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아동복지 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 포함)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8조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

분 석

4) 재원조달 방법

2014년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예산 가운데 가출을 포함한 위기청소년 관련 예산은 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 운영지원, 청소년폭력 및 가출예방비(3억) 정도이다. 즉 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비중 사업비 2,612백만원에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예산은 588백만원으로, 가출 예방 및 위기청소년 지원 일반회계 예산은 약 8억 8천만원에 불과하다. 이 외 CYS-Net 구축 및 청소년쉼터 운영비지원은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사용되고 있다.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예산에는 CYS-Net 구축 (12,299백만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6,068백만원), 청소년전화 1388 및 모바일문자상담 운영(905백만원),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운영(1,171백만원), 청소년특별지원(1,415백만원)을 포함하다.

가출청소년 쉼터운영 지원 예산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상보조(matching fund, 정책정률보조, 50%)로 지원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a, pp.135~136). 2014년도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예산은 약 87억원으로 총 109개 쉼터를 기준으로 보면 지방비를 제외하면 쉼터 한 개소 당연간 약 8천 만 원에도 미치지 않는 국비가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Ⅲ-11).

6-Ⅲ 班

가
출
청
소
년
지
원
정
책
현
황
분
석

라	청소년쉼터	공동생활가정(그룹홈)	Wee스쿨	가정형 Wee센터
근거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부자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마양면	여성가족부
현황(정원)	109(약 1,000명)	489(약 3,423명)	(–)6	I
설치방법	신고제	신고제	시 · 도교육청 지정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보호대상	24세 이하 가출청소년 1순위: 9~19세미만, 2순위: 19~24세	18세 이하 요보호아동 5~7인/시설당	가출, 비행 등 장기 위탁 치료 및 교육이 필요한 고위기 중·고교생	24세 이하 가출 등 위기청소년
용 당 당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선도·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가정복귀 및 자립지원	· 보호 및 양육 · 원가족 관계회복 및 자립지원 ·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중 · 고교별 정규 교육과정 · 상담 및 치료 · 학부모 상담 및 교사연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보호기간	·일시: 24시간~7일 이내 일시보호 ·단기: 3개월 이내(최장 9개월) ·장기: 2년 이내(최장 3년)	· 18세 미만까지 제한 없음 (법 22조에 의거 연장 가능)	· 제한없음 · 단, 중학교 연 1,122시간 편성 · 증 · 고 각 3년(원적학교 졸업장)	24시간 이내 일시보호
종사자 배치기준	· 일시: 6인(시설장, 보호상담원4, 행정취사1) · 단기: 10인 미만 4인(보호상담원2) 10~15인 미만 5인(보호상담원3) 16~20인 미만 8인(보호상담원5) 20~25인 미만 9인(보호상담원6) · 중장기: 4인(시설장, 보호상담원6) · 자립지원관: 3인(자립지원요원 1명 포함)	· 0~2세 아동 5명당 1인 · 3~6세 아동 5명당 1인 · 7세 이상 아동 7명당 1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 · 7 는 피학대아동 그룹홈에도 동일 · 5 적용함.	교장 · 교감 교사(학급마다 2명) 교사: 20명 당 1명 사회복지사(청소년지도사): 10명 당 1명 기숙사 사감: 3명 이상 2건교사 / 전문의 1명 혹은 지역 전계 원계	·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남· 여별 각 1개 이상 설치(일시 보호소 종사자 배치기준 따로 역 없음)
종사자 자격기준	· 시설장: 상담복지분야 박사학위 취득 혹은 박사학 위 이후자 중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 3년 이상. 상담복지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중 실무경력 5년 이상 등 · 보호상담원. 자립지원 요원: 상담복지분야 4년제 대학 졸업, 상담복지분야 전문대학 졸업자 중 실무경 력 2년 이상, 청소년성담사ㆍ청소년지도사ㆍ사회복 지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등	· 시설장: 사회복지사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업무 3년 이상 종사 · 보육사: 사회복지사 3급 이상 (2018.9.1적용)	·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기본급 기준에 따름	이하 생활지도직원 1. 상담복지 분야 학사학위 이상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실무 경력 1년 이상
인건비 (운영비)	시설장: 28,800(하한)~45,600(상한)/년, 천원 보호상담원, 자립지원요원: 22,800~39,600천원 행정원, 취사원: 19,200~31,200천원	시설장 · 보육사 19,073천원/인, 년 (관리운영비 240천원/개소, 월)	·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1호봉) 1급 3,190,800원, 9급 1,165,200원 · 신규설치 시 3억원/연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수기본 팀원1호봉 1,065,149원/월
т. Го] · К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자립지원시설(전국 12개소)은 제외함.

]]] 장

비교(2) (요 아 · 기관 호시설 머 ᇄ 中 학 和 ٦ ⊀ क्र

감난	청소년쉼터	일시보호소	청소년자립생활관	청소년회복센터(사법형 그룹홈)
다거屈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_	I
부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지방)법원
현황(정원)	109(약 1,000명)	ı	8(126명)	14(약 100명)
설치방법	신고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운영	
보호대상	24세 이하 가출청소년 1순위: 9~19세미만, 2순위: 19~24세	24세 이하 가출 등 위기청소년	소년원 퇴원자 및 퇴원 예정자 (12세 이상 23세 미만)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보호처분 대상
상영국왕	·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 상담· 선도·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 가정복귀 및 자립지원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취업알선, 사회복귀 지원 ·가출, 무의탁 퇴원자 기숙보호 ·보호시설 알선, 보호자 인도	신병인수 소년위탁보호 (보호 및 숙식제공)
보호기간	· 일시: 24시간~7일 이내 일시보호 · 단기: 3개월 이내(최장 9개월) · 장기: 2년 이내(최장 3년)	24시간 이내 일시보호	6개월 이내(6개월 단위 연장)	6개월(연장 가능)
종사자 배치기준	· 일시: 6인(시설장, 보호상담원4, 행정취사1) · 단기: 10인 미만 4인(보호상담원2) 10~15인 미만 5인(보호상담원3) 15~20인 미만 8인(보호상담원5) 20~25인 미만 9인(보호상담원6) · 중장기: 4인(시설장, 보호상담원2, 행정취사1) · 자립지원관: 3인(자립지원요원 1명 포함)	·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남· 여별 각 1개 이상 설치(일시보호 소 종사자 배치기준 따로 없음)	·관장, 생활지도원, 사무원 각 1인 (관장, 생활지도원의 근무주기는 격일제로 상호 교대근무 원칙, 사무원은 일근으로 취사업무 병행)	소년위탁보호위원 (少年委託保護委員) ²⁾
종사자 자격기준	· 시설장: 상담복지분야 박사학위 취득 혹은 박사 학위 이후자 중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 3년 이야 생활지도직원 상담복지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중 실무경력 5년 1. 상담복지 분야 학사학위 이상 이상 등 · 보호상담원, 자립지원 요원: 상담복지분야 4년제 대학 졸업, 상담복지분야 전문대학 졸업자 중 실무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경력 2년 이상,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사회 복지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등	이하 생활지도직원 1. 상담복지 분야 학사학위 이상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실무 경력 1년 이상	· 협회장 추천에 의해 이사장 임명	자격기준 없음 (현재 성직자 등 종교인 운영)
인건비 (유영비)	시설장: 28,800(하한)~45,600(상한)/년, 천원 보호상담원, 자립지원요원: 22,800~39,600천원 행정원, 취사원: 19,200~31,200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수기본 팀원1호봉 1,065,149원/월	·예산 범위 내에서 보수 지급 ¹⁾	해당없음

청소년자림생활관 운영·관리 규정 참조 (제, 한국소년보호협회) 소년자탐보호위원 제도는 처음부터 어떤 형사정책적인 근거나 연구기초를 가지고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실무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필요를 느껴 창안된 제도로 1985년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자웜보호자(少年自願保護者)'라는 명칭으로 최초로 실시된 이래 긍정적인 반응을 얻게 되고 점차 그 효율성이 인정되어 1호처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제도의 창안자인 윤재윤 변호사(당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는 소년심판의 과정에서 1호처분의 무용성과 '사인참여(pubic participation)'의 필요성에 대하여 많이 고심하던 중 현재의 비행 정도는 비교적 낮으나 가정환경이 나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소년들을 우리 주변의 청소년 운동가, 교수, 사회사업가 등 몇 몇 분에게 맡겼더니 소년의 재비행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힘임어 위탁보호위원에 대한 위탁처분을 점차 들려가가 시작하였다. 초기의 위탁보호위원들은 제도적 뒷받침 없이 소년들을 보호해 왔는데, 1989년 8월 20일 소년심판규칙에 그 근거가 마련된 이후 제도권으로 편입되었고, 2012년 3월부터는 소년위탁보호위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전증호, 2014, p.10 재인용). -2

.. K⊢ *

58

=

벼

(단위 : 백만원 %)

					\L 11 ·	1 = =, 70/
	구 분	2012결산	2013계획	2014계획	증 감	
		(A) ⁵⁾	(B)	(B-A)	%	
9	_	260,720	282,720	22,000	8.4	
청소	_	88,951	88,601	△350	△0.4	
일반회계	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 ¹⁾	6,513	6,918	13,960	7,042	101.8
	청소년폭력 및 가출예방 ²⁾	507	300	300	0	0.0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³⁾	20,978	25,530	27,968	2,438	9.5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쉼터 운영지원4)	6,868	8,137	8,710	573	7.0

^{*} 출처: 여성가족부(2014b),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개요를 발췌 · 요약한 것임.

- * 주: 1) 사업비 2,312백만원(청소년 상담복지프로그램 개발 138백만원, 위기청소년통합지원 588백만원, 교육연수 1,176백 만원, 상담지원체계 활성화 410백만원) 외 인건비, 경상비, 지방이전비를 포함함.
 - 2) 민간보조(국고 100%), 청소년 가출예방 전문프로그램 위탁 50백만원, 전문가 양성 및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 운영 202백만원, 기타(홍보 및 토론회 35백만원, 업무추진 기본경비 13백만원)
 - 3) 지지체 경상보조(보조율 50~70%), CYS-Net 구축 12,299백만원, 청소년동반자 운영 6,068백만원, 1388 운영 905백만원, 사이버상담 1,171백만원, 청소년특별지원 1,415백만원, 북한이탈 및 다문화청소년 지원 1,861백만원,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4,249백만원 포함
 - 4) 지자체 경상보조(보조율 50%), 청소년쉼터 운영지원(7,828백만원), 아웃리치 371백만원, 일시쉼터 야간보호 지원 260백만원, 기타 운영경비 251백만원 포함.
 - 5) 추경예산임.

청소년쉼터의 빈약한 재정과 재원의 불안정성은 일차적으로 종사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이어질 수밖에 없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규칙 및 운영지침에 청소년쉼터 종사자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일시쉼터는 6인, 단기 및 중장기쉼터 보호 인원에 따라 4~9인을 배치하도록하고 있다(표 III-12). 즉 현행 국비 규모로는 지침에 따른 배치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워 가출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소년쉼터의 적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인력과 관련하여 정익중 외(2009, p.77, p.144)는 전문인력과 소년의 비율은 1:5를 초과하지않도록 하고, 일시쉼터는 12명, 15~20인 규모의 단기쉼터는 11명, 10인 미만 중장기쉼터는 5명 이상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종사자 배치는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적정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적인 정부예산의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한 전편 청소년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복지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어 전기세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지원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이에 쉼터의 예산 구조 등 재원을 살펴보고 지원 수준의 현실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추가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이와 함께 현재 청소년쉼터 종사자(시설장 및 직원)의 결격사유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다(법 제35조, 법 제35조 제2항). 반면 여성기족부의 사업 운영 지침에는 청소년상담사 우선 채용 조항을 포함하고 있고, 시행령에는 청소년상담사 1인 이상 배치기준 만을 포함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로서의 정체성은 다소 모호한 상황이다²⁴)

표 Ⅲ-12 청소년쉼터 종사자 직종별 배치기준

(단위 : 명)

구분	이시신티	단기 청소년쉼터					자립
一	일시쉼터	10인미만	10-15인 미만	15-20인 미만	20-25인 미만	쉼터	지원관
시설장	1	1	1	1	1	1	1
보호·상담원	4	2	3	5	6	2	_
자립지원요원	_	_	_	_	_	_	1
행정원	1	1	1	1	1	1	4
취사원			I	1	1		'
합 계	6	4	5	8	9	4	3

* 출처: 여성가족부(2014a). p.398.

* 주: 1) 시설장은 상근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복지시설의 재정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설장과 보호·상담원을 겸임할 수 있다.

2) 아웃리치 전담요원 배치 추진 : 일시쉼터에 2명씩 추가하되. 예산규모 감안하여 단기쉼터로 점진적 확대

3) 야간보호기능 요원 배치 : 고정형 일시쉼터에 2명씩 추가(야간보호가 가능한 이동형 일시쉼터도 추가 가능)

표 Ⅲ-13 쉼터 유형별 예산배정 기준(2014년)

(단위: 천원)

	78	일 시		1	단 기		ᄌᆉᅱ	шО
	구분	고정 · 이동	10인 미만	10~15인 미만	15~20인 미만	20~25인 미만	중장기	비율
	총사업비 (A+B+C)	143,333	107,500	143,333	197,083	197,083	107,500	100%
	국 비 (50%)	71,667	53,750	71,667	98,542	98,542	53,750	
-	인건비 (A)	86,000	64,500	86,000	118,250	118,250	64,500	
	단가(연)	21,500	21,500	21,500	21,500	21,500	21,500	60%
	지원인원	4명	3명	4명	5.5명	5.5명	3명	
人	ト업 비 (B)	43,000	32,250	43,000	59,125	59,125	32,250	30%
윤	음 영 비 (C)	14,333	10,750	14,333	19,708	19,708	10,750	10%

* 출처: 여성가족부(2014c). 내부자료.

²⁴⁾ 청소년상담사 우선 채용 : 「청소년기본법」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별표5)에 의해 각 청소년쉼터에 는 청소년상담사를 1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기존 종사자로 하여금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취득 하도록 조치하거나 쉼터종사자 신규 채용 시 청소년상담사 자격자를 최소 1명 이상 우선 채용(여성가족부, 2014a, p.400).

3. 정책평가 : 가출청소년 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25)

1) 정책산출 평가

(1) 쉼터 운영 성과

정책산출물은 서비스 수혜자 수, 서비스 수혜 결과를 포함하여 쉼터 이용자 수와 이용 효과, 성과를 의미한다. 2007년에 72개소이던 청소년쉼터는 2014년 현재 109개로 7년 동안 37개소가 증설되었다. 같은 기간 국비는 2배, 이용 청소년 수는 약 3만 명 이상 증가하였다. 운영지원 예산을 이용 청소년 수로 단순하게 나누어 1인당 보호비용을 산출해 보면 2007년 17,778원에 2014년 32,455원으로 약 1.8배 증액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상반기 이용 청소년의 수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표 Ⅲ-14).

최근 3년 간 쉼터 이용 청소년은 고정형 일시쉼터 당 평균 9,048명, 이동형 일시쉼터 당 평균 8,47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단기쉼터의 경우 하루 평균 입소자는 약 12명, 중장기쉼터는 약 7명 수준이다(여성가족부, 2013b, pp.69~70). 이를 연간 인원으로 단순계산하면 단기쉼터 당 연간 4,380명, 중장기쉼터 당 연간 2,555명의 청소년을 보호하는 셈이다. 이들이 쉼터에 입소하지 않고 거리생활을 지속할 경우 범죄의 가피해를 포함한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쉼터 운영 자체가 가정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비용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표 Ⅲ-14 청소년쉮터 운영실적

(단위: 개소, 백만원,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쉼터 수	72	76	81	83	83	92	103	109
예산(국비)	4,165	4,639	4,651	5,874	6,262	7,287	8,137	8,710
이용 청소년수	234,271	235,209	245,653	267,117	400,533	405,204	455,219	268,366

^{*} 출처: 여성가족부(2014c), 내부자료(2014년은 6월말 기준임),

^{*} 주: 2011년부터 쉼터 기능특화사업(찾아가는 거리상담지원, 야간보호 등)으로 실적 증가

²⁵⁾ 이 부분은 김지연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함.

한편 현행 쉼터의 운영 성과는 일시쉼터의 경우 보호인원 귀가인원, 대안생활시설 연계 인원, 만족도(%), 단기쉼터는 보호인원, 만족도, 가정복귀 인원, 사후관리 실적, 사회복귀 인원, 중장기쉼터는 보호인원, 만족도, 학업취득인원, 취업인원, 가정·사회 복귀 인원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a, pp.429~442). 2013년 청소년쉼터 평가 자료에 따르면 단기쉼터의 경우 입소자의 가정 복귀율은 평균 50.2%, 사회복귀율은 평균 7.3%, 중장기쉼터의 가정 복귀율은 35.7%, 사회복귀율은 15.6% 수준을 보인다(여성가족부, 2013b, pp.71~73).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에게 숙식제공 뿐 아니라 다양한 보호지원을 제공하는 안전망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가출청소년은 쉼터 종사자와 긍정적인 관계 맺기를 경험하면서 치유를 경험할뿐 아니라 보호기간 동안 가족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등 다면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의미가 있다(Nebbitt, House, Thompson, & Pollio, 2007, pp.545~555). 그러나 퇴소 이후 재가출을 예방하고 가정 혹은 사회복귀 지원효과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쉼터를 퇴소한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 쉼터에 입소하여 6주 동안 보호지원 할 경우 가출청소년의 약물사용, 가족관계, 자존감 등 행동과 태도 전반에 유의한 변화가 있지만 퇴소 이후 6개월 이내에 지원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Pollio, Thompson, Tobias, Reid, & Spitznagel, 2006, pp.859~866). 이는 청소년쉼터의 서비스가 가출청소년의 일시적 보호에는 도움이 되지만 가출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정책 취지와 같이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DB 구축, 사후관리에 대한 별도 예산 투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서비스 수혜 결과와 효과에 대한 평가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한편 일반 청소년의 청소년쉼터에 대한 낮은 인지도는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 중·고교생 10명 중 6명은 쉼터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쉼터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이용 경험율은 1% 수준이다(여성가족부, 2012). 우리나라 중·고교생 10명 중 1명 이상이 가출을 경험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쉼터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별도의 정책 홍보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출처: 여성가족부(2012), pp.201~202.

【그림 Ⅲ-2】청소년쉼터 인지도 및 이용경험

다음으로 특정 기간 동안 쉼터 이용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고정형 일시쉼터의 경우 한 달동안 약 3천 명에 달하는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이들 중 절반 이상(55.5%)이 가출청소년이었다. 이들 가운데 노숙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사실상 노숙 상황에 있는 '노숙형' 청소년이전체의 1/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쉼터를 전전하며 생활하는(일명 쉼터돌이) '시설형', 자립의지가 있거나 자립을 준비하는 '독립형', 자립의지가 희박하고 또래 의존 정도가 높은 '의존형' 순이었다. 이와 함께 비(非)가출 청소년에 대한 개입 비율도 44.5%에 달하여 고정형일시쉼터의 경우 정책대상인 가출청소년 뿐 아니라 비가출 위기청소년의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울, 인천, 대전, 광주, 경기 등의 경우 가출청소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반면, 부산, 대구, 경남의 경우 비가출 청소년의 비율이 더 높아 지역별로 상이한 특성을보였다(표 III-15).

(단위 : 명)

							(단위 : 명)	
지역구분	가출청소년 ¹⁾				베랑처시네	비가출 청소년	하게	
시작구군	노숙형	독립형	시설형	의존형	배회청소년	미기물 정조인	합계	
서울특별시	130	15	226	18	0	65	454	
부산광역시	0	0	88	0	0	794	882	
대구광역시	1	0	0	0	0	12	13	
인천광역시	341	0	347	1	0	0	689	
광주광역시	59	1	2	0	21	2	85	
대전광역시	81	19	20	2	0	31	153	
울산광역시	0	0	0	0	0	0	0	
경기도	615	7	59	0	17	586	1,284	
강원도	0	0	0	0	0	56	56	
충청북도	0	0	0	0	0	0	0	
충청남도	0	0	0	0	0	0	0	
전라북도	13	0	0	1	0	0	14	
전라남도	0	0	0	0	0	0	0	
경상북도	0	0	0	0	0	23	23	
	0	2	7	0	0	42	51	
제주특별자치도	0	0	0	0	0	0	0	
합계	1,240	44	749	22	38	1,611	3,704	

^{*} 출처: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14), (내부자료, 2014.3.1.~3.31. 월 통계임.).

같은 기간 단기 및 중장기쉼터의 입소자(이용자 포함) 현황을 보면 총 1,526명의 청소년이 이용하였고 이 가운데 쉼터 입소자는 약 74%, 이용자는 약 26%였다. 쉼터 입소자의 성별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남·녀 모두 19세 이하 청소년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는 현행 지침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을 우선 입소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 주: 1) 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무자의 판단 하에 분류, 입력한 현황임.

(다이 · 며)

								<u> [단위 : 명)</u>				
				남 자			여 자					
지역	구 분	13세 이하	14~16	17~19	20세 이상	소계	13세 이하	14~16	17~19	20세 이상	소계	합 계
	입소자	17	165	286	93	561	13	178	285	84	561	1,122
전체	이용자	1	49	147	32	229	1	48	110	16	175	404
	합계	18	214	433	125	790	14	226	395	100	736	1,526
서울	합계	2	53	130	49	234	1	71	106	35	214	448
부산	합계	0	5	6	2	13	0	0	18	3	21	34
대구	합계	0	0	3	1	4	0	4	13	2	19	23
인천	합계	0	28	55	11	94	1	36	43	7	87	181
광주	합계	1	4	3	1	9	0	4	8	4	16	25
대전	합계	1	10	74	14	99	1	10	54	6	71	170
울산	합계	1	4	11	0	16	0	3	4	2	9	25
경기	합계	6	67	79	24	176	7	50	71	20	148	324
강원	합계	3	8	7	2	20	0	6	8	2	16	36
충북	합계	0	3	7	1	11	0	10	7	1	18	29
충남	합계	2	10	12	6	30	1	0	10	5	16	46
전북	합계	0	2	13	8	23	0	7	6	2	15	38
 전남	합계	2	10	10	1	23	3	10	8	5	26	49
 경북	합계	0	2	12	4	18	0	7	25	2	34	52
	합계	0	5	8	1	14	0	4	8	1	13	27
제주	합계	0	3	3	0	6	0	4	6	3	13	19

^{*} 출처: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14), (내부자료, 2014.3.1.~3.31. 월 통계임.).

2) 정책산물의 적정성 평가

정책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정책산물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정책에 있어 정책산물은 청소년쉼터 운영과 또한 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를 통한 정책효과, 그리고 이를 통한 가출청소년 보호지원과 관련한 유형, 무형의 변화와 제반 사회현상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쉼터 수, 쉼터 운영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청소년쉼터 운영의 적정성을 살펴보았다.

^{*} 주: 합계는 입소자와 이용자를 합산한 것임. 소계는 연령 미상을 포함함.

분 석

(1) 청소년쉼터 수의 적정성

청소년쉼터 1개 당 감당해야 하는 가출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한 결과는 아래 표 III-17과 같다. 우리나라 중·고교생의 생애 가출 경험율(12.2%)을 적용하면 가출 경험이 있는 중·고교생은 약 45만 명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단순하게 쉼터 수로 나눌 경우 쉼터 1개소 당담당해야 하는 가출청소년의 수는 평균 약 4천 명을 넘는다. 17개 시·도별 현황을 보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경남은 담당 가출청소년의 수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등 지역별 편차를보였다. 특히 청소년 인구 1천 명 대비 가출청소년 수를 의미하는 '가출청소년 발생율'을 산출해본 결과 약 45.8‰로 가출청소년 발생율과 쉼터 당 담당해야 하는 가출청소년 수는 대체로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가출청소년 1천 명 대비 청소년쉼터의 보호 청소년 수(현원)를 의미하는 '가출청소년 보호율'은 1.83‰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가출청소년 규모 대비 입소정원(현원)이현저하게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III-17).26)

다만 쉼터 개소수가 현저하게 부족한 반면 정원 충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수요와 공급 간에 심각한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쉼터 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또한 남미애 외(2012)의 연구에 따르면 쉼터 퇴소자의 1/4은 가정복귀 및 자립여부와 관계없이 입소기간이 종료되어 불가피하게 현 쉼터를 퇴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속적인 보호지원에도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한편 가출청소년 발생율과 가출청소년 보호율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는데, 둘 간의 격차는 가출청소년 발생에 대한 쉼터의 보호지원 기능이 어느 정도 가동되고 있는지를 부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쉼터 확충 시청소년 인구 규모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 여력에 따라 단순 할당하는 방식보다는 가출청소년 발생율, 가출청소년 보호율, 시·도에 따른 지역 특성, 가출청소년의 유동성, 지역 내 쉼터 실무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가출청소년 발생율, 보호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장기적인 청소년쉼터 확충 계획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²⁶⁾ 가출청소년 발생율은 중·고교생의 생애 가출 경험율을 적용하여, 한 해 동안 발생한 가출청소년의 수와 차이가 있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중·고생의 생애 가출 경험율에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가출이 반영되지 않았다. 청소년쉼터 현원역시 상시 가변적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단위 : 명 % 개소)

									(단위 : 병	3, %, 개소
			2012년도	가출	청소년	크쉼터	5)	가출	_, _	_, _
지역	청소년 인구 ¹⁾ (A)	중고생 인구 ²⁾ (B)	생애 가출 경험율(C) ³⁾ (2010년도)	청소년 규모 추정 ⁴⁾ (D=B×C)	개소수 (일시) (E)	정원 (F)	현원 (G)	청소년수/ 쉼터개당 ⁶⁾ (F=D/E)	가출 청소년 발생율 ⁷⁾	가출 청소년 보호율 ⁸⁾
전체	9,914,760	3,722,653	12.2%(13.7%)	454,164	103(21)	991	830	4,409	45.8	1.83
서울	1,804,964	643,172	13.2%(12.9%)	84,899	11(2)	83	111	7,718	47.0	0.17
부산	634,081	234,272	13.9%(12.6%)	32,564	5(2)	40	20	6,512	51.4	0.09
대구	510,329	199,495	9.6%(14.4%)	19,152	4(1)	42	22	4,788	37.5	0.11
인천	574,136	207,412	10.7%(12.8%)	22,193	8(2)	108	85	2,774	38.7	0.41
광주	333,641	133,515	13.5%(16.6%)	18,025	4(1)	35	25	4,506	54.0	0.19
대전	324,585	123,803	12.5%(13.0%)	15,475	5(2)	42	39	3,095	47.7	0.32
울산	244,688	96,330	12.1%(15.1%)	11,656	4	40	30	2,914	47.7	0.31
세종	21,772	7,325	_	_	0	0	0	1	ı	_
경기	2,496,860	922,996	12.4%(13.3%)	114,452	21(3)	264	261	5,450	45.8	0.28
강원	294,763	112,338	11.9%(12.5%)	13,368	5(1)	55	32	2,673	45.4	0.28
충북	307,639	117,916	11.5%(17.4%)	13,560	5(1)	41	19	2,712	44.0	0.16
충남	382,856	149,693	14.8%(15.4%)	22,155	6(1)	62	41	3,692	57.9	0.27
전북	369,796	146,520	8.6%(14.8%)	12,601	5(1)	50	36	2,520	34.0	0.25
전남	354,968	140,639	11.8%(12.4%)	16,595	4(1)	30	32	4,148	46.8	0.23
경북	483,669	185,604	11.0%(14.5%)	20,416	6(1)	45	36	3,402	42.2	0.19
경남	651,047	253,594	11.1%(13.7%)	28,149	5(1)	27	24	5,629	43.2	0.37
제주	124,966	48,029	14.6%(15.5%)	7,012	5(1)	27	17	1,402	56.1	2.42

^{*} 주: 1) 청소년 인구는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에서 만 8~23세(9~24세)의 인구 현황임 (URL: http://rcps.egov.go.kr:8081/isp/stat/ppl stat if.isp, 검색일 : 2014년 4월 7일).

- 2) 중고생 인구는 교육통계의 중·고등학생 현황(2013년 기준)이며, 고등학생의 경우 일반고, 특수학교, 특수목적, 특성화, 자율고 인원을 모두 포함함 (URL: http://kess.kedi.re.kr/index, 검색일: 2014년 4월 7일).
- 3) 여성가족부「2012년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의 일반중·고생 기준 지역별 생애 가출경험율을 적용함.
- 4) 가출청소년 규모 추정(D)은 중고생 인구(B)×가출 경험율(C)을 계산한 추정값임.
- 5) 2013년 8월 기준 일시, 단기, 중장기쉼터 합계로 ()는 일시쉼터임. 단, 현원은 2014년 4월 21일 기준임.
- 6) 가출 청소년 규모(추정)를 쉼터 개소수로 나눈 값으로 소수점 이하 버림.
- 7) 가출청소년 발생율(‰) = (가출청소년 수 / 청소년 인구)×1,000
- 8) 가출청소년 보호율(‰) = (청소년쉼터 입소 현원 / 가출청소년 수)×1,000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 석

(2) 전달체계의 적정성

쉼터 운영 전달체계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중앙지원기관(hub)의 부재, 지역 내 쉼터 간의 연계 문제, 쉼터와 위기청소년 인프라 간의 연계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먼저 중앙지원기관과 관련하여 최근 청소년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질 제고를 목적으로 '청소년가출예 방지원센터' 설치를 골자로 「청소년복지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여성가족위원회심사는 완료된 상황이다.27)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기관 설립 사례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통합지원을 목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아동폭력중앙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가출예방지원센터 설치·운영의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각종 자원과정보 공유, 프로그램 개발과 가출청소년 관련 타 부처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계기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의 역할과 위상에 관한 논의도 일부 이루어진 바 있다(홍봉선, 2013, pp.19~55). 이에 중앙지원기관의기능, 역할, 조직 구성의 방향, 전달체계에 따른 역할분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앙정부단위 지원기관의 설립 사례를 비교한 것이 아래 표이다(표 III-18).

²⁷⁾ 의안번호 6068(2013.7.19 민현주 의원 대표 발의).

표 Ⅲ-18 중앙정부단위 지원기관 설립 사례

구분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성폭력방지본부)	청소년가출예방지원센터(안)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설립 배경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통합지원을 위해 설립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기능강화,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설립	미설치
관리 기관	지역아동센터 4,036개소 (2012.12기준)	원스톱지원센터(15개소) 해바라기아동센터(8개소)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7개소) (2012.12기준)	103개소 (2014.4기준)
기능	·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 프로그램 보급 · 연계체계 구축 ·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 효과성 및 만족도 조사 · 아동복지교사 관리 및 운영 · 아동복지교사 실태조사 및 실적관리시스템 운영 · 홍보 및 행사진행	· 지역센터 사업 및 운영지원 · 유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표준행정시스템 운영 · 연구사업 ·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조사분석 전문가사업운영 및 특화사업 · 지역센터 종사자 교육 · 홍보사업	· 청소년 가출 예방 사업 · 긴급구조 · 보호 · 지원 전문인력 양성 ·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 평가 · 가출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 운영 · 실태조사 및 실적관리

^{*} 출처: 민현주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2014),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p.4 참조 작성,

다음으로「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청소년복지지설로 청소년쉼터 외에 청소년자립지원관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립지원관의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자립지원관의 전달체계가 사실상 가동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현행 중장기쉼터가 자립지원생활관의 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고,「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과목적, 역할, 기능이 중복된다. 현재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지역 내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지원을통해 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DB와 개별자립지원계획 수립 등 시설 퇴소 아동의 자립지원을위한 전달체계의 외형은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표 III-19). 따라서 아동복지시설과 쉼터 간의유사성을 감안할 때 청소년복지시설인 쉼터를 사회복지시설로 편입하고 자립지원 담당기능을일원화하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현행 쉼터 간의 연계, 쉼터와 위기청소년 인프라간의 연계 여건과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전달체계를 재편하는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19 자립지원 담당기관 역할 및 기능(보건복지부)

	구분	역할 및 기능
	아동복지정책과	· 자립지원사업 운영기본계획 수립 · 아동자립지원사업 운영 지침 마련, 국고보조 등 사업 총괄 · 아동자립지원 수행기관(지자체 및 중앙·시도 전담기구) 연계, 조정
보건복지부	아동자립지원 사업단	·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 지원 · 자립지원사업 관련 연구 및 자료발간 · 자립지원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자립지원사업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DB) 운영 및 모니터링 · 지역 자립지원사업 운영 평가 · 자립지원사업 홍보 자원개발, 네트워크 구축
	담당부서	·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지원 · 지역 자립지원 전담기구 지원예산 확보·지원 · 지역 자립지원사업 지도 관리 · 아동 자립지원 관련 통계 관리·보고
시도 시군구 지역 자립지원전담기		 지역 자립지원데이터 관리 지역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실시하는 자립지원 업무 지원 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 자립지원 관련 시설 및 기관 종사자 교육 퇴소아동(중점사례관리 대상) 사례관리 자립지원사업 홍보 및 지역사회 자원네트워크 구축
가정위탁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		· 입소 후 3개월 이내 원가족 복귀계획 수립 및 지원 · 아동 연령별 자립기술평가 및 자립지원프로그램 진행 · 만15세(중3) 이상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수립(매년 1~2월) · 자립지원 관련 현황 DB입력 및 지자체 보고 · 보호종결 후 5년 이내 아동 사례관리(위기대상은 시도 전담기구 연계)

^{*} 출처: 보건복지부(2013). p.227.

4. 소결28)

사회복지정책 분석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준거들을 활용하여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정책 현황 분석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쉼터는 민간사업이 제도화된 형태로, 그간 운영형태의 다각화, 양적 확대가 이루어

²⁸⁾ 이 부분은 김지연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함.

졌으나 정책의 효율,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달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의 중장기계획을 기반으로 쉼터 설치, 확충이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달체계 개편 시 일부 진통이 예상되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운영자가 아닌 수혜자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기존 인프라와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가출, 실종, 홈리스, 무연고 청소년 등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고 관련법 간의 정책대상이 중복되어 쉼터에서 이들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 원칙, 서비스 제공기준이 현행 지침과 운영 매뉴얼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대안양육시설의 개념으로 쉼터의 위상,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단위에서 위기청소년 인프라 간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이 요구된다.

셋째, 청소년의 가출 경험율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정책은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국한되어 있다. 가출청소년의 규모에 비해 쉼터 운영지원 예산 규모가 적절하다보기 어려워 정책 효과 도출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쉼터 수의 적정성 시·도별 가출청소년 발생율, 가출청소년 보호율을 산출해 보면 청소년쉼터의 확충이 필요하고, 가출청소년의 쉼터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일시쉼터의 아웃리치 기능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다 부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현장에서 비효율, 소모, 차별이 유발되고 있다. 이들 시설의 경우 법적근거가 부재하여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선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가정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한 통합지원 체계 내에서 지역 단위까지의 연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섯째, 쉼터 유형에 대한 탄력적인 적용, 운영이 요구된다. 광역단위에 쉼터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소기간을 기준으로 유형을 나눌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광역단위의 지원기관이 부재하여 이를 조정하는 기능도 없을 뿐 아니라 법에 명시한 청소년자립지원관설치도 이루어지지 않아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전달체계가 전반적으로 미구축된 상황이다. 여섯째, 청소년쉼터 전달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기 위해서는 중앙지원기관 설치, 광역단위지원센터 설치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연속성 제고, 다 부처사업과의 연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제 **W** 장

주요국의 가출청소년 지원정책과 사례

- 1. 정책대상의 범위와 특성
- 2. 법제 현황과 서비스 전달체계
- 3.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사례
- 4. 시사점

제 IV 장

주요국의 가출청소년 지원정책과 사례29)

이 장에서는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현황과 사례에 관한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OECD 국가 가운데 가출청소년, 홈리스 지원과 관련하여 선진적인 제도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이 외 유럽 국가 가운데 영국, 독일, 아시아 국가 중 일본의 사례를 일부 포함하였다. 이와 함께 거리아동 지원을 위한 민·관 차원의 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거리아동 지원프로그램에 관한 국제기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OECD 국가 간에도 아동·청소년기 자녀의 보호에 대한 부모의 책임 정도와 청소년기 가출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청소년과 가족 및 홈리스에 대한 관점과 접근, 그리고 기본적인 복지정책에 편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각 국가별 가출청소년 및 홈리스 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고찰보다 정책대상의 범위와 특성, 법제 현황과 서비스 전달체계, 프로그램 운영 사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1. 정책대상의 범위와 특성

1) 미국30)

'가출 및 홈리스청소년법(the 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 RHYA)'에서는 가출, 홈리스

²⁹⁾ 이 장은 김지연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1절, 2절, 3절의 해외 사례 가운데 미국은 한미경 교수 (미국 산호세주립대), 프랑스는 H. R. Kim-Lescarret 연구위원(프랑스 파리 소르본대학교 유럽문화연대연구소), 일본은 최 현주(일본 히토츠바대학 대학원 박사수료), 독일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 NYPI 청소년 해외동향리포트 (독일)와 전 지현(독일 튀빙엔대학교, 박사수료)의 원고에 대한 발췌·요약을 포함함.

³⁰⁾ Fernandez-Adrienne(2013)의 주요 내용을 요약함(http://www.nchcw.org/uploads/7/5/3/3/7533556/crs_2013_rhya_history_and_lit_review.pdf, 인출일: 2014.10.31).

지원정책별로 정책 대상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하면 기출청소년은 "스스로 집에 들어가지 않거나 보호자의 허가 없이 밖에서 지내는 18세 미만의 청소년", 홈리스청소년은 "친인척 집에서 가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다른 안전한 대안 주거가 마련되지 않은 22세 이하의 청소년" 으로 정의된다. 다만 'th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에서는 '지난 1년 동안 하루 또는 며칠 동안 주거환경이 적절하지 않은 곳에서 생활한 적이 있다'는 경우 홈리스청소년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Fernandes-Adrienne, 2013, p.4). 또한 이 기준에 따라 미국 내 최소 1.6백 만 명의 아동, 청소년이 12세부터 17세 사이에 가출하여 거리에서 1년 정도를 생활하는 홈리스청소년인데 이는 미국 아동, 청소년의 7%에 달하는 규모이다(Fernandes-Adrienne, 2013, p.5). 특히 비영리단체인 NAEH(The National Alliance to End Homelessness)를 포함하여 홈리스청소년을 'unaccompanied individuals'라 정의하여 24세 이하의 청소년 가운데 보호자를 포함한 동반자가 없는 경우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다(Fernandes-Adrienne, 2013, p.6).

그러나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s Council on Scientific Affairs'는 가출, 홈리스청소 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고 비생산적(counterproductive)이며, 이들 대다수가 집에서 도망쳐 나오거나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은 가정의청소년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는 청소년과 보호자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인데 보호자는 '실종'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청소년은 '가출'인 경우가 있고, 보호자가 가출이라고 하더라도청소년은 탈출인 경우가 적지 않은 등 명확한 구분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결국가출, 홈리스를 서로 다른 정책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혼용하면서, 기출과 홈리스청소년의 가출원인이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들은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복합적인 지원을필요로 하는 정책 대상으로 정의된다.

한편 각 주별로 가출, 홈리스청소년을 은닉(Harboring Unaccompanied youth)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콜로라도, 조지아, 일리노이, 미시간, 미시시피, 워싱톤 등 16개 주에서 범죄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 나머지 36개 주 역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 근거를 가지고 있다.

2) 프랑스31)

프랑스는 한 해 평균 약 4만~5만 명 정도의 청소년이 가출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며, 2013년

³¹⁾ 이 부분은 H. R. Kim-Lescarret 연구위원(프랑스 파리 소르본대학교 유럽문화연대연구소)의 원고를 김지연 연구위원(한 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췌·요약한 것임.

한 해 동안 경찰에 신고된 미성년 청소년 가출(fugue)은 46,000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40% 정도 증가한 규모이다. 1935년까지 프랑스에서 청소년 가출은 범법행위로 취급되었고, 가출청소년 혹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노숙청소년은 감화원, 교도소에 위탁되어졌다. 1935년 이후 가출 자체가 더 이상 위법행위로 취급되지 않으나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혹은 법정 친권을 가진 자 혹은 시설의 허락이 없이 집을 떠나 따로 거주하지는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 민법 371-3조에 의하면 "아동은 부모의 허락이 없이는 부모와 함께 지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다. 단 예외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결정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집을 나와 거주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의 가출을 돕거나 알선하는 경우 처벌이가능하며 이는 친권을 침해한 협의로도 간주한다.

- ※ 프랑스「형사법」의 미성년자 가출에 대한 처우 변화
- 1810년 형사법, 가출은 부랑행위죄로 미성년과 성년 모두를 대상으로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간의 감옥형에 처하게 함.
- 1912년 7월 22일, 13세 미만의 아동의 부랑행위, 즉 가출하여 거리에서 생활하는 것을 더 이상 관할 형사법원에 신고할 필요는 없어짐. 다만 민사법원에 의해서 제재를 받도록 함.
- 1921년 3월 24일, 미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부랑행위 죄에 대하여 "합법적인 이유없이 부모와함께 사는 거주지를 떠나 노숙생활을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집에 방을 구해 임시로 살고 있으며 어떠한 직업도 없는 상태 혹은 다른 사람의 수입을 가로채서 지내거나 금지된 일을 하고 지내는 상태"로 명시함.
- 1935년 10월 30일 법령은 1921년의 법의 미성년의 부랑행위죄에 대한 감화원과 교정원 위탁의 형벌 폐지. 이로 인해 가출은 위법행위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교정원 등 구금시설에 보내지 않고 공공복지시설에 위탁함. 이를 통해 가출 청소년이 교육지원을 받고 해당 청소년의 가족 상황을 감안하여 필요 시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도록 함.

고정된 주거지가 없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를 SDF(Sans Domicile Fixe)라고 부르는데 2012년 SDF의 전체 규모는 141,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수치는 2001년에 비해 약 50% 정도 증가한 수준이다. 대다수의 노숙자는 혼자 생활하며 20% 정도는 부부가함께 노숙생활을 하고, 이들 가운데 1/4 가량이 자녀와 함께 노숙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전체노숙자의 약 40%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다수의 미성년 노숙청소년은 15세 이상의 청소년층이며, 이들은 교육체계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가출혹은 실종으로 분류되어 있지도 않고 가족관계망에서도 단절된 상태에 있다.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부모와 성인의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부모는 첫째, 미성년의

자녀에게 숙식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프랑스 민법 203조).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가출한 경우, 부모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15세 미만의 자녀가 가출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모는 자녀 유기죄로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7년의 징역형과 10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형법 227-1조). 둘째, 보살핌의 의무가 있다.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는 한도 내에서 미성년 자녀를 지키고 돌볼 의무가 있다. 이는 부모가 그들의 미성년 자녀의 행동(자발적이든 그 반대의 경우이든)에 대하여 민법상의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자녀가 가출 상태에서 피해나 손실을 유발한 경우 모든 민법상의 책임은 해당 청소년의 부모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주변 성인들은 첫째, 부모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가출 상태에 있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성인은 청소년의 부모에게 즉시 이를 알려야 하며 미성년 청소년 부모의 허락 없이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형법 227-8조에 의하면 "친권을 가진 부모 혹은 그와 유사한 효력을 지닌 개인 혹은 시설로부터 나온 미성년을 보호하고 있을 경우에는 비록 폭력이나 사기와 같은 위법적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5년의 징역형과 7만 5천 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미성년자의 유괴, 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단, 가출한 미성년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경우 이를 알게 된 성인이 해당 청소년을 자신의 집에 숙식시키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담당행정기관이나 법률기관에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다.

둘째, 담당 행정기관 등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미성년자가 중대 사유(예로, 성폭행, 근친상간, 학대 등)로 가출을 한 경우, 해당 청소년의 상황을 알고 있는 성인은 이를 담당 행정기관 혹은 법률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중대 사유로 가출한 미성년자를 해당 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위험에 처한 개인을 구조하지 않은 '구조의무 위반'32) (형법 223-6조) 혹은 범죄 은닉죄 (형법 434-1조)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형법 434-1조는 "15세 미만의 미성년이 가출 혹은 사라진 사실을 알고도 해당 청소년을 찾기 위한 절차를 늦추기 위해 혹은 방해할 목적으로, 해당 법률기관과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의 징역형과 3만 유로의 벌금형으로 처벌 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³²⁾ 구조의무 위반으로 프랑스에서는 1945년 이후 부터 이를 경범죄로 다루고 있다.

3) 영국

영국의 경우33) 1999년 조사에서 16세 미만 가출 및 홈리스 아동·청소년이 10만 명에 달하며 이들 중 실종아동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는 10명 중 3명에 불과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첫 가출을 경험하는 청소년이 7만 7천 명에 달하고 연간 12만 9천 건에 달하는 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es, 2011, pp.3~4). 이후 2008년 영국 정부는 액션 플랜(Young Runaways Action Plan)을 발표하고 국가 지표의 일환으로 가출청소년 지표를 도입하였다. 특히 가출(running away)은 '가출했거나 혹은 집에서 나가라고 강요받는 경우, 그리고 적어도한 번 이상 밤새 귀가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여 가출의 원인을 고려하여 정책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Rees, 2011, p.8).

영국 청소년의 가출경험률은 2011년 현재 8.9% 수준으로 추정된다. 다만 무단결석과 가출은 상관관계가 높다는 점에서 조사당일 학교에 무단결석한 학생을 감안할 경우 가출 경험률은 실제보다 낮게 추정된 것이다(Rees, 2011, p.10). 스냅샷 조사(snapshot survey) 방식으로 가출청소년의 규모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 가출경험률'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다. 그러나 1999년, 2005년, 2011년 세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청소년의 생애 가출경험률은 1%p 이상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지난 한 해 동안 14~16세 청소년의 가출경험률은 감소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표 IV-1). 이러한 결과는 16세에 달하기 전에 이미 가출을 경험하는 청소년이 상당수에 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특히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 가운데한 번 가출한 경우는 1/3(36%), 한 번 이상 가출한 경우는 55%, 세 번 이상 가출한 경우는 22%에 달하였다.

³³⁾ 아래의 내용은 Rees(2011)을 발췌·요약한 것이다. The children's Society는 1999년 영국 내 노숙청소년에 관한 보고 서를 처음 발간하였고 이후 10년 이상의 장기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2011년 발간 보고서는 영국 내 85개 중등학교 14~16세 재학생 7,349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표 Ⅳ-1 청소년 가출경험률(영국, 각 연도별)

구분	' 99	' 05	'11
가출 경험률(생애경험)	10.1%	10.2%	8.9%
가출 경험률(지난 해)	_	6.5%	6.2%
가출청소년 평균 연령	15세(1개월)	15세(4개월)	15세 3개월

^{*} 출처 : Rees,(2011), pp.10~12,

- * 주: 1) 가출 경험률은 하루(overnight)를 기준으로 하며, 1999년 조사에서는 지난 한 해 가출 경험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지 않음.
 - 2) 가출경험률은 지난 한 해 동안 가출한 경험을 기준으로 하며, 영국 내 가출청소년은 1백 2십만 명(14~16세 청소년의 6.25%)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 3) 2011년 조사에서 가출경험 청소년 가운데 13세 이전에 첫 가출을 경험한 비율은 1/3(36%)에 달하고, 남성(8.5%)에 비해 여성(10%)의 가출 경험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영국의 경우 웨일즈(8.5%), 북아일랜드(9%),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10%) 각 지역별 청소년 가출경험률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결과이다. 인구가 밀집하고 낙후된 지역에서 청소년의 가출경험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제공받는 학생들의 가출경험률이 다소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재학생의 가출경험률은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Rees, 2011, p.12). 이러한 결과는 인구밀도와 경제적 수준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경험률이 지역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았으나 모든 지역에서 중요한 사안(significant issue)임은 부정할수 없는 사실임을 보여준다.

한편, 인종에 따른 가출경험률은 차이를 보이는데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청소년(4%)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고 아프리카 흑인(9%)과 백인(9%)에 비해 혼혈(13%)의 경우 가장 높았다. 또한 장애 청소년의 생애 가출경험률은 19%에 달하였는데, 장애 청소년 5명 가운데 1명 정도가 가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자기보고식 조사를 통해 '학습에서의 어려움 (difficulties with learning)'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600명 중 18%가 지금까지 한 번 이라도 가출을 한 적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이전 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Rees, 2011, pp.13~14).

가출청소년에 대한 조사는 피해(harm/risk)와 가시성(visibility) 정도로 파악될 수 있다. 조사결과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 가운데 가출 기간 중 부상 등 피해를 당한 적이 있거나, 가출이후 만난 사람과 같이 지내거나 노숙하거나 혹은 생계비를 벌기 위해 절도나 구걸을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6%에 달하였다. 가출 기간 중 도움을 요청한 대상은 친구, 친척, 친구의 부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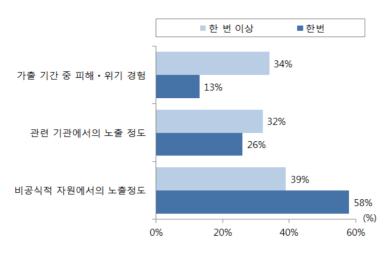
나타났고, 이전 조사와 마찬가지로 전체 가출청소년 가운데 사회 서비스, 교직원을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은 경우는 5%에 수준에 불과하였다(표 IV-2). 이상에서와 같이 조사와 면담을 통해 파악한 중요한 사실은 가출청소년은 가출 기간 동안 도움을 자주 요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인과의 접촉을 가능한 피하려 하며, 친구 등 비공식적인 원조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표 Ⅳ-2 가출 기간 중 도움 요청 정도(영국)

도움 받는 장소/사람 (중복 응답)	빈도	도움 요청 비율 (%)	가출청소년 비율 (%)
친구	87	60	15
 친척	63	43	11
친구의 부모	44	30	8
사회 서비스(social services)	16	11	3
 교사, 교직원	14	10	2
상담사, 사회복지사, 다른 기관	13	9	2
 경찰	10	7	2
의사	8	6	1
 이웃	7	5	1
 전화(telephone helpline)	7	5	1
 연계	4	3	⟨1
병원	3	2	⟨1
기타	18	12	3

^{*} 출처 : Rees(2011), p.18.

특히 가출청소년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이유는 모든 가출청소년의 부모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가출한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 경우, 자녀가 현재 머무는 곳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믿고 있거나 자녀의 가출에 대해 경찰이 관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가출청소년과 관련된 전문 서비스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 가동된다는 점에서 신고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일회성 가출보다 반복 가출인 경우 경찰 신고율이 낮고 13세 이전에 가출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복 가출의 경우 위기 상황에 놓이는 경우는 많고 비공식적인 도움을 받는 비율은 현저하게 낮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반면 관련 기관에 포착되는 정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Rees, 2011, pp.20~21).



* 출처: Rees(2011). p.21.

【그림 IV-1】가출 이력과 경험 간의 관계

가출청소년의 가정환경을 살펴보면 먼저 가족과 함께 살지 않아 주거지원을 받거나 위탁보호 (foster care) 등 '돌봄을 받고 있는(looked after)' 청소년의 가출경험률은 30~45%에 달하는 등 매우 높았다. 그러나 이들은 주거지원 및 위탁보호 이전에 이미 상당한 수준의 위기를 경험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가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출과 현재 제공되는 보호의 질을 결부지어 단정할 수 없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 한부모 혹은 계부모가정 청소년의 가출경험률이 높은데 친부모와 헤어졌던 시기쯤 가출하는 경향이 높은 것이 관찰되었다. 즉 가족의 구조적 변화와 청소년의 가출경험률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아동 청소년과 가족 보호체계가 보다 다양화되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아래 표 IV-3에서 보는 바와 같이함께 생활하는 성인에 변화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가출경험률이 3배 이상 높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최근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재혼과 같은 가족 구성원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가족구조와 가출경험률의 상관관계는 현저하게 감소한다(Rees, 2011, pp.20~29).34)

³⁴⁾ 가족관계성(가족 친화력(family warmth), 가족 갈등(family conflict))과 가출경험률을 분석한 결과 (저)친화력-(고)갈등 집단 23%, (고)친화력-(고)갈등 집단 7%, (저)친화력-(저)갈등 집단 6%, (고)친화력-(저)갈등 집단 2% 등 가족관계성과 가출경험률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성은 가족구조, 경제적 수준이 가출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주요 변수지만 가족관계성과 가출의 전후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Rees, 2011, pp.29~30).

표 №-3 가족구조와 가출경험률(영국)

가족구조	가출경험률 (지난 한 해, %)	작년 이 시기 함께 살던 성인(부모)과 지금 생활하는지 여부	가출경험률 (지난 한 해, %)
한 가정-양친부모	3.0	All	4.0
한 가정-편부모	5.5	예	4.0
한 가정-친부 혹은 모와 계부모	8.5	아니오	1 4 4
두 가정-별거부모	10.0	(변화가 있음)	14.4

^{*} 출처 : Rees(2011), p.25.

4) 독일35)

1993년에 시행된 독일의「아동청소년복지법」체계에서 청소년의 가출은 위기상황 (Kindeswohlgefährdung)으로 정의하여 국가의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가출청소년은 거리 청소년(Straßenkinder)으로, 자녀수당이 지급되는 만 27세까지의 청년층(junge Volljährige)을 포함한다. 다만 청년층(만 19세-27세)의 지역 청소년청이 개입하지 않고 귀가조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독일의 가출, 홈리스청소년의 국가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2008년 독일 정부가 발행한 빈곤 보고서에서 2005년을 기준으로 약 5,000명에서 7,000명 정도로 추산한 바 있다. 일부 단체의 자료에 따르면 연중 거리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은 약 2,500명에서 5,000명으로 추산되며, 가출과 귀가를 반복하는 청소년은 약 9,000명에서 1만 명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5) 일본³⁶⁾

일본에서 청소년의 가출은 소년비행, 범죄의 전 단계로 인식하고 있는데 소년은 만 20세미만의 자이다. 경찰청이 발행하는 경찰백서에도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약물남용, 폭주족, 불량행위(20세미만의 음주, 흡연, 심야 배회 등으로 경찰에 지도를 받는 것), 가정 내 폭력, 가출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수일간 가출하는 경우 '쁘띠 가출'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³⁵⁾ 이 부분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 NYPI 청소년 해외동향리포트(독일)의 내용을 김지연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요약한 것임.

³⁶⁾ 이 부분은 최현주(일본 히토츠바대학 대학원 박사수료)의 원고를 김지연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요약한 것임.

2013년 경찰청 경찰백서에 따르면, 불량행위소년 가운데 경찰의 지도를 받은 인원은 91만 7,926명으로 2012에 비해 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경찰청, 2013).

2. 법제 현황과 서비스 전달체계

1) 미국

미국의 가출청소년, 홈리스청소년 지원 근거는 '가출 및 홈리스청소년 법(the 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이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1974년 「Run Away Youth Act of 1974」 또는 「Title III of the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이라는 법이 시행된 이후 '가출청소년 및 홈리스청소년 프로그램(The federal Run away and Homeless Youth Program, RHYP)'이 만들어졌다. 또한 2008년에는 「Reconnecting Homeless Youth Act」가 제정되었다(Fernandes-Adrienne, 2013).

'가출 및 홈리스청소년법(RHYA)'은 가족 및 청소년국(the Family and Youth Services Bureau, FYSB)에서 관할하는데, FYSB는 보건복지부 내 아동·가족 건강 서비스부(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y, 이하 HHS) 소속이다. FYSB는 가출 및 홈리스청소년을 위한 드롭인센터 프로그램, 전환프로그램, 아웃리치 프로그램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가출청소년의 건강, 교육, 취업, 주거지원 관련 예산을 포함한다.실종 아동의 경우, 국립실종 및 학대아동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에 따르면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이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가출이 아니라 실종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앰버경보(Amber alert)가 실행된다. 그러나 각 주마다 법제 현황은 다양한데(http://www.missingkids.com/Runaway), 각 주마다 아동(child), 청소년 (youth), 연소자(minor)의 정의부터 차이를 보인다. 실종의 경우에도 경찰이 아동, 청소년을 찾아 곧장 부모에게 돌려보내지는 않으며 적절한 조치를 통해 각종 의료, 교육, 상담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안전에 대한 확인(safety check)을 가장 중요하게 다룬다. 따라서 실종아동이라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귀가조치가 아니라 아동, 청소년에게 일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소년법원 혹은 정신건강 서비스 포함) 경우에 따라 법원을 통해 친권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National Law Center on Homeless & Poverty, 2012). 특히 각 주마다 정해놓은 청소년의 권리에서 서비스 제공 및 귀가에 대한 동의(consent)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National Law Center on Homeless & Poverty, 2012, pp.98~104).

한편, 홈리스청소년의 학업중단 예방을 목적으로 1987년 「The 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Act of 1987, 이하 McKinney-Vento법」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법률은 응급숙소, 일시쉼터, 직업훈련, 건강관리, 교육, 영구적인 거주지 마련 등 7개 장으로 구분되며, 7장(Title VII)에서 홈리스청소년의 교육지원을 다루고 있다. McKinney-Vento법은 2001년 낙오아동 방지법 「No Child Left Behind Act, NCLBA」이 제정되면서 10장(Title X, Part C)에 그대로 포함되었다(George & William, 2013, p.180).

McKinney-Vento법에서는 홈리스청소년을 '적절하고 규칙적이며 고정적인 주거지가 없는 경우, 주택의 파괴 및 파산 등으로 다른 이의 집에서 생활해야 하는 경우, 적절한 대체 거주지가 부족하여 캠핑장, 트레일러 주차장, 호텔, 여관에서 살고 있는 경우, 병원에 방치된 경우, 응급 또는 임시 숙소에 거주하는 경우, 양육시설 입소 대기자, 주거로서 적절하지 않은 곳에서 생활하는 경우, 차량이나 공원, 공공장소 등 철새와 같이 주거지를 옮겨 다니는 청소년을 포함한다.

연방정부(교육부)는 홈리스청소년의 교육정책을 총괄하며 이들의 교육을 위한 필요 예산을 확보하여 주정부에 배분하여야 하며, 홈리스청소년의 입학 절차와 예방접종 사본을 포함한 건강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등이 없는 경우의 입학절차를 포함하여 학교가 준수해야 하는 지침을 정하고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주정부는 홈리스청소년의 교육지원과 교육권 보호를 위해 '주 기본계획(state plan)을 마련하여야 하고, 학교는 이들의 성공적인 학업수행을 지원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교육청은 쉼터와 기존 학교의 학군이 다른 경우 청소년이 다니던 학교에 등교하기를 원한다면 이를 지원하여야 하고, 28개 주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정신건강 및 각종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National Law Center on Homeless & Poverty, 2012, p.136).

2) 프랑스³⁷⁾

가출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정부 산하 기관은 Brigade des mineurs(내무부 소속), Point accueil

³⁷⁾ 이 부분은 H. R. Kim-Lescarret 연구위원(프랑스 파리 소르본대학교 유럽문화연대연구소)의 원고를 김지연 연구위원(한 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췌·요약한 것임.

ecoute jeunes(PAEI, 교육부 소속), Les maisons des adolescents(MDA, 보건복지부 소속) 등이다.

- (1) 가출청소년 담당 정부기관과 역할
- ① Brigade des mineurs (경찰내의 미성년 담당부서): 내무부 소속

Brigade des mineurs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미성년인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조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특별히 인터넷상의 감시를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가출 사건 발생시, 가장 전문화된 인력을 동원하여 이들을 찾아내는 역할로 특성화되어 있기도 하다. 모든 경찰서는 Brigade des mineurs로의 연결을 돕기 위해 경찰서 직접 신고전화인 17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Brigade des mineurs는 프랑스 각 도 (departement)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찰서비스로 법정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는 대상 아동 혹은 청소년을 위한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해 긴급으로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파리의 경우, Brigade de mineurs는 유일하게 24시간 운영체제를 갖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Missions

- 아동·청소년 관련 비행의 조기 발견
- 가족 내 혹은 가족외의 관계에서 아동 혹은 청소년이 희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학대 혹은 폭력에 대한 예방 등
 - (L) 상시 서비스
- 신고를 위한 전화신고에 응답
- 경찰내의 다른 부서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서비스
- 부모, 기족과의 거주지로부터 혹은 해당 청소년들이 지내고 있던 시설로부터 기출한 청소년들 을 찾는 일
 - © 내부 조직과 기능
- 연구그룹 : 어려움이나 혹은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 혹은 지역 그리고

행사 등을 통제

- 조사담당팀 : 기족 내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대상이 되는 문제 담당(학대, 영아살해, 자녀양육 권과 관련된 문제 등)
- 일반 조사팀 : 해당 아동 혹은 청소년의 주변과 가족의 주변 그리고 다양한 기관들과의 연결을 통해 해당 아동의 물질적, 정신적 상황에 대한 가족대상의 조사와 평가서 담당
- 작전전담팀: 해당 아동 혹은 청소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요소에 대한 문제 담당, 특히 강간, 미성년자 유괴, 풍기사범, 미성년자 매춘, 가출 등 담당

② 검찰청과의 협력

검찰청은 사회복지시설이나 PMI(Protection maternelle et infantile, 영, 유아의 건강과 예방기관), 병원 등에 의해 신고가 접수된 해당 아동 혹은 청소년의 가정과 관련하여 해당 미성년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환경에 관련한 모든 조사를 Brigade des mineurs에 일임하고 있다.

① 아동 청소년 담당 판사와의 협력

아동 청소년 담당 판사 역시 검찰청과 마찬가지로 Brigade des mineurs와 관련된 신고접수시에 해당 미성년자의 가정과 관련하여 미성년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환경에 관련한 모든조사를 일임하고 있다. 해당 미성년자가 범죄의 피해 대상일 경우 Brigade des mineurs의상시 담당자는 담당 판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아동, 청소년 담당 판사는 가출 혹은 한쪽부모에 의한 아동납치(부부이혼의 경우 자녀양육권과 관련된 문제로 발생하는 것으로 주로부모의 국적이 다를 경우 외국으로 자녀를 데리고 나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의 경우 등에 있어 수색 혹은 소환의 종결에 대한 명령을 전달할 수 있다.

② Point accueil ecoute jeunes (PAEJ) : 보건복지부 소속

(7) Creation

미성년, 성년기에 달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에 있던 PAJ (Point Accueil Jeunes)와 PEJ (Point Ecoute Jeunes)를 통합하여 2002년 정부가 새롭게 설립한 기관이다. 이는 위험에 처한 청소년, 청년의 발생을 예방하는 국가의 의지를 재확인 하는 것으로, 대상 청소년을 건강 혹은 사회적 배제 위험으로부터 예방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L) Missions

PAEJ는 12세에서 25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사회적, 심리적, 교육적 문제 그리고 가족, 학교 혹은 직업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상담이 필요한 부모 역시 이용이 가능하다. PAEJ는 익명성, 비밀을 보장하며 미리 약속을 예약할 필요가 없이 바로 상담이 가능한 체계로 운영된다. 개인 혹은 집단단위로 상담이 가능하고 지역에 따라 가출 청소년을 위해 특화 운영되고 있다. 이 경우 24시간에 한해 가출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고, 24시간이 경과된 후에는 담당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24시간 동안 전문 사회복지사는 가출청소년의 가족과 연락을 시도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어떤 해결책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청소년과 가족을 분리시키는 방법을 선택한다. 이 경우 우선적 목표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 가족과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며 성급하게 가족에게 돌려보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의 예방에 우선을 둔다. PAEI에는 3가지 종류의 시설이 있다.

- Accueil et ecoute des jeunes : 해당 청소년이 원할 경우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사전 약속없이 혼자 혹은 또래, 부모와 동반 등의 형태로 상담 제공
- Accueil des fugueurs et hebergement des mineurs :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나 긴급한 상황에 처한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숙식 제공
- Accueil des jeunes precarises : 가출청소년을 포함하여 취약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전화, 교통비 지원, 식사권 등 현금 및 현물지원
 - ③ Les maisons des adolescents (MDA) : 보건복지부 소속

MDA는 12세에서 25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 가족, 성정체성, 불안정, 빈곤, 의존성, 법률, 학업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한다. MDA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찾기쉬운 곳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용이하다. 의사, 교사 등은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시설이 있음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시설을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각 청소년에게 가장 적절한 지원이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 심리, 사회, 교육, 법률 담당 기관 및 전문가와 연계 지원한다.

(2) 위탁가정 및 시설보호

프랑스의 정부기관과 협회들은 가정, 경제, 사회적 문제 등으로 가출 혹은 비행에 연루된 청소년과 그 가족, 그리고 주변 환경의 개선을 위해 재정적 지원 뿐 아니라 해당 가정의 가족 관계망에 직접 개입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가족을 포함하여 청소년의 주변환경을 개선하여 가정 내에서 학업, 사회관계망을 균형적으로 유지하는데 초점을 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가정, 시설에 입소하도록 지원하며 해당 청소년의 요청 뿐 아니라 다각도의 검토와 심사를 전제로 한다. 대표적인 기관으로 ASE를 들 수 있다.

① Aide Sociale a l'enfance (ASE) : 아동대상 사회복지 서비스

프랑스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과 서비스는 '사회복지와 가족법'을 근거로 한다. ASE는 각도의회의 위원장 권한에 속해있는 도(departement) 수준의 서비스의 형태로 학대, 유기 등의예방과 가족지원을 핵심 사업으로 한다. 미성년자가 자신의 가족 내에서 더 이상 일상적인생활이 불가할 경우 승인된 위탁가정 혹은 공공복지시설로 위탁한다. ASE는 매달 수당형태로 재정적으로 지원하거나 TISF (technicien en intervention sociale et familiale)이 해당 가정에서비스 형태로 지원하는 방법을 병행한다.

- ※「사회복지와 가족법」에 근거한 ASE의 구체적인 역할
- 미성년자와 가족, 21세 미만의 청소년 대상 현금 및 현물, 교육, 심리 지원
- 미성년자의 긴급지원 및 보호
- 위탁된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진로 지도
- 학대, 유기에 대한 예방활동과 피학대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

② 시설보호

13세에서 21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un etablissement regroupant un foyer educatif et un service appartement)의 경우 교육적 주거(un foyer educatif)와 아파트 거주서비스(et un service appartement)가 대표적이다. 이들 시설은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하며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교육적 주거(foyer educatif)는 13세에서 18세까지의 미성년자가 거주하며 다양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거나 가족관계의 단절, 고립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2년 간 장기거주 할 수 있고 여자청소년을 위한 일시주거(7일, 최장 14일)형 시설이 있다. 이들 시설의 운영목적은 개별화된 접근을 통해 각 아동의 일상생활 지원, 해당 아동, 청소년이 원 주거지 혹은 관계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 학업중단 예방 및 훈련프로그램 지속 지원, 가정복귀 및 자립 지원 등이다.

다음으로 아파트 거주서비스(service appartement)는 17세부터 21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청소년이 정부의 아동보호서비스(Aide Sociale a l'Enfance) 감독감이 입소를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아파트형 거주지는 공동 혹은 원룸 형태로, 두 경우 모두 담당 교육전문가의 사무실과 근접한 곳에 지정된다. 해당 청소년의 생활과 관련하여 다양한 부분에서 개별적인 지원이 가능하며 학업, 진로, 직업, 건강 등 문제에 대한 지원과 사후관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일상생활지원과 자립지원 훈련을 실시하며 해당 청소년과 담당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한다. 시설 입소절차는 입소신청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해당 시설에서 이를 검토한후 해당 청소년과 외부 전문가, 시설 책임자의 면담이 이루어진다. 면담에서는 청소년의 시설에서의 기대와 시설생활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교육적 주거(foyer educatif)의 경우청소년이 시설 내 다른 청소년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설생활이 가능한지 스스로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루 정도의 생활 기회를 제공한다. 이후 청소년과 시설 내 심리상담가와의면담을 통해 청소년의 현재 상황, 개인적 생활사, 가족 내에서의 청소년의 위치 등을 이해할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가진다. 이 과정을 거쳐 시설 입소 허가가 이루어지고 이 단계에서시설 내 전문가 한 명이 멘토로 지정된다.

3) 독일38)

통독이후 개편된「아동청소년복지법」에 따르면 각 기초자치단체는 청소년청(Jugendamt)을 설립하여 보육, 교육보조, 청소년복지사업(Soziale Jugendarbeit)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출청소년의 보호는 청소년복지사업에 해당하며, 청소년청은 주정부의 교육부, 사회부와 협력하며, 연방차원에서는 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와 연계된다. 모든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청이 관리,

³⁸⁾ 이 부분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 NYPI 청소년 해외동향리포트(독일)의 내용을 김지연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요약한 것임.

감독하고 있으나 민간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민관 협력을 목적으로 청소년청은 실무 담당 행정부서와 운영방침을 결정하는 청소년위원회로 이원화되어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위원회는 사업방향과 의결권이 있고 지역 민간사회복지단체 대표들이 3/5을 차지하고, 나머지 2/5는 기초자치단체의원들에게 배석된다.

부모나 보호자의 폭력, 주거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가정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은 청소년청에서 임시 거주시설을 통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실종신고 등을 통해 사건이 보고되면 청소년청이 개입한다. 청소년청은 귀가조치를 취하거나 가출의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 가출청소년을 수용시설에 보호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부모가 귀가를 원하더라도 청소년 본인의 의사를 일차적으로 고려한다. 2013년 한 해 동안 약 3만 8천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매년 보고 건수의 1/5 정도가청소년 스스로 청소년청에 신고한 경우이다.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부터 청소년을 분리해야 할 경우 위탁가정이나 시설에 입소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가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부모가 양육권을 포기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단기, 중기의 임시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경비는 1회에 한해서 청소년청이 부담하는데, 자녀를 위탁시설에 맡기는 경우에는 부모가 위탁비용을 부담하며, 보호자 양측에 각각 최대 월 710유로 (한화 약 100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고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그러나 거리청소년(Straßenkinder) 지원 사업은 민간단체 주도로 운영되고 있고 법적 지원 근거가 다소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4) 일본39)

(1) 경찰

일본의 경우 경찰청 내 소년과에서 가출청소년을 선도, 보도(補導)하며 비행방지와 보호를 통해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경찰활동을 '소년경찰활동'이라 보고 경찰법, 경찰관직 무집행법, 소년법, 형사소송법, 아동복지법, 범죄수사규범, 기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일본은 가출을 청소년의 불량행위로 간주하고 있어 소년경찰활동이 비행예방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가출청소년 등 불량행위소년이 발견되면 비행 전 단계의 문제행동(금연, 심야배회, 폭주행위,

³⁹⁾ 이 부분은 최현주(일본 히토츠바대학 대학원 박사수료)의 원고를 김지연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요약한 것임.

불량교제, 약물남용, 가출 등)은 경찰의 보도활동 대상(소년경찰활동규칙 2조 6호·8호·16조·17조) 이 되며 이들은「아동복지법」44조에 의거하여 아동자립지원시설에 위탁될 수 있다.

소년경찰활동규칙에 따르면 불량행위소년 발견 시 해당 불량행위에 대한 주의, 그 후의 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언 혹은 지도, 보도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 외 조언 등으로 '현장조치'하거나 보호자, 교사에 연락하는 등 '연락조치'할 수 있다. 부모에게 직접 인도하는 '가두보도',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지속보도'가 이루어지기도 하며 지속보도의 경우, 소년서포트센터에 배치된 소년보도직원(少年補導職員) 등이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소년경찰활동규칙 8조 3항, 13조 2항).

소년보도직원은 소년상담(소년의 비행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상담), 지속적 보도, 피해소년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그 밖의 전문 지식 및 기능을 필요로 하는 소년경찰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해당 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갖춘 도도부현(都道府縣, 일본의 광역자치단체) 경찰 직원(경찰관은 제외) 중 경찰본부장이 임명한 자이다. 소년의 비행방지와 재활지원 활동에 있어 중요한역할을 감당하며 2013년 경찰백서에 따르면 2013년 4월 현재 전국에서 약 900명의 소년보도직원이 배치되어 있다.

소년서포트센터는 경찰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경찰청, 도도부현 경찰본부 또는 방면본부의 내부조직 중 소년보도직원 혹은 그에 해당하는 지식과 기능을 갖춘 경찰관을 배치하여 소년경찰활동의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2013년 4월 현재, 전국에 191곳의 소년서포트센터가 설치되어있다. 소년서포트센터는 각 도도부현의 아동자립지원시설에 아동의 자립지원을 담당하는 아동자립지원전문원 및 아동의 생활지원을 담당하는 아동생활지원원을 두고 있다. 경찰은 소년계 경찰관, 소년보도직원 등을 중심으로 공터, 공원 등 비행이 일어나기 쉬운 장소에 중점을 두고 보도활동을실시하며 학교, 지역과 연계한 비행방지교실을 개최하는 등 예방활동을 담당한다.

(2) 후생노동성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만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시보호가 가능하다. 일시보호는 아동복지법 제33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동상담소장 혹은 도도부현 지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할 수 있는데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가출의 배경에 부모의 학대, 폭력이 작용하고 있어 일시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경찰은 이를 아동상 담소에 통지하고 경찰이 직접 일시보호위탁을 의뢰할 수도 있다.

특히 학대를 이유로 가정복귀가 어려운 아동을 일시보호하며 가출청소년은 긴급보호 대상에 해당한다. 이 외 아동자립지원시설은 최장 20세까지 연장하여 이용이 가능한데, 아동복지법 제 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각 도도부현은 아동자립지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사례

1) 미국

'가출 및 홈리스청소년 법(이하, RHYA)'에 따라 가출, 홈리스청소년의 욕구(needs)를 다루고 해결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40) ① 거리 아웃리치 프로그램(street outreach program, SOP)은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에게 쉼터와 상담을 의뢰하는 것이며, ② 드롭인센터 프로그램(basic center program, BCP)은 3주 간 머물면서 의·식·주 제공, 상담 등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과 결합(reunify)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③ 전환생활 프로그램(transitional living program, TLP)은 독립(자립)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18개월 이상 주거지원을 제공하여 취업, 교육,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RHYA에 따라 위 세 가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한 해 예산은 약 1억 6천 5백만 달러이며,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1억 1천 5백만 달러(약 1조 5천억) 정도가 소요되었다. RHYA 기금은 지난 수년 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대상 청소년의 수가 감소한 것과 동시에 드롭인센터, 전환생활 프로그램 지원에서 배제된 청소년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거리배회 청소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이며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주거지원(housing)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⁴⁰⁾ 이하 National Alliance to End Homelessness (2012)에서 발췌 요약한 것임 (http://www.endhomelessness.org/library/entry/history-of-runaway-and-homeless-youth-act-funding-october-2012, 인출일: 2014, 3, 31).

2002

2001

화사⁴⁾ 회계연도 (TLP) (BCP) (SOP) 총계 2012¹⁾ \$17.935 \$43 892 \$53 646 \$115.474 117.517.889.8 2011 \$43.990 \$53.744 \$17.971 \$115.705 117.752.978.5 2010 \$43.990 \$53.744 \$17,971 \$115,705 117.752.978.5 2009 \$53.469 \$17,221 \$114,955 116,989,703,5 \$43.765 $2008^{2)}$ \$43.268 \$52.860 \$17,221 \$113.349 115.355.277.3 2007 \$39.539 \$48 298 \$15.027 \$102.864 104.684.692.8 2006 \$39.511 \$48.265 \$15.017 \$102,793 104.612.436.1 2005 \$39.938 \$48.786 \$15.178 \$103.902 105.741.065.4 2004^{3} \$40,260 \$49,171 \$15,302 \$104,733 106,586,774,1 2003 \$40.505 \$48.298 \$15,399 \$104,202 106,046,375,4

(단위: 백만달러, 백만원)

104,846,507,1

85,616,047,9

*출처: National Alliance to End Homelessness (2012) (http://www.endhomelessness.org/library/entry/history-of-runaway-and-homeless-youth-act-funding-october-2012, 인출일: 2014, 3, 31).

\$14,999

\$14,999

\$103,023

\$84,127

\$48.288

\$48,338

\$39,736

\$20,740

RHYA에 따른 2014년 4월 국가 예산안을 보면 홈리스청소년의 규모와 상태에 관한 자료가부족하지만 선행연구를 참고할 때 매년 미국 내 1백 6십 8만 여 명에 달하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가출하여 홈리스 상황에 놓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41) 이들 중 약 40만 명은 일주일이상 집 밖에서 지내고, 12만 5천명은 한 달 이상 노숙 상태며, 18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중 약 15만 명은 1년 이상 노숙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장기 노숙 청소년에게 많은 원조가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이 집을 나가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들이 홈리스 상황에놓여 있는 것 자체가 아동복지,소년사법,아동정신보건체계 등 공적 시스템의 결핍을 반증하는 것이다. 2013년 한 해 동안 위탁보호(foster care)를 받은 청소년은 2만 명에 달하며,약 10만명에 달하는 청소년이 소년사업체계(juvenile justice system) 내에서 재정 또는 주거지원을 전혀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RHYA은 청소년이 다양한 서비스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 1) 재량프로그램(discretionary programs) 자금 0.3% 감소

^{2) 2008}년 이후 TLP 예산에 Maternal Group Homes 포함

³⁾ L-HHS 교육 프로그램 위원회 1.7% 충당금 포함

^{4) 2014}년 6월 13일 환율 기준임 (1\$=1,017,70원).

⁴¹⁾ 이하 National Alliance to End Homelessness (2012)에서 발췌 요약한 것임 (http://www.endhomelessness.org/library/entry/history-of-runaway-and-homeless-youth-act-funding-october-2012, 인출일: 2014, 3, 31).

가족과 다시 결합하거나 혹은 독립해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시키는 등 안정적인 기반(stable foundation)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직업교육, 취업과 관련하여 청소년 본인이 세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LP 프로그램에서 배제된 청소년 수가 2011년 한 해 만 8천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08년 RHYA의 개정으로 홈리스청소년의 실태와 발생률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실시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국가 통계(national data) 없이 홈리스청소년의 문제를 파악하고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2011년 한 해 동안 홈리스청소년에 대한 거리상담(SOP) 건수는 69만 3천명에 달하는 등 예방 서비스로 인해 TLP, BCP 프로그램 역시 목표치를 초월하였고, 미 연방 차원의 청소년 가출 예방 목표(비율)를 초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RHYA의 가출, 홈리스청소년의 서비스 제공 현황은 'NEO-RHYMIS'이라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데 1년에 2차례에 걸쳐 기록을 수집하고 보호하는 청소년의 성별, 인종, 건강, 가정복귀 및 사회복귀 현황, 학업, 가족분위기, 정신건강, 폭력 여부 등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정보시스템을 통한 수혜 현황의 예를 보면 다음 표 IV-5와 같다.42)

1년 간 아웃리치 대상 청소년은 85만 명에 달하며 드롭인센터 이용 청소년은 4만 6천명, 전환생활 프로그램은 약 4천 명에 달하였다(표 IV-5). 수혜 청소년의 연령을 보면 드롭인센터의 경우 16세 이하, 전환생활 프로그램은 17세 이상 청소년의 이용율이 높고(표 IV-6), 두 프로그램의 가정복귀나 자립 등 사회복귀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표 IV-7). 특히 전환생활 프로그램의 의 경우 가정복귀 비율은 약 49%, 자립은 약 25% 정도이다(표 IV-8).

표 Ⅳ-5 아동, 청소년 수혜 규모

(단위 : 명, %)

구분	수혜자(청소년)	회계연도 증감 % (2009 / 2010)
거리 아웃리치 프로그램(SOP)	852,022	+0.79
드롭인센터 프로그램(BCP)	46,609	+8.46
전환생활 프로그램(TLP)	4,004	-8.12

^{*} 출처: National Alliance to End Homelessness(2011), http://www.endhomelessness.org/library/entry/national-rhya-program -utilization, (인출일: 2014.4.7)

⁴²⁾ National Alliance to End Homelessness(2011). http://www.endhomelessness.org/library/entry/national-rhya-program -utilization, (인출일: 2014.4.7)

표 Ⅳ-6 수혜 아동, 청소년 연령 분포(2010년)

(단위 : 명)

		(211 0)
연령대	드롭인센터 프로그램(BCP)	전환생활 프로그램(TLP) ¹⁾
12세 미만	2,846 (6.1%)	_
12-14세	14,219 (30.5%)	_
15-16세	18,296 (39.3%)	208 (5.2%)
17-18세	10,672 (22.9%)	1,840 (46.0%)
 18세 이상	576 (1.2%)	1,956 (48.8%)

^{*} 출처: National Alliance to End Homelessness(2011). http://www.endhomelessness.org/library/entry/national-rhya-program -utilization, (인출일: 2014, 4, 7)

표 N-7 안전 및 적절한 출구(Safe and Appropriate Exits)¹¹ 현황

구분	안전 및 적절한 출구 확보 규모 비율 (2010년)		회계연도 증감(명) (2009/2010)	회계연도 증감(%) (2009/2010)
드롭인센터 프로그램 (BCP)	42,067	92.5%	+7.66%	-0.21%
전환생활 프로그램 (TLP)	3,348	87.3%	+5.45%	+1.04%

^{*} 출처: National Alliance to End Homelessness(2011), http://www.endhomelessness.org/library/entry/national-rhya-programutilization, (인출일: 2014, 4, 7)

표 N-8 전환생활 프로그램(TLP)의 출구로서 생활환경

78	청소년		회계연도 증감(명)	회계연도 증감(명)	
구분 	빈도	%	(2009/2010)	(2009/2010)	
보호자와 재결합	1,891	49.8%	+2.32%	-2.16%	
자립생활	948	25.0%	+15.32%	+10.62%	

^{*} 출처: National Alliance to End Homelessness(2011). http://www.endhomelessness.org/library/entry/national-rhya-programutilization, (인출일: 2014, 4,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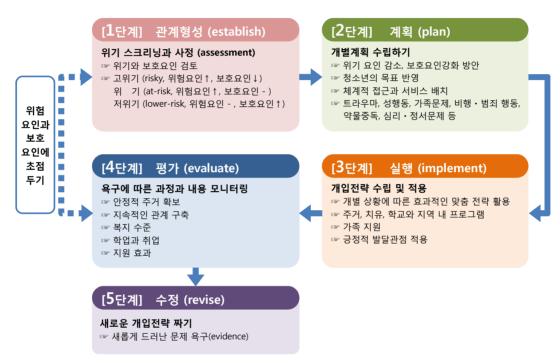
홈리스청소년(Unaccompanied youth)에 개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 상황에 대한 스크리닝이다. 먼저 착수 단계로 위험요인(risk factors)과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을 사정하고, 두 번째로 위험요인은 감소시키고 보호요인은 증가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대상

^{*} 주: 1) 16세 이상만 대상으로 함.

^{*} 주: 1) 안전 및 적절한 출구 지원(즉, 가정 및 사회복귀)은 드롭인센터 프로그램의 경우 길거리 혹은 모르는 곳(unknown) 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제외함. 전환생활 프로그램 역시 쉼터로, 길거리로, 모르는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제외함.

장

청소년 개인의 목표를 반영한 개별화된 개입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주거, 학업어려움, 지역 내 프로그램 이용 등 실제적인 실행이 이루어진다. 네 번째로 안정적인 주거의확보 여부, 지속적인 관계의 구축 등 개입 효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문제나 욕구가 있을 경우 처음 단계부터 다시 시작하고 마지막으로 계획을 수정하여 새로운개입계획을 수립한다. 이상의 개입 과정을 요약한 것이 아래 그림 IV-2 이다.



* 출처: Unaccompanied Youth Intervention Model, http://www.rhyttac.net/sites/default/files/resources/Unaccompanied %20Youth%20InterventionModel.pdf (인출일 : 2014년 11월 11일)

【그림 Ⅳ-2】홈리스청소년(unaccompanied youth) 개입 모형

2) 프랑스⁴³⁾

프랑스의 가출청소년, 홈리스청소년을 위한 대표적인 보호, 지원단체는 다음과 같다.

⁴³⁾ 이 부분은 H. R. Kim-Lescarret 연구위원(프랑스 파리 소르본대학교 유럽문화연대연구소)의 원고를 김지연 연구위원(한 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췌·요약한 것임.

(1) Paris Ados Services(PAS)

24시간 운영되며 파리 19구에 위치해 있다. 심각한 가족 간의 갈등 문제, 가출, 폭력, 방황 등으로 인한 주변과 단절상태에 있는 미성년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을 제공한다. PAS의 경우 해당 법률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24시간 동안 미성년자를 익명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매해 평균 50여 개 국의 각기 다른 국적을 가진 500여명의 청소년이 PAS를 이용한다.

(2) Centre français de protection de l'enfance(CFPE)

1947년 사회연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이다. 유아기 아동부터 25세 미만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2012년 실종아동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관(CFPE-Enfants disparus)을 설립하여 '116-000' 번호를 통해 전국적으로 24시간 상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관할 경찰서의 동의하에 실종아동의 프로필을 올려 아동을 찾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도 한다. 실종 혹은 가출로 신고 된 미성년자의 서류는 해당 미성년자를 찾을 때까지 열려 있고 가출청소년의 가족은 CFPE-enfants disparus 상근 법률전문가에 의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받는다.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해당 서류는 경찰, 법무부, 변호사, 사회복지사, 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공유하며 함께 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CFPE-enfants disparus의 재정지원은 법무부, 보건복지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3) Les espaces sante jeunes (ESJ)

12세에서 25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불화, 학업, 진로실패, 가출, 약물복용 등의 문제에 대한 상담과 정보제공, 교육안내와 진로지도 등을 담당하고 있다. 상담과 지원은 익명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4) Missions locales et permanences d'accueil, d'information et d'orientation (PAIO)

Missions locales과 PAIO는 16세에서 25세 연령층의 청소년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직업적, 사회적 통합에 장애가 되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프랑스 전역에 600 개가 설치되어 있다. Missions locales과 PAIO는 청소년에게 개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구직, 훈련 프로그램 등록 절차 안내, 의료, 주거, 법적 권리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한다. 특히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3) 독일44)

독일에서 홈리스청소년 지원사업을 가장 체계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곳은 1993년 베를린에서 설립된 OFF ROAD KIDS 재단으로 그간 약 3천명 이상의 가출, 홈리스청소년을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시켰다. 정부 예산지원은 전혀 없고 Vodafone(이동통신업체), 독일철도, 슈베비시 할 건축은행, HOPE 재단의 정기적인 기부, Pro Sieben, Sat1 등 방송국 모금프로그램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있으며 운영비는 10% 이하이다.

가출청소년이 노숙생활에 적응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모의 가출신고를 접수받아 직접 수색, 접촉하여 가출청소년의 거주지 내 청소년청과 부모, 그리고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복귀계획을 모색하는 것이 기본 업무이다.

사업대상은 법을 근거로 아동청소년(만 18세까지), 청년(만 27세까지), 노숙자 및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만 28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다른 기관에 의해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거리사회사업의 일환으로 각 센터에 배치된 인력은 연중무휴로 거리 순찰을 돌며 가출, 노숙인의 수적 증감을 확인하고 센터로 찾아오는 경우 상담과 지원을 동시에 제공한다.

상시 접촉을 통해 1차적으로 가출청소년과 관계형성을 도모하고 가정, 보호자 및 친지와 생활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타진한 후 여의치 않을 경우 청소년청이 제공하는 보호시설을 연결하거나 재단에서 운영하는 양육시설로 연계한다. 특히 성년기에 달한 청년 홈리스의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취업, 근로가 가능할 때까지 숙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알콜 및 약물중독의 경우 병원, 치료 시설, 요양 시설로 연결한다.

거리 아웃리치를 통해 파악된 정보는 'OFF ROAD KIDS' 재단 내에서 공유하여 중복된 인력 투입을 피하도록 조정한다. 또한 아웃리치 센터 간의 연계를 통해 도시를 넘나드는 이동 홈리스청소년에 대한 관리와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을 가족이나 청소년청에

⁴⁴⁾ http://offroadkids.de/kurz-buendig.html에서 발췌한 것으로, 전지현(독일 튀빙엔대학교, 박사수료)의 원고를 김지연 연구 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요약한 것임.

인계하는 것으로 업무를 종결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계속적인 상담이나 무료 상담전화를 통해 수 년 간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4) 기타 국가의 거리아동 지원사업

여기에서는 아웃리치, 민간 차원의 사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국제기구가 지원하는 개발도상국가 비정부기구(NGO)의 거리아동을 위한 사업, 프로그램을 일부 제시하였다(Volpi, 2002, pp.8~29)45). 특히 개인단위, 가족단위 등 미시체계와 지역사회단위, 법제 등 거시체계, 다기관 협력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 전략을 살펴보았다.

※ 거리아동의 위기수준 분류

1수준 위험군: 가족, 학교, 사회에 소속된 상태이지만 빈곤 등 그들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 장래에 위기상황에 놓일 위험이 있는 청소년. 이 단계의 청소년에게는 예방적 성격의 각종 프로그램(학교지원, 건강증진, 레크리에이션, 사회통합, 직업교육, 가족에 대한 생계지원 등)이 효과적이며, 아동복지 및 가족복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을 포함함.

2수준 위험군: 학업중단, 학대, 아동근로 등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고 사회적 지지망이 미흡함. 2수준 위험군에 적용되는 프로그램은 특수한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의 욕구를 전문적으로 사정하고 평가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 1수준 위험군에 대한 프로그램과 차이가 있음.

3수준 위험군: 다양한 위험 요소를 하나 이상 경험하고 있고 가족, 사회와의 유대가 매우 빈약하거나 단절된 상황임. 거리 배회, 노숙, 홈리스 등을 포함하며 그룹홈, 드롭인센터, 보건, 교육, 직업교육, 심리정서 상담, 법률서비스 등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센터 내 혹은 거리에서 제공하여야 함.

* 출처: Volpi(2002), p.4.

- (1) 거리청소년 지원사업
- ① Ciudad Don Bosco 프로그램
- 소재지 : 콜롬비아 메들린(1965~현재)
- 대상 :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⁴⁵⁾ 아래의 내용은 World Bank working paper에서 노숙청소년 국제회의에 소개된 18가지 프로그램을 문헌분석한 내용 (Volpi, 2002, pp.8~29)을 발췌·요약한 것이다.

- 서비스 유형 : 포괄적 서비스(주거지원 포함), 연간 400명 정도 지원
- 개요: 주간에 거리에서 프로그램 제공, 야간에 주거지원, 입소 청소년에 대한 행동변화, 학업수행, 사회화, 자존감 향상 활동을 제공하고 근로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제공함. 청소년의 기초건강, 영양상태, 심리·사회적 상태, 직업적 욕구 평가를 포함함.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전문가 집단이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청소년을 관찰(건강검진 포함), 상담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며, 대상자의 심리·교육·영양·건강 욕구를 최대한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획을 수정함.

※ evidence of impact : 프로그램 이수에 따른 졸업장 수여, 민간·공공 분야 재정지원 확보

② 노숙 근로청소년 지원사업

- 소재지 : 포르투칼 리스본(1989년~현재)
- 대상 : 노숙청소년과 가족
- 서비스 유형 : 아웃리치, 교육서비스 등 연간 100건 이상
- 개요 : 노숙청소년과 기족이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자원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함. 가족상담, 대안학교(alternative school) 운영을 통한 학업중단 예방에 초점을 두고 교육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함.
 - ** evidence of impact : 1989년~1994년까지 참여 아동의 59%가 학업에 복귀, 전체 아동의 33%가 가정복귀 및 쉼터에 입소하여 생활하게 됨.

③ 살바도르 엑스(Salvador Axê) 프로그램

- 소재지 : 브라질(1990~ 현재)
- 대상 : 아동·청소년
- 서비스 유형 : 아웃리치, 포괄적 서비스 등 연간 3천 건
- 개요: 아웃리치 버스에 재미있는 활동거리를 비치하여 버스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면서 음식 제공, 건강 상담, 법률적 문제에 대한 상담(서류 발급 포함), 재정적 지원을 포함함. 이후 Axê 훈련센터에 가입을 권유하여 16세 이상 청소년에게는 직업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취업을 지원함.

- ※ evidence of impact : 중복지원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함.
 823명 중 768명이 가정으로 복귀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으나 취업지원의 경우 자국 내 높은 실업률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성공을 거두지 못함.
- ④ 노숙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지원
- 소재지 : 루마니아 부쿠레슈티(1994~현재)
- 대상 : 청소년
- 서비스 유형 : 아웃리치, 포괄적 서비스 등 연간 145건
- 개요: 청소년의 문화적 배경과 개별 역량, 희망에 따라 개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임. 신분증명서 취득을 도와주거나 직업상담 및 교육(훈련)을 통해 취업 즉, 노동시장과 사회에의 통합을 지원함. 이후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가정복귀를 지원하거나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각종 사회기술 습득과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함.
- ※ evidence of impact : 지원을 받은 27명 가운데 15명은 독립하여 센터 밖에서 자력으로 생활하고 6명은 가정복귀, 나머지는 센터에서 생활하고 있음, 효과성을 바탕으로 전국으로 확대 운영함.
- ⑤ 브리지 프로그램(The Bridge over Troubled Waters)
- 소재지 : 미국 보스턴(1970~현재)
- 대상 : 청소년(16~22세)
- 서비스 유형 : 아웃리치, 포괄적 서비스 등 연간 4천 건
- 개요: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거리 아웃리치 상담, 의료 차량을 활용한 무료 진료, 치과 전용 병원을 포함한 연계된 병원과의 연결(bridge), 약물중독 등 입소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입원 치료를 지원함. 주 7일, 하루 24시간 긴급 주거지원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과 가족의 의사소통을 중재함.
 - · 전환생활 주간 프로그램(transitional day program) : 레크리에이션을 포함한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조식, 중식을 제공함.
 - · 상담, 교육, 입직 전 프로그램(preemployment program) : 상담은 약물중독 치료상담,

개인 상담, 기초적 생존 서비스, 가족상담, 의뢰를 포함하며 강제성이 없이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문제의 근원을 파악함. 근로를 희망하는 청소년에게 교육, 입직전 프로그램, 가이드, 직업훈련을 제공함. 고등학교 수준의 문해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프로그램(adult education classes)을 개설해 두고 있고 전문가 양성, 컴퓨터, 구직, 생활기술훈련과 결합된 교육과정을 병행하여 제공함.

- · 주거지원: 전환생활 프로그램, 한부모 주택, 조합원 아파트 등을 제공하여 청소년이 안전한 양육환경 속에서 생활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 자존감과 역량을 회복하여 지역사회로 복귀하여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을 둠.
- ·의뢰서비스 : 병원, 정신보건센터, 홈리스 쉼터, 다문화서비스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 서비스 제공기관과 네트워크 및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활용함.
- ※ evidence of impact: 전체 참여자 중 72%가 기초학력 증진 유의하게 변화함. 전체 참여자의 35%는 고등교육 및 훈련 이수, 근로 경험이 전혀 없는 대상자 중 80%가 취직, 35%가 가정 복귀, 54%가 약물 및 알코올 감소 등의 효과를 보여 통합적 접근의 성공 사례로 평가되어 미국 전역으로 확대 추진

⑥ Casa Alianza 프로그램

- 소재지 :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멕시코(1981~현재)
- 대상 : 아동·청소년
- 서비스 유형 : 거주지원 포함 포괄적 서비스 등 연간 8,821명
- 개요: 이 프로그램은 노숙생활을 개선하는 것 보다는 노숙을 청산하는데 초점을 둠. 따라서 노숙청소년에게 옷, 음식을 제공하기 보다 가정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그룹홈, 대안양육에 입소시켜 위기관리센터 입소를 권하는데 초점을 둠. 따라서 1차적으로 가족과의 유대관계 회복을 위해 단계별로 지원하는데, 청소년 및 기족과의 사전 면담을 통해 가정복귀가 가능한 수준인지를 면밀하게 파악함. 이후 대상 청소년의 특수한 상황과 개별 욕구를 감안하여 상담, 치료, 가족에 대한 생계비 지원, 직업훈련, 지역사회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지원하는데 가족이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여 최소 2년 이상의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 evidence of impact : 가정복귀를 포함한 가족과의 재결합 성공률이 88%에 달함.

⑦ Vivere(생활) 프로그램

- 소재지 : 이탈리아 플로렌스(1995~1997)
- 대상 : 청소년
- 서비스 유형 : 아웃리치 보건 서비스 등 연간 500명~1천명
- 개요 : 이동차량을 활용하여 아웃리치를 통한 치료 및 보건상담 특화 제공, 이 외 노숙청소년 의 동선과 자주 모이는 장소와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운영함. 청소년이 지역사회 내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원조하며 시(市)의 각종 청소년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함.
 - ※ evidence of impact : 고위험군 청소년 2천 명이 에이즈 감염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이수하고, 또래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일에 적극 참여함.
 - ⑧ 건강 또래상담(health peer counseling) 프로그램
- 소재지 : 가나 쿠마시(1987-1993)
- 대상 : 아동·청소년(24세 이하)
- 서비스 유형 : 아웃리치 보건서비스 등 연간 1,500명
- 개요: 2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에이즈 감염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또래에게 전달하는 또래상담자(peer promoters)를 양성하는데 초점을 둠. 또래상담자는 또래 친밀감을 활용하여 노숙청소년에게 콘돔, 피임약을 지급하고 사용방법을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들의 욕구 파악, 서비스 정보를 제공함.
 - ※ evidence of impact : 2,500여 명의 청소년이 또래상담자로 활동하였고, 가나와 카메룬 10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됨.
 - (2) 가족 단위(family-level) 프로그램
 - ① 주코니 모델(The JUCONI model)
- 소재지 : 멕시코 푸에블라(1988~ 현재)

- 대상 : 아동·청소년(5~19세)과 그 가족
- 서비스 유형 : 주거지원 포함 아웃리치 포괄 서비스 등 연간 450명
- 개요: 노숙청소년, 가족과 생활하는 근로청소년,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재결합(reintegration)을 목표로 함. 1단계 '우호관계(operation friendship)' 단계에서는 1~6개월 간 응급의료서비스, 상담, 학교수업 보충 등을 제공함. 2단계 '집중변화 (intensive change)' 단계에서 개별적인 상황과 욕구에 따라 생활기술, 교육, 학교복귀, 구직지원 등 가족과 사회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가정이나 대안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도 주간보호를 제공함. 3단계 '지속적 변화(sustaining change)' 단계에서는 2~3년 동안 청소년과 가족을 찾아가는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고 원 가정, 위탁가정, 지역사회 등에서 사후관리를 제공함.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예방(prevention)이며, 노숙청소년이 가정으로 복귀하면 이들의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전 가족을 대상으로 '우호관계'단계부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 ※ evidence of impact: 참여 청소년 중 80% 이상이 1년 안에 교육, 직업, 인성 발달 면에서 유의한 진전을 보였으며, 1994년 유네스코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전망있는 프로그램'으로 평가 받은 바 있음.

2 American family inns

- 소재지 : 뉴욕시티(1991~ 현재)
- 대상 : 홈리스가정 아동(13세 이하)
- 서비스 유형 : 주거지원, 교육 서비스 등 1991년 이후 2천명 이상
- 개요 : 홈리스가족에게 홈스테이를 제공하고 거주지 내에서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 구직 알선, 가족지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 특히 홈리스가정 내 아동에게 지역 내 아동발달센터에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상담을 실시함. 부모와 학습계약(learning contract)을 맺고 (브라운 스톤 공립학교)방과 후 교육을 함께 제공함.
 - * evidence of impact : 브라운 스톤 공립학교 홈리스 아동의 학교 출석률은 92%에 달함(일반 홈리스 아동은 63% 수준). 6개월 이후 읽기 영역 점수는 40~60%까지 향상되며 수학은 50%까지 향상되는 등 아동의 발달과 가족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3) 지역사회 단위(community-level) 프로그램
- ① 크루세로(Crucero) 프로그램
- 소재지 : 멕시코시티
- 대상 : 아동·청소년, 지역사회
- 서비스 유형 : 지역사회 인식개선
- 개요: 노숙청소년의 문제는 단기 원조보다는 가족,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을 통해 해결되어야한다고 보고 지역사회의 제도가 이러한 활동에 참여해야 하고, 지역사회 내 자원을 동원할수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함. 따라서 택시, 버스운전사, 가게 주인 등지역사회 내 주민이 노숙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이들로 하여금 새롭게 노숙생활을 시작한 청소년이 얼마나 되는지 모니터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는 활동이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노숙청소년의 형제자매를 접촉하고 이들에 대한 조기개입을 강조함.
 - ※ evidence of impact : 지역사회 내 시민이 노숙청소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지역사회 서비스와 가족관계가 강화됨.
 - ② 노숙여자청소년 보호 및 재활 지역사회 동원 프로그램
- 소재지 : 필리핀 파사이시티(1995~99)
- 대상 : 아동, 여자청소년, 지역사회
- 서비스 유형 : 지역사회 인식개선
- 개요: 노숙여자청소년에 대해 지역사회가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고취하고, NGO와 정부, 자원봉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하며, 아웃리치 및 드롭인센터 운영을 통해 18세 이하 노숙여자청소년에게 주거지원, 보호, 재활서비스 제공 및 인권 교육, 가족 참여를 주요 내용으로 함.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에서 서비스를 분산 담당하는 것이 특징임.
 - ※ evidence of impact: 프로그램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상황이나 지속적, 반복적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필리핀 'CHILDHOPE'의 기술 원조가 제공되었고 유사 프로그램이 근교 도시로 확대됨.

③ The Undugu Society 프로그램

- 소재지 : 케냐 나이로비(1972~ 현재)
- 대상 : 아동, 청소년, 지역사회
- 서비스 유형 : 지역사회 개발, 직업 훈련 및 구직 지원
- 개요: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중등 교육과 장학 지원, 지역사회 보건 프로그램, 지역 환경 개선과 주거지원, 직업훈련 실무교육, 구직 지원 등을 포함함. 특히 지역사회 내 예술인과 아동, 청소년을 연결하여 도제식 교육훈련과정 및 경영기술교육 등을 제공하고 교육 이수 후 관련 단체 및 정부에서 자금을 제공하여 (자립을)지원함.
 - ** evidence of impact :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최소 2천 명에 달하는 청소년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1990~1995년 사이에 106개의 소규모 기업이 설립되었고 399명의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다만 Undugu 대안 학교가 미인가학교로 학력취득과 관련된 문제점은 해결이 요구됨.

(4) 정책 및 법 관련 프로그램(programs geared toward policies and laws)

정부부처와 UNICEF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대안 프로젝트(alternative street children project)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UN 아동권리협약과 아동권리회의(ICRC)의 원칙을 지지하며 이러한 원칙이 법제 내에 통합될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이 대표적이다. 브라질의 경우 1988년에 이미 ICRC의 기본 내용이 적용된 새 헌법 제227조를 승인했으며, 1990년에는 아동·청소년법이 통과되어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이슈의 조속한 의사결정과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이 외 중앙과 지방정부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체계 구축,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 개선 작업, 노숙청소년 관련 법률 마련 노력, 노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규정화하는 복지개혁(child welfare reform)을 포함한다.

(5) 다기관 프로그램(Multi-agency programs)

다기관 협력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내 건강, 복지 등 기초적인 서비스 인프라를 확대하여 노숙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이다. 특히 조사결과 통합적 접근방식이 노숙청소년 지원에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고 추가적인 가출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숙청소년 이 공교육에서 이탈하지 않거나 학교복귀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재활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기구의 연계 뿐 아니라 민간부문간의 연계도 강화되어야 하며, 이 경우 아동·청소년, 가족과 지역사회, 건강증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 효과로 인해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하다.

4. 시사점⁴⁶⁾

1) 정책대상의 범위와 특성

먼저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정책에 있어 가출(runaways), 실종(missing), 홈리스(homeless), 무의탁(무연고, unaccompanied youth) 등 정책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다. 예로 보호자는 실종이라고 신고하지만 자발적인 가출일 수 있고, 보호자가 가출이라고 하더라도 탈출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출, 홈리스의 원인을 고려하여 정책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배제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제도와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 국가들은 주거취약성에 초점을 두고 미성년 청소년 뿐 아니라 청년층을 포괄하여 20대 중반까지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둘째,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에서 청소년 가출을 우범행위로 규정하여 가출청소년에 대한 선도를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을 포함한 유럽국가의 경우 청소년의가출에 있어 부모의 부양의무를 중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었다. 즉 미국의 경우 보호자에 알리지않고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프랑스는 부모가 자녀의 가출을 인지하고도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유기죄에 해당하여 7년 징역, 10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가출하더라도 부모는 이들을 보호하고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청소년의 가출을 비행이 아닌 부모, 가정에서의 유대로부터 멀어지는 과정으로 보고 이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개입과정에서도가출청소년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⁴⁶⁾ 이 부분은 김지연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함.

셋째, 주요국들의 경우에도 청소년기 가출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원가정 뿐 아니라 위탁가정(foster care)에서의 가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가출 이후의 피해정도(harm/risk)와 가시성(visibility)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가출청소년은 가출기간 동안 도움을 자주 요청하지 않고 성인과의 접촉은 가능한 피하며 친구 등 비공식적인 원조에 의존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을 조기에 찾아내고 지원하여 이차적인 위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법제 현황과 서비스 전달체계

첫째,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기출, 홈리스청소년 지원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 주도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독일의 경우 Off Road Kids 재단과 같은 정부예산 지원 없이 민간기관이 주축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중앙지원기관을 설치하고 전국단위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둘째, 프랑스의 경우 내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관련 인프라설치와 전달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다만 긴밀한 연계의 배경에는 각 부처별 주요 정책대상과 그에 따른 인프라 간 특성에 차별성을 두고, 검찰사업을 경찰에 위임하는 등 예산의 출처와 관계없이 효율성 측면에서 사업 위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셋째, 청소년의 가출, 실종에 있어 학대(방임)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다. 청소년이 가정을 나오게 된 배경에 초점을 두고 면밀한 사정(assessment)이 필요하며 안전에 대한 확인 (safety check)없이 가정복귀는 이루어질 수 없고 청소년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친권에 대한 제한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가정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업중단 예방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부처 간의 협업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청, 교육부는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학교의 학사운영보다 학생의 관점에서 학적, 수업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쉼터, 가정형 Wee센터와 같은 교육적 주거(foyer)를 운영하고 학력 취득 후 대안적인 거주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자립을 전제로 학업, 주거에 대한 동시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가출청소년이 시설입소, 지원제도 및 서비스 이용 시 익명성을 담보해야 하는지,

보호자 또는 경찰에 신고를 전제로 하는지는 국가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이용서비스의 경우 익명성을 보장하였고, 숙박과 같은 입소지원은 24시간 이내 긴급지원은 익명성을 보장하나 (지정된 시설만) 단기, 중장기적 보호는 신원에 대한 확인과 보호자에 대한 고지를 전제로 하였다. 이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와 피학대여부의 조사를 기반으로 개입 및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를 강조하기 때문에 쉼터와 같은 보호시설 이용 시 부모에게 위탁비용을 지불하도록 한다. 독일의 경우 저소득 가정의 경우 국가가 보호비용 전액을 부담하나, 보호자 양측에 양육비용으로 최대 월 710유로(한화 약 100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피학대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해서 위탁가정에 보호하거나 청소년쉼터 이용 시에 부모의 소득, 재산 정도에 관계없이 부모의 비용부담이 전혀 없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3)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사례

먼저 가출청소년 대상 사업 및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욕구(needs)에 대한 사정이다. 또한 정책대상으로서 이들의 특성을 감안하면 적극적 발굴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연속적인 주거안정성 확보, 그리고 자립지원에 핵심을 둔다. 미국의 경우 2008년부터 가출, 홈리스청소년 지원에 투입된 누적 예산이 1조를 넘어서고 있다. 가출, 홈리스청소년의 정확한 규모 추정이 불가한 상황에서 이들의 취약성에 초점을 두고 전향적인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청소년이 집을 나가는 이유와 관계없이 '가정 밖'이라는 상황 자체가 공적 체계의 개입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전제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둘째, 미국 역시 연방정부 차원의 홈리스청소년의 실태와 발생률 분석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NEO-RHYMIS'라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1년에 2차례 기초자료 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가출, 홈리스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문제와 욕구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며, 근거를 기반으로(evidence-based) 사업과 프로그램을 조정, 보강하고 있다.

셋째, 쉼터의 경우 입소기간이 있지만 절대적이지 않으며 주거에 대한 대안 없이 퇴소시킬 수 없다. 가정과 사회복귀는 '안전하고 적절한 출구(safe and appropriate exits)' 인지에 대한 확인을 전제로 한다.

넷째, 보호시설의 경우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독일의 경우 민간재원으로 설립되어 전국 조직을 갖추고 있는 Off Road Kids 재단 소속 거리사회사업가들은 연중무휴로 거리 순찰을 돌고, 아웃리치와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과의 상시접촉을 통해 관계형성을 도모하고 가정, 보호자 혹은 친지와의 동거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별도의 보호시설을 연결하거나 사회보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홈리스의 경우에도 타 시설 연계 시 서비스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지속적으로 상담을 제공하는 등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국제기구의 개발도상국 거리아동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숙청소년은 사회자본 악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미흡한 주거지원, 학교부적응과 방임·학대, 군사적 충돌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전문가에 의한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Volpi, 2002, p.7). 따라서 훈련된 전문가(trained professionals)의 양성과 배치가 필수요 건으로 지적된다. 청소년과 가족의 욕구를 평가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가 필수적인 운영요건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 발달에 초점(development-related focus)을 두어야 한다. 단순한 원조는 청소년과 가족, 사회를 연계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아웃리치 전문가를 생존전략으로 활용하는 법'을 터득하여 의존성을 높이게 하는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발달에 초점을 둔접근은 청소년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들과의 의사소통에 더욱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고 관계를 기반으로 금전관리 등 실용적인 생활기술교육과 사회통합에 기여할수 있다. 특히 청소년이 가정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며 청소년뿐 아니라 가족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가정복귀 여부를 확인하고 위탁가정, 입양, 대안양육 등의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개별적 접근이 성공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재결합이 장기적인 성공을 거두려면 사후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 부모가함께 상담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거나 가족에 대한 재정적 원조를 통한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한다.

한편 노숙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혹은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학습뿐 아니라 감수성 훈련(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예, Axê 프로그램).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한계로 전통적인 직업교육(훈련)만으로는 청소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적응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직업윤리와 생활기술 습득 등 장기간에 걸쳐 역량과 욕구를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이 전문직 혹은 특정 직종을 얻고 싶다는 희망을 표현하는 것에서부터 직업세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정서적 문제를 하나씩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한다. 참고로 실업률이 높은 경우 청소년에 대한 단순 직업훈련은 성공 확률이 낮다는 점은 이미 확인되었다.

셋째, 청소년이 현재 있는 곳에서 접근해야 한다(reaching children where they are). 노숙청소년에게 노숙을 청산하라고 억지로 강요할 수 없고 이들이 원한다면 노숙을 할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대안이 얼마든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원한다면 생활방식을 바꿀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기를 바라며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다. 노숙청소년 상당수가 성인들로부터 정신적 외상(trauma) 경험이 많으므로 섣부른 판단을 금하고 상호작용의 유형은 그들의 스캐쥴과 일상생활의 리듬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친구가 되고 서서히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현재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단계별 전환방식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예, Axê project 프로젝트, JUCONI 프로젝트, Ciudad Don Bosco).

넷째, 개별적인 맞춤형 서비스가 효과적이다. 가정에서 이탈하고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은 매우 다양하며 이들이 가정으로 복귀하게 될 때 부딪치는 상황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계획과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다섯째, 참여와 신체·정신 건강 보호가 요구된다.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대상 청소년을 직접 참여시키는 것은 자신에게는 물론 유사한 상황에 있는 또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력자를 발굴한다는 점에서도 도움이 된다. 또한 노숙청소년은 부상, 영양결핍, 호흡기 및 내과적 감염, 피부질환, 성별, 약물중독 등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겪고 있는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 일체의 판단은 배제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여 현재의 생활태도를 스스로 바꿀 수 있도록 조력하는 접근이 효과적이다.

여섯째, 가족 및 지역사회가 참여하여야 한다. 가족, 학교, 지역사회가 이들을 받아들이고 보살필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정 내 문제로 인해 가출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노숙청소년의 형제자매를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은 효과적인 예방 전략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자체를 강화하는 노력 역시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로비와 옹호가 필요하다. "우리 주변의 사회문제는 지식과 수단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만 변화시키는 역량(power)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노숙청소년의 자립지원프로그램은 단지 부분적인 해결책 역할만 할 뿐이다. 이들은 교육, 사회보호, 건강, 아동 노동, 청소년 범죄, 사회복지, 입양 등 다양한 사회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NGO가 나서서 이들을 위해 로비와 옹호활동을 통해 (법제)환경을 변화시키고 서비스 효과를 강화시켜야 한다. 법률 개정 및 제정에 기여하고 대중매체가 관심을 갖도록 한다면 대국민 인식개선에 기여하게 된다.

여덟째, 서비스의 통합, 네트워킹과 기관 간 협력적 개입이 요구된다. 노숙청소년의 건강, 교육, 생활, 정서적 욕구는 각각 따로 해소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민간부문의 노력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민간의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공공부문에서 적극 발굴하고 확대, 적용시켜야 한다. 특히 위기청소년은 자원 간 네트워크에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청소년과 활용가능한 서비스를 상호연결시키는 노력이 적극 이루어져야 한다.

아홉째, 선의(goodwill)만으로는 노숙청소년의 생활에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원조(assistance)에만 초점을 둘 경우 의존성을 강화하여 노숙생활을 청산하려는 인센티 브가 없어지는 부작용 역시 존재하므로 대상 청소년이 가족, 학교,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특히 전문가에 대한 교육, 인센티브를 포함한 적정 수준의 급여 보장, 사업에 대한 모니터와 평가, 지역사회 내 기관 간의 협력, 로비와 자문 및 네트워킹 영역에 우선적인 예산투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 V 장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 1. 가출청소년 유형과 특성 분석
- 2. 노숙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지원요구 분석
- 3. 청소년쉼터 보호지원 여건 분석
- 4. 시사점

제 V _장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이 장에서는 정책대상인 가출청소년의 특성과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추진 여건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청소년 가출 관련 주요 변인을 기준으로 정책대상인 가출청소년의 집단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2차 자료분석을 실시하고,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한 노숙청소년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이와함께 전국 청소년쉼터 전수를 대상으로 종사자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가출청소년 유형과 특성 분석⁴⁷⁾

1) 표본의 특성

가출청소년의 특성 분석을 위해 2차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2012년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의 위기청소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이 데이터에서 위기청소년은 소년원생 (63.3%), 청소년쉼터(27.6%), 보호관찰 청소년(9.1%)을 포함하며 총 1,351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같은 자료에서 이들의 학교급 특성을 추가로 살펴본 결과 학교 밖 청소년(42%)이 가장 많고, 소년원학교 재학(29.9%), 고등학생(13.6%), 중학생(13%), 무응답(1.6%) 순이었다. 이와 함께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에서 파악할 수 없는 가출청소년의 쉼터 이용특성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3년 여성가족부의 가출팸 실태조사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였다. 조사 대상은 쉼터청소년(57.6%), 거리청소년(42.4%)을 포함하며 총 259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2차자료 분석에 투입된 표본의 특성을 요약한 것이 아래 표 V-1이다.

⁴⁷⁾ 이 부분은 정소연 교수(서울여자대학교), 김지연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함.

			(건커 · 6, 4)
		사례수(명)	비율(%)
위기청소년 ¹⁾		1,351	100.0
	소년원	855	63.3
유형	청소년쉼터	373	27.6
	보호관찰소	123	9.1
	가출청소년 ²⁾	259	100.0
성별	남자	147	56.8
싱늴	여자	112	43.2
쉼터 거주 여부	쉼터청소년	149	57.6
점디 겨우 어두	기기원시크	110	40.4

110

42.4

거리청소년

2) 분석방법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도출된 청소년 가출 관련 주요 기준으로 가출원인, 가정생활만족도, 가출빈도, 성별, 가출 후 보호시설 이용 경험 유무, 쉼터 유형 등 여섯 가지를 선정하고 이 기준을 근거로 가출청소년을 분류한 후 분류된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특히 기존 선행연구와 같이 '가출청소년들을 유형화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검증을 목적으로 다변량판별분석(Multivariate Discriminant Analysis)과 기초분석을 주된 분석 방법으로 사용하였고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⁴⁸⁾ 이 연구에서의 판별분석 실행 및 분석결과 해석의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판별분석의 실행에 앞서 가출원인, 가정생활만족도, 가출빈도, 가출 후 보호시설 이용 경험유무, 성별, 쉼터 유형에 기초하여 가출청소년을 각각 2개 또는 3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가출원인에 기초한 경우, 가출청소년들은 가족관련 이유로 가출한 청소년 집단,

^{*} 출처: 여성가족부(2012), 유서구 외(2012)

^{*} 주: 1) 여성가족부(2012)의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2) 유서구 외(2012)의 가출팸 실태조사를 참조함.

⁴⁸⁾ 판별분석은 종속변수가 명목변수 또는 비계량적(non-metric)인 범주형 변수이고 독립변수들이 계량적(metric) 변수일 때 사용할 수 있는 분석방법 중 하나로, 사전에 미리 규정된 집단(종속변수의 범주들)의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독립변수들의 선형결합(판별함수)을 도출한 후, 이에 기초하여 각 집단의 중심값(group centroid) 혹은 판별점수가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집단의 중심값이 모두 같다는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면 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들에 근거할 때, 종속변수의 범주들은 서로 각기 구별되는 특성을 갖는 집단이라 볼 수 있다.

학교관련 이유로 가출한 청소년집단, 기타 이유로 가출한 청소년집단으로 분류되었다.

- 판별분석의 첫 단계로 연령, 가정경제수준, 비행행위 등 가출청소년과 관련이 있는 독립변수 군을 선정한 후 판별분석에 동시 투입하여 판별함수를 도출하고 각 함수의 유의미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함수가 도출된 경우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기준에 의거한 가출청소년의 유형화가 실증적 근거가 있다고 보았다.
- 유의미한 판별함수가 도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각 집단의 차이가 크지 않거나, 판별함수에 근거하여 각 사례들을 분류할 때 오류가 많다면, 도출된 판별함수의 유용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도출된 판별함수의 유용성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윌크스 람다에 대한 카이제곱 검증, 정준상관계수, 집단예측 적중률(hit ratio)을 파악하였다. 윌크스 람다는 '총 변량(total variance)분의 집단 내 변량(within-group variance)'으로이 값이 낮을수록 판별함수의 판별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별점수와 집단의 관계를 보여주는 정준상관계수는 값이 높을수록 판별함수의 판별력이 크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 값을 제곱할 경우 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들이 판별점수 변량의 몇 %를 설명하는지를 알 수 있다. 집단예측 적중률은 판별함수에 기초하여 각 사례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분류되었는지 그 비율을 가리키는데, 이 값이 비율우연기준치를 높이 상회할수록 판별함수의 유용성이 크다고 본다.
- 세 번째 단계에서는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 계수와 판별적재값을 살펴보았다. 정준판별함수 를 통해서는 도출된 함수에서 각각의 독립변수들의 중요성 정도를 알 수 있으며 판별적재값은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와 독립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 보통 절대값이 3.0이상일 때 유의한 것으로 해석한다.
- 네 번째 단계에서는 유형화된 가출청소년 집단들이 각각의 독립변수에 대해 어떤 평균값을 가지는지를 확인하고 평균의 동질성 여부를 검증하였다. 평균이 이질적인 독립변수들에 대해 각 집단이 차별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각 집단이 어떤 면에서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검토하였다.
- 마지막으로 산점도를 통해 유형화된 가출청소년 집단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였다. 도출된 함수가 2개인 경우 함수1과 함수2를 각각 X축과 Y축으로 하는 산점도를 제시하였으나 단 하나의 함수만이 도출된 경우 가출청소년 집단간 차이가 두드러졌던 2개의 독립변수를 선정하여 이들을 각각 X축과 Y축으로 하는 산점도를 제시하였다.

3) 변수측정

(1) 종속변수

각 판별분석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된 5개의 범주형 변수의 측정과 부호화 정보를 요약한 것이 표 V-2이다. 종속변수는 가출청소년 유형화, 집단분류기준이라는 점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가출청소년이 어떻게 유형화되었는지를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종속변수인 '가출원인'을 기준으로 세 개 범주로 분류되었다.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에서 청소년이 가장 최근에 했던 가출원인을 묻고 있는데 응답범주는 ① 가출에 대한 호기심으로, ② 부모님 등 가족과의 갈등, ③ 가정의 경제형편이 어려워서, ④ 학교에 다니기 싫어서, ⑤ 공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⑥ 친구나 선후배의 권유로, ⑦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⑧ 사회경험을 쌓고 싶어서, ⑨ 기타 등 총 9개이다. 이 연구에서는 ②, ③을 묶어 '가족관련 이유'로, ④, ⑤를 묶어 '학교관련 이유'로, 그리고 나머지를 '기타'로 범주화하여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두 번째 종속변수인 '가정생활만족도'에 따라 가출청소년은 세 개 범주로 유형화되었다. 이 변수는 원래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과 같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①, ②를 묶어 가정생활에 불만족 하는 집단, ③은 가정생활만족도가 보통인 집단 ④, ⑤ 묶어 가정생활에 만족하는 집단으로 범주화하였다.

세 번째 종속변수는 가출빈도로 이를 기준으로 가출청소년은 2개의 범주로 구분되었다.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에서 가출빈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범주는 한 번도 없다, 1회, 2회, 3~4회, 5회 이상으로 서열척도로 제시하였고 생애가출경험이 아닌 '최근 1년 동안의 가출빈도'를 측정하였다. 이로 인해 충동적인 가출과 반복적인 가출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가출 1회 이하' 집단과 '가출 2회 이상' 집단을 임의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네 번째 종속변수는 '가출 후 청소년보호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는지 여부'로 이용경험이 없는 집단은 0, 이용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는 1로 부호화되었다.

다섯 번째 종속변수는 성별로 남자, 여자 2개 범주로 구분하였고 남자는 1, 여자는 2로 부호화하였다. 마지막 종속변수는 '가출 후 이용 중인 청소년 쉼터 유형'으로 ① 일시쉼터, ② 단기쉼터, ③ 중장기쉼터 등 세 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가출청소년 집단분류기준, 부호화, 분석 데이터와 대상을 정리한 것이 표V-2이다.

표 V-2 가출청소년 집단분류 기준

기준	부호	분석 데이터 및 대상		
가출원인	①가족관련이유, ②학교관련이유, ③기타			
가정생활만족도	①불만족, ②보통, ③만족	2012년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가출빈도	①1회 이하, ②2회 이상	종합실태조사 위기청소년 집단 데이터		
청소년보호 시설 이용경험 유무	⑩이용 경험 없음, ①이용 경험 있음	가출경험이 1회 이상인 사례		
성별	①남자, ②여자	2013년 기출팸 실태조사 데이터		
이용 중인 쉼터유형	①일시쉼터, ②단기쉼터, ③중장기쉼터	단, 이용 중인 쉼터 유형 분석 시 거리청소년은 제외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가출청소년 유형화, 집단분류의 예측 요인이라 볼 수 있는데,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선정한 독립변수 목록과 측정방법을 요약한 것이 표 V-3이다. 독립변수 가운데 성별, 연령, 가족구조에 대한 2개의 더미변수(한부모, 양친 모두 부재), 가정경제수준에 대한 2개의 더미변수(빈곤, 보통)는 모든 판별분석에서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 반면,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 태조사 데이터에만 포함되어 있는 생활만족도, 성인물 접촉, 지위비행, 성(性)비행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판별분석에서만 사용하였고, 가출팸 실태조사 데이터에만 포함되어 있는 기분 및 자살, 공격성, 그리고 충동성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판별분석에서만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표 V-3 판별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 및 측정 방법

독립변수	측정 방법	비고
성별	① 남자 / ② 여자 ※ 성별이 종속변수로 사용된 경우 독립변수로 사용하지 않음	
연령	2012년(조사시점) — 출생년도	
가족구조 (부모와의 동거)	· 더미변수 1: ① 한부모 / ① 그 외 · 더미변수 2: ① 양친 모두 부재 / ① 그 외 ※ 참조집단(reference group): 양친 모두 함께 거주	공통
가정경제 수준(인식)	· 더미변수 1: ① 빈곤 / ⑩ 그 외 · 더미변수 2: ① 보통 / ⑪ 그 외 ※ 참조집단(reference group): 부유	

독립변수	측정 방법	비고
생활만족도	·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만족도를 묻는 2개 문항의 합. · 응답범주는 5점 리커트척도로 제시됨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 만족) ※ 가정생활만족도가 종속변수로 사용된 경우 독립변수로 사용하지 않음	
성인물 접촉	·지난 1년간 성인물을 얼마나 자주 이용했는지 7개 문항(성인용 간행물, 성인용 영상물, 지상파TV 성인용 프로그램, 케이블TV 성인용 프로그램, 컴퓨터를 통한 성인물, 휴대폰을 통한 성인물, 성인용 음란/폭력 게임)의 합 ·5점 리커트 척도 (①한 번도 없다, ②일 년에 1~2번, ③한 달에 1~2번, ④일주일에 1~2번, ⑤일주일에 3회 이상)	종속변수가 가출원인, 가정생활만족도, 보호시설 이용경험 유무,
지위비행	· 지난 1년간 지위비행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는지 6개 문항(멀티방/룸카페이용, 비디오방/DVD방 이용, 성인용 주점 이용, 성인용 무도장 이용, 음주, 흡연)의 합 · 5점 리커트 척도 (①한 번도 없다, ②일 년에 1~2번, ③한 달에 1~2번, ④일주일에 1~2번, ⑤일주일에 3회 이상)	기충성임 규구, 가출빈도 분석에서 독립변수로 사용
성(性)비행	· 지난 1년간 성(性)비행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는지 2개 문항(성적 접촉 경험, 성교행위)의 합 · 5점 리커트 척도 (①없다, ②1회, ③2회, ④3~4회, ⑤5회 이상)	
기분 및 자살	· 청소년 정서·행동 발달 선별검사(AMPQ-II)의 하위차원 중 하나로, 우울감 및 무력감, 신경질, 기분조절 문제, 자살사고(自殺思考) 등에 대한 9개 문항의 합 · 5점 리커트 척도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약간 그렇지 않다, ③보통, ④약간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종속변수가
공격성	· 공격성에 관한 5개 문항(다른 사람과 치고 받으며 잘 싸우는 편이다 등) (유성경 외, 2000)의 합 · 5점 리커트 척도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약간 그렇지 않다, ③보통, ④약간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성별, 쉼터 유형인 분석에서 독립변수로 사용
충동성	· 충동성에 관한 5개 문항(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잘 참지 못한다 등) (유성경 외, 2000)의 합 · 5점 리커트 척도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약간 그렇지 않다, ③보통, ④약간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4) 분석결과

(1) 가출청소년 집단분류

분 석 장

① 가출원인에 따른 집단분류

먼저 첫 번째 판별분석은 가출원인을 기준으로 세 개의 집단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독립변수는 모두 10개로, 성별, 연령, 가족구조와 관련한 두 개의 더미변수(한부모, 양친 모두 부재; 참조집단=양친 모두 함께 거주), 가정경제수준과 관련한 2개의 더미변수(빈곤, 보통; 참조집단=양친), 생활만족도, 성인물 접촉, 지위비행, 성(性)비행이 동시에 분석 모형에 투입되었다. 종속변수의 범주가 3개이므로 다음과 같이 2개의 판별함수가 도출되었다.

아래의 표 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출된 판별함수 중 함수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chi^2(20)$ =37.329, p<.05), 함수 2의 통계적 유의성 ($\chi^2(9)$ =9.695, p>.05)은 검증되지 않았다. 즉, 함수1을 기준으로 하면 가출원인에 따라 '가족관련 이유', '학교관련 이유', '기타 이유'로 가출한 청소년이 서로 다른 집단이라 볼 수 있지만, 함수2를 기준으로 하면 서로 다른 집단이라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총 변량 중 집단 내 변량 비율을 의미하는 윌크스 람다수치에 있어 함수1은 .867, 함수2는 .964로 나타나 함수1이 상대적으로 집단 간 차이를 드러내는 정도가 강하였다. 함수1과 함수2의 정준상관계수는 각각 .316과 .190으로 함수1은 종속변수(판별 점수) 변량의 약 10.0%(.316²)를 설명하는 반면, 함수2는 3.6%(.190²) 정도만 설명하였다.

표 V-4 가출원인에 따른 3개 집단에 대한 판별분석 결과

함수 (function)	고유값 (eigen value)	정준상관계수 (Cannonical Correlation)	윌크스 람다 (Wilks' Lamda)	카이제곱 (x²)	자유도 (degree of freedom)	p 값 (p value)
1	.111	.316	.867	37.329	20	.011
2	.038	.190	.964	9.695	9	.376

도출된 판별함수의 집단예측 적중률(hit ratio)은 60.7%였다. '가족관련 이유'로 가출을 한 청소년 중 36.0%, '학교관련 이유'로 가출을 한 청소년 중 0%, 그리고 '기타 이유'로 가출을 한 청소년 중 85.3%가 정확히 분류되었다. 교차유효화 집단 적중률은 57.4%로, 사전확률에 근거한 비율우연기준치(proportional chance criterion) 44.6%⁴⁹를 상회하여 가출원인에 따른 세 개의 집단 구분에 있어 판별함수가 유용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표 V-5).

표 V-5 판별함수에 의한 가출원인 집단분류 결과

	함수1에	함수2에	0	ii측 소속집[<u>+</u>		적중률
실제집단	대한 집단중심치	대한 집단중심치	가족이유	학교이유	기타	사례수	(교차유효화 집단 적중률)
가족관련 이유로 가출한 집단	480	038	31 (36.0%)	0 (0%)	55 (64 <u>.</u> 0%)	86	
학교관련 이유로 가출한 집단	.351	529	3 (10.7%)	0 (0%)	25 (89.3%)	28	60.7% (57.4%)
기타이유로 가출한 집단	.202	.116	23 (14.7%)	0 (0%)	133 (85.3%)	156	

다음으로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 계수(Standaridized Can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Coefficient)를 살펴보았는데, 이는 종속변수에 대해 각 독립변수가 갖는 상대적 중요도를 의미한다. 함수1에서는 성별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생활만족도, 한부모가정, 보통의 가정경제수준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수2에서는 성(性)비행과 지위비행이 가장 중요하고, 그 뒤를이어 생활만족도와 한부모가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판별적재값은 각 독립변수와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 일반적으로 절대값이 3.0 이상일 때 유의한 것으로 해석한다. 함수1에서는 성별, 생활만족도, 한부모, 보통정도의 가정경제수준 변수가, 그리고 함수2에서는 한부모, 생활만족도, 빈곤한 가정경제수준, 성(性)비행 변수가 이 기준을통과하였다(표 V-6).

⁴⁹⁾ 가족이유로 가출한 청소년 집단 사전확률(.319), 학교관련 이유로 가출한 청소년 집단 사전확률(.104), 그리고 기타 이유로 가출한 청소년 집단 사전확률(.578)을 각각 제곱한 후 합한 값

표 V-6 가출원인에 따른 3개 집단 판별분석결과: 정준판별함수 계수 & 구조행렬

변수	표준화된 정준	판별함수계수	구조행렬 (판별적재값)		
건ㅜ	함수1	함수2	함수1	함수2	
성별	594	.380	667	.112	
연령	.204	.189	.119	.186	
한부모 ^a	.441	467	.380	492	
양친 모두 없음 ^a	.004	039	100	053	
빈곤(가정경제수준인식) ^b	.099	274	225	422	
보통(가정경제수준인식) ^b	.403	080	.309	.280	
생활만족도	.479	.584	.631	.475	
성인물접촉	019	.018	.107	.021	
지위비행	.016	721	073	083	
성(性)비행	143	.728	076	.356	

a 참조집단(reference group): 친부모 두 사람과 함께 거주 b 참조집단(reference group): 부유(가정경제수준인식)

모형에 투입된 독립변수별, 가출원인에 따라 구별된 세 개 청소년 집단의 평균값이 동질한 것인지 검증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 표 V-7이다. 일원분산분석검증 결과 성별(F(2, 267)=6.655, p <.01), 한부모가정(F(2, 267)=3.358, p <.05), 생활만족도(F(2, 267)=7.043, p <.01)에서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즉 성별, 한부모, 생활만족도 변수에서 가출원인에 따른 세 개의 집단 평균이 유의하게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V-7 가출원인에 따른 3개 집단 평균의 동질성 검정

변수	윌크스 람다 (Wilks' Lamda)	F	df1	df2	p 값 (p value)
성별	.953	6.655	2	267	.002
연령	.997	.386	2	267	.680
한부모 ^a	.975	3.358	2	267	.036
· 양친 모두 없음 ^a	.999	.162	2	267	.851
_ 빈곤(가정경제수준인식) ^b	.988	1.643	2	267	.195
	.987	1.806	2	267	.166
생활만족도	.950	7.043	2	267	.001
성인물접 촉	.999	.172	2	267	.842
지위비행	.999	.114	2	267	.892
성(性)비행	.995	.722	2	267	.487

a 참조집단(reference group): 친부모 두 사람과 함께 거주 b 참조집단(reference group): 부유(가정경제수준인식) 표 V-8은 분석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와 관련하여 가출원인에 따른 세 집단의 통계량을 제시한 것이다. '가족관련 이유'로 가출한 청소년 집단의 생활만족도 평균은 6.023(sd=2.006)으로, '학교관련 이유'로 가출한 청소년 집단(mean=6.607, sd=2.132), '기타 이유'로 가출 한 청소년 집단(mean=7.032, sd=1.979)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성별의 경우, '가족관련 이유'로 가출한 집단의 평균이 1.500(sd=0.503)으로, '학교관련 이유'(mean=1.214, sd=0.418)나 '기타 이유'(mean=1.295, sd=0.457)로 가출한 경우보다 높았다. 즉 '가족관련 이유'로 가출한 집단에서 여자청소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한부모가정 변수의 경우, '학교관련 이유'로 가출한 집단의 평균이 0.571(sd=0.504)로, '가족관련 이유'로 가출한 집단(mean=0.302, sd=0.462), '기타 이유'로 가출한 집단(mean=0.391, sd=0.490) 보다 높았다. 한부모가 1, 그 외 가정이 0으로 부호화 되었으므로 평균값이 높을수록 한부모가정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학교관련 이유'로 가출한 청소년 집단에서 한부모가정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8 가출원인에 따른 3개 집단 통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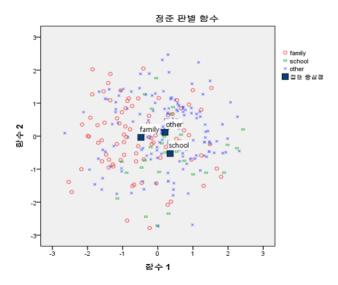
가출청소년	드리버스	ᆏᄀ	ㅠᄌᆏᅱ	유효수(목록별)	
집단	독립변수	평균	표준편차	가중되지않음	가중됨
	성별	1.500	0.503	86	86.000
	연령	16.488	1.509	86	86.000
	한부모 ^a	0.302	0.462	86	86.000
기조기러	양친 모두 없음	0.047	0.212	86	86.000
가족관련	빈곤(가정경제수준인식) ^b	0.419	0.496	86	86.000
이유로 가출한 집단	보통(가정경제수준인식) ^b	0.477	0.502	86	86.000
기술인 답단	생활만족도	6.023	2.006	86	86,000
	성인물 접촉	12.977	5.915	86	86.000
	지위비행	14.151	5.059	86	86.000
	성(性)비행	5.093	3.055	86	86000
	성별	1.214	0.418	28	28,000
	연령	16.500	1.291	28	28.000
-1	한부모 ^a	0.571	0.504	28	28,000
학교관련	양친 모두 없음 ^a	0.036	0.189	28	28.000
이유로 가출한 집단	빈곤(가정경제수준인식) ^b	0.429	0.504	28	28.000
기술한 답단	보통(가정경제수준인식) ^b	0.536	0.508	28	28.000
	생활만족도	6.607	2.132	28	28.000
	성인물 접촉	13.464	6.034	28	28.000

가출청소년	도리버스	ᇳᄀ	ㅠᄌᆑᅱ	유효수(목록별)		
집단	독립변수	평균 	표준편차	가중되지않음	가중됨	
	지위비행	14.036	4.933	28	28.000	
	성(性)비행	4.321	2.932	28	28.000	
	성별	1,295	0.457	156	156,000	
	연령	16.654	1.535	156	156.000	
	한부모°	0.391	0.490	156	156,000	
	양친 모두 없음 ^a	0.032	0.177	156	156.000	
기타이유로	빈곤(가정경제수준인식) ^b	0.314	0.466	156	156.000	
가출한 집단	보통(가정경제수준인식) ^b	0.603	0.491	156	156.000	
	생활만족도	7.032	1.979	156	156.000	
	성인물 접촉	13.449	6.376	156	156.000	
	지위비행	13.788	6.289	156	156.000	
	성(性)비행	5.019	3.239	156	156.000	

a 참조집단(reference group): 친부모 두 사람과 함께 거주

b 참조집단(reference group): 부유(가정경제수준인식)

그림 V-1은 함수1을 X축으로, 함수2를 Y축으로 하는 산점도이다. 이 도표에서 보면 '가족관련이유'로 가출한 청소년은 왼쪽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학교관련이유'로 가출한 청소년은 오른쪽 아래에 더 많이 분포하였다. 이는 각 집단의 중심값(centroid)의 위치에도 반영되었는데, '가족관련이유'로 가출한 청소년 집단의 중심값은 함수1에서 다른 두 집단 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학교관련이유'로 가출한 청소년 집단의 중심값은 함수2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 V-1】가출원인에 따른 3개 집단의 판별함수 산점도

② 가정생활만족도에 따른 집단분류

가출청소년 가운데 가정생활에 만족하는 집단, 불만족하는 집단, 보통인 경우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 집단인지 검증하였다. 성별, 연령, 가족구조와 관련한 두 개의 더미변수(한부모, 양친 모두 부재; 참조집단=양친 모두 함께 거주), 가정경제수준과 관련한 2개의 더미변수(빈곤, 보통; 참조집단=양친), 성인물 접촉, 지위비행, 성(性)비행이 독립변수로 사용되었고, 분석 모형에 동시 투입되었다. 종속변수의 범주가 3개이므로 2개의 판별함수가 도출되었다(표 V-9).

$$D_1 = (-1.755) + (1.337)$$
성별 $+ (-.064)$ 연령 $+ (2.388)$ 빈곤한 가정경제수준 $+ (.696)$ 보통정도의 가정경제수준 $+ (-.021)$ 한부모 $+ (.969)$ 부모모두 부재 $+ (.001)$ 성인물접촉 $+ (-.001)$ 지위비행 $+ (-.028)$ 性 비행

$$D_2 = (-8.621) + (.900)$$
성별 $+ (.408)$ 연령 $+ (.880)$ 빈곤한 가정경제수준 $+ (1.826)$ 보통정도의 가정경제수준 $+ (.476)$ 한부모 $+ (-.879)$ 부모 모두 부재 $+ (.013)$ 성인물접촉 $+ (-.100)$ 지위비행 $+ (.073)$ 性비행

함수1(χ^2 (18)=165.220,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함수2(χ^2 (8)=14.628, p>.05)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함수1은 가정생활만족도에 따라 3개의 집단이 서로 차이가 있는 집단으로 판별할 수 있다는 반면, 함수2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함수1은 함수2에 비해 윌크스 람다는 더 낮고(.818 vs. .982) 정준상관계수는 더 높았는데(.409 vs. .122), 함수1이 함수2보다 종속변수의 3개 집단을 더 뚜렷하게 구분하고 종속변수 변량을 더 많이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함수1은 종속변수(판별점수)의 약 16.7%(.409²), 함수2는 약 1.5%(.122²)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9).

표 V-9 가정생활만족도에 따른 3개 집단에 대한 판별분석 결과

함수 (function)	고유값 (eigen value)	정준상관계수 (Cannonical Correlation)	윌크스 람다 (Wilks' Lamda)	카이제곱 (x²)	자유도 (degree of freedom)	p 값 (p value)
1	.201	.409	.818	165.220	18	.000
2	.018	.122	.982	14.628	8	.067

도출된 2개의 판별함수에 기초할 때, '가정생활이 불만족'인 청소년 중 31.9%, 가정생활만족도가 보통'인 청소년 중 10.2%, 그리고 '가정생활이 만족'인 청소년 중 89.4%가 예측분류되어, 전체적으로 55.6%의 적중률(hit ratio)을 보였다. 교차유효화집단 적중률은 54.4%로 나타났는데이는 비율우연기준치(proportional chance criterion) 38.9%50) 보다 약 40% 높은 수치로 종속변수의 집단을 분류하는데 있어 도출된 함수가 유용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표 V-10).

표 V-10 판별함수에 의한 가정생활만족도 집단분류 결과

	함수1에 대한	함수2에 대한	O	예측 소속집단		11-11 A	적중률
실제집단	집단중심치	집단중심치	불만족	보통	만족	사례수	(교차유효화 집단 적중률)
불만족	.789	132	52 (31.9%)	13 (8.0%)	98 (60.1%)	163	
보통	.137	.208	28 (11.9%)	24 (10.2%)	184 (78.0%)	236	55.6% (54.4%)
만족	373	064	25 (5.8%)	21 (4.9%)	386 (89.4%)	432	

판별함수 결과에서 정준판별함수계수를 통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와 관련한 상대적 중요성을 알 수 있는데 표 V-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함수1의 경우 빈곤한 가정경제수준, 성별 계수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이들 변수가 가정생활만족도에 따른 세 집단을 판별하는데 중요한 기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함수2는 보통의 가정경제 수준, 연령, 및 지위비행이 종속변수와 관련하여 상대적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판별적재값은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와 각 독립변수간 상관관계라 할 수 있는데 정준판별함수계수가 높은 변수들이 대체로 판별적재값 역시 높은 경향을 보였다. 판별적재값의 절대값은 3.0 이상일 때 유의하다고 판단하며, 함수1에서는 가정경제수준에 대한 더미변수 2개와 성별, 함수2에서는 연령, 보통의 가정경제 수준(부유한 가정경제수준 대비), 지위비행, 성별, 성인물 접촉이 이 기준을 상회하였다.

⁵⁰⁾ 불만족집단 사전확률(.196), 보통인 집단 사전확률(.284), 만족집단 사전확률(.520)을 각각 제곱한 후 합한 값

표 V-II 가정생활만족도에 따른 3개 집단 판별분석결과: 정준판별함수 계수 & 구조행렬

변수	표준화된 정준	판별함수계수	구조행렬 (판별적재값)		
연구	함수1	함수2	함수1	함수2	
성별	.598	.403	.548	.328	
연령	093	.590	100	.527	
한부모 ^a	010	.228	.153	.200	
양친 모두 없음 ^a	.191	173	.250	233	
빈곤(가정경제수준인식) ^b	1.044	.393	.745	255	
보통(가정경제수준인식) ^b	.332	.871	538	.471	
성인물접촉	.004	.076	218	315	
지위비행	003	570	151	368	
성(性)비행	092	.234	198	107	

a 참조집단(reference group): 친부모 두 사람과 함께 거주 b 참조집단(reference group): 부유(가정경제수준인식)

모형에 투입된 9개의 독립변수별로 가정생활만족도에 따른 세 집단의 평균값이 동질한 것인지 검증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 표 V-12이다. 검증 결과 성별(F(2, 828)=25.730, p<.001), 양친 모두 부재(F(2, 828)=5.593, p<.01), 빈곤한 가정경제 수준(F(2, 828)=46.564, p<.001), 보통의 가정경제 수준(F(2, 828)=25.699, p<.001), 성인물 접촉(F(2, 828)=4.669, p<.05), 성(性)비행(F(2, 828)=3.346, p<.05)에서 세 집단 간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12 가정생활만족도에 따른 3개 집단 평균의 동질성 검정

변수	월크스 람다 (Wilks' Lamda)	F	df1	df2	p 값 (p value)
성별	.941	25.730	2	828	0.000
연령	.993	2.891	2	828	0.056
한부모 [°]	.995	2.233	2	828	0.108
양친 모두 없음 ^a	.987	5.593	2	828	0.004
빈곤(가정경제수준인식) ^b	.899	46.564	2	828	0.000
보통(가정경제수준인식) ^b	.942	25.699	2	828	0.000
성인물접촉	.989	4.669	2	828	0.010
지위비행	.993	2.896	2	828	0.056
성(性)비행	.992	3.346	2	828	0.036

a 참조집단(reference group): 친부모 두 사람과 함께 거주 b 참조집단(reference group): 부유(가정경제수준인식)

유의미성이 검증된 독립변수별 세 집단의 통계량을 살펴보면 가정생활에 대해 불만족인 청소년집단이 가정생활에 대해 만족하거나 만족도가 보통이라고 보고한 집단과 뚜렷한 구별을 보이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가정생활에 대해 불만족인 청소년 집단은 성별 변수에 있어 평균값이 1.479(sd=0.501)로 보통의 만족도 집단(mean=1.369, sd=0.483)이나 만족집단(mean=1.204, sd=0.403) 보다 높았으며, 양친 모두 부재 변수의 평균값 역시 0.086(sd=0.281)으로 보통의 만족도 집단(mean=0.038, sd=0.192)과 만족 집단(mean=0.025, sd=0.158) 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보통의 가정경제 수준 변수의 경우 가정생활에 대해 불만족하는 청소년 집단의 평균값은 0.362(sd=0.482)로, 보통의 만족도 집단(mean=0.606, sd=0.490)이나 만족 집단(mean=0.676, sd=0.469) 보다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생활에 불만족하는 가출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 에 비해 부모가 모두 부재한 가정이거나 여자청소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정 경제수준이 보통이라고 지각하는 비율은 낮은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가정생활에 불만족하는 가출청소년 집단의 성인물 접촉, 성(性)비행 변수 평균은 각각 11.988(sd=5.584)과 4.472(sd=3.044)로, 이 두 변수에 대해 12.186(sd=5.684)과 4.771(sd=3.199)의 평균값을 보인 보통의 만족도 집단이나 13.317(sd=5.841), 5.190(sd=3.289)의 평균값을 보인 만족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즉, 가정생활에 대해 불만족하는 기출청소년 집단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성인물 접촉, 성비행에 가담하는 정도는 더 낮은 것을 의미한다(표 V-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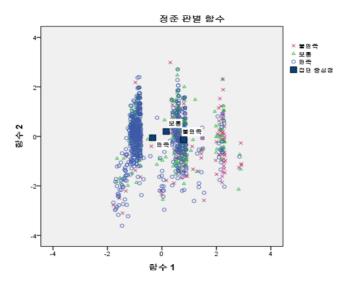
표 V-13 가정생활만족도에 따른 3개 집단의 통계량

가출청소년	독립변수	평균 표준편차		유효수(목록별)
집단	속답변구	평균	표군인사	가중되지않음	가중됨
	성별	1.479	0.501	163	163,000
	연령	16.405	1.566	163	163.000
가정생활에	한부모 ^a	0.405	0.492	163	163.000
대해	양친 모두 없음 ^a	0.086	0.281	163	163,000
불만족인	빈곤(가정경제수준인식) ^b	0.607	0.490	163	163,000
청소년	보통(가정경제수준인식) ^b	0.362	0.482	163	163.000
집단	성인물 접촉	11.988	5.584	163	163,000
	지위비행	13.307	4.968	163	163,000
	성(性)비행	4.472	3.044	163	163,000
가정생활만	성별	1.369	0.483	236	236,000
족도가	연령	16.758	1.407	236	236,000

 가출청소년				유효수(모로볔)
집단	독립변수	평균	표준편차	가중되지않음	가중됨
	한부모゜	0,390	0.489	236	236,000
	양친 모두 없음	0,038	0.192	236	236,000
보통인	빈곤(가정경제수준인식) ^b	0,352	0.479	236	236,000
청소년	보통(가정경제수준인식) ^b	0,606	0.490	236	236,000
집단	성인물 접촉	12,186	5.684	236	236,000
	지위비행	13.153	5.620	236	236,000
	성(性)비행	4.771	3.199	236	236,000
	성별	1.204	0.403	432	432,000
	연령	16.625	1.419	432	432,000
가정생활에	한부모 ^a	0.326	0.469	432	432.000
대해	양친 모두 없음 ^a	0.025	0.158	432	432,000
만족하는	빈곤(가정경제수준인식) ^b	0.213	0.410	432	432,000
청소년	보통(가정경제수준인식) ^b	0.676	0.469	432	432,000
집단	성인물 접촉	13,317	5.841	432	432,000
	지위비행	14.162	5.992	432	432,000
	성(性)비행	5.190	3,289	432	432,000

a 참조집단(reference group): 친부모 두 사람과 함께 거주 b 참조집단(reference group): 부유(가정경제수준인식)

그림 V-2는 함수1과 함수2를 각각 X축과 Y축으로 하여 가출청소년 집단의 위치를 표시한 산점도이다. 산점도의 경우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의 계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X축으로 사용된 함수1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확인된 변수는 빈곤한 가정경제수준, 성별이었고, Y축으로 사용된 함수2에서 중요한 변수는 보통의 가정경제수준, 지위비행이었는데, 그림에서 집단의 위치는 두 개 함수에 기초하여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산점도를 보면 가정생활에 불만족하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 보다 오른쪽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가정생활에 불만족하는 집단에서 빈곤 가정, 여자청소년 비율이 높았던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가정생활에 불만족하는 집단에서 빈곤 가정, 여자청소년 비율이 높았던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가정생활에 불만족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 보다 아래쪽에 집중된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이 집단의 청소년 가운데 가정경제 수준이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낮고 지위비행 가담이 더 낮은 것을 반영한다.



【그림 V-2】가정생활만족도에 따른 3개 집단의 판별함수 산점도

③ 가출빈도에 따른 집단분류

다음으로 가출빈도를 기준으로 두 개의 집단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모든 독립변수를 판별분석모형에 동시에 투입하였으며 사용된 독립변수는 성별, 연령, 가족구조와 관련한 두 개의 더미변수(한부모, 양친 모두 부재; 참조집단=양친 모두 함께

거주), 가정경제수준과 관련한 2개의 더미변수(빈곤, 보통; 참조집단=양친), 생활만족도, 성인물접촉, 지위비행, 성(性)비행이었다. 이를 통해 도출된 판별함수는 아래와 같다.

도출된 판별함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χ²(10)=132.939, p<.001). 종속변수(판별점수)의 총 변량 중 집단 내 변량의 비율을 의미하는 윌크스 람다가 .836, 정준상관계수는 .405였다. 즉, 종속변수 변량의 약 16.4%(.405²)가 도출된 판별함수에 의해 설명되었다(표 V-14).

표 V-14 가출빈도에 따른 2개 집단에 대한 판별분석 결과

함수 (function)	고유값 (eigen value)	정준상관계수 (Cannonical Correlation)	윌크스 람다 (Wilks' Lamda)	카이제곱 (x²)	자유도 (degree of freedom)	p 값 (p value)
1	.196	.405	.836	132.939	10	.000

판별함수에 근거할 때, 가출빈도가 1회 이하인 청소년의 약 68.6%, 그리고 2회 이상인 청소년의 약 68.2%가 예측분류되어 적중률(hit ratio) 68.4%를 기록하였다. 교차유효화집단 적중률은 66.3%로, 사전확률에 근거한 비율우연기준치(proportional chance criterion) 50.0%51)를 32% 이상 상회하였다. 이는 가출빈도에 따라 구별된 두 집단 구분에 있어 판별함수의 유용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표 V-15).

표 V-15 판별함수에 의한 가출빈도 집단(l회 이하 vs. 2회 이상) 분류 결과

	함수1에 대한	예측 소속집단			적중률
실제집단	집단중심치	1회 이하	2회 이상	사례수	(교차유효화 집단 적중률)
1회 이하 (최근 1년)	430	264 (68.6%)	121 (31.4%)	385	68.4%
2회 이상 (최근 1년)	.454	116 (31.8%)	249 (68.2%)	365	(66.3%)

다음으로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계수를 살펴본 결과 생활만족도, 지위비행, 연령, 성인물접촉 변수의 경우 가출빈도에 따른 집단 구분 시 주요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판별적재값기준에서도 투입된 독립변수 가운데 위 네 개의 변수가 기준을 충족하였다(표 V-16).

^{51) &#}x27;가출1회 이하' 청소년 사전확률(.513)과 '가출2회 이상' 청소년 사전확률(.487)을 각각 제곱한 후 합한 값

표 V-16 가출빈도에 따른 2개 집단 판별분석결과: 정준판별함수 계수 & 구조행렬

변수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계수	구조행렬 (판별적재값)
 성별	.197	.205
 연령	417	394
한부모 ^a	.321	.171
양친 모두 없음	.243	.139
빈곤(가정경제수준인식) [▷]	154	023
보통(가정경제수준인식) [▷]	.028	.025
생활만족도	508	416
성인물접촉	.407	.451
지위비행	.491	.586
성(性)비행	.056	.361

a 참조집단(reference group): 친부모 두 사람과 함께 거주 b 참조집단(reference group): 부유(가정경제수준인식)

모형에 투입된 독립변수별, 가출빈도에 따른 두 개의 집단이 서로 다른 집단인지 검증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 표 V-17이다. 9개의 독립변수 가운데 성별(F(1, 748)=6.150, p<.05), 연령(F(1, 748)=22.765, p<.001), 한부모가정(F(1, 748)=4.304, p<.05), 생활만족도(F(1, 748)=25.306, p<.001), 성인물 접촉(F(1, 748)=29.849, p<.001), 지위비행(F(1, 748)=50.299, p<.001), 성(性)비행(F(1, 748)=19.138,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V-17 가출빈도에 따른 2개 집단 평균의 동질성 검정

변수	윌크스 람다 (Wilks' Lamda)	F	df1	df2	p 값 (p value)
성별	.992	6.150	1	748	.013
연령	.970	22,765	1	748	.000
한부모 ^a	.994	4.304	1	748	.038
양친 모두 없음	.996	2.843	1	748	.092
 빈곤(가정경제수준인식) ^b	1.000	.079	1	748	.778
보통(가정경제수준인식) ^b	1.000	.089	1	748	.766
생활만족도	.967	25.306	1	748	.000
성인물접촉	.962	29.849	1	748	.000
지위비행	.937	50,299	1	748	.000
성(性)비행	.975	19,138	1	748	.000

a 참조집단(reference group): 친부모 두 사람과 함께 거주 b 참조집단(reference group): 부유(가정경제수준인식)

표 V-18은 분석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와 관련하여 가출빈도에 따른 두 집단의 통계량을 제시한 것이다. 가출 1회 이하 집단의 '지위비행', '성(性)비행' 변수의 평균은 12.317(sd=5.762), 4.470(sd=3.142)이었으나 가출 2회 이상 집단의 평균은 각각 15.208(sd=5.382)과 5.496(sd=3.279)이었다. 생활만족도의 경우는 반대로, 가출 1회 이하 집단은 7.034의 생활만족도 평균(sd=1.922)을 기록하였으나 가출 2회 이상 집단은 이보다 낮은 6.299(sd=2.080)를 보였다. 즉 가출빈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낮고 비행 정도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 연령, 한부모가정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있어서도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출 2회 이상 집단의 평균연령은 16.310(sd=1.404)로 가출 1회 이하 집단(mean=16.808, sd=1.452)에 비해 다소 낮았고, 한부모와 성별 변수 평균은 각각 0.403(sd=0.491), 1.340(sd=0.474)으로 가출 1회 이하 집단의 0.330(sd=0.471), 1.257(sd=0.438) 보다 높았다. 즉, 가출빈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한부모가정의 비율, 여자청소년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V-18 가출빈도에 따라 구별된 2개 집단의 통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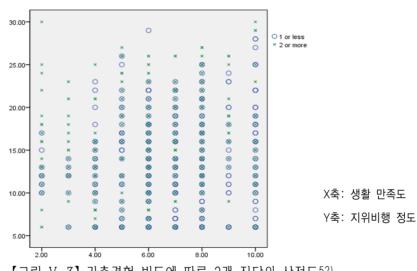
가출청소년	도리버스	ᇳᄀ	평균 표준편차		목록별)
집단	독립변수	병관	#군편사	가중되지않음	가중됨
	성별	1.257	0.438	385	385,000
	연령	16.808	1,452	385	385,000
	한부모 ^a	0.330	0.471	385	385,000
	양친 모두 없음 ^a	0.026	0.159	385	385.000
1회 이하	빈곤(가정경제수준인식) ^b	0.325	0.469	385	385.000
(최근 1년)	보통(가정경제수준인식) ^b	0.595	0.492	385	385.000
	생활만족도	7.034	1,922	385	385,000
	성인물 접촉	11.725	5.245	385	385,000
	지위비행	12.317	5.762	385	385,000
	성(性)비행	4.470	3.142	385	385,000
	성별	1.340	0.474	365	365,000
	연령	16.310	1.404	365	365,000
	한부모 ^a	0.403	0.491	365	365,000
	양친 모두 없음 ^a	0.049	0.217	365	365.000
2회 이상	빈곤(가정경제수준인식) ^b	0.315	0.465	365	365.000
(최근 1년)	보통(가정경제수준인식) ^b	0.605	0.489	365	365.000
	생활만족도	6.299	2,080	365	365,000
	성인물 접촉	14.016	6.223	365	365,000
	지위비행	15.208	5.382	365	365,000
	성(性)비행	5.496	3.279	365	365,000

a 참조집단(reference group): 친부모 두 사람과 함께 거주

b 참조집단(reference group): 부유(가정경제수준인식)

장

그림 V-3은 가출빈도에 따른 2개 집단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 중 생활만족도, 지위비행 정도를 각각 X축과 Y축으로 하는 도표에 집단의 위치를 표시한 산점도이다. 가출빈도가 많은 집단은 도표의 왼쪽 윗편에 많이 분포한 반면, 가출빈도가 적은 집단은 오른쪽 아래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 이는 가출빈도가 많은 집단은 상대적으로 지위비행 정도는 더 높은 반면 삶의 만족도 수준은 더 낮은 것을 의미한다.



【그림 V-3】가출경험 빈도에 따른 2개 집단의 산점도⁵²⁾

④ 청소년보호시설 이용경험에 따른 집단분류

가출 후 보호시설을 이용한 경험 유무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성별, 연령, 가족구조와 관련한 두 개의 더미변수(한부모, 양친 모두 부재; 참조집단=양친 모두 함께 거주), 가정경제수준과 관련한 2개의 더미변수(빈곤, 보통; 참조집단=양친), 생활만족도, 성인물 접촉, 지위비행, 성(性)비행을 독립변수로 분석모형에 동시 투입하였다. 그 결과 도출된 판별 함수는 다음과 같다.

 $D_1=(3.713)+(1.010)$ 성별+(-.216)연령+(.455)빈곤한 가정경제수준+(.363)보통정도의 가정경제수준+(.328)한부모+(.589)부모모두부재+(-.401)생활만족도+(.062)성인물접촉+(.010)지위비행+(-.058)性비행

⁵²⁾ 도출된 판별함수가 1개뿐이므로 판별함수에 기초한 산점도를 나타낼 수 없음. 이에 가출경험빈도에 따른 두 집단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 2개 독립변수 '생활만족도'와 '지위비행 정도'를 각각 X축과 Y축으로 하는 산점도를 제시하였음.

판별함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chi^2(10)$ =61.060, p<.001), 윌크스 람다는 .794, 정준상관계수는 .454로 관찰되었고, 종속변수(판별점수) 변량의 약 20.6%(.454²)를 설명하였다(표 V-19).

표 V-19 보호시설 이용경험에 따른 2개 집단에 대한 판별분석 결과

함수 (function)	고유값 (eigen value)	정준상관계수 (Cannonical Correlation)	윌크스 람다 (Wilks' Lamda)	카이제곱 (x²)	자유도 (degree of freedom)	p 값 (p value)
1	.259	.454	.794	61.060	10	.000

가출 후 보호시설 이용경험을 기준으로 이용 경험이 없는 집단과 있는 집단의 각각 90.2%, 41.8%가 예측분류되어 76.1%의 적중률(hit ratio)을 기록하였다. 교차유효화집단 적중률은 75.5%로 사전확률에 근거한 비율우연기준치(proportional chance criterion) 58.8%53) 보다 16.7% 이상더 높았다. 이는 가출 후 보호시설 이용경험에 따라 두 집단 구분 시 판별함수의 유용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표 V-20).

표 V-20 판별함수에 의한 보호시설 이용경험에 따른 집단분류 결과

A I THE I	함수1에 대한	예측 소	I I TAIL A	적중률	
실제집단	집단중심치	이용 경험 없음	이용 경험 있음	사례수	(교차유효화 집단 적중률)
가출 후 보호시설 이용 경험 없음	324	174 (90.2%)	19 (9.8%)	193	76.1%
가출 후 보호시설 이용 경험 있음	.793	46 (58.2%)	33 (41.8%)	79	(75.5%)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계수와 판별적재값(구조행렬)을 보면, 전자에 기초하여 각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데, 절대값이 가장 큰 생활만족도가 종속변수의 집단을 판별하는데 있어 가장 주요 변수이고 그 다음으로 성별, 성인물 접촉, 연령이 주요 변수라볼 수 있다. 후자의 기준에 근거할 때 생활만족도와 성별만이 유의한 것으로 판단된다(표 V-21).

⁵³⁾ 가출 후 청소년보호 시설 이용경험이 있는 청소년 집단의 사전확률(.710)과 그 같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 집단의 사전확률(.290)을 각각 제곱한 후 합한 값

표 V-2l 보호시설 이용경험에 따른 2개 집단 판별분석결과: 정준판별함수 계수 & 구조행렬

변수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계수	구조행렬 (판별적재값)
성별	.466	.533
연령	323	249
한부모゜	.159	.134
양친 모두 없음 ^a	.111	.093
빈곤(가정경제수준인식) ^b	.217	.228
보통(가정경제수준인식) ^b	.180	133
생활만족도	764	764
성인물접촉	.385	.003
지위비행	.060	041
 성(性)비행	189	163

a 참조집단(reference group): 친부모 두 사람과 함께 거주 b 참조집단(reference group): 부유(가정경제수준인식)

가출 후 보호시설을 이용경험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경우 각 독립변수별로 평균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생활만족도(F(1, 270)=40.858, p <.001), 성별(F(1, 270)=19.858, p <.001), 연령(F(1, 270)=4.348, p <.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두 집단 간에 생활만족도, 성별, 연령은 서로 다른 특성을 보였다(표 V-22).

표 V-22 보호시설 이용경험에 따른 2개 집단 평균의 동질성 검정

변수	윌크스 람다 (Wilks' Lamda)	F	df1	df2	p 값 (p value)
성별	.931	19.858	1	270	.000
연령	.984	4.348	1	270	.038
한부모 [°]	.995	1.262	1	270	.262
양친 모두 없음	.998	.602	1	270	.439
_ 빈곤(가정경제수준인식) ^b	.987	3.646	1	270	.057
보통(가정경제수준인식) ^b	.995	1.241	1	270	.266
생활만족도	.869	40.858	1	270	.000
성인물접촉	1.000	.001	1	270	.981
지위비행	1.000	.119	1	270	.730
성(性)비행	.993	1.852	1	270	.175

a 참조집단(reference group): 친부모 두 사람과 함께 거주 b 참조집단(reference group): 부유(가정경제수준인식) 모형에 투입된 독립변수별로 가출 후 보호시설 이용경험에 따라 두 집단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이용경험이 있는 집단의 생활만족도가 5.506(sd=2.087)으로 이용경험이 없는 집단 평균 7.135(sd=1.829) 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연령과 성별 변수에 있어 이용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은 각각 16.304(sd=1.572), 1.544(sd=0.501)이고, 이용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은 각각 16.720(sd=1.463), 1.269(sd=0.445)를 기록하였다. 즉 가출 후 보호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 이용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생활만족도는 낮고, 연령은 어리며 여자청소년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V-23).

표 V-23 보호시설 이용경험에 따른 2개 집단의 통계량

 가출청소년	드리버스	ᇳᄀ	ㅠᄌᆏᅴ	유효수((목록별)
집단	독립변수	평균	표준편차	가중되지않음	가중됨
	성별	1.269	0.445	193	193,000
	연령	16.720	1.463	193	193.000
	한부모 ^a	0.358	0.481	193	193.000
가출 후	양친 모두 없음 ^a	0.031	0.174	193	193.000
보호시설	빈곤(가정경제수준인식) ^b	0.321	0.468	193	193.000
이용 경험	보통(가정경제수준인식) ^b	0.580	0.495	193	193.000
없음	생활만족도	7.135	1.829	193	193,000
	성인물 접촉	13.347	6.187	193	193.000
	지위비행	14.052	6.087	193	193.000
	성(性)비행	5.197	3.341	193	193.000
	성별	1.544	0.501	79	79.000
	연령	16.304	1.572	79	79.000
	한부모 ^a	0.430	0.498	79	79.000
가출 후	양친 모두 없음 ^a	0.051	0.221	79	79.000
보호시설	빈곤(가정경제수준인식) ^b	0.443	0.500	79	79.000
이용 경험	보통(가정경제수준인식) ^b	0.506	0.503	79	79.000
있음	생활만족도	5.506	2.087	79	79.000
	성인물 접촉	13.367	6.409	79	79.000
	지위비행	13.785	4.968	79	79.000
	성(性)비행	4.608	2.985	79	7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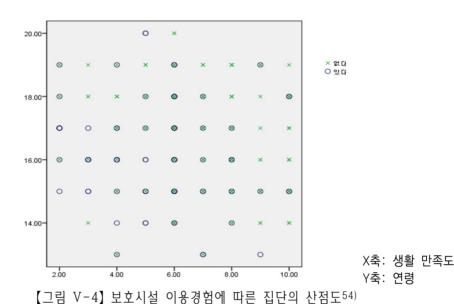
a 참조집단(reference group): 친부모 두 사람과 함께 거주

b 참조집단(reference group): 부유(가정경제수준인식)

그림 V-4는 유의성이 확인된 독립변수 중 생활만족도를 X축으로, 그리고 연령을 Y축으로 선정한 후 가출청소년의 위치를 표시한 산점도이다. 가출 후 보호시설을 이용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장

오른쪽 보다는 왼쪽에, 그리고 위쪽 보다는 아래쪽에 더 집중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용 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왼쪽 보다는 오른쪽에 그리고, 아래쪽 보다는 위쪽에 더 많이 분포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가출 후 보호시설 이용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생활만족도가 낮고 연령은 어리다는 위의 분석 결과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하겠다.



⑤ 성별에 따른 집단분류

종속변수를 성별로 한 것은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에 있어 성별 격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이들이 서로 다른 정책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연령, 가족구조와 관련한 두 개의 더미변수(한부모, 양친 모두 부재; 참조집단=양친 모두 함께 거주), 가정경제수준과 관련한 2개의 더미변수(빈곤, 보통; 참조집단=양친), 기분 및 자살, 공격성, 충동성을 독립변수로 분석모형에 동시 투입하였다. 그 결과 도출된 판별함수는 다음과 같다.

⁵⁴⁾ 도출된 판별함수가 1개뿐이므로 판별함수에 기초한 산점도를 나타낼 수 없음. 이에 보호시설 이용여부에 따른 두 집단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 2개 독립변수 '생활만족도'와 '연령'을 각각 X축과 Y축으로 하는 산점도를 제시하였음.

아래 표V-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출된 판별함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χ^2 =23.799, df=8, p<.01), 이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윌크스 람다(Wilks' Lambda)는 .906, 정준상관계수는 .307로 확인되었다. 정준상관계수의 제곱값(.094)을 보면 판별점수 변량의 9.4%가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됨을 알 수 있다.

표 V-24 남·녀 가출청소년 집단에 대한 판별분석 결과

함수 (function)	고유값 (eigen value)	정준상관계수 (Cannonical Correlation)	윌크스 람다 (Wilks' Lamda)	카이제곱 (x²)	자유도 (degree of freedom)	p 값 (p value)
1	.104	.307	.906	23.799	8	.002

표 V-25는 실제집단과 예측 소속 집단을 보여주는 교차표로, 남자청소년 중 80.1%, 여자청소년 중 49.1%가 정확히 예측되었다. 판별함수의 적중률(hit ratio)은 66.8%였으며 교차유효화 집단적 중률은 64.8%를 기록하였다. 이는 남녀청소년 집단의 사전확률에 근거한 비율우연기준치 (proportional chance criterion) 51.0%55) 보다 약 14% 높은 수치이다.

표 V-25 판별함수에 의한 가출청소년 남·녀 집단분류 결과

A I TUT I CI	함수1에 대한	예측 소	속집단	11741 A	적중률
실제집단	집단중심치	남자	여자	사례수	(교차유효화 집단 적중률)
남자	.311	113 (80.1%)	28 (19.9%)	141	66.8%
여자	729	54 (50.9%)	52 (49.1%)	106	(64.8%)

다음으로 표준화된 정준판결함수계수와 판별적재값을 살펴보면, 표 V-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별함수에 있어 보통의 가정경제수준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기분 및 자살, 빈곤한 가정경제수준, 충동성 순으로 주요 변수라 볼 수 있다. 판별적재값 기준을 충족한 변수는 기분 및 자살, 충동성, 한부모가정, 보통정도의 가정경제수준이었다(표 V-26).

⁵⁵⁾ 남자청소년의 사전확률(.571)과 여자청소년의 사전확률(.429)을 각각 제곱한 후 합한 값

표 V-26 가출청소년 남·녀 집단에 대한 판별분석결과: 정준판별함수 계수 & 구조행렬

변수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계수	구조행렬 (판별적재값)
연령	.068	.020
한부모 [°]	299	460
양친 모두 없음 ^a	.123	.269
 빈곤(가정경제수준인식) ^b	.360	244
 보통(가정경제수준인식) ^b	.820	.392
기분 및 자살	.582	.685
	069	.224
충동성	.356	.592

a 참조집단(reference group): 친부모 두 사람과 함께 거주 b 참조집단(reference group): 부유(가정경제수준인식)

각 독립변수와 관련하여 가출청소년 가운데 남·여 집단의 평균값이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한 결과, 모형에 포함된 8개의 변수 중 기분 및 자살((F(1, 245)=11.916, p=.001), 충동성(F(1, 245)=8.916, p=.003), 한부모가정(F(1, 245)=5.379, p=.021), 보통수준의 가정경제수준(F(1, 245)=3.915, p=.049)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V-27).

표 V-27 남·녀 가출청소년 집단 평균의 동질성 검정

변수	윌크스 람다 (Wilks' Lamda)	F	df1	df2	p 값 (p value)
 연령	1.000	.010	1	245	.921
한부모 [°]	.979	5.379	1	245	.021
양친 모두 없음 ^a	.993	1.845	1	245	.176
빈곤(가정경제수준인식) ^b	.994	1.514	1	245	.220
보통(가정경제수준인식) ^b	.984	3.915	1	245	.049
기분 및 자살	.954	11.916	1	245	.001
- 공격성	.995	1.278	1	245	.259
충동성	.965	8.916	1	245	.003

a 참조집단(reference group): 친부모 두 사람과 함께 거주 b 참조집단(reference group): 부유(가정경제수준인식)

각 독립변수별 남, 여 가출청소년의 집단통계량을 제시한 것이 표 V-28이다. 여자청소년의 기분 및 자살, 충동성 변수 평균은 각각 25.821(sd=8.483), 17.349(sd=4.711)로, 남자청소년의

22.326(sd=7.386), 15.525(sd=4.783)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즉 두 변수와 관련하여 가출의 상황에서 여자청소년의 정신건강이 보다 취약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한편, 한부모가정 변수의 경우 남자청소년의 평균이 0.426(sd=0.496)으로 여자청소년의 평균값 (mean=0.283, sd=0.453) 보다 높았으며, 보통정도의 가정경제수준 변수에 있어서는 여자청소년의 평균이 0.538(sd=0.501)로 남자청소년 평균(mean=0.411, sd=0.494) 보다 높았다. 이는 가출청소년 가운데 남자청소년의 경우 한부모가정 비율이 높고, 가정경제가 보통수준인 경우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더 낮아 가정환경과 관련하여 남자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해석이 일부 가능하다. 반면 판별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 중 유의미성이 검증되지 않은 4개 변수의 경우 성별간 평균차이는 미미한 수준이었다(표 V-28).

표 V-28 남·녀 가출청소년 집단의 통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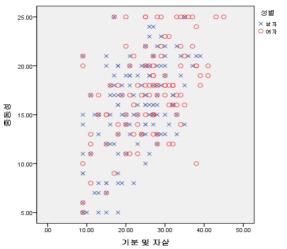
가출청소년				유효수(목록별)
집단	독립변수	평균	표준편차	가중되지않음	가중됨
	연령	17.511	1.402	141	141.000
	한부모 ^a	0.426	0.496	141	141.000
	양친 모두 없음 ^a	0.191	0.395	141	141.000
1 11	빈곤(가정경제수준인식) ^b	0.504	0.502	141	141.000
남자	보통(가정경제수준인식) ^b	0.411	0.494	141	141.000
	기분 및 자살	22,326	7.386	141	141,000
	공격성	16.156	5.471	141	141.000
	충동성	15.525	4.783	141	141.000
	연령	17.528	1.340	141	141.000
	한부모 ^a	0.283	0.453	141	141.000
	양친 모두 없음 ^a	0.264	0.443	141	141.000
МTI	빈곤(가정경제수준인식) ^b	0.425	0.497	141	141.000
여자	보통(가정경제수준인식) ^b	0.538	0.501	141	141.000
	기분 및 자살	25.821	8.483	141	141.000
	공격성	16.943	5.347	141	141.000
	충동성	17.349	4.711	141	141.000

a 참조집단(reference group): 친부모 두 사람과 함께 거주

b 참조집단(reference group): 부유(가정경제수준인식)

그림 V-5는 기분 및 자살을 X축으로, 충동성을 Y축으로 남녀 가출청소년의 위치를 표시한 산점도이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왼쪽과 위쪽에 보다 집중된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여자청소년이 상대적으로 기분 및 자살, 충동성 정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 석



【그림 V-5】남·녀 가출청소년 집단 산점도⁵⁶⁾

X축: 기분 및 자살

Y축: 충동성

⑥ 쉼터 유형에 따른 집단분류

마지막으로 쉼터 유형별 일시, 단기, 중장기쉼터를 이용하는 가출청소년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정책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생활하고 있는 쉼터 유형을 기준으로 세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독립변수로 성별, 연령, 가족구조와 관련한 두 개의 더미변수(한부모, 양친모두 부재; 참조집단=양친모두 함께 거주), 가정경제수준과 관련한 2개의 더미변수(빈곤, 보통; 참조집단=부유), 기분 및 자살, 공격성, 충동성과 같은 세 개의 정신건강 관련 변수가 동시에 분석 모형에 투입되었다. 도출된 판별변수는 다음과 같다.

D₁ = (-1.496)+.442(성별)+(-.027)(연령)+.314(빈곤한가정경제수준) +1.028(보통정도의가정경제수준)+.051(한부모)+2.521(부모모두부재) +.001(기분및자살)+(-.032)(공격성)+.043(충동성)

D₂ = (-5.852)+.586(성별)+.293(연령)+(-1.872)(빈곤한가정경제수준) +(-1.934)(보통정도의가정경제수준)+1.441(한부모)+.992(부모모두부재) +.021(기분및자살)+.033(공격성)+(-.013)(충동성)

표 V-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함수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χ^2 (18)=31.080, p<.05), 함수 2는 유의하지 않았다(χ^2 (8)=5.156, p>.05). 즉, 함수1의 경우에만 쉼터 유형별로 집단 간 차이가

⁵⁶⁾ 도출된 판별함수가 1개뿐이므로 판별함수에 기초한 산점도를 나타낼 수 없음. 이에 남녀 가출청소년 집단이 유의한 차 이를 보인 2개 독립변수 '기분 및 자살'과 '충동성'을 각각 X축과 Y축으로 하는 산점도를 제시하였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함수1, 함수2의 월크스 람다 수치는 각각 .789와 .961로, 함수1이 집단 간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함수1, 함수2의 정준상관계수는 각각 .424과 .196으로 함수1은 종속변수(판별점수) 변량의 약 18.0%(.424²)를 설명하는 반면 함수2는 3.8%(.196²)정도 만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9 쉼터 유형에 따른 3개 집단에 대한 판별분석 결과

함수 (function)	고유값 (eigen value)	정준상관계수 (Cannonical Correlation)	윌크스 람다 (Wilks' Lamda)	카이제곱 (x²)	자유도 (degree of freedom)	p 값 (p value)
1	.219	.424	.789	31.080	18	.028
2	.040	.196	.961	5.156	8	.741

도출된 판별함수의 집단예측 적중률(hit ratio)은 53.6%였다. 즉, 일시쉼터 청소년 중 38.2%, 단기쉼터 청소년 중 66.2%, 중장기쉼터 청소년 중 53.3%가 분류되었다. 교차유효화 집단적중률은 44.9%로, 사전확률에 근거한 비율우연기준치(proportional chance criterion) 41.4%57)를 근소하게 상회하였다. 이는 쉼터 유형에 따른 세 집단 구별 시 판별함수를 적용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나, 그 차이가 3.5%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표 V-30).

표 V-30 쉼터유형에 따른 3개 집단에 대한 판별함수의 분류 결과

A TOTAL CO	함수1에 대한	함수2에 대한	(계측 소속집단	ŀ	11541 A	적중률
실제집단	집단중심치	집단중심치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사례수	(교차유효화 집단 적중률)
일시쉼터	080	241	21 (38.2%)	29 (52.7%)	5 (9.1%)	55	
단기쉼터	224	.177	18 (26.5%)	45 (66.2%)	5 (7.4%)	68	53.6% (44.9%)
중장기쉼터	1.311	.083	5 (33.3%)	2 (13.3%)	8 (53.3%)	15	

표 V-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 계수를 기준으로 함수1에서는 양친 모두 없음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보통의 가정경제수준이 중요한 반면 함수2에서는

⁵⁷⁾ 단기쉼터거주 가출청소년 집단의 사전확률(.399), 단기쉼터 거주 가출청소년 집단의 사전확률(.493), 그리고 중장기쉼터 거주 가출청소년 집단의 사전확률(.109)을 각각 제곱한 후 합한 값

보통의 가정경제수준, 빈곤한 가정경제수준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한부모, 연령 순으로 나타났다. 판별적재값의 수준을 충족한 경우를 보면 함수1에서는 양친 모두 없음, 한부모, 성별, 함수2에서는 한부모, 연령, 보통수준의 가정경제수준 등 모두 6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31 쉼터유형에 따른 3개 집단에 대한 판별분석결과: 정준판별함수 계수 & 구조행렬

변수	표준화된 정준	판별함수계수	구조행렬 (판별적재값)		
건구	함수1	함수2	함수1	함수2	
성별	.220	.292	.371*	.134	
연령	040	.435	036	.493*	
한부모 ^a	.025	.695	463	.517*	
양친 모두 없음 ^a	.927	.365	.841*	.205	
빈곤(가정경제수준인식) ^b	.158	943	154	.216*	
보통(가정경제수준인식) ^b	.512	962	.259	433*	
기분 및 자살	.010	.186	.212	.256*	
공격성	179	.185	018	.327*	
충동성	.222	064	.160*	.141	

a 참조집단(reference group): 친부모 두 사람과 함께 거주

b 참조집단(reference group): 부유(가정경제수준인식)

판별분석모형에 포함된 각각의 독립변수와 관련하여 쉼터 유형에 따른 세 집단 간 평균값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 검증을 실시한 결과 양친 모두 없음(F(2, 135)=10.567, p<.001), 한부모가정(F(2, 135)=3.894, p<.05)에서 유의성이 확인되었다(표 V-32).

표 V-32 쉼터 유형에 따른 3개 집단 평균의 동질성 검정

변수	윌크스 람다 (Wilks' Lamda)	F	df1	df2	p 값 (p value)
성별	.970	2.087	2	135	.128
연령	.990	.678	2	135	.509
한부모 ^a	.945	3.894	2	135	.023
양친 모두 없음	.865	10.567	2	135	.000
빈곤(가정경제수준인식) ^b	.993	.478	2	135	.621
보통(가정경제수준인식) ^b	.978	1.497	2	135	.228
기분 및 자살	.988	.840	2	135	.434
공격성	.996	.295	2	135	.745
충동성	.994	.430	2	135	.651

a 참조집단(reference group): 친부모 두 사람과 함께 거주

b 참조집단(reference group): 부유(가정경제수준인식)

분석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와 관련하여 쉼터 유형에 따른 세 집단의 통계량을 보면 양친 모두 없음 변수의 경우 중장기쉼터의 평균이 0.600(sd=.507)으로 단기쉼터(mean=.132, sd=.341), 일시쉼터 (mean=.145, sd=.356) 이용경험 청소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한부모 변수는 단기쉼터의 평균이 0.500(sd=.504)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일시쉼터 0.364(sd=.485), 중장기쉼터 0.133(sd=.352) 순이었다. 양친 모두 없음과 한부모 변수 모두 더미변수로 평균이 높을수록 해당특성을 가진 청소년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두 변수의 평균값을 고려할 때 중장기쉼터는양친이 모두 부재한 청소년의 비율이 높고, 단기쉼터는 한부모가정 청소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일시쉼터는 양친이 모두 있는 청소년의 이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V-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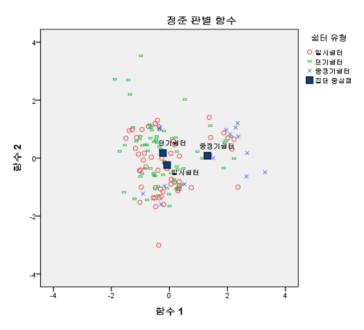
표 V-33 쉼터 유형에 따른 3개 집단의 통계량

<u> 가출청소년</u>				유효수(-	모로변)
기 글 8 ㅗ 년 집단	독립변수	평균	표준편차	가중되지않음	¬¬ᆯ/ 가중됨
	성별	1.455	0503	55	55.000
	연령	17.436	1.475	55	55.000
	한부모°	0.364	0.485	55	55.000
일시	양친 모두 없음	0.145	0.356	55	55,000
	빈곤(가정경제수준인식) ^b	0.473	0.504	55	55.000
쉼터	보통(가정경제수준인식) ^b	0.491	0.505	55	55.000
	기분 및 자살	22.527	8.942	55	55.000
	공격성	16.145	5.749	55	55.000
	충동성	15.964	5.015	55	55.000
	성별	1.456	0.502	68	68.000
	연령	17.750	1.539	68	68.000
	한부모 ^a	0.500	0.504	68	68,000
단기	양친 모두 없음	0.132	0.341	68	68.000
	빈곤(가정경제수준인식) ^b	0.529	0.503	68	68.000
쉼터	보통(가정경제수준인식) ^b	0.382	0.490	68	68.000
	기분 및 자살	23.191	8.344	68	68.000
	공격성	16.926	5.456	68	68.000
	충동성	16.147	5.340	68	68.000
	성별	1.733	0.458	15	15.000
	연령	17.600	1.242	15	15.000
	한부모 ^a	0.133	0.352	15	15,000
중장기	양친 모두 없음	0.600	0.507	15	15,000
	빈곤(가정경제수준인식) ^b	0.400	0.507	15	15.000
쉼터	보통(가정경제수준인식) ^b	0.600	0.507	15	15.000
	기분 및 자살	25,800	9.143	15	15.000
	공격성	16,600	5.767	15	15.000
	충동성	17.333	4.386	15	15.000

a 참조집단(reference group): 친부모 두 사람과 함께 거주

b 참조집단(reference group): 부유(가정경제수준인식)

그림 V-6은 함수1을 X축으로, 함수2를 Y축으로 하는 산점도이다. 각 집단의 중심값(centroid)의 위치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중장기쉼터 청소년은 오른쪽에 집중된 경향이 두드러지고, 일시쉼터, 단기쉼터는 가운데 부분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함수1에서 양친 모두 없음 변수의 경우 중장기쉼터 청소년의 평균값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크게 높았던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반면 Y축을 기준으로 보면 세 집단의 중심점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이는 함수2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쉼터 유형에 따른 세 집단 구분이 유용하지 않다는 것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림 V-6】쉼터유형에 따른 3개 집단의 판별함수 산점도

이상에서 언급한 가출청소년 집단분류에 따른 하위집단의 특성 검증 결과를 요약한 것이 아래 표V-34이다.

표 V-34 가출청소년 집단분류 및 하위집단의 특성 검증 결과 요약

분류 기준	청소년 집단분류	집단별 차이가 확인된 독립변수	가출청소년 집단별 특성 요약
가출 원인	· G1: 가족관련 이유로 가출한 경우 · G2: 학교관련이유로 가출한 경우 · G3: 기타 이유로 가출한 경우	· 성별 · 한부모(더미) · 생활만족도	· 여자청소년의 비율은 G1에서 가장 높았음. · 한부모가정 비율은 G2에서 가장 높았음. · 생활만족도는 G3에서 가장 높았고 G1에서 가장 낮았음.
가정생활 만족도	· G1: 가정생활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우 · G2: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인 경우 · G3: 가정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	・성별 ・양친 모두 부재 ・빈곤가정 ・가정경제수준이 보통인 가정 ・성(性)적비행 ・성인물접촉	 여자청소년의 비율은 G1에서 가장 높았고 G3에서 가장 낮았음. 양친이 모두 부재한 비율은 G1에서 가장 높았고 G3에서 가장 낮았음. · 빈곤가정의 비율은 G1에서 가장 높았고 G3에서 가장 낮았음. · 가정경제수준이 보통인 비율은 G3에서 가장 높았고 G1에서 가장 낮았음.
가출빈도	· G1: 1회 이하 · G2: 2회 이상	・성별 ・연령 ・한부모가정 ・생활만족도 ・성인물접촉 ・지위비행 ・성(性)적비행	 여자청소년의 비율은 G2가 G1 보다 높았음. · 평균연령은 G1이 G2 보다 높았음. · 한부모가정의 비율은 G2가 G1 보다 높았음. · 생활만족도 수준은 G1이 G2 보다 높았음. · 성인물접촉 정도는 G2가 G1 보다 높았음. · 성(性)비행 정도는 G2가 G1 보다 높았음.
청소년 보호시설 이용경험 유무	· G1: 이용 경험 없음 · G2: 이용경험 있음	· 성별 · 연령 · 생활만족도	· 여자청소년의 비율은 G2가 G1 보다 높았음. · 평균연령은 G1이 G2 보다 높았음. · 생활만족도 수준은 G1이 G2 보다 높았음.
성별	· G1: 남자 · G2: 여자	한부모가정가정경제수준이 보통인 가정기분 및 자살충동성	· 한부모가정의 비율은 G1이 G2 보다 높았음. · 가정경제수준이 보통인 비율은 G2가 G1 보다 높았음. · '기분 및 자살'평균값은 G2가 G1 보다 높았음. · '충동성'평균값은 G2가 G1 보다 높았음.
이용중인 쉼터유형	· G1: 일시쉼터 · G2: 단기쉼터 · G3: 중장기쉼터	· 한부모가정 · 양친 모두 부재	· 한부모가정의 비율은 G2에서 가장 높았고 G3에서 가장 낮았음. · 양친이 모두 부재한 비율은 G3에서 가장 높았고 G1에서 가장 낮았음.

분 석

(2) 집단 유형의 주요 특성

① 분석방법 및 변수 측정

앞에서 다변량판별분석을 통해 가출원인, 가정생활만족도, 가출빈도, 가출 후 보호시설 이용경험 유무, 성별, 쉼터 유형에 따라 가출청소년 집단분류가 가능하다는 실증적 근거를 확보할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가출청소년 집단별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기초분석을 추가하였다. 2차 자료분석의 한계로 비행행위 정도, 사회적 유능감, 대처능력 등 척도로서 연속변수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 한하여, 앞서 집단 구분이 2개의 범주로 구성된 경우 독립집단 t-검정 (Independent t-test)을, 3개 이상의 범주로 구성된 경우 일원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활용하였다.58)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는 앞에서와 동일하다. 다만 두 데이터의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데이터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와의 갈등(정도), 학업성적, 가출 후 가족과의 연락 경험, 가출관련 상담 경험, 첫 가출 시기, 폭력비행, 가출 후 비행행동 변수를 사용하였고, 가출팸 실태조사 데이터에서는 학업성적, 첫 가출 나이, 가출횟수, 지위비행, 약물사용, 폭력비행, 재산비행, 성(性)비행, 걱정 및 생각, 학습과 인터넷, 반사회적 인지경향, 대처능력, 사회적 역량을 특성 변수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각 변수와 측정방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표 V-35, 표V-36).

⁵⁸⁾ 일부 특성 변수(부모 교육수준, 부모와의 갈등, 학업성적 등)의 경우 서열척도로 측정되어 t-검정, 일원분산분석이 요구하는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t-검정, 분산분석은 강건한(robust) 통계분석방법으로 각 집단별로 충분한 사례수가 확보될 경우 정상분포 등의 가정이 위배된다 해도 상당히 신뢰할만한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agano, 2001).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모수통계방법이 아닌 t-검정 및 일원분산분석을 실행하였고 사용된 변수가 가족구조 (양친 모두 함께 거주, 한부모, 양친 모두 부재)와 같이 연속변수로 취급할 수 없는 범주형인 경우 교차분석(Cross─tab)을 실시하였다.

표 V-35 변수 및 측정방법(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데이터)

독립변수	측정 방법		
부모의 교육수준	· 부의 교육수준과 모의 교육수준에 대한 2개 문항으로 측정된 값의 평균(부모 중 한사람만 있는 경우 평균이 아니라 해당부모의 교육수준을 측정한 값으로 대체됨). · 응답범주는 7점 서열척도로 제시됨(①학교에 안다님, ②초등학교 졸업, ③중학교 졸업, ④고등학교 졸업, ⑤2~3년제 대학 졸업, ⑥4년제 대학 졸업, ⑦대학원 졸업).		
부모와의 갈등 빈도	· 부모님과의 갈등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를 묻는 한 개 질문에 대한 응답값 · 응답범주는 4점 서열척도로 제시됨(①전혀 없다, ②가끔 있다, ③자주 있다, ④매우 자주 있다).		
학업성적 (주관적 평가)	· 학업성적이 얼마나 우수하는지를 묻는 한 개 질문에 대한 응답값 · 응답범주는 5점 리커트척도로 제시됨(①매우 못하는 편, ②못하는 편, ③중간수준, ④잘하는 편, ⑤매우 잘하는 편).		
가출 후 가족과의 연락 경험	· 가출 후 가족과 연락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한 개 질문에 대한 응답 · 연락경험이 있는 경우 1로, 연락경험이 없는 경우 2로 부호화됨.		
가출관련 상담 경험	· 가출관련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한 개 질문에 대한 응답 · 상담 경험이 있는 경우 1로, 경험이 없는 경우 2로 부호화됨.		
첫가출 시기	· 처음 가출을 한 때가 언제인지를 묻는 한 개 질문에 대한 응답 · 응답범주는 12점 서열척도로 제시됨(①초1, ②초2, ③초3, ④초4, ⑤초5, ⑥초6, ⑦중1, ⑧중2, ⑨중3, ⑩고2, ⑪고2, ⑫고3).		
폭력비행	·지난 1년간 타인에 대한 폭력행사를 얼마나 자주 범했는지에 대한 4개 문항(폭행빈도, 욕설 및 폭언 빈도, 돈이나 금품 갈취, 왕따시키기)으로 측정된 값의 합 ·응답범주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제시됨(①한 번도 없다, ②일 년에 1~2번, ③한 달에 1~2번, ④일주일에 1~2번, ⑤일주일에 3회 이상).		
가출 후 비행행동	· 가출 후 했던 비행행동에 대해 7개 문항(폭행, 절도, 갈취, 환각성물질 흡입, 성희롱/성추행, 성관계, 조건만남/성매매)으로 측정된 값의 합 · 응답범주는 2개로 해당 비행행동을 한 경우 '1'로, 비행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0'으로 부호화됨.		

표 V-36 변수 및 측정방법(가출팸 실태조사 데이터)

독립변수	측정 방법			
학업성적	· 학업성적이 얼마나 우수하는지를 묻는 한 개 질문에 대한 응답값 · 응답범주는 5점 리커트척도로 제시됨(①매우 못하는 편, ②못하는 편, ⑤매우 잘하는 편).			
첫 가출 나이	· 처음 가출을 했을 때의 나이를 묻는 한 개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값		
가출횟수 SQ10	· 조사시점까지의 총 가출횟수를 묻는 한 개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값		
지위비행 PB_status	 지위비행에 대한 4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을 표준화 시킨 후 합한 ・ 피운 담배의 총 개피수(하루 평균) ・ 음주 횟수(일주일 기준) ・ 오토바이를 타고 친구들과 밤에 몰려다닌 횟수: 5점 리커트 척도 (33~4회, ④5~6회, ⑤7회 이상) ・ 밤에 친구들과 면허 없이 차를 타고 몰려다닌 횟수: 5점 리커트 척도 ③3~4회, ④5~6회, ⑤7회 이상) 	①전혀 없다, ②1~2회,		
약물사용 PB_drug	· 약물사용에 대한 두 개 문항(본드나 가스 등을 불거나 마셔본 경험 & 환각약품을 먹어본 경험)으로 측정된 값의 합			
폭력비행 PB_violence	· 폭력비행에 대한 6개 문항(타인을 심하게 때리기, 패싸움, 갈취(삥뜯기), 흉기소지, 아리랑치기, 타인 협박)으로 측정된 값의 합	· 응답범주는 5점 리커트 척도(①전혀 없다,		
재산비행 PB_property3	· 재산비행에 대한 5개 문행(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경험, 빈집털이, 차털이, 사이버절도, 인터넷사기)으로 측정된 값의 합	- ②1~2회, ③3~4회 ④5~6회, ⑤7회 이상)		
- 성(性)비행 PB_sex1	· 성적비행에 대한 4개 문항(이성친구와의 성관계, 이성과 강제적 성관계, 성매매, 조건사기)으로 측정된 값의 합			
걱정 및 생각 concern	· 청소년 정서·행동 발달 선별검사(AMPQ-II)의 하위차원 중 하나로, 우울감 및 무력감, 신경질, 기분조절 문제, 자살사고(自殺思考) 등에 대한 9개 문항의 합			
학습과 인터넷 badstudy	· 청소년 정서·행동 발달 선별검사(AMPQ-II)의 하위차원 중 하나로, 주의집중문제, 인터넷이나 게임으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 등에 대한 등에 대한 5개 문항의 합	· 5점 리커트 척도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약간 그렇지 않다,		
반사회적 인지 경향 antisocial	· 규칙위반에 대한 허용적 태도, 물리적 힘의 행사에 대해 선호하는 태도 등에 대한 5개 문항(유성경 외, 2000)의 합	③보통, ④약간 그렇다, ⑤매우		
대처능력 coping	· 대처능력에 대한 10개 문항(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잘 얻는다, 내 나름대로의 문제해결 방법을 갖고 있다 등)의 합	그렇다)		
사회적 유능감 socialcomp	·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8개 문항(나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배려해준다, 나는 친구를 잘 사귀고 친구관계를 잘 유지한다 등)의 합			

② 가출원인에 따른 3개 집단 주요 특성 비교

먼저 가출원인에 따른 세 집단이 성별분포, 가족구조, 가정경제수준(에 대한 인식)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표 V-37). 그 결과 성별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chi^2(2)$ =9.268, p=.010), 여자청소년의 경우 가족관련 이유로 가출한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45.6%), 학교관련 이유로 가출한 집단에서 그 비율이 가장 낮았다 (23.5%).

표 V-37 가출원인에 따른 세 집단의 특성(교차분석)

특성	하위범주	가출원인	<u> </u>	x ²	df		
= = 6	아케팅구	가족관련이유	학교관련이유	기타	Х	ai	р
ин	남자	62 (54.4%)	26 (76.5%)	134 (69.4%)	0.000	2	010
성별	여자	52 (45.6%)	8 (23.5%)	59 (30.6%)	9.268	2	.010
	양친	72 (63.2%)	14 (41.2%)	103 (53.6%)		4	
가족구조	한부모	35 (30.7%)	19 (55.9%)	82 (42.7%)	8.730		.068
	양친 모두 부재	7 (6.1%)	1 (2.9%)	7 (3.6%)			
	빈곤	43 (37.7%)	15 (44.1%)	62 (32.3%)			
가정경제수준에 대한 인식	보통	59 (51.8%)	18 (52.9%)	115 (59.9%)	4.279	4	.370
	부유	12 (10.5%)	1 (2.9%)	15 (7.8%)			

두 번째로 가출원인에 따른 세 집단의 연령, 부모의 교육수준, 학업성적, 생활만족도, 부모와의 갈등 빈도에 있어 평균값의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한 결과 생활만족도(F(2, 307)=8.132, p=.000), 부모와의 갈등빈도(F(2, 319)=18.792, p=.000)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증(Bonferroni) 결과 가족관련 이유로 가출 한 청소년(mean=5.932, sd=1.931)이 기타 이유로 가출 한 청소년 (mean=6.920, sd=1.972)에 비해 생활만족도 수준은 유의하게 낮은 반면 부모와의 갈등빈도는

가족관련 이유로 가출 한 청소년(mean=2.462, sd=0.965)이 학교관련 이유(mean=1.909, sd=0.879) 나 기타이유(mean=1.838, sd=0.756)로 가출 한 청소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V-38).

표 V-38 가출원인별 세 집단의 특성(일원분산분석)

특성	집단	평균	표준편차	빈도(N)	F 값	df	р	사후검증 (Bonferroni)
	가정문제(F)	16.640	1.506	111				
연령	학교문제(S)	16.441	1.501	34	.347	(2, 334)	.707	_
	기타(O)	16.641	1.535	192				
H = 0	가정문제(F)	4.009	0.946	106				
부모의 교육수준	학교문제(S)	3.891	0.877	32	.567	(2, 313)	.568	_
╨ヸ干世	기타(O)	3.899	0.881	178				
=101111	가정문제(F)	2.340	0.892	103		(2, 315)	.207	
학업성적 (주관적 평가)	학교문제(S)	2.500	0.952	32	1.582			_
(구현역 경기)	기타(O)	2.219	0.907	183				
	가정문제(F)	5.932	1.931	103				
생활만족도	학교문제(S)	6.688	2.177	32	8.132	(2, 307)	.000	F〈O
	기타(O)	6.920	1.972	175				
부모와의 갈등 ⁻ 빈도 -	가정문제(F)	2.462	0.965	104				5 \ 0
	학교문제(S)	1.909	0.879	33	18.792	(2, 319)	.000	F ⟩ S F 〉 O
근프	기타(O)	1.838	0.756	185				' / 0

세 번째로 가출원인별로 세 집단의 첫 가출시기 및 비행행위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어떤 변수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가출원인에 따른 세 집단의 첫 가출시기, 성인물 접촉, 지위비행, 폭력비행, 성(性)비행, 가출 후 비행행동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표 V-39).

표 V-39 가출원인별 세 집단의 첫 가출시기 및 비행행위(일원분산분석)

특성	집단	평균	표준편차	빈도(N)	F 값	df	р	사후검증 (Bonferroni)
	가정문제(F)	6.800	2.365	113				
첫 가출시기	학교문제(S)	6.530	1.973	34	.429	(2, 337)	.429	_
	기타(0)	6.570	2.213	193				
	가정문제(F)	12.839	5.767	112				
성인물 접촉	학교문제(S)	13.500	5.945	34	.226	(2, 335)	.798	_
	기타(O)	13.234	6.125	192				
	가정문제(F)	13.990	4.965	101				
지위비행	학교문제(S)	13.700	4.991	30	.039	(2, 303)	.961	_
	기타(O)	14.017	6.267	175				
	가정문제(F)	7.780	3.651	91				
폭력비행	학교문제(S)	7.697	3.235	33	1.679	(2, 290)	.188	_
	기타(O)	8.568	3.882	169				
	가정문제(F)	5.000	3.045	111				
성(性)비행	학교문제(S)	4.176	2.758	34	1.153	(2, 328)	.317	_
	기타(O)	5.081	3.377	186				
71.7.5	가정문제(F)	1.930	1.880	114				
가출후 비행행동	학교문제(S)	2,265	1.746	34	1.112	(2, 338)	.330	_
ч <i>6</i> 66	기타(O)	2.233	1.766	193				

네 번째로 가출원인에 따라 구별된 세 집단이 가출 후 가족 연락 및 이용 서비스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표 V-4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이용경험(χ^2 (2)=14.716, p=.001), 상담경험(χ^2 (2)=6.810, p=.033)에 있어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가출 후 청소년보호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가족관련 이유로 가출을 한 청소년 집단(45.6%)이 학교관련 이유로 가출을 한 집단(23.5%)이나 기타 이유로 가출을 한 집단(25.4%)보다 약 20%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비율에 있어서도 비슷한 양상이 관찰되었다. 가족관련 이유로 가출을 한 청소년들의 45.1%가가 가출관련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반면 학교관련 이유로 가출을 한 청소년들과 기타 이유로가출을 한 청소년의 비율은 각각 26.5%와 31.9%를 기록하였다.

표 V-40 가출원인별 세 집단의 가출 후 가족연락 및 서비스 이용(교차분석)

 특성	하위범주	가출원인	<u> </u>	집단	x 2	df	
=6	아케럴구	가족관련이유	학교관련이유	기타	X	ui	р
가출후	경험 없음	53 (46.9%)	18 (52.9%)	83 (44.1%)	056	2	620
가족과의 연락 경험	경험 있음	60 (53.1%)	16 (47.1%)	105 (55.9%)	.956	2	.620
가출 청소년 보호시설	경험 없음	62 (54.4%)	26 (76.5%)	144 (74.6%)	14716	2	001
모호시설 이용 경험	경험 있음	52 (45.6%)	8 (23.5%)	49 (25.4%)	14.716	2	.001
가출관련	경험 없음	62 (54.9%)	25 (73.5%)	130 (68.1%)	6 910	2	022
상담 경험	경험 있음	51 (45.1%)	9 (26.5%)	61 (31.9%)	6.810	2	.033

③ 가정생활만족도에 따른 3개 집단 주요 특성 비교

먼저 표 V-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생활만족도별로 세 집단이 성별, 가족구조, 가정경제수준 (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변수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성별의 경우 가정생활에 불만족하는 집단에서 여자청소년의 비율이 46.7%에 달하였다($\chi^2(2)$ =54.478, p=.000). 가족구조의 경우 양친이 모두 함께 거주하는 가정의 비율은 가정생활에 만족하는 집단(63.2%)에서 가장 높았고, 불만족 집단(49.5%)에서 가장 낮았다. 반면 양친이 모두 부재한 가정의 비율은 불만족집단이 10.3%로 가장 높았고, 보통 집단과 만족집단이 각각 3.9%와 3.4%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chi^2(4)$ =22.072, p=.000). 가정경제 수준의 경우 빈곤가정의 비율에서는 불만족집단(59.1%)에서 가장 높았고, 만족집단(23.4%)에서 가장 낮았다. 반면 부유한 가정의 비율은 이와 반대로 만족집단(11.5%)에서 가장 높았고 불만족집 단(4.1%)에서 가장 낮았다($\chi^2(4)$ =85.934, p=.000).

표 V-41 가정생활만족도별 세 집단의 특성(교차분석)

특성	하위범주	가정생활만	족도에 따라 구	¹ 별된 집단	x 2	44	
= 6	아케팅구	불만족	보통	만족	X	df	р
	남자	104 (53.3%)	173 (60.9%)	380 (79.3%)			
성별	여자	91 (46.7%)	111 (39.1%)	99 (20.7%)	54.478	2	.000
	양친	96 (49.5%)	156 (55.7)	300 (63.2%)		4	
가족구조	한부모	78 (40.2%)	113 (40.4%)	159 (33.5%)	22.072		.000
	양친 모두 부재	20 (10.3%)	11 (3.9%)	16 (3.4%)			
	빈곤	114 (59.1%)	100 (35.3%)	112 (23.4%)			
가정경제수준에 대한 인식	보통	71 (36.8%)	170 (60.1%)	312 (65.1%)	85.934	4	.000
	부유	8 (4.1%)	13 (4.6%)	55 (11.5%)			

두 번째로 가정생활만족도별로 세 집단이 연령, 부모의 교육수준, 학업성적, 부모와의 갈등빈도에 있어서 서로 다른 집단인지 살펴보았다. 네 개의 변수 중 부모와의 갈등빈도(F(2, 894)=146.404, p=.000)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증결과 부모와의 갈등 빈도의 경우 만족집단 (mean=1.700, sd=0.669)이 만족이 보통인 집단(mean=2.050, sd=0.809)이나 불만족집단 (mean=2.920, sd=1.064) 보다 유의하게 낮았다(표 V-42).

표 V-42 가정생활만족도별 세 집단의 특성(일원분산분석)

특성	집단	평균	표준편차	빈도(N)	F 값	df	р	사후검증 (Bonferroni)
	불만족(D)	16.495	1.562	192				
연령	보통(M)	16.721	1.435	283	1.394	(2, 951)	.249	_
	만족(S)	16.653	1.442	479				
	불만족(D)	3.945	1.183	172				
부모의 교육수준	보통(M)	3.851	0.899	251	1.845	(2, 868)	.159	_
╨적구군	만족(S)	4.000	0.950	448				
=1011171	불만족(D)	2.160	0.927	183				
학업성적 (주관적 평가)	보통(M)	2.260	0.809	257	3.016	(2, 893)	.050	S > D
(구근국 6기)	만족(S)	2.340	0.878	456				
	불만족(D)	2.920	1.064	173				D > M
부모와의 갈등 빈도	보통(M)	2.050	0.809	266	146.404	(2, 894)	.000	D > S
글	만족(S)	1.700	0.669	458				M ⟩S

세 번째로 첫 가출시기 및 각종 비행행위에 있어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F(2, 953)=3.699, p=.025), 사후검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성인물 접촉(F(2, 920)=4.949, p=.007), 성(性)비행(F(2, 933)=4.111, p=.017)은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고 사후검증에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물 접촉 정도는 만족집단(mean=13.193, sd=5.829)이 불만족집단(mean=11.963, sd=5.428)이나 보통집단(mean=12.059, sd=5.569) 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고, 성(性)비행에 있어서도 만족집단의 평균(mean=5.156, sd=3.269)이 불만족집단(mean=4.415, sd=3.031)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다만 가정생활에 만족하는 집단이 불만족하는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인물 접촉이나 성비행 정도가 더 높다는 결과는 기출청소 년 가운데 가정생활에 만족하는 집단에서 여자청소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과 일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표 V-43).

표 V-43 가정생활만족도별 세 집단의 첫 가출시기 및 비행행위(일원분산분석)

특성	집단	평균	표준편차	빈도(N)	F 값	df	р	사후검증 (Bonferroni)
	불만족(D)	6.930	2.600	195				
첫가출시기	보통(M)	6.900	2.105	284	3.699	(2, 953)	.025	None
	만족(S)	6.530	2.067	477				
	불만족(D)	11.963	5.428	188				
성인물접촉	보통(M)	12.059	5.569	273	4.949	(2, 920)	.007	S > M S > D
	만족(S)	13.193	5.829	462				3/0
	불만족(D)	13.311	4.810	180				
지위비행	보통(M)	13.202	5.555	258	2.452	(2, 888)	.087	_
	만족(S)	14.079	5.975	453				
	불만족(D)	7.644	3.880	149				
폭력비행	보통(M)	7.604	3.740	222	.620	(2, 748)	.538	_
	만족(S)	7.929	3.839	380				
	불만족(D)	4.415	3.031	188				
성(性)비행	보통(M)	4.719	3.173	274	4.111	(2, 933)	.017	S > D
	만족(S)	5.156	3.269	474				
	불만족(D)	1.708	1.764	72				
가출후 비행행동	보통(M)	2.240	1.903	104	2.491	(2, 338)	.084	_
ч <i>6</i> 66	만족(S)	2.242	1.809	341				

네 번째로 가출 후 가족과의 연락 여부 및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가출 후 보호시설 이용경험($\chi^2(2)$ =49.283, p=.000)과 가출관련 상담경험($\chi^2(2)$ =11.206, p=.004)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보호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가정생활에 불만족하는 집단(61.1%)에서 가장 높았고, 보통집단(36.5%), 만족집단(15.8%) 순이었다. 가출관련 상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 역시 가정생활 불만족집단(52.1%)에서 가장 높았다(표 V-44).

표 V-44 가정생활만족도별 세 집단의 가출 후 가족연락 및 서비스 이용(교차분석)

특성	하위범주	가정생활만	족도에 따라 구	별된 집단	x 2	41	_
=6	아케라구	불만족	보통	만족	X	df	р
가출후		33 (45.8%)	56 (54.9%)	64 (40.0%)			200
가족과의 연락 경험	경험 있음	39 (54.2%)	46 (45.1%)	96 (60.0%)	5.572	2	.062
가출 청소년		28 (38.9%)	66 (63.5%)	139 (84.2%)	40.202	2	000
보호시설 이용 경험	경험 있음	44 (61.1%)	38 (36.5%)	26 (15.8%)	49.283		.000
가출관련	경험 없음	34 (47.9%)	71 (70.3%)	113 (68.5%)	11,206	2	.004
상담 경험	경험 있음	37 (52.1%)	30 (29.7%)	52 (31.5%)	11,200	2	.004

④ 가출빈도에 따른 2개 집단의 주요 특성 비교

먼저 가출빈도별로 성별, 가족구조, 가정경제수준(에 대한 인식)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성별($\chi^2(1)$ =8.392, p=.005), 가족구조($\chi^2(2)$ =8.302, p=.01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출빈도가 1회 이하인 집단에서 남녀청소년 비율은 72.9 對 27.1이었으나 2회 이상 집단에서는 그 비율이 64.3 對 35.7로, 2회 이상 집단에서 여자청소년의 비율이 더 높았다. 가족구조의 경우 먼저 양친이 모두 함께 거주하는 가정의 비율을 살펴보면, 61.7%를 보인 1회 이하 집단이 52.9%를 기록한 2회 이상 집단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한부모가정과 양친 모두 부재한 가정의 비율에 있어서는 이와 반대의 결과가 확인되었다. 즉 가출빈도가 2회 이상인 집단에서 한부모가정, 양친 부재 가정 비율이 각각 40.6%와 6.5%를 기록하여 가출빈도가 1회 이하인 집단(34.1%, 4.2%)보다 더 높았다(표 V-45).

표 V-45 가출빈도별 두 집단의 특성(교차분석)

특성	뒤이버즈	가출빈도에	가출빈도에 따른 집단			2
= 성	하위범주	1회 이하	2회 이상	χ²	df	р
ИН	남자	369 (72 <u>.</u> 9%)	301 (64.3%)	0.202	1	005
성별	여자	137 (27.1%)	167 (35.7%)	8.392	l	.005
	양친	309 (61.7%)	245 (52.9%)			
가족구조	한부모	171 (34.1%)	188 (40.6%)	8.302	2	.016
	양친 모두 부재	21 (4.2%)	30 (6.5%)			
	빈곤	176 (34.9%)	156 (33.6%)			
가정경제수준에 대한 인식	보통	287 (56.9%)	271 (58.4%)	.216	2	.898
	부유	41 (8.1%)	37 (8.0%)			

두 번째로 표 V-46과 같이 가출빈도에 따라 구별된 두 집단 간 연령, 부모의 교육수준, 학업성적, 생활만족도, 부모와의 갈등빈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출빈도 1회 이하의 청소년(mean=16.885, sd=1.453)의 평균연령이 2회 이상인 청소년(mean=16.360, sd=1.435)들 보다 근소하게 높았다(t(968)=5.657, p=.000). 부모의 교육수준(t(874)=2.609, p=.009), 학업성적(t(905)=3.515, p=.000), 생활만족도(t(855)=4.893, p=.000)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가출빈도가 1회 이하인 집단이 2회 이상인 집단 보다 부모의 교육수준(4.032 對 3.858)이더 높고 학업성적(2.380 對 2.170)도 더 높았으며 생활만족도(6.918 對 6.246)도 더 높았다. 반면부모와의 갈등빈도 정도는 가출빈도가 1회 이하의 청소년 집단(mean=1.930, sd=0.873)이 2회이상인 집단(mean=2.140, sd=0.963) 보다 낮았다(t(872.628)=-3.324, p=.001).

표 V-46 가출빈도별 두 집단의 특성(t-검정)

특성	집단	평균	표준편차	빈도(N)	t 값	df	р
—————————————————————————————————————	1회 이하	16.885	1.453	503	E 657	060	000
연령	2회 이상	16.360	1.435	467	5.657	968	.000
ᆸᇚᇬᆿᄋᄉᄌ	1회 이하	4.032	0.995	461	2 600	074	000
부모의 교육수준	2회 이상	3.858	0.970	415	2.609	874	.009
학업성적	1회 이하	2,380	0.857	461	2 5 1 5	005	000
(주관적 평가)	2회 이상	2.170	0.879	446	3.515	905	.000
ᄱᇶᆔᇫᆫ	1회 이하	6.918	1.945	439	4 000	055	000
생활만족도	2회 이상	6.246	2.073	418	4.893	855	.000
부모와의 갈등	1회 이하	1.930	0.873	475	2.224	070.000	001
빈도	2회 이상	2.140	0.963	432	-3.324	872.628	.001

세 번째로 가출빈도별로 두 집단 간 첫 가출 시기 및 비행 행위에도 주목할 만 한 차이를 보였다. 성인물 접촉(t(869.774)=-5.916, p=.000), 지위비행(t(901.303)=-7.678, p=.000), 폭력비행(t(733.433)=-3.817, p=.000), 성(性)적비행(t(950)=-4.959, p=.000) 모두 가출빈도가 2회 이상인 집단의 평균이 1회 이하인 집단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V-47).

표 V-47 가출빈도별 두 집단의 첫 가출시기 및 비행행위(t-검정)

특성	집단	평균	표준편차	빈도(N)	t 값	df	р
	1회 이하	6.790	2.186	505	1 000	071	222
첫 가출 시기	2회 이상	6.620	2.266	468	1.223	971	.222
성인물접촉	1회 이하	11.527	5.033	488	5.016	869.774	000
정인물업목	2회 이상	13.702	6.114	449	-5.916	009.774	.000
TIOI미해	1회 이하	12.321	5.607	471	7 670	001 202	.000
지위비행	2회 이상	15.106	5.300	433	-7.678	901.303	.000
표려비해	1회 이하	7.253	3.450	383	2.017	700 400	000
폭력비행	2회 이상	8.304	4.112	378	-3.817	733.433	.000
서/##/미글H	1회 이하	4.361	3.087	496	4.050	050	000
성(性)비행	2회 이상	5.377	3.235	456	-4.959	950	.000
기초등 비해해도	1회 이하	2.017	1.853	172	1 120	2.41	256
가출후 비행행동 	2회 이상	2.240	1.761	171	-1.139	341	.256

네 번째로 표 V-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출 이후 가족과의 연락 여부 및 서비스 이용 여부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가족과의 연락여부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χ²(1)=5.891, p=.016) 가출빈도가 1회 이하인 집단은 비율이 60.8%인 반면 2회 이상 집단은 47.6%에 그쳤다. 반대로 보호시설 이용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가출경험이 2회 이상인 집단(42.7%)이 1회 이하인 집단(20.3%) 보다 높았다(χ²(1)=19.840, p=.000).

표 V-48 가출빈도별 가출 후 가족연락 및 서비스 이용(교차분석)

특성	하위범주	가출빈도에	따른 집단	x ²	41	2
='6'	아케럴구	1회 이하	2회 이상	X	df	р
가출후 가족과의	경험 없음	65 (39.2%)	89 (52.4%)	5.891	1	016
연락 경험	경험 있음	101 (60.8%)	81 (47.6%)	5.091		.016
가출 청소년	경험 없음	137 (79.7%)	98 (57.3%)	10.040	1	000
보호시설 이용 경험	경험 있음	35 (20.3%)	73 (42.7%)	19.840	1	.000
가출관련	경험 없음	118 (69.8%)	101 (59.4%)	4.017	1	052
상담 경험	경험 있음	51 (30.2%)	69 (40.6%)	4.017		.053

⑤ 보호시설 이용경험에 따른 2개 집단 주요 특성 비교

먼저 가출 후 청소년 보호시설 이용경험 여부에 따라 구별된 두 집단 간에 성별, 가족구조, 가정경제수준(에 대한 인식)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성별에서만 통계적유의성이 확인되었다($\chi^2(1)$ =31.213, p=.000). 보호시설 이용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남녀청소년의비율은 44.0 對 56.0이었으며 이용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그 비율은 74.9 對 25.1를 기록하였다. 즉, 보호시설 이용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여자청소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표 V-49).

표 V-49 보호시설 이용경험별 집단의 특성(교차분석)

트서	ᅴ이버ᄌ	보호시설 이용 이	부에 따른 집단	x 2	alf	
특성	하위범주	이용경험 없음	이용경험 있음	X	df	р
선별	남자	176 (74.9%)	48 (44.0%)	31,213	1	000
() 글	여자	59 (25.1%)	61 (56.0%)	31.213		.000
	양친	140 (59.6%)	52 (48.1%)			
가족구조	한부모	88 (37.4%)	48 (44.4%)	5.958	2	.051
	양친 모두 부재	7 (3.0%)	8 (7.4%)			
	빈곤	77 (32.8%)	44 (40.7%)			
가정경제수준에 대한 인식	보통	138 (68.7%)	56 (51.9%)	2.062	2	.357
	부유	20 (8.5%)	8 (7.4%)			

두 번째로 연령, 부모의 교육수준, 학업성적, 생활만족도, 부모와의 갈등빈도에 있어 차이를 확인한 결과, 연령의 경우 보호시설 비이용집단(mean=16.791, sd=1.483)이 이용경험이 있는 집단(mean=16.358, sd=1.569) 보다 가출청소년의 평균 연령이 더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338)=2.443, p=.015). 생활만족도(t(310)=6.631, p=.000)와 부모와의 갈등빈도 (t(149.943)=-5.114, p=.000)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는데, 전자의 경우 이용경험이 없는 집단(mean=7.042, sd=1.860)이 이용경험이 있는 집단(mean=5.505, sd=1.969) 보다 높은 반면, 후자는 이용경험이 있는 집단(mean=2.446, sd=1.024)이 이용경험이 없는 집단(mean=1.862, sd=0.748) 보다 높았다(표 V-50).

표 V-50 보호시설 이용 여부별 집단의 특성(독립집단 t-검정)

특성	집단	평균	표준편차	빈도(N)	t 값	df	р
~~~~	비이용집단	16.791	1.483	234	2.442	220	015
연령	이용집단	16.358	1.569	106	2.443	338	.015
비미이 코오스즈	비이용집단	3.955	0.833	223	610	316	5.40
부모의 교육수준	이용집단	3.889	0.968	95	.610	310	.542
학업성적	비이용집단	2.301	0.883	219	220	210	726
(주관적 평가)	이용집단	2.265	0.954	102	.338	319	.736
ᄱᇬᄓᅩ	비이용집단	7.042	1.860	215	0.001	210	000
생활만족도	이용집단	5.505	1.969	97	6.631	310	.000
 부모와의	비이용집단	1.862	0.748	224	E 111	1 40 0 40	000
갈등 빈도	이용집단	2.446	1.024	101	-5.114	149.943	.000

세 번째로 첫 가출시기와 비행행위에 있어 차이를 확인하였다. 6개 변수 모두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관찰되지 않았는데, 보호시설 이용경험 여부에 따라 첫 가출을 한 시기와 비행행위에 있어 차이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표 V-51).

표 V-51 보호시설 이용 여부별 첫 가출시기 및 비행행위(독립집단 t-검정)

특성	집단	평균	표준편차	빈도(N)	t 값	df	р
 첫가출 시기	비이용집단	6.581	2.046	234	909	179.239	.370
것기술 시기 	이용집단	6.826	2.475	109	898	179.239	.370
서이므저초	비이용집단	13.253	6.000	233	420	220	661
성인물접촉	이용집단	12.944	6.119	108	.439	339	.661
TIOI미램	비이용집단	14.070	6.098	213	25.4	228.132	000
지위비행	이용집단	13.906	4.823	96	.254		.800
프리미해	비이용집단	8.112	3.777	205	6.47	204	E10
폭력비행	이용집단	8.418	3.676	91	647	294	.518
Y4∖₩₩/⊓1≅H	비이용집단	5.132	3.325	228	1 460	220 201	1.45
성(性)비행	이용집단	4.604	2.943	106	1.463	229.281	.145
기초등 비해해도	비이용집단	2.162	1.858	235	500	242	1.40
가출후 비행행동 	이용집단	2.055	1.693	109	.509	342	.140

네 번째로 가출 이후 가족과의 연락 여부 및 가출 관련 상담경험을 비교한 결과 가출관련 상담 경험에 있어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chi^2(1)=27.529$ , p=.000), 보호시설 이용경험이 있는 집단(55.6%)이 그렇지 않은 집단(26.3%)에 비해 상담을 받은 경험비율이 더 높았다(표 V-52).

표 V-52 보호시설 이용 여부별 가족연락 및 가출관련 상담경험(교차분석)

특성	하위범주	보호시설 이용 0	보호시설 이용 여부에 따른 집단				
='6'	아케럴구	이용경험 없음 이용경험 있음		x ²	df	р	
가출 후 가족과의	경험 없음	98 (42 <u>.</u> 8%)	57 (52.8%)	2.044	-1	055	
연락 경험	경험 있음	131 (57.2%)	51 (47.2%)	2.944		.055	
가출관련	경험 없음	171 (73.7%)	48 (44.4%)	27,529	1	.000	
상담 경험	경험 있음	61 (26.3%)	60 (55.6%)	21.029	_	.000	

# ⑥ 성별에 따른 2개 집단의 주요 특성 비교

먼저 성별에 따른 가족구조, 가정경제수준에 대한 인식, 연령, 학업성적, 첫 가출 시기, 가출 횟수를 확인한 결과 가족구조, 가정경제수준(에 대한 인식)에 있어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연령, 학업성적, 첫 가출시기, 가출횟수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V-53, 표 V-54).

표 V-53 성별 특성(교차분석)

특성	하위범주	쉼터	유형	x ²	٩t	2	
<del>특</del> 성	아귀림구	남자	여자	Х	df	р	
	양친	58 (39.5%)	50 (44 <u>.</u> 6%)				
가족구조	한부모	60 (40.8%)	32 (34.8%)	4.483	2	.106	
	양친 모두 부재	29 (19.7%)	30 (26.8%)				
	빈곤	73 (49.7%)	48 (42.9%)		2		
가정경제수준에 대한 인식	보통	61 (41.5%)	60 (53.6%)	5.305		.070	
	부유	13 (8.8%)	4 (3.6%)				

표 V-54 성별 특성(t-검정)

특성	집단	평균	표준편차	빈도(N)	t 값	df	р	
 연령	남자	17.537	1.425	147	2.42	057	722	
인당	여자	17.598	1.398	112	343	257	.732	
학업성적	남자	2.361	1.006	147	1 105		250	
(주관적 평가)	여자	2.223	0.908	112	1.135	257	.258	
첫가 <del>출</del>	남자	14.534	2.379	133	1 515	222 501	404	
시기	여자	14.981	2.173	106	-1.515	232,581	.131	
기초하시	남자	10.674	13.803	138	050	0.40,004	050	
가출횟수	여자	10.757	10.823	107	<b>-</b> .053	242.964	.958	

두 번째로 성별에 따른 비행행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지위비행, 약물사용, 폭력비행, 성(性)비행에 있어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보기 어렵고, 재산비행(t(255)=2.652, p=.008)의경우 차이를 보였다. 즉 남자청소년의 재산비행 평균이 8.269(sd=4.044)로, 평균 7.045(sd=3.117)를보인 여자청소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표 V-55).

표 V-55 성별 비행행위(t-검정)

특성	집단	평균	표준편차	빈도(N)	t 값	df	р	
지위비행	남자	6.782	2.980	104	.179	192,470	.858	
시케미앵	여자	6.706	2.987	93	.179	192.470	.000	
0t= 110	남자	2.435	1.135	147	1 575	257	116	
약물사용	여자	2.241	0.738	112	1.575		.116	
표려비해	남자	10.596	5.163	146	152	255	070	
폭력비행	여자	10.495	5.243	111	.153		.878	
TII A LUI 중비	남자	8.269	4.044	145	0.050	055	000	
재산비행	여자	7.045	3.117	112	2.652	255	.008	
서/ルサ・\⊔┆╬	남자	5.905	2.741	147	700	227 650	406	
성(性)비행 	여자	5.616	2.990	112	.798	227.659	.426	

세 번째로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기분 및 자살(t(251)=-3.594, p=.000), 충동성(t(252)=-2.892, p=.004)에서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기분 및 자살의 경우 남자청소년은 평균 22.210(sd=7.414), 여자청소년은 평균 25.818(sd=8.528)을 기록하

였고, 충동성은 남자청소년의 평균이 15.579(sd=4.772), 여자청소년의 평균은 17.312(sd=4.664)였다. 즉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 가운데 여자청소년이 기분 및 자살, 충동성과 관련하여 보다취약한 상태임을 의미한다(표 V-56).

표 V-56 성별 정신건강 특성(t-검정)

특성	집단	평균	표준편차	빈도(N)	t 값	df	р	
거지 미 새가	남자	23.490	9.239	143	620	246.062	F20	
걱정 및 생각	여자	22.800	8.176	110	.628	246.062	.530	
기비 미 되사	남자	22.210	7.414	143	2.504	051	000	
기분 및 자살	여자	25.818	8.528	110	-3.594	251	.000	
하스기 이디네	남자	13.903	5.117	145	1 250	255	200	
학습과 인터넷	여자	14.696	4.858	112	-1.259	255	.209	
고경서	남자	16.205	5.427	146	076	255	202	
공격성	여자	16.802	5.383	111	<b>−.876</b>	255	.382	
바다하지 이미경하	남자	14.377	4.979	146	050	054	001	
반사회적 인지경향	여자	14.345	5.024	110	.050	254	.961	
ᄎᄃᄸ	남자	15.579	4.772	145	2 002	252	004	
충동성	여자	17.312	4.664	109	-2.892	252	.004	
교리노크	남자	29.375	8.198	144	900	25.4	274	
대처능력	여자	30.241	7.062	112	- <u>.</u> 890	254	.374	
내려져 오느가	남자	23.614	5.049	145	550	255	502	
사회적 유능감	여자	23.286	4.321	112	.550	255	.583	

# ⑦ 쉼터 유형에 따른 3개 집단의 주요 특성 비교

먼저 성별 분포, 가족구조, 가정경제수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가족구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chi^2(4)$ =19.037, p=.001). 즉 쉼터 유형 가운데일시쉼터에 거주하는 가출청소년 가운데 양친이 모두 있는 경우가 37.7%로 가장 높았고, 단기쉼터거주 청소년의 경우 한부모가정의 비율이 48.6%로 가장 높았다. 중장기쉼터의 경우 양친이모두 부재한 경우가 6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표 V-57). 이는 현재 쉼터 유형은입소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호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보호기간이 긴 중장기쉼터에 머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표 V-57 쉼터 유형별 집단의 특성(교차분석)

EM	크이버즈		쉼터 유형		x 2	-1£	
특성	하위범주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X	df	р
성별	남자	32 (52.5%)	40 (55.6%)	4 (25.0%)	4.978	2	.083
~ 	여자	29 (47.5%)	32 (44 <u>.</u> 4%)	12 (75 <u>.</u> 0%)	4.970	2	.000
	양친	23 (37.7%)	15 (20.8%)	4 (25 <u>.</u> 0%)		4	.001
가족구조	한부모	21 (34.4%)	35 (48.6%)	2 (12 <u>.</u> 5%)	19.037		
	양친 모두 부재	17 (27.9%)	22 (30.6%)	10 (62.5%)			
	빈곤	28 (45.9%)	37 (51.4%)	7 (43.8%)			
가정경제수준에 대한 인식	보통	31 (50.8%)	28 (38.9%)	9 (56.3%)	5.108	4	.276
	부유	2 (3.3%)	7 (9.7%)	0 (0.0%)			

두 번째로 쉼터 유형별로 가출청소년 집단 간 연령, 학업성적, 첫 가출 시기, 가출횟수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네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일시, 단기, 중장기쉼터를 이용하는 가출청소년의 경우 연령, 학업성적, 첫 가출시기와 기출횟수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표 V-58).

표 V-58 쉼터 유형별 집단의 특성(일원분산분석)

특성	집단	평균	표준편차	빈도(N)	F 값	df	р	사후검증 (Bonferroni)
	일시쉼터(T)	17.520	1.501	61				
연령	단기쉼터(S)	17.810	1.624	72	.550	(2, 146)	.578	_
	중장기쉼터(L)	17.690	1.250	16				
학업성적	일시쉼터(T)	2.210	0.878	61				
(주관적	단기쉼터(S)	2.310	1.057	72	.160	(2, 146)	.853	_
평가)	중장기쉼터(L)	2.310	1.138	16				
	일시쉼터(T)	14.580	2.692	55				
첫가 <u>출</u>	단기쉼터(S)	14.250	2.354	69	1.285	(2, 136)	.177	_
시기	중장기쉼터(L)	15.330	1.633	15				
	일시쉼터(T)	12.480	13.550	56				
가출횟수	단기쉼터(S)	12.870	12.553	71	.691	(2, 140)	.503	_
	중장기쉼터(L)	8.810	8.719	16				

세 번째로 비행행위에 있어 세 집단 단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어떤 변수에서도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즉 일시, 단기, 중장기쉼터에서 보호하는 청소년 간에 비행행위에는 차이나 특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V-59).

표 V-59 쉼터 유형별 세 집단의 비행행위(일원분산분석)

특성	집단	평균	표준편차	빈도(N)	F 값	df	р	사후검증 (Bonferroni)
	일시쉼터(T)	6.334	3.042	40				
지위비행	단기쉼터(S)	7.185	3.194	60	1.939	(2, 112)	.149	_
중장기쉼터(L) 5.711	1.294	15						
	일시쉼터(T)	2.377	1.331	61				
약물사용	단기쉼터(S)	2.292	0.759	72	.158	(2, 146)	.854	_
	중장기쉼터(L)	2.250	0.683	16				
	일시쉼터(T)	10.200	5.754	60				
폭력비행	단기쉼터(S)	10.778	5.511	72	.304	(2, 145)	.738	_
	중장기쉼터(L)	9.813	3.430	16				
	일시쉼터(T)	7.400	3.752	60				
재산비행	단기쉼터(S)	7.722	3.408	72	.299	(2, 145)	.742	_
	중장기쉼터(L)	7.063	2,323	16				
	일시쉼터(T)	5.279	2.589	61				
성(性)비행	단기쉼터(S)	6.208	2.955	72	2.051	(2, 146)	.132	_
	중장기쉼터(L)	5.313	2.651	16				

네 번째로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8개 변수 가운데 대처능력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F(2, 143)=3.445, p=.035). 즉 대처능력과 관련하여 일시쉼터 청소년의 평균값이 27.983(sd=8.148)인데 반해 단기쉼터, 중장기쉼터의 경우 각각 31.648(sd=8.652), 31.250(sd=4.933)을 기록하였다. 집단 간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일시쉼터 청소년의 경우 대처능력이 유의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V-60).

표 V-60 쉼터 유형별 세 집단의 정신건강 특성(일원분산분석)

특성	집단	평균	표준편차	빈도(N)	F 값	df	р	사후검증 (Bonferroni)
7174 01	일시쉼터(T)	20.814	8.750	59				
걱정 및 생각	단기쉼터(S)	22.721	9.338	68	1.424	(2, 140)	.244	_
0.1	중장기쉼터(L)	24.688	8.356	16				
-1H D	일시쉼터(T)	22.379	8.792	58				
기분 및 자살	단기쉼터(S)	23.257	8.644	70	0.810	(2, 141)	Canal   Cana	
시ㄹ	중장기쉼터(L)	25.500	8.914	16				
-1 4 -1	일시쉼터(T)	12.733	5.197	60				
학습과 인터넷	단기쉼터(S)	13.930	4.975	71	1.395	(2, 144)		
근디자	중장기쉼터(L)	14.750	5.495	16				
	일시쉼터(T)	15.933	5.760	60				
공격성	단기쉼터(S)	17.014	5.373	71	0.622	(2, 144)	.538	_
	중장기쉼터(L)	16.313	5.689	16				
미미리되	일시쉼터(T)	13.900	5.439	60				
반사회적 인지경향	단기쉼터(S)	13.831	5.040	71	0.022	(2, 144)	.979	_
L'/100	중장기쉼터(L)	14.125	4.241	16				
	일시쉼터(T)	15.828	4.932	58				
충동성	단기쉼터(S)	16.268	5.259	71	0.542	(2, 131)	.583	_
	중장기쉼터(L)	17.333	4.386	15				
	일시쉼터(T)	27.983	8.148	59				
대처능력	단기쉼터(S) 31.648 8.652		71	3.445	(2, 143)	.035	S > T	
	중장기쉼터(L)	31,250	4.933	16				
11=1=1	일시쉼터(T)	22.607	4.886	61				
사회적 유능감	단기쉼터(S)	24.257	5.415	70	1.884	(2, 144)	.156	_
πоп	중장기쉼터(L)	22.750	3.958	16				

이상에서 언급한 기출청소년의 집단 유형별 특성과 검증결과를 요약한 것이 표V-61, 표 V-62이다. 이 표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검증된 분석결과는 음영을 주고 해석을 요약함으로써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출청소년 유형화기준 독립변수	가출원인에 따른 세 집단(G1: 가족관련/ G2: 학교관련이유 /G3: 기타이유)	가정생활만족도에 따른 세 집단 (G1:불만족/ G2:보통/ G3:만족)	가출빈도에 따른 두 집단 (G1:1회 이하/ G2:2회 이상)	보호시설 이용경험 유무에 따른 두집단 (G1: 비이용/ G2: 이용)			
성별	여자비율이 G1에서 가장 높음	여자비율이 G1에서 가장 높고 G3에서 가장 낮음	G2의 여자비율이 G1 보다 높음	G2의 여자비율이 G1 보다 높음			
가족구조	.068	양친이 모두 있는 가정의 비율이 G1에서 가장 낮고 G3에서 가장 높음	양친 모두 있는 가정의 비율이 G2 보다 G1에서 높게 나타남	.051			
가정경제수준 (인식)	.370	빈곤가정비율은 G3에서 가장 낮고 G1에서 가장 높음	.898	.357			
연령	.707	.249	G1의 평균연령이 G2 보다 높음	G1의 평균연령이 G2 보다 높음			
부모의 교육수준	.568	.159	G1의 부모교육수준이 G2 보다 높음	.542			
학업성적	.207	G3의 학업성적이 G1 보다 높음	G1의 학업성적이 G2 보다 높음	.736			
생활만족도	G1이 G3보다 생활만족도가 낮음	N. A.	G1의 생활만족도가 G2 보다 높음	G1의 생활만족도가 G2 보다 높음			
부모와의 갈등빈도	G1이 G2 및 G3 보다 부모와의 갈등 빈도가 높음		G2의 부모와의 갈등정도가 G1 보다 높음	G2의 부모와의 갈등정도가 G1 보다 높음			
 첫 가출시기	.429	.025	.222	.370			
성인물 접촉	.798	G3가 G1과 G2 보다 성인물접촉 정도가 높음.		.661			
지위비행	.961	.087	G2의 지위비행정도가 G1 보다 높음	.800			
폭력비행	.188	.538	G2의 폭록비행정도가 G1 보다 높음	.518			
성(性)비행	.317	G3가 G1과 G2 보다 性비행 정도가 높음.	G2의 性적비행정도가 G1 보다 높음	.145			
가출 후 비행행동	.330	.084	.256	.140			
가출후 가족과의 연락 경험	.620	.062	가족과의 연락 경험율에 있어 G1이 G2 보다 높음	.055			

	가출원인에 따른 세 집단(G1: 가족관련/ G2: 학교관련이유 /G3: 기타이유)	가정생활만족도에 따른 세 집단 (G1:불만족/ G2:보통/ G3:만족)	가출빈도에 따른 두 집단 (G1:1회 이하/ G2:2회 이상)	보호시설 이용경험 유무에 따른 두집단 (G1: 비이용/ G2: 이용)
가출청소년보호시설 이용경험	G1의 시설이용 경험율이 가장 높음	G1의 시설이용 경험율이 가장 높음	G2의 시설이용경험율이 G1 보다 높음	N. A.
가출관련 상담경험	G1의 상담경험율이 가장 높음	G1의 상담 경험율이 가장 높음	.053	G2의 상담경험율이 G1 보다 높음

# 표 V-62 가출청소년 하위 집단의 특성 검증 요약(2)

가출청소년 유형화기준 독립변수	성별에 따른 두 집단 (G1:남자/ G2:여자)	쉼터유형에 따른 세 집단 (G1:일시쉼터/ G2:단기쉽터/ G3:중장기쉼터)
성별	N. A.	.083
가족구조	.106	양친모두 있는 가정의 비율은 G1에서 가장 높았고, 한부모가정의 비율은 G2에서 가장 높았으며, 양친 모두 부재한 경우는 G3에서 가장 높음
가정경제수준 (인식)	.070	.276
연령	.732	.578
학업성적	.258	.853
첫 가출 시기	.131	.177
가출횟수	.958	.503
지위비행	.858	.149
약물사용	.116	.854
폭력비행	.878	.738
재산비행	G1의 재산비행 정도가 G2 보다 높음	.742
성(性)비행	.426	.132
걱정 및 생각	.530	.244
기분 및 자살	G2의 기분 및 자살(위험) 정도가 G1보다 높음	.447
학습과 인터넷	.209	.251
공격성	.382	.538
반사회적 인지경향	.961	.979
충동성	G2의 충동성 정도가 G1보다 높음	.583
대처능력	.374	G2의 대처능력이 G1 보다 높음
사회적 유능감	.583	.156

# (3) 소결

가출청소년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가출원인, 가정생활만족도, 가출 빈도, 가출 이후 보호시설 이용경험 유무, 성별, 가출 후 이용 중인 쉼터 유형 등 6가지 주요 변인을 도출하고, 이를 집단분류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라 2012년 청소년유해환 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데이터와 2013년 가출팸 실태조사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였다.

먼저, 가출원인을 종속변수로 '가족관련 이유', '학교관련 이유', '기타 이유' 등 세 집단에 대한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의 판별함수 중 함수1이 유의하였는데, 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 가운데 성별, 한부모, 생활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원인이 '가족관련이유'일 때 여자청소년의 비율이 높고 생활만족도 수준이 낮았으며, '학교관련 이유'로 가출한 경우 한부모가정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출원인이 '기타 이유'인 경우 생활만족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즉 가출원인에 따라 청소년과 가족 환경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가정생활만족도에 따라 '불만족', '보통', '만족' 등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 함수1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의미한 독립변수로는 성별 양친 모두 부재, 빈곤한 가정경제수준, 보통의 가정경제수준, 성(性)비행이었다. 가정생활만족도가 보통인 집단은 두집단의 중간적 특성을 보였다. 특히 가정생활에 불만족 집단에서는 여자청소년, 양친이 모두부재한 청소년, 빈곤가정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경제수준이 보통인 가정의 청소년 비율이 가장 낮았다. 반면 가정생활에 만족하는 집단의 경우 양친이 모두부재한 청소년, 빈곤가정 청소년 비율이 가장 낮았다.

셋째, 가출빈도에 따라 최근 1년간 가출 횟수가 1회 이하인 집단과 2회 이상인 집단으로 구분한 뒤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연령, 한부모가정, 생활만족도, 성인물접촉, 지위비행, 성(性)비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출빈도가 2회 이상인 집단의 경우 평균 연령이 낮고, 여자청소년, 한부모가정 비율이 높았다. 또한 생활만족도는 낮고 성인물 접촉과 성(性)비행정도는 높았다. 이를 통해 일회성 충동적 가출을 넘어 두 번 이상 가출한 청소년은 가정환경의 취약성, 비행 등 위기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 정책대상임이 확인되었다.

넷째, 가출 이후 보호시설 이용경험 유무를 종속변수로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 중 성별, 연령, 생활만족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출청소년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평균연령, 가정생활만족도 수준이 더 낮았다. 여자청소년은

보호시설 이용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나이가 많은 기출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쉼터 이용이나 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성별을 종속변수로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 가운데 한부모가정, 보통의 가정경제수준, 기분 및 자살, 충동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가출청소년 가운데 남자청소년 집단에서 한부모가정의 비율이 더 높았고, 경제수준이 보통인 가정의 비율은 더 낮았다. 반면 여자청소년의 기분 및 자살, 충동성 변수의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여자청소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족구조, 가정생활 형편 등 물리적 환경은 덜 취약한 반면 정신건강 측면에서 취약성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가출 후 이용 중인 쉼터 유형에 따라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 집단을 구분한 뒤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 중 가족구조와 관련된 2개의 더미변수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쉼터 청소년은 한부모가정 비율이 가장 높았고, 중장기쉼터는 부모가 모두 부재한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 외 다른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현행 쉼터를 보호기간에 따라 유형화 할 경우 부모가 모두 부재한 청소년은 일시, 단기, 중장기로 끊임없이 거처를 옮겨 다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출청소년이 쉼터에 진입하는 단계에서 문제와 욕구를 충분히 사정하여 수요자 관점에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가출청소년의 집단별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분석을 실시한 결과 먼저 가출원인에 따라 구별된 세 집단은 성별, 생활만족도, 부모와의 갈등빈도,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이용경험, 가출관련 상담경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가족관련 이유'로 가출한 집단이 여러 면에서 다른 두 집단과 구별되는 특성을 보였는데 여자청소년 비율, 부모와의 갈등빈도는 가장 높았고, 생활만족도는 가장 낮았다. 또한 가출 후 청소년 보호시설 이용 경험율과 가출관련 상담경험율 역시 가장 높았다. 이는 가족 내 문제가 있는 경우 친구, 친인척 등 사회적 관계망을 활용하기도 쉽지 않아 쉼터 이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고 쉼터를 통해 관련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가정생활만족도에 따라 구별된 세 집단은 성별, 가족구조, 가정경제수준, 학업성적, 부모와의 갈등빈도, 첫 가출시기, 성인물접촉, 성(性)비행,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이용경험, 가출관련 상담경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가정생활에 불만족하는 집단의 경우 여자청소년, 빈곤가정 비율이 가장 높았고 양친 가정 비율이 가장 낮았다. 불만족집단의 경우 낮은 학업성적, 부모와의 높은 갈등빈도 등 두 집단 차이가 두드러졌다. 또한 불만족집단은 가출 후 보호시설 이용경험율과 가출관련 상담경험율도 가장 높았다. 반면 만족집단의 경우 성인물 접촉정도,

성(性)비행의 평균점수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불만족집단에서 여자청소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출경험이 있는 여자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적, 개입적 차원에서 포괄적인 성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셋째, 가출빈도에 따라 두 집단은 성별, 가족구조, 연령, 부모의 교육수준, 학업성적, 생활만족도, 부모와의 갈등빈도, 성인물 접촉, 지위비행, 폭력비행, 성(性)비행, 가출 후 가족과의 연락,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이용경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출을 2회 이상한 집단의 경우 여자청소년의 비율, 양친이 모두 있는 가정 비율, 평균연령, 부모 교육수준, 학업성적, 생활만족도가 모두 낮았고, 반면에 부모와의 갈등빈도, 성인물접촉, 지위비행, 폭력비행, 성(性)비행은 더 높았다. 또한 가출 이후 보호시설을 이용한 경험은 더 많은 반면 가출후 가족과 연락한 경험은 더 낮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출을 2회 이상 한 경우개인, 가족 환경 측면에서 위기에 노출된 정도가 심각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쉼터에서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전문적인 지원과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가출 후 보호시설 이용경험에 따른 두 집단은 성별, 연령, 생활만족도, 부모와의 갈등빈도, 가출관련 상담경험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보호시설 이용경험이 있는 집단은 여자청소년의 비율, 부모와의 갈등빈도가 더 심각하고 생활만족도는 더 낮았다. 반면 상담 등 서비스이용 경험율은 높았는데, 가출 후 쉼터에 입소하는 청소년은 가출 후에도 쉼터를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에 비해 부모의 지원, 지지를 기대하기 어렵고 가정환경이 더욱 취약한 것을 알수 있다. 또한 쉼터를 이용할 경우 상담 등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좋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성별에 따라서는 재산비행, 기분 및 자살, 충동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청소년의 경우 재산비행 정도가 더 높은 반면 여자청소년은 기분 및 자살, 충동성 정도가 더 높았다. 따라서 쉼터에서 이와 같은 성별 격차를 반영하여 교육, 상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공할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쉼터 유형에 따른 세 집단은 입소 청소년의 가족구조, 대처능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일시쉼터 이용 청소년의 경우 양친가정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단기쉼터의 경우 한부모 가정, 중장기쉼터는 양친 부재 가정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현행 쉼터를 입소기간이 아닌 가출청소년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대처능력의 경우 일시쉼터 이용 청소년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들은 가출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가출 후 생활적응이 잘 되지 않고 가용자원에 대한 정보나 활용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 2. 노숙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지원요구 분석59)60)

# 1) 조사개요

노숙경험이 있거나 현재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청소년의 생활실태, 의식, 지원요구를 파악하고 자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홈리스 상황에 놓여 있으나 가정복귀 여부뿐 아니라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하여 '노숙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은 청소년 쉼터를 간헐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입소하지 않은 채 노숙생활을 유지하는 청소년, 현재주거로서 적절하지 않은 곳에서 생활하는 노숙청소년, 노숙인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24세 이하청소년이다. 다만 이들의 현 생활실태뿐 아니라 홈리스 기간을 통한 사회화 과정의 특성을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아동·청소년기에 상당기간 노숙을 경험한 적이 있는 29세이하 청년층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조사대상자 섭외는 서울, 대전, 부산,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조사대상자의 특성 상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거리청소년을 직접 섭외하지 않고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추천 방식만을 활용하였다.61) 이와 함께 일시쉼터를 거점으로 노숙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섭외하는 방식을 병행하였으며 목표 수를 정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대상자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각 지역별로 노숙청소년의 특성과 실태에는 편차를 보인다는 전문가의 자문을 반영하여 4개 지역별로 각 5명을 할당하였고, 현재까지 노숙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만 대상으로 하였다. 단 조사비용과 기간의 한계로 성별, 장애여부, 미성년자 여부 등 다른 기준은 적용하지 않았다.

심층면접조사는 2014년 5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추진하였고 21명을 조사완료 하였으며 이 가운데 최종 20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17명, 여자가 3명으로 남자가 다수를 차지하였고,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4명이었다. 특히 조사대상자 20명가운데 양육시설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5명에 달하였다(표 V-63). 이 외 면접대상자의

⁵⁹⁾ 노숙청소년은 가출청소년, 홈리스, 무의탁(무연고) 등 주거취약계층 청소년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법적 용어(예, 노숙인지 원법)라는 점에서 노숙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돌아갈 가정이 없는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노숙, 홈리스를 부분적으로 혼용하였다.

⁶⁰⁾ 이 부분은 김지연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동철 교수(동의대학교), 이영아 교수(대구대학교), 임세희 교수(서울 사이버대학교), 서종균 박사(전, 한국도시연구소 소장)가 집필함.

⁶¹⁾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종사자를 통한 대상자 섭외 방식을 활용하였고 면접 참여 희망자에게 충분하게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았고, 면접 전반에서 대상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연구윤리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필진이 사전 회의를 수차 례 가졌으며, 종사자 배석 하에 집필진이 면접조사를 직접 진행하였음.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정리한 것이 표 V-65이다.

표 V-63 노숙청소년 면접대상 사례수(N=20¹⁾)

구분	범주	사례 수	비고
 성별	남성	17	
경 _크	여성	3	
МH	미성년	4	
연령	성년	16	24세 이상 11 명 포함
아이네서 새하여버	해당	5	
양육시설 생활여부	해당없음	15	

^{*} 주: 면접 완료 대상자는 총 21명이나 지적장애 정도를 감안하여 최종 분석에서는 제외함.

노숙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은 이들의 의식과 현재 직면한 문제, 회고를 바탕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일반화와 범주화가 어려운 정책사례를 발굴하는데 의미를 두었다. 특히 주거, 일과 자립, 관계, 지원정책 등 주요 영역을 설정하고 생활실태와 정책적 지원요구를 파악하고자하였다. 이와 함께 주요 영역별로 연구질문을 도출하고 조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 노숙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지원요구 분석 초점

#### 1. 주거

- 1. 노숙청소년은 왜 불안정한 주거상황에 노출되어 있는가?
- 2. 청소년기 노숙이나 불안정한 주거경험이 발달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Ⅱ. 일과 자립

- 1. 근로에 대한 생각과 전반적인 자립여건은 어떠한가?
- 2. 자립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사회적 지원은 무엇인가?

## Ⅲ. 관계(생활, 의식)

- 1. 노숙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 2. 노숙청소년의 일상생활의 특징은 무엇이고 청소년기 발달과 성인기 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Ⅳ. 지원정책

- 1. 지원 서비스나 제도에서 도움이 되는 것과 도움이 되지 않은 무엇인가?
- 2. 도입하거나 개선해야 할 지원과 서비스 제공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먼저 '주가' 관련 주요 면접내용은 노숙 당시의 원가족에 대한 경험과 노숙과정에서의 주거경험 보호시설 이용경험 등을 포함한 과거 주거경험과 현재의 주거상태와 가정복귀 가능성, 그리고 원가족의 특성을 포함한 현재의 주거상태, 주거지원에 대한 요구이다. '일과 자립' 관련 주요 면접내용은 구직특성과 자립의지, 자립의 장애요인 등을 포함하여 근로상황, 자립여건, 자립지원에 대한 요구이다. '생활, 의식을 포함한 관계' 영역의 주요 면접내용은 교사, 교우관계를 포함한 대인관계, 노숙과정에서 경험한 긍정적, 부정적인 사회경험과 관계의 특성, 하루 일과와 의식주의해결방식, 약물, 미디어 등 중독 관련 특성, 미래에 대한 비전 등 의식과 일상생활 관련 내용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원정책'에서는 노숙 이전과 노숙과정에서 느꼈던 부족한 지원, 그리고현재 필요로 하는 지원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하였다. 특히 노숙기간이 장기화될수록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고, 과거경험을 회고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면접 내용을 가능한 노숙이전부터 노숙시작 시점, 노숙기간, 그리고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 순으로 나열하고 이러한 흐름을 염두에 두면서면접을 진행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 표 V-64이다.

표 V-64 노숙청소년 심층면접 주요 내용

시간	항목	내용	세부 내용
노숙이전 · 노숙시작 · 노숙기간	1. 주거	1-1 과거 주거경험	· 노숙시작 당시 원 가정 경험  - 노숙시작 당시 가족의 생활환경  - 노숙시작 당시 가족관계  · 노숙과정에서 겪은 주거경험  - 주거지 이동 및 선택  - 각 주거지 선택의 이유 혹은 어려움  · 청소년(노숙인)쉼터의 최초 인지 및 과거 경험  - 청소년(노숙인)쉼터를 언제, 어떻게 처음 알았는가?  - 청소년(노숙인)쉼터에서 어떤 경험을 하였는가?
현재 · 미래		1-2 현재 주거상태	· 현재의 주거상태 - 주거의 특징 - 주거지 선택 이유 · 원가족과의 통합(귀가) 가능성 - 노숙시작 후 원가족과의 관계 - 원가족의 현재 상태 · 청소년(노숙인)쉼터의 현재적 의미 - 청소년(노숙인)쉼터가 현재 생활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시간	항목	내용	세부 내용
		1-3 주거지원 요구	· 주거에 대한 욕구 - 원하는 주거의 유형 및 특징 - 원하는 주거의 획득 가능성 혹은 탈노숙의 가능성
		2-1 근로상황	· 최소한의 생활만을 위한 소득활동 ·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
	2. 일과 자립	2-2 자립여건	· 자립에 대한 의지 · 자립을 방해하는 요소
1	2. 될때 사업	2-3 자립지원 요구	· 구직을 위한 연락수단 · 노숙인이라는 낙인문제의 해결 · 명의도용 문제의 해결 · 미성년자 합법적 일자리 · 직업훈련의 현실화
노숙이전 · 노숙시작		3-1 대인관계	· 교우관계 · 교사와의 관계
노숙기간 · 현재 ·	3. 관계 (생활, 의식)	3-2 사회관계	· 노숙을 시작하게 된 계기 · 노숙으로 단절되는 관계와 유지되는 관계 · 새롭게 맺게 되는 관계 · 도움이 되었던 관계와 힘들었던 관계
미래		3-3 사회의식과 일상생활	· 하루 일과와 의식주 해결방식 · 중독의 문제 · 미래에 대한 비전 및 사회의식
		4-1 부족했던 지원	· 방치된 가정폭력 · 잠잘 곳이 없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 · 시설이용자를 위한 자립지원
	4. 지원정책	4-2 필요한 지원	· 일을 갖기 위한 지원 · 집이 없는 청년을 위한 시설 · 보호적 개입에 대한 필요 · 문화적인 지원
		4-3 개선되어야 할 지원	· 거처 제공 · 다양한 필요에 대한 대응 · 시설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 제도적 과제

五 V-65

# 심층면접 대상 노숙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뮤			시설에서 알게 된 형(33살)과 동거				왼손 엄지손가락 불편		지적장애3급(등록 안함)	여자친구와 동거	다리 골절		무요	지적장애	손목 및 팔꿈치 통증	원 가정 내 아파트 비상구 거주	5세 아들과 여성 노숙인시설 거주	청소년 쉼터 입소 규정 위반으로 입소 불기능, 일시쉼터 전전하며 생활	일시쉼터 이용, (성인)남자친구와 동거 병행	일시쉼터 이용,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임소하고 워하나 치부 독의거부로 미입소
市	던	디	고 퇴학	고 자퇴	중 자퇴	대학 휴학	고 자퇴	초졸(검정고시)	·서	고 자퇴	든	标	대학 중퇴	두	대학 자퇴	드	중졸(검정고시)	중졸(검정고시)	중 자퇴	중 재학
동거인	0	0	0	0	0	0	0	×	×	0	0	×	0	0	0	×	0	0	0	0
장하	×	×	X	×	X	X	X	×	0	X	×	X	X	0	X	X	X	×	X	X
윤 파	×	×	X	×	0	×	X	×	×	×	0	×	0	×	0	×	×	0	×	×
주거특성 (조사시점 현재)	노숙인시설 거주	노숙인시설 거주	용	노숙인시설 거주	노숙인시설 거주	노숙인시설 거주	노숙인시설 거주	여인숙	고시원	노숙(공원벤치, 건물계단)	노숙인시설 거주	월세 (방2개)	노숙인시설 거주	노숙인시설 거주	노숙인시설 거주, 여인숙	노숙(비상구 계단)	노숙인시설 거주	일시쉼터 이용	일시쉼터 이용	일시쉼터 이용
노숙기간	3년	8년	닭9	2년	11년	닭9	2개월	12년	6년	6개월	2년 3개월	1년 4개월	7개월	4개월	7년	2개월	7년	5년	3년	5개월
RL	잠	뭄	대전	무전	대전	부산	부산	부산	부산	부산	남	대구	대구	대구	라그	서울	서울	사왕	경기	37
임	22	27	27	23	27	58	56	56	24	17	21	24	27	20	28	19	22	16	17	14
소0 페	亡	亡	口	亡	亡	亡	亡	亡	亡	Ь	亡	亡	口亡	口亡	口亡	口亡	ਲ	ەخ	ਰ	口亡
는 다 다	10	02	03	04	90	90	20	80	60	10	=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 분석결과

심층면접 자료는 주거, 일과 자립, 관계, 정책지원 요구 등 각 영역에서 설정한 주요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각 영역의 연구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 (1) 주거
- ① 과거 주거경험: "나올 수밖에 없는 집"
- □ 때리고, 구박하고, 가두는 가족

면접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원가족 관계를 경험하였으며, 이는 노숙시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등 중복학대를 경험하였고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심각한 수준의 학대를 경험하였다. 손으로 맞거나 삽이나 쇠파이프 등 도구로 맞은 경우, 듣기 싫은 욕설, 구박, 방에 가두거나 가족원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게 하였고 이러한 학대는 초등학교 입학 이전부터 이루어졌다. 학대 가해자는 주로 보호의 책임이 있는 친부나 계모, 조모 등이었고 일부는 형, 동생에게도 학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그래가지고 고모들이 맨날 술 먹고 아버지도 술 먹고 들어와 계속 폭행을 하시고.. 형하고 저하고 맞고 자랐거든요. 도저히 집에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01)
- · 막 잔소리도 많이 하고요.. (응..) 막 가둬놓고요.. (아 옛날부터 그랬구나..) 네...막 때리고...(05)
- · 그러니까 제가 싫었던 거죠. 다른 새엄마들은 다 그랬어요. '니가 낄 자리는 없다'라는 걸 느끼게 해줬어요(17)
- · (할머니가 술 먹고) 던지면 뭐... 그러니까 날라 오는 거 잡을 때도 있고, 그냥 못 보면 그냥 맞고... 만약에 진짜... 칼 같은 거 날라 올 때도 있어요 가위랑... 그래서 그럴 때 딱 피하고... 어... 진짜 심각하게 날라 온 게 짱돌 같은 거랑 칼? 그리고 진짜 막... 때릴 때, 심각하게 맞았던 게... 제일 아팠던 게 각목이랑 쇠파이프(18)
- · 아버지가 계속 나한테 화내시고.....다 못하게 해요.. TV도 못하고..다 못하게 해요.. .....그냥 방에만 있으라고 해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1년 동안 학교 빼먹고요.. 그냥 집에만 있어요.. 12시간 정도.. 밖을 못 나가요....... 그리고요..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도.. 아버지가 계속 문을 두들겨요..(20)

# ① 착취하는 가족

경제적으로 빈곤계층에 속하는 대상자가 상당수에 달하였다. 가족에게 아르바이트 비를 뺏기거나 심지어 아동발달계좌에 적립된 돈을 다 써버린 후 다시 아동복지시설로 되돌려 보내지 기도 하였다. 가족이 면접대상 청소년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아 부채를 떠넘겨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키기도 하였다. 차라리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입소하겠다고 하는데도 기초생활수급비를 더 받기 위해 양육을 감당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시설 입소에 동의하지 않는 등 착취의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대학을) 1년 다녔는데 자꾸 부모님 찾아오셔가지고.. 돈 좀 달라 하고 뭐 이러시니까..(01)
- · (장애수당 30만원은) 동생(이 가져가요)....(14)
- · 친아빠 잠깐 만났는데 친아빠랑 새엄마랑 이제 꼬득인거죠. 저를... 그래서 ㅇㅇ야 집 얻고 뭐 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대출을 알아보고 한거죠. 제 이름으로...(17)
- · 제가 후원금이 600만원인가 있었어요.... 근데 집에 왔을 때 엄마가 피아노 사고, 이것저것 사고, 자기 쇼핑하고 그러느라고 600만원을 다 썼어요... 무조건 동생 편만 듣고 이야기 안 들어보고...(19)
- · 제가 그룹홈을 가게 되면은 수급비가 안나온다고.. (아빠가?) 네.. (아..) 저는 가고 싶은데.. 그룹홈..(20)

# ⓒ 쫓아내는 가족

가족에 의해 집에서 쫓겨나온 경우도 있다. 이들은 성년에 달했다는 이유로, 새어머니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가족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 등으로 '집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쫓겨나와 노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주목할 점은 원가족은 가족갈등의 원인이 면접대상 청소년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가족갈등이 유발되도록 자극하거나 가족 내에서 대상 청소년이 학대를 받아도 묵인하는 등 가족 내 갈등의 모든 책임을 대상 청소년에게 돌리는 양상을 보였다.

- · (양부모집에 버려져 양부모 밑에서 자라다가)고등학생 때 사고도 치고 하고.. 그러니깐.. 너 나이도 됐고 했으니깐.. (너 나가라..) 네....(04)
- · 제가 딱 재수를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께서 그냥 반대하시고.. 이번 년에 군대 가라고 해가지고.. 저는 싫다고.. 그렇게 해서 그럼 부모님께서 그러면.. 너 하고 싶은 대로 살려면 나가서 지내라고 해서..(16)
- · 너 왜 애들(계모가 데리고 온 자녀) 방에 들어갔냐고, 내가 들어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애(면접 대상자의 자녀) 데리고, 니 아빠 데리고 나가라고. 그래서 내가 너 올 때마다 니 아빠 데리고 나가라고 하지 않았냐고.... 빨리 나가지 왜 일을 만드냐고... '○○ 야 우리 잘 살자.' 해놓고 '○○야 미안 하다. 나가달라. 아빠는 이 여자랑 살아야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던 적이 두 번이나 있었어요(17)

· 제가 (면접 대상자에게 학대를 행하는) 할머니를 때렸다고 오해 받아가지고. 할머니 살고 계시는 외삼촌, 아니 친삼촌 집인데 오해 받아가지고 삼촌이 저를 집에 못 들어오게 하는 상황이고, 아버지 쪽은 새엄마가 저랑 같이 사는 걸 꺼려하고 있어가지고... 저랑은 같이 안 산다 그래 가지고(18).

# ② 거주할 집이 없는 홈리스

우리나라「민법」에서는 '친권자는 자(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법 제913조). 또한 가족의 범위는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도 포함한다(법 779조). 그러나 친권자, 가족은 면접대상 청소년에게 가정을 제공해 주지 않거나 거주할집이 없는 사실상 홈리스 상태의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의 사망, 가출로 인해 조부모를 포함한 친척 집에 거주하다가 눈치가 보여 살 수 없다고 느끼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연령 제한으로 인해 퇴소한 경우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돌아갈 가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 20살 때 퇴소해서 나왔어요(02)
- · 제가 군입대할 당시가..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으..음) 집 같은 게 없는 상태여서 군대에 들어가 게 된 거예요(03)
- · (부모 사망후 주유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다가 누나와 매형이 사는 집으로 갔다가) 누나랑 또 싸우고 매형도 뭐라 하고.. 듣기 싫어가지고 완전히 짐을 싸가지고 나왔거든요.(13)
- · (부모님은 7살 때) 돌아갔어요.....(형하고 살다가 싸운 후)나왔어요(14)
- · 그래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친척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좀 생활했었죠.. 했는데 그것도 좀 안되더라구요.. 약간.. 친척네라 눈치도 좀 보이고..(15)

### ① 생활하기 불편한 주거취약계층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로 생활하기 불편한 주거여건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다. 주거는 거주인의 발달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하며 과밀하거나, 환기·난 방 등이 되지 않는 주거여건은 신체적·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심할 경우 가족관계에도 역기능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러한 요소가 청소년에게는 주거퇴거 혹은 노숙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ㆍ 형제는 1녀 3남인데.. (1녀 3남..)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게 불편했어요(01)
- · 햇볕은.. 저희가 그 방.. 저희 방에는 바로 앞에 어떤 벽이 있어요.. 햇볕을 못받았어요.. 너무 추웠고요.. 창문은 열 수 있었어요..(20)

# ② 노숙과정의 주거경험: "가출 후 달라지는 삶"

## ○ 여기 저기 떠돌기

가출 후 마땅한 거처가 없자 거리를 계속 걸어 다니며 밤을 보내거나 친구 집에서 잠자는 생활을 시작하였다. 친구 집에서 눈치가 보여 더 이상 잘 수 없거나 밤새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잠깐이나마 잘 곳이 필요하면 화장실, 창고, 빈집, 옥상, 상가 계단, 산속, 공원벤치 등 사람의 왕래가 드문 곳을 찾아서 잠을 청하였다. 그러면서 장례식장, 롯데리아, 병원 등 눈치가 보이지만 따뜻하고 편한 곳을 찾아 이동하기도 하였다. 돈이 생기면 pc방, 찜질방, 만화방에서 자기도하고 다시 돈이 떨어지면 거리에서 잠을 자는 생활을 반복하였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돈이 모이거나, 주거비를 같이 부담할 동거인이 나타나거나 혹은 잠자리를 제공한다고 접근하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여관방, 모텔을 잡고 한 두 달 정도 지내고 돈이 떨어지면 여기저기를 전전하였다. 요약하면 이들은 길거리, 친구집, 빈집, 상가계단, pc방, 찜질방, 여관방, 고시원 등은 노숙청소년의 경제적 사정 또는 인간관계에 따라 그 날 그 날 결정되는 잠자리로 언제든지 이 유형 내 다른 곳에서 잘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였고, 매일 매일 잠자리를 걱정해야 했다.

- · 그냥 맨 날 돌아다니고.....친구네 집에서도 가끔씩 자다가..... PC방에서 놀고 찜질방에서 자고...화장 실 창고 있잖아요.. 거기서 자다가.. 사람 없는 데서..(01)
- · 제 기억으로는 그냥 빈집.. 아직 임대.. 임대라고 내 놨는데.. 아직 입주를 못한 그런 빈집.. 그런 데도 들어가 숨어서 자기도 하고.. 없으면 장례식장..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게 장례식장은 이제 사람 안가리 잖아요.. 거기 빈소는 못 들어가도.. 거기 안에는 따뜻해요..(05)
- · 롯데리아 이런 데.. 거서 자기도 하고..(06)
- · 인력 가면은 그래도 한 7-8만원 버니깐.. 그거 가지고 겜방도 가고.. 아니면 찜질방도 가고..(03)
- · 소개.. 소개해준 형이랑.. (아.. 같이..) 네.. 같이 지냈는데.. 이제.. 그 형도 그때 이제 동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뭐.. 거의 한.. 그래도 10일 정도는 같이 지내고..(07)
- · 그래서 어떤 친구가 조건(만남) 이런 걸 했는데 거기서 알게 된 남자가 막 일 시켜준다고 먹여주고 재워 줄 테니까 일하래요. 그래서 그런 쪽 일을 했었어요.(19)
- · 어디서 자야 하나.....사람들이 밤에 돌아다니면 눈치도 보이고...(20)

# ① 너무 춥고 배고픈 생활

거리에서 지내는 생활이 어땠느냐는 질문에 가장 먼저 돌아온 대답은 '추웠어요, 배고팠어요' 였다. 이러다가 얼어 죽겠구나 싶을 정도의 추위를 기억하고, 돈이 없어 하루 종일 굶는 경우도 많았고 설령 돈이 있더라도 아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하루에 한 끼 정도의 식사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는 김밥, 빵, 라면 등으로 때우는 식으로 하루 필요 열량이나 영양과는 거리가 먼 수준이었는데 노숙청소년은 가출 이후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자청소년의 경우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조건만남'을 시도하기도 하는 등 생존하기 위해 범죄의 가·피해 상황에 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ㆍ 이러다가 얼어 죽겠구나 한 적도 있었으니까...(04)
- · 겨울이요. (겨울) 너무 춥고, 배고프고 막 그래가지고. 밖에 있을 수도 없고.. 감기도 들어가지고요. 너무... 감기 몸살에... 너무 추워 동상 걸리고... 너무 춥더라고요. 일하기도 힘들고... 일도 없고.. 그 때가 버티기 제일 힘들었어요. 12월부터 2월달까지...(06)
- · 김밥 한 줄 먹고.. 하루 버티고.. (음..) 빵이랑 우유 하나 먹고 하루 버티고.. 아니면 이틀 굶고 분식점 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07)
- · 아침, 점심은 거의 안 먹었어요(15)
- 라면 부셔 먹거나요? 아니면 부산대공원 가면 물 있잖아요...물 마시고... 그냥 물로 배 채워요..(10)
- · (조건만남에서 해코지를 받았지만 괜찮았다고 하여, 괜찮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묻자)뭐... 밖에서 돌아다니고 그런 것보다야 그나마 나아서...(19)

# © 불편하게 생활하기

거리, 친구집, 빈집, 건물계단, pc방, 찜질방, 여관방 등을 전전하는 생활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잠을 편하게, 깊이 잘 수 없고 잠자리를 비켜주거나 밝은 불빛이 있는 곳에서 억지로 잠을 청하기도 하였다. 여름에는 땀을 흘려도 옷을 며칠 째 갈아입지 못하기도 하고 씻거나 빨래할 곳이 마땅치 않아 늘 불쾌감이 있었고 짐을 두고 다니고 싶지만 맡길 곳이 없어 짐가방을 들고 여러 곳을 전전하기도 하였다.

- · 짐을 못 두잖아....그러니 방황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옷을 빨아뒀는데.. 당장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운 좋게 들어갔어요. 어디 어디 쉼터에.. 겨났어.. 그럼 어떻게할 거야.. 어디로 갈 거야? 만약에 짐이 많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있어도 힘이 되죠. 엄청나게힘이 되는 거죠.. 진짜..내가.. 제 경험으로는..그렇게만 되면.. (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들어요..(05)
- · 먹는 거랑 이제 옷 세탁하는 이런 게... 힘들었죠..(07)
- · 솔직히 길거리 아무 데서나 잠 잘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몸이랑 찝찝한데, 특히 여름 같은 경우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몸이 찝찝한 데 씻을 수 없을 때 그 불쾌감이 심각하거든요. 예... 그거. 그렇게 두 개가 가장 힘들었어요(18)

#### ② 범죄의 가·피해자로 전락

노숙청소년은 노숙과정에서 대다수가 범죄의 가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가 되기도 하였고 남자청소년은 당장 현금을 준다는 말에 속아 서명을 하였다가 휴대폰 명의 도용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돈 없이 pc 방에서 자다가 경찰에 의해 끌려나오거나 편의점 물건을 훔치고 학생들의 돈을 뺏는 적극적인 범죄행동으로 이어졌다. 각각의 대상자별 성향과 특성에 따라 범죄의 수준에는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이 없다면 누구라도 범죄의 가피해자로 전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노숙청소년이 경찰에 의해 발견되더라도 별도의 도움을받지 못하고 선도, 단속의 대상만 되는 상황은 우선 개선될 필요가 있다.

- · (벤치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니깐.. 한 70세 넘은 할아버지였는데요.. 돈 주고 해 볼라고 했다며...그러 던데요...(성폭력 피해를 당하던 날) 재워주는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안하면 죽일 거라면서.. 막..(10)
- · 휴대폰 값은 못 냈다기 보다는 어느 놈한테...네.. 사기 당해서.. 지금 명의로 휴대폰이 6개나 돼 있어요.(11)
- · (휴대폰 명의 도용 사기를 당한 이유에 대해 묻자) (그 정도..) 받아가지고 방 잡고 생활하면 안 되겠 냐.(13)
- · 잘 데가 없으니깐.. (돈없이 pc 방에서 자다가) 아니요.. 안되죠.. 경찰한테 맨날 끌려가버렸죠..(02)
- · 편의점가서 막 훔쳐오고 그랬어요. 같이.. 친구랑 같이..(19)
- ·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몰려가가지고 애들 삥 뜯고. 애들 학교 가는 시간에 삥 뜯고, 오는 시간에도 삥 뜯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뭐 피씨방에 있는 애들 것도 삥 뜯은 적도 있고, 게임장 오락 실 같은 데도 다...(18)
- · (너무 힘들어, 도와달라고) 경찰서 안갔으면.. 진짜 그냥 계속 구걸하고 다녔을 거예요..그러다가 더 힘들어 졌으면 이제 물건을 훔친다거나 그렇게 되었겠죠.. 돈을 훔친다거나..그러다가 잡히면 이제 뭐 큰집 가겠죠.. 저도..(07)

# ① 상해가는 몸과 마음

노숙기간이 길어질수록 몸과 마음이 상해갔다. '몸이 망가져 가니까...'는 노숙청소년의 공통적인 응답이었다. 특히 아동·청소년기에 노숙을 시작하여 20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주거가 불안정한생활을 하는 경우 노숙생활을 갓 시작한 대상자들에 비하여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을 호소하였고실제로 자살생각, 충동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 · 몸이 피곤한데...그냥 컵라면 같은 걸로 때우고..그러다 보면 몸도 망가지고(12)
- ㆍ 거서 진단한 것도 무조건 (우울증 진단) 만점이에요..(11)

- · 뭐.. 친구랑 헤어지고 나면 친구는 집에 가는데..저는 비상구 가서.. 혼자서 자면 좀 우울하고 외롭죠..(16)
- · 제가 젊은 나이인데 아.. 진짜 막 죽고 싶다.. 막 생각도 들고..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안들었는데.. 밖에서 노숙하니깐..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04)
- ③ 쉼터에 대한 경험: "그렇게 좋지 만은 않은 곳"

## ① 잘 모르는 곳

면접대상자들은 가출하기 전에 거처를 정해놓고 가출하는 경우는 없었고, 노숙을 시작하는 순간에도 청소년쉼터를 알고 이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에서 배회하다가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 경찰이 청소년쉼터로 연계하는 경우가 많았고, 청소년쉼터의 존재를 막연하게 알아도 포탈에서 검색을 하지 못해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거리에서 배회하다가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인계된 후 발견된 곳에서 인근의 청소년쉼터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 원 거주지나 학교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리생활이 지속됨에 따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알게 되거나 도움을 구할 곳을 찾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서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 · 가출했는데.. 밖에서 지내는데.. (주민신고로) 경찰한테 잡혀가지고..경찰이 일시쉼터로 보내줬어요..하루 지내고 나서.. 거기서 이제 강남구로 소개를 시켜줘서 거기서 1년 정도....(집에 돌아간 후, 다시)....제가 버스타고... 마지막 역에 내렸어요.. 종점에 내렸는데.. 그 버스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경기도 어딘가 내렸더니...의정부쉼터에..(20)
- ·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쉼터.. (쉼터.. 어..) 이런 게 있다는 거.. 그 전에는 이런 거 알아보려고.. 해도 그냥 네이버에 노숙자쉼터 치면 없어요.. (음..) 그런 기사밖에 안 떠가지고.. (음..) 그냥 포기를 했었거든요..(07)
- ㆍ 아니요.. 그냥 나와 가지고.. 인터넷으로 찾아봐서..(16)

#### ① 원하지 않는데 부모에게 굳이 연락 하는 곳

청소년쉼터에 입소하기 전에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대상 청소년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동의 없이 연락하여 당황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이 과정은 자신을 학대하고 방임, 유기한 부모로부터 버려짐을 당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불쾌한 절차로 느껴졌고 쉼터 상담자에게 반감을 가지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찾아다니고 쫓아다니며 착취를 하는 부모에게 청소년의 소재지를 알려주는 것은 위험할 수밖에 없음에도 일부

쉼터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상황은 절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명백한 상황에서도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을 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 · 가게 되면 괜찮아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우선 연락도 하고 가야 된다고, 바로는 못 보내준대요. (청소년쉼터에 들어가려면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야 하니까?) 예.. 동의도 있 어야 하니까 복잡하다고. 그거 보면 참 답답한거죠.(06)
- · 00이 지금 여기 있는데 얘 어떻게 할 거냐고 막, 그런 식으로.. 그냥 얘를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 라도 얘는 집에 돌려보내야겠다.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근데 그때 전화 하고 나서도 상황은 똑같 았어요. (음..) 쟤 집 못 들어온다. 우리 아빠.. 아빠는 이러고 새엄마가 얘를 거부하고 (음..) 있어가지고 지금 데리고 오는 건 무리다. (음..) 할머니한테는.. 할머니는 지금 얘 삼촌이 거부하고 있어서 지금 이쪽으로 오기도 힘들다 (음..)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쌤이.. 근데 진짜 선생님이 자기 맘대로 전화 해 버려가지고 (음..) 엄청 당황하고, 배신감 느끼고 그랬었죠.(18)

#### ⓒ 프로그램이 없거나 너무 많은 곳

가출 초기에 청소년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쉼터 프로그램이 너무 없어TV만 보며지내거나 반대로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 압박감에 적응하기 어려웠다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쉬고 싶은데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거나 혹은 딱히 원하는 것은 없지만 무료한 쉼터생활을 유쾌한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노숙인쉼터의 경우 TV보기 외에다른 프로그램이 없고 숙식제공만 할 뿐이며 일대일 상담이나 일자리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지원이 없다는 것이 아쉽다고 하였다. 즉 쉼터가 숙식을 제공하는 기능 이외에가출청소년의 개별적인 욕구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 지원과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다.

- · 그니깐.. 뭐.. 애들 사이에요.. 가출하면은 쉼터 같은데 가면은요..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완전 가둬두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소문이 있어서 쉼터는 잘 안가고 그래요..(10)
- · 쉼터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달라요. 규칙도 다르고.. 뭐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어디는 프로그램이 되게 적은 곳도 있는데 되게 많은 쉼터도 있더라고요. 그거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이걸 왜 하고 있지? 난 그냥 집 나와서 쉬고 싶었는데 왜 내가 이걸 하나하나 다 참여하고 있어야되고.. 왜 내가 상담을 받아야 되고.. 내가 밖에 나가 있으면 어딜 가든.. 어딜 걸어 다니든 누가 뭐라안하는데.. 여기서는 몇 시에 들어와라 뭐 이런 게 있어서 나온 거죠..(17)
- · 단기(청소년)쉼터는 솔직히 가보기는 많이 가봤는데 규칙 같은 게 너무 험하고, 막 너무.. 누른다 해야 하나? 계속 뭔가가 누르고 있다는 막 그런 느낌 들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막 자주 나오고 그러거든

요. 그래가지고 단기쉼터보다는 좀 더 편안하고 그런데.. 일시쉼터가 솔직히 더 편안하니까...일시쉼터 더 자주 가고 그랬죠.(18)

- · TV 보는 거 밖에 할 게 없죠(02)
- · 여기(노숙인쉼터) 지내고 있는데 쉼터에서는 밥 먹고 잠자리만 제공할 뿐이고요. 일자리는 아예 안되거든요. 그 쪽은...여기서는 중점적으로 많이 넣는 게 우선이고 우리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걸 원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잠만 자고 의료지원하고 그게 다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알아서 처리해야 되니까...(06)

#### ②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곳

쉼터에서 폭력을 당하거나 폭력을 자주 목격해야 하는 등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그리고 쉼터에서 만난 또래들과 재가출한 후 거리를 떠돌거나 다른 쉼터로 이동하기도 하였다. 면접 대상자 가운데 일부 여자청소년의 경우 쉼터에서 남자 친구를 만나 퇴소한 후 미혼모가 되는 등 쉼터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였다.

- · (노숙인 쉼터)술 먹고 헛소리 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 네.. 서로 막 싸우고.. (15)
- · 그때.. 제가 13살 때였는데.. (청소년쉼터에) 다 형들이여 가지고.. 많이 맞았어요.. 네.. 거의 다 고등 학교였는데.. 중학교 1학년은 제가 한 명이었어요.. 많이 맞았어요.. (20)
- · (청소년쉼터) 거기도 거기만의 애들이 질이 안 좋고 물이 드니까.. 어디 가나 물들긴 마찬가지더라구요. 그니까 또 물들어서 나와서 밖에서 또 지내다가 다른 쉼터로, 안양에 있는 쉼터로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남자/여자 쉼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음.. 잘 지내고 있다가 거기서 (미혼모의 계기가 된) 애기 아빠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나왔죠..(17)
- · (청소년)쉼터 안에 있다가 막 형들이 잘해줘요. 누나들이.. 잘해주면 아 착한 형들이구나, 따르게 되잖아요. 솔직히 기댈 사람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으니깐.. 어.. 이 형은 따라가도 괜찮겠다, 따라가면 재밌겠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쉼터에 있다가도 이제 그 형들이랑 퇴소에서 같이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형들이 시켜가지고 범죄 같은 것도 하고...그때부터..(18)

# 미 규정, 정원 때문에 돌아가기 어려웠던 곳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할 때 무단이탈(외박) 등으로 쉼터의 운영 규정을 어겨 돌아가고 싶은 곳이지만 돌아가지 못하고 다른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쉼터에서 이들을 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쉼터 입소를 '포기'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는 다른 쉼터를 전전하며 '쉼터돌이' 생활을 하거나 거리생활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함께 범죄 경력으로 인해 머물고 싶은 쉼터를 나와야 하는 경우도 발견되었고, 무단이탈 후 정원 초과로 인해 원하는 쉼터에 다시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분 석

- · 나갔다가 한 2일 나갔다가 들어오고 전화를 해줘야 되는데 전화를 안 해줘 가지고.. 그것도 있고.. 제가 이제 저축도 잘 안되다 보니깐.. 그냥 서로 서로 그냥 안 좋게 가기 보다는 제가 이리 해 놓고 방 잡아서.. 있겠습니다. 하고 나왔거든요..(08)
- · 더 있고 싶었는데.. 그니깐 특수 절도...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거기 쉼터로 가지는 못하고 여기 저기 다니는데)....(그 곳 쉼터) 선생님이.. 제가 있는 쉼터도 전화할 때도 있고 그래요.(18)
- 여기 인원수 꽉 차서.. (무단으로) 나간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제가 눈치 보여서 제가 다른 데로...(19)
- ④ 현재의 주거상태: "쉼터를 떠돌거나 나갈 준비하기"

# ① 쉼터돌이

안정적인 주거지가 없이 노숙을 지속하는 경우 쉼터의 유형에 따른 입소기간에 맞춰 쉼터를 전전하는 생활을 하였다. 이들은 주, 혹은 월 단위로 특정 쉼터를 중심 주거지로 두고 거리, 만화방, 다른 쉼터 등을 옮겨 다니며 생활하고, 일부 노숙인쉼터는 한 달 중 20일만 숙식할 수 있어 20일은 노숙인쉼터를 이용하고 10일은 거리 등에서 생활하는 것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었다. 쉼터의 유형에 따라 입소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우선인지, 기간에 관계없이 노숙청소년에 게 안정적인 거처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 · 여기서 20일만 자야 되니깐.. 나머지 10일은 어쨌든 밖에서.. 돈 좀 구해서, 만화방에서..(13)
- · 쉼터 같은데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A 쉼터에서 일주일 동안은 씻고 먹고 자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다가 일주일 다 채워졌다. 이러면 3일 동안 입소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B쉼터 이라 든지 막 저기 C쉼터이라든지 해서 막 돌아다니다가 다시 A쉼터로 오고...(18)

#### ① 쉼터 나갈 준비하기

면접대상 가운데 청소년 미혼모는 현재 5세 된 아들과 함께 여성 노숙인쉼터에서 2년 간 거주하고 있었고 보증금을 모으면서 퇴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한 면접대상자는 중학교를 자퇴한 후 3년 간 쉼터를 전전하면서 현재 중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중이었는데 청소년쉼터도 입소 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어 이에 맞춰 자격증 취득, 취업준비 등 자립준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었다. 다만 중학교 검정고시 취득 뿐 아니라 고등학교 검정고시 취득, 취업준비를 통한 자립준비과정에서 숙식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데 자립지원시설 연계 등에 대한 지원은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 · 저 2년 넘었어요. 나가야 될 때가 넘어서. 원래 이 정도 까지는 안 있는데, 애가 있다보니, 같이 나가 봤자 애만 힘들 거니깐 계속 봐주시고 있는데, 이번 년도 하반기에 나가야죠.. 60씩 모으기로 했거든 요... 그 돈으로 방 보증금을 넣고..(17)
- · 지금은 중학교 검정고시 준비중이예요. 고등학교는 한 번만 도전해보고 자격증.. 제가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성인 때까지잖아요. 검정고시 같은 경우는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취업 자격증이나 이런 건 혼자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인되기 전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한 번 보고 그거 실패하면은 그냥 취업준비로 바로 넘어 가려고.. 자격증 따는 거 하고..(19)

#### ⑤ 가정복귀 가능성: "돌아갈 수 없는 집"

#### ① 연락 안하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 가족

노숙생활이 장기화되면서 원가족과의 연계는 거의 단절되어 있었다.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는 가족,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내 보여도 '수고해라'는 말만 할 뿐 방임하는 가족, 심지어 이사를 가면서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 가족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원가족은 노숙생활의 원인이 되었던 가정폭력, 아동학대의 가해자이기도 한데 이러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이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 등 가족으로부터 명백하게 버려진 상황이다. 이들은 원가족과의 재통합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노숙생활을 지속하고 있었다.

- · 너는 우리 친척들의 수치다. 그러면서 나가서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고, 나가서 여기서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살아라...(10)
- · 집에 무슨 상황 없냐, 누나는 아픈데 없냐, 할머니는 괜찮냐, 삼촌은 화 풀렸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 하다가 아버지도 몸조심 하시고, 조심히 들어가시라고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도) "그래 수고 해라" 해가지고 딱 전화 끊고..(18)
- · 또 가출해서 돌아다니면서 경찰에 연락가고 그러니까 전화번호 바꾸고, 집 이사하고 그러고선 연락 끊겼죠..... 가족처럼 생각하지도 않으니까 그 쪽끼리 잘 살라고 그러고선... 연락 안 해요.(19)

# ① 의지하기에는 가난하고 힘든 가족

면접대상자 가운데 일부는 노숙생활을 하면서도 가족에게 의지하고자 재차 시도를 해 보지만 이들이 의지하기에는 가족이 빈곤 등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이들은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알리고 도움을 구하지도 못한 채 노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 · (누다) 둘 다.. (힘들어서..) 조카들이 두 명씩 있거든요 (같이 살수는 없어요)(13)
- · 요즘 어떻게.. 어떻게 지내냐고.. 이렇게 묻고.. 엄마 집에 간 적이 있는데.. 힘들 게 사는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하루 지내고.. 바로 아빠 집 가고..(20)
- ⑥ 쉼터의 현재적 의미: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의지가 되는 곳"

#### ① 독립공간이 없는 집단수용시설

현행 노숙인쉼터는 한 방에 여러 명이 함께 숙식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적게는 한 방에 4명, 많게는 30~40명이 함께 생활하기도 하는데 숙면도 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개인생활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입소자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악취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교도소가 더 편하고 살만할 곳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 · 방은 없어요.. 큰 거 하나예요. 거기서 30~40명이 지내요...솔직히 좀 많이.. 냄새도 나고 좀 그렇죠.. 위생도 그렇고..(04)
- · 솔직히 교도소가 더 편해요.. 교도소는 각 방 마다 TV 있고 LCD에다가 깔끔하게 다 해놨어요.. CCTV도 되어 있고.. 좋아요.. 진짜 살만해요..(06)
- · 잠자는 데에도 떠드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음..) 방해가 되고..(20)

이와 함께 쉼터에서 노숙청소년의 자립을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쉼터에서 공부를 하려해도 방해를 받거나 놀림을 받는 등 눈치를 보며 공부해야 하는 곳으로 쉼터에서의 개인생활 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 제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 · 그래 가지고 야간을 나가면 이제 여기서 못자니깐.. 밖에 나가서 모텔이라던지.. 아니면 잠이라도 자고.. 밖에서 밥 다 해결해야 되고 하니깐.. 여기도 솔직히 말하면.. 돈이 모이지 않는 거 같아요..(04)
- · 쉼터에 있을 때에도 제가 공부하고 있거든요.. (네..) 공부하고 있는데 방해도 많이 받고.. (아..) 놀림도 많이 받고.. 공부한다고.. 거의 (음..) 놀림 받고.(20)

# ① 준비 없이 퇴소해야 하는 곳,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곳

현행 쉼터는 청소년쉼터, 노숙인쉼터 모두 입소 기간을 정해 두고 있고, 입소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청소년쉼터의 경우 우선 입소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고 노숙인쉼터는 나이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20일의 입소기간을 두고 있다. 연령 제한, 이용기간 제한으로 인해 노숙청소년들은 거리, 만화방, 다른 쉼터를 전전해야 하거나, 퇴소할 준비가 되지 않아도 입소기간에 맞춰 자신의

미래 계획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 · (20일 지나 나가야 하면)..형님들한테 돈을 빌리던지 해가지고 거기서.. 방 같은 거.. 동대구에 방이 15만원 짜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그냥 뭐.. 여기서 갔다가 여 잤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15)
- · (고등학교 검정고시는) 한 번만 도전해보고 자격증.. 제가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성인 때까지잖아요. 그래서 성인되기 전에 고등학교 한 번 보고 그거 실패하면은 그냥 취업준비로 바로 넘어 가려고.. 자격증 따는 거 하고.. 고등학교는 그 다음에, 나중에 혼자 공부해서 하려고요..딱히 다른 지원을 바라는 건 없는 데..(입소 가능) 기간은 솔직히 만약 제가 자격증 따는데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이렇게 늘었으면 좋겠긴 한데..(17)

쉼터가 생활하기 불편하고 개별적인 욕구를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만족할 만한 주거공간이라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생존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이다. 또한 가출이후 나쁜 길로 빠지기 전에 쉼터를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좋았을 곳이고, 쉼터 종사자와의 신뢰관계를 통해 심리·정서적인 안정을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곳이며, 자신을 학대하고 버리는 부모, 범죄에 연루시키고 상처만 주는 어른들, 믿을 수 없는 친구들에 비해 믿고 의지할 스승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 · 일단 맘 편하게 씻고 잘 수 있다는 거. (응..) 그 다음에 일자리를 알려주신 거.. 그게 제일 감사하죠..(07)
- ·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런 거.. 있는 거 자체를 몰랐었거든요.. 이런 거 알았으면.. 일찍 알았으면.. (나 쁜 길로) 빠지기 전에.. 이제 갔었겠죠..(08)
- · (쉼터)선생님들한테 무슨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괜찮죠.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친구들하고 말하는 건 정말 그냥 생각 없이 말하는 것 밖에 안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옆에 있는 거라그래야 되나?(17)
- · (쉼터 선생님은) 그만큼 저한테 도움을 주셨으니까요. (음..) 연락하고 안부 묻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하는 게 예의일 거 같고.. 학교 안 다녔으니깐. 학교 다닌 애들은 스승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저한테 그런 거죠. (스승이고.. 어른이고..) 저한테 부모님이 안 해주시는 걸.. 부모님이 못해주시는 걸 해준 거니까 부모님 대신?(19)

## ⑦ 주거에 대한 욕구

#### □ 편히 쉴 수 있는 방 한 칸

노숙청소년이 바라는 것은 크고 멋진 집이 아닌 그저 편히 쉴 수 있는 방 한 칸 이었다. 오늘은 어디서 잘까 걱정을 하고, 낯선 누군가와 함께 지내야 하는, 자주 바뀌는 생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로 기대하였다. 원룸을 포함하여 혼자 지낼 수 있는 방, 집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고, 나이가 어린 청소년의 경우 쉼터보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입소하기를 원하였는데 그룹홈은 5~7명 정도로 쉼터에 비해 정원이 적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 · 3개월인가 1년인가 있으면 뭐 보증금 100만원 해 가지고 집을 구할 수 있데요.. 나라에서 주는 임대계약 해 가지고.. 한번 가보려구요..(07)
- · 음.. 그냥 원룸이나 하나 잡고 싶어요..(10)
- ㆍ 어떤 사람의 구애도 받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서 편하게 있을 수 있는데...(18)
- · (그룹홈은) 애들이 착하대요. 제일 좋은 게 학생 수가 적다는 게.. (음.. 그룹홈은..) 여기보다 방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좋은 거 같아요..(20)

## ① 줄어드는 희망

미래에 안정적인 주거, 원하는 주거를 얻을 수 있을지 탈노숙의 가능성에 대하여 면접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다소 응답에 차이를 보였다. 아직 성년기에 이르지 않은 경우 성인이 되면 주거지 선택을 포함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자신의 책임 하에 다 할 수 있어 기대된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20대 이상 후기청소년의 경우 탈노숙 전망이 어두웠다. 노숙기간이 길어지면서 주거안정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면서 인생,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 · 오히려 그게 찌들어 가요.. 그러니깐 어차피 나는 이런 인생이다. 어차피 나는 이거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깐.. 이걸 벗어날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아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고.. 그게 계속 머리에 남아가지고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03)
- · (걱정과 기대가) 둘 다 되요. 그니깐 내가 성인되면 이제.. 막 솔직히 성인 됐는데, 성인 됐을 때까지 이런 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쉼터 돌아다니고.. 얼마나 쪽팔려요. 그러니까 그 걱정이 되는 것 도 있으면서도.. 그래도 기대가 되는 건.. 이제 성인이 되니까 '내가 책임지고 알아서 할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어.. 좋다.' 뭐 그런 식으로 기대가 되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되고 있어요(18)

## ⑧ 연구질문에 대한 소결

① 노숙청소년은 왜 불안정한 주거상황에 노출되어 있는가?

노숙청소년들은 심각한 수준의 신체학대와 정서학대를 가하는 원가족의 학대 혹은 방임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온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혹은 부모의 사망, 양육시설 퇴소 연령에 달하는

등 생활할 수 있는 집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는 집을 나가라는 가족의 요구를 받기도 하는 등 집이 있어도 안전하게 생활하지 못하고 위협을 당하거나, 집 자체가 없는 홈리스였다.

집을 나온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자 시도하기도 하나, 가족들은 이사 한 곳을 알려주지 않고, 전화를 걸어도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지 않았다. 또는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가족에게 의지할 수 없어 자신의 노숙상황을 차마 알리지 못하였다. 이들은 가정복귀가 불가능하며 중장기적인 사회보호와 단절 없는 자립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이다.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청소년쉼터라 하더라도 여러 명이 한 방에서 생활해야 한다거나 맘편하게 공부도 할 수 없는 공간이며 개인생활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 시설 입소자와의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쉼터에서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하거나 귀가시간, 식사시간 등 규율을 어겨 반자발적으로 쉼터를 나와 떠돌기도 하였다. 오랜기간 학대, 방임을 당한 청소년에게 절제와 규율 준수는 쉽지 않았고 규칙을 어겨 쉼터를 나와 다시 거리생활과 쉼터 입·퇴소를 반복하였다.

노숙인쉼터에서 생활하는 후기청소년들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다. 원가족과 함께 살 수 없어 혼자 지내야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해도 주거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아동·청소년기부터 거리생활을 해 오면서 몸과 마음이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고 신용불량, 저학력, 비숙련으로 인해 구직도 쉽지 않아 주거안정에 대한 기대는 매우 어두웠다. 간혹 직장을 구해도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거처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차별적인 처우를 받기도 하였다(후술).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버는 생계비는 불규칙하고 의식주를 해결하기도 빠듯한 정도여서 저축할 여유가 없고 주거비를 충당하느라 자립은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노숙인쉼터에서 생활하며 돈을 아끼더라도 20일만 생활하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10일 간 주거비를 걱정하며 거리를 떠도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① 청소년기 노숙이나 불안정한 주거경험이 발달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면접대상자들은 집을 나오기 전부터 이미 보호자의 학대, 방임으로 심리·정서적, 인지적으로 많은 손상을 입고 후유증을 안고 있는 상태였다. 이후 노숙과정에서 학업은 중단되고 또래가 아닌 성인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범죄의 가 피해자로 전략하였다.

하루 한 끼도 먹기 어려워 물로 배를 채우거나 굶는 날이 많았고, 한 끼 식사도 빵, 김밥한 줄이 전부였다. 겨울에는 '얼어 죽겠구나' 싶을 정도의 추위에 떨어야 했고, 여름에는 씻지 못해 불쾌감에 늘 노출되어 지내야 했다. 짐을 둘 곳이 마땅치 않아 옷을 빨았다가 말려 입을 수 없어 며칠 동안 한 옷만 입다가 새 옷이 생기면 버리는 생활을 하였다. 매일 밤마다 오늘은 어디서 자야 할지 걱정해야 하고 수중에 돈이 생기면 pc방이나 찜질방을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남의 눈치를 보며 상가계단, 장례식장, 화장실 등에서 잠을 잤다.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들은 범죄의 가피해자가 되었는데 여자청소년은 조건만남 과 성폭력의 위험에 시달리고 남자청소년은 현금을 준다는 말에 속아 명의도용 사기를 당해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지는 경우도 있었다. 돈 없이 pc 방에서 지내다 경찰에 인계되기도 하고 배가 고파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학생들의 돈을 뺏는 등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생활이 반복되면서 부정적인 대인관계, 사회경험을 하는 정도가 심해졌다는 점이다. 노숙과정에서 만난 사람과 동거하면서 청소년 미혼모가 되었고 노숙상태에서 벗어나고자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일자리를 알아보기도 하지만 안하던 공부를 혼자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일자리도 쉽게 구할 수 없다. 성인이 되면 뭔가 나아지겠지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성인이 되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희망이 사라져가고 나는 필요 없는 사람, 원래 이런 노숙인이라는 부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형성하였다

결국 청소년기 노숙이나 불안정한 주거경험은 발달 전반에 부정적이며 바람직한 사회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 주거는 식생활과 의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며 노동력 재생산의 기반이 되는 곳이다. 이러한 주거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것은 적절한 영양섭취, 의복 상태는 물론 안정적인 휴식,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든다. 또한 거리생활을 전전하면서 학업을 중단하게 되고 이는 탈노숙, 자립의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되었다. 노숙이 장기화되면서 부정적인 경험이 누적될수록 실패자라는 인식, 낮은 자존감, 노숙인이라는 자아정체성을 형성하여 탈노숙, 탈빈곤 의지가 사라지고 범죄 경험이 증가하거나 우울, 자살 생각이 증가하는 등 발달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상위 범주	하위 범주	내용 요약
과거 주거 경험	나올 수 밖에 없는 집	<ul> <li>공통적으로 원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으며,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을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학대가 집을 나온 원인이 됨.</li> <li>명시적으로 집을 나가라고 요구하였으며, 경제적으로 노숙청소년을 착취하기도 함.</li> <li>부모 사망과 보육시설 퇴소 등으로 거주 가능한 집 자체가 없는 경우도있었음.</li> <li>또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 구조적으로도 열악한 주거상황이었음.</li> </ul>
	집을 나온 이후 달라지는 삶	<ul> <li>집을 나와야 했을 때 쉼터 등의 보호기관을 알아보고 나오지는 않음.</li> <li>거리 배회하기, 친구집, 화장실, 상가계단 등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잠자거나, 좀 따뜻한 곳을 찾아서 장례식장 등에서 잠을 청함. 10만원 미만의돈이 있으면 PC방, 찜질방을 가고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가 있거나 그돈을 함께 낼 동거인을 구하면 고시원이나 모텔에서 지냄.</li> <li>각각의 거처는 단선적으로 증가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날 그날의 경제사정과 인간관계에 따라 순환적으로 순회함.</li> <li>일상적으로 굶고 있으며,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에 그대로 노출되어있으며, 빨래를 할 수도 짐을 둘 수도 없는 생활임.</li> <li>생존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범죄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는 것은예정된 결과로 보임.</li> <li>시간이 지날수록 탈노숙의 희망이 줄어듦에 따라 중증 우울과 자살시도가증가하고 있음.</li> </ul>
	처음부터 알지는 못하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쉼터	<ul> <li>노숙을 시작하는 날 바로 청소년쉼터나 노숙인 쉼터에 연락을 하는 경우는 없었음. 거리를 배회하다가 경찰에 인계되거나,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통해, 혹은 노숙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도움을 구할 곳을 찾다가 알게 됨.</li> <li>노숙의 원인제공자가 학대하고 방임하는 부모인데도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쉼터 규정에 반발심이 있음.</li> <li>청소년쉼터의 경우 생활규율과 프로그램이 자유로운 성향이 있는 노숙청소년에게 부담스러웠다고 함. 반면에 성인노숙인쉼터의 경우 먹고 재워주는것 이외에 일자리 연계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으나 없다고 함.</li> <li>쉼터 내에서 싸움을 지켜봐야 하는 것은 물론 폭행을 직접 당하기도 함.</li> <li>노숙생활이 지속되다보면 자신에게 더 잘 맞는 쉼터가 생기나, 사소하거나심각한 규정 위반, 혹은 인원 제한을 이유로 원하는 쉼터에 가지 못함.</li> </ul>

상위 범주	하위 범주	내용 요약
현재 주거 상태	쉼터를 중심으로 떠돌거나 쉼터를 나갈 준비하기	<ul> <li>일부는 입소기간이 주단위 혹은 월단위로 허락되는 특정 쉼터를 중심으로, 거리, 만화방, 다른 쉼터를 전전하는 생활을 하고 있음.</li> <li>일부는 6개월 혹은 2년 동안, 또는 성년이 될 때까지 비교적 긴 기간 거주가 가능한 쉼터에서 지내면서 쉼터를 나갈 준비하고 있음.</li> </ul>
	돌아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집	<ul> <li>노숙청소년들의 가족들은 이사를 가면서 이사 한 곳을 알려주지 않거나, 노숙청소년들이 연락을 취하면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알아서 잘 살 라는 말을 할 뿐 재통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음.</li> <li>원가족과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도 노숙청소년이 의지하기에는 너무 가난하고 힘들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의 상황을 알리지 않음.</li> </ul>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의지가 되는 쉼터	<ul> <li>청소년(노숙인) 쉼터는 한 방에 여러 명이 지내는 구조로, 개인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불편한 공간으로 냄새가 나는 등 시설투자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보임.</li> <li>노숙청소년의 개별적인 욕구(야간근무, 학업공간 등)을 채워주지 못함.</li> <li>입소연령에 나이제한이 있거나, 이용기간에 제한이 있어 자립준비가 덜되어 있어도, 주거공간을 미처 마련하지 못하여도 나와야 함. 이는 노숙청소년의 미래 계획을 자신의 욕구가 아닌 입소기간에 맞추어 수정하게함.</li> <li>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곳으로 종사자에대한 신뢰와 감사를 보임.</li> </ul>
주거 지원 욕구	편히 쉴 수 있는 방 한 칸	- 그저 편히 쉴 수 있는 방 한 칸을 원하고 있음. 늘 잠자리를 걱정하고, 낯설은 누군가와 함께 생활을 해야 하는, 안정되지 않은 생활의 스트레스 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로 기대하고 있었음.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희망	- 탈노숙의 가능성에 대해 만 18세가 넘지 않은 청소년들의 경우 성인이 되면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이 있는 반면에 20세 초반의 후기 청 소년들의 경우 탈노숙의 가능성을 어둡게 보고 있었음.

# (2) 일과 자립

① 근로상황: "희망이 보이지 않는, 위험한 일"

#### ① 최소한의 생활만을 위한 소득활동

면접대상자들은 현재 다수가 일을 하고 있고 또 일을 한 경험이 있었다. 그런데 현재 일을 하지 않는 경우는 의외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기보다 자신의 선택으로 일을 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최소한의 생활만 가능할 뿐 저축을 한다든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다든지 하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노숙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저소득, 고위험의 열악한 업종에서 최소한의 임금만 지급받았고 이와 같은 근로상황에서 희망을 가지기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들이 경험한 근로 경험을 살펴보면 건설일용직, 택배 상하차 등 일당제 현금지급 업종이 다수였는데 직종의 특성 상 근로의 지속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일상적으로 근로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체력, 부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저학력, 비숙련으로 인해 일용직 일자리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 · 요즘에는 야간.. 상하차 다니고 있어요.. ( 상하차?) 네.. 택배.. 일당 6만 5천원씩 받고 있어요. 일요일 밤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01)
- · 계속 그렇게 인력소 다니다가.. (아.. 인력소개소 다녀서 돈 하루치 벌어서..) 네.. 그냥 하루살이 같이..하루 8만원에서 9만원. . (01)
- · 노가다요.. ( 잡부?) 네 잡부나 공구리... 거의 요새는 9만원은 받아요. 네 요새 임금이 올라가지고.. 노동.. 거기에...(02)

또한 노숙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은 pc방, 편의점, 주유소, 식당 아르바이트 등 특별한 기술이나 학력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이다. 청소년기에 노숙을 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업종은 매우 제한적이다. 단순노동 밖에 할 수 없지만 이러한 업종은 낮은 임금과 강도는 높아 이를 견뎌내기가 쉽지 않다. 하루 종일 고되게 일을 해도 돌아오는 임금은 겨우 하루하루를 버티는 정도의 소득에 불과하여 일에 대한 의욕이 생길 수가 없는 상황이다.

· 원래 주유소 알바하면서 이래 했었는데.. 그것도 좀 이제 사정이 안되어 가지고.. (네..) 그만두고.. 있다가 음.. 배도 타고.. 그랬었거든요.. 배타고.. (08)

- · 아.. 신문 돌리는 거요.. (신문 돌려봤어요?) 네.. 아니면.. 전단지 붙이는 거.. (10)
- · 호텔에서 서빙이나 그 주방 설거지 같은 거. (16)
- · 편의점, PC방, 게임장, 당구장, 노래방... 뭐 거의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거 같아요. 공장도 가봤고. (18)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힘들어 조건만남이나 유흥업종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기도 하였다. 저임금, 고위험의 열악한 업종 이외 좀 더 수월한 일자리를 찾다보니 불법 유흥업이나 성매매 등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노숙청소년이 처한 근로상황은 묻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의 근로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힘들고 심각하였다. 이들의 일자리는 말 그대로 최소한의 생활, 즉 호구지책(糊口之策) 그 이상의 의미가 없었다. 일을 통해 자립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워나가야 할 나이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미래가 보이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 비단 노숙청소년 뿐 아니라 청년실업, 근로청소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기본적인 체계가 무너진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따라서 이들이 일을 통해 자립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근로환경 개선이 절실하다.

- · 또 광주에서 또 유흥. 유흥 쪽에서 일을 하고.. 술집이 아니고 키스방이라고.. 거기.. 실장으로 한 2년 했어요. 여자들 관리하는 거.(02)
- · 제가 만18세일 때 남보도를 또 갔었어요. 호빠라고 그러죠. 나이 속이고 20살이라고, 속이고 들어가 서 거기서 형들하고 어울리고 그땐 돈 좀 만졌어요. 근데 흥청망청 써서 그렇지.(05)
- · 주점이 아니라 안마였어요. 안마시술소 건물, 제가 불안해 가지고, 옛날에 20살 때 서울 올라와서 좀 불법 전단지를 돌렸거든요. 그래 가지고 한방 맞고. 벌금 2~300만원(13)
- · 어떤 친구가 조건(만남) 이런 걸 했는데 거기서 알게 된 남자가 막 일 시켜준다고 먹고, 먹여주고 재 워 줄 테니까 일하래요. 그래서 그런 쪽 일(조건만남)을 했었어요.(19)

#### ①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

면접대상자 상당수는 다양한 경로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다.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구직경험이 있는 대상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벼룩시장, 교차로와 같은 지역신문이나 인력사무소, 직업소개소, 인력사무소 등의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다. 일부는 노숙인쉼터에서 소개를 받기도 하였다. 다만 이러한 구직경로는 단순노동, 아르바이트 정도의 임사리 일자리 정보만 제공해 줄 뿐이다. 즉 구직경로는 다양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고용센터나 워크넷과 같은 공공공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면접대상자 20명 가운데 1명에 불과하여 노숙청소년의 일자리 지원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 (일자리는 어떻게 구해요?) 그거 있잖아요.. 교차로.. 교차로신문 보구요. (노동부가 하는 워크넷 같은 건안 쓰나?) 그런 건 별로 안 좋아 가지고 안써요. 한 번 썼다가. 교차로 보다 별로 안 좋아가지고. (01)
- · (인력사무소에) 아침에 가서 앉아있으면 그쪽에 이제 소장이 알아서 보내줘요.. (03)
- · 뭐 알바몬 이런 데도 찾아 보구요. 그다음에 이제 저기 벼룩시장, 이런 거 한번 훑어보고. (08)
- · 교차로나 인터넷.. 뭐 가면은 알바천국이나 가 가지고.. 찾아가서 면접보고.. (13)
- · 여기서(노숙인쉼터) 추천을 해줘가지고 원장님이 추천을 해 줘가지고. 거기서(아이스크림 공장) 일하 게 되었어요.. (07)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나 오프라인 직업소개소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사업체로 노숙청소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연계와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에서 그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숙청소년에 쉼터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인 문제해결방법이라볼 수 없고 임시방편 정도일 것이다.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홀로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노숙청소년이 구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지원하고 기업이나 양질의 일자리에 연결하거나 직업훈련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공적 영역에서 담당해야 한다.

#### ② 자립 여건: "의지를 갖기도 힘든 여건"

노숙청소년이 자립하기 위한 여건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 볼 수 있다. 이들의 자립에 대한 의지, 그리고 자립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이다. 자립을 위한 스스로의 의지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 살펴보고 자립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이들 노숙청소년들의 자립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자립을 지원하는 기존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은 면접과정에서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 ① 자립에 대한 의지

자립(自立)은 '외부의 원조를 받지 않고 독립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립생활 (independent living, 自立生活)은 '타인의 원조 없이 독립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

면접대상자들 대부분은 이미 돌아갈 가정이 없거나 스스로가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로 혼자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에게 자립생활은 앞으로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수 있다. 이러한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독립된 (경제 또는 일상)생활', '사회참여', '주체적 노력' 등이 필수적이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 '주거문제 해결', '사회적 지지' 등 여러 차원의 여건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 모든 것에 우선하여 당사자 스스로가 자립을 하겠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자립의지에 대해 면접대상자들은 다양한 답변을 하였는데 자립생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의지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데 자립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경우도 있었다. 자립의지를 상실한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자립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일 것이다. 저축을 해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겠다는 막연한 생각만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를 실천해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면접대상자 가운데도 저축을 하거나 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일을 해도 최소한의 생계만 유지되는 열악한 상황에서 자립의지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부모, 교사 등 성인의 보호 속에서 고등교육을 이수하고 사회에 진출해도 냉혹한 사회에서 자립해 나간다는 것은 낯설고 힘겨운 일이다. 노숙청소년들이 스스로 일어서는 방법을 배워나가 기 위해서는 단순한 '일자리 제공', '쉼터 제공' 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 체계를 통해 멘토, 조언자가 곁에서 지원하고 격려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 돈만 뚫어지게 보고 악착같이 모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 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05)
- · 언젠가 돈을 좀 모아가지고요. 한 4천만원 정도? 저는 이제 자동차 사고 싶고, 오피스텔, 원룸을 얻어 가지고 편하게 살고,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눈치 안보고,(06)
- · 일단 공부를 좀 다시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 국가에서 운영해주는 학원 좀 찾아봐 가지고.. 공부 좀 해가지고 합격하고 나면.. 조그만 회사라던 공장이든 알아보려고..(08)
- · 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좀 그러니깐. 배운 거 없고 기술도 없고.. 좀 그렇죠. 다시 시작하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뭐 그거에 대한 뭐 자세한 내용이나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그런 거 설명해 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러니깐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죠..(03)
- · 제가 살면서 이제.. 미래에.. 그니깐..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싫은 거거든요.. 뭘 미리부터 걱정을 하냐고. 눈 앞에 보이는 것도 완전히 힘든데.. 그래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잘하고 싶어서 나중 거는 별로 생각을 안해요.(07)
- ㆍ 저는 이제 지금.. 그런 걱정을 하기 보다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런 게

이제 또 중요하긴 중요하겠지만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걱정 해봐야 앞으로 그 몇 달 뒤에 일어날 일인데. 그냥 저는 이제 먼저.. 몇 달 뒤에 일어날 걱정보다는 이제 내일이 이제 또 나한테..(09)

#### ① 자립을 방해하는 요소

자립을 위한 여건 중 실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외부의 도움 없이 혼자 살아가기 위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활동을 도와주는 긍정적인 요소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오히려 자립을 방해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면접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불량의 문제이다. 청소년 신분으로 인해 대출로 인한 채무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대포차, 대포폰 등 명의를 도용당해 이로 인해 채무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였다. 이로 인해 적게는 몇 백 만원에서 많게는 천 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신용불량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경제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되는데 자신의 명의로 통장조차만들 수 없어 현금으로 일당을 지급하는 건설일용직, 택배상하차 같은 업종을 찾게 된다고 하였다. 결국 해결을 위해서는 파산신청을 하고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데 현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있는 개인에 해당한다. 또한 법률대리인을 활용해야 하는 등 노숙청소년이 이러한 절차를 혼자 감당하고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둘째, 임금체불의 문제이다. 어리다는 이유로 도와줄 가족이나 지인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악덕 고용주들은 임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런 경우에 임금체불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은 돈 마저 못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통신수단의 문제이다. 면접대상자 대다수가 핸드폰을 비롯한 통신수단이 없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현대사회에서 통신수단이 가지는 위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나 면접대상자 가운데는 요금체납이나 신용불량 등으로 핸드폰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친구, 지인들과의 교류도 어려워져 고립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구직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넷째, 학력차별의 문제이다. 노숙청소년 상당수가 아동·청소년기에 가출하여 중등학력을 갖추기도 쉽지 않았는데 구직과정에서도 학력은 가장 문제가 되는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학력을 취득하거나 직업역량을 향상시켜 이것이 구직으로 바로 연동될 수 있도록 학업 및 진로지도,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 · 또 신용불량자 되어 가지고. 현금으로 주는 데만 일 찾아다니다 보니깐. (통장을 못 만드니까 일당제, 현금지급하는 곳에서만 일할 수 있음). (파산신고는 알아보셨어요?) 많이 알아보긴 알아봤는데 그걸 못했죠. 시행을 못했죠. (절차를 못 밟는 이유가 뭘까?) 돈이 들잖아요.. 파산신고 하려면. 몇 백 깨진 다던데.. 한 2~300. 무료 하는 데를 구하려고.. 했는데 못했죠. 핸드폰도 사고 싶어요. (핸드폰?)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깐 답답하더라구요. 전화도 되 고 직장 구하려고..(02)
- ·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면서 돈 그렇게 많이 필요 없으니까 이 정도만 받아도 되지? 막 해가지고 "난 분명 제대로 일했는데 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주냐? 나는 돈 제대로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랬더니 그냥 내쫓는 거에요. 돈 조금 주고(18)
- · 중졸은 잘 안받더라구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지 뭘. 기본적인 요즘 학력이 다 고졸이잖아요. 그니깐.. 중졸이 할 만한 건.. 배달.. 아니면 일용직. 알바 그런 거 말고는 좀..(07)
- ③ 자립지원 요구: "낙인 해소, 피해구제, 일자리 지원"

# → 구직을 위한 연락수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직을 위한 연락수단으로 핸드폰 유무는 중요한 기준이었다. 그러나 면접대상자 대다수가 요금체납, 신용문제로 인해 핸드폰이 없었고 이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핸드폰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04번, 07번, 18번). 근로의지가 있고 구직활동 중인 경우 청소년쉼터, 노숙인쉼터에서 유관기관과 협조 하에 선불폰을 임대하는 등 제도적인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 저는 핸드폰이 없어서 일을 못 구해요. 지금 당장 핸드폰이 없으니깐. 면접을 봐도 핸드폰 없으면 아무 것도 안되요.(04)
- · 핸드폰이 없으니깐 연락을 안 해주죠. 그리고 연락처 없는 거 알면서도 오라 해 놓고 갔는데 핸드폰 없어서 안된다고. 가라고.(07)
- · 전화 같은 거라도 하나 있어가지고 소식 같은 거 전해주고 그래야 되니까 사장님한테. 그래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18)

# ① 노숙인이라는 낙인문제

'노숙인'라는 낙인은 면접대상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었다. 구직과정에서 노숙인쉼터에 거주하는 것이 드러나면 고용주 입장에서 고용을 꺼리거나 직업훈련 자체에 진입하는 것조차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 · 아무래도 여기서(노숙인쉼터) 딱 그 소개받고 가면은 좀 노숙.. 아니 어디서 왔냐고 하면서 노숙(쉼터) 에서 왔다고 하면 사람을 (무시할 수도 있고) 면접보는데 좀 안좋게 보더라구요..(13)
- · 또, 어디서 생활하냐?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집에서 생활해요.. 주소가 뭐냐? 말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주소가 다 이쪽(쉼터)이에요.(04)
- · 가도 아예 안받아주니까.. 직업훈련을... 갑갑하니까... 고용노동부에서는 아예 안받아줘요. (직업훈련 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예. 노숙자라는 이유로 아예 안받아줘요. 그게 주민등록을 치면 이쪽(쉼터)에 있는 게 다 나오니까... 조회가 되니까...(06)

#### © 명의도용 문제의 해결

명의를 빌려주고 이로 인해 자립은 물론 일상생활조차 힘든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명의 양도 자체가 불법행위임으로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⁶²⁾ 따라서 노숙청소년 뿐 아니라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이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 · 그 사람들이 나한테 대출 제 명의로 대출하고.. 차까지 뽑고.. (대포.. 대포차, 대포통장..) 핸드폰도 뽑고.. 그래 가지고 그걸 그래도 몇 개월 같이 지내가지고 용돈은 조금씩 받았는데.. 돈은 못 받고.. 차까지 다 뽑은 다음에 도망가 버리더라구요..(02)
- · 핸드폰 관련해 가지고.. 좀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어요.. (대포폰?) 네.. (어.. 어..) 그거 한번 당해가지고.. 그땐 7대인가 8대를 뽑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500-1000만) (03)
- · 휴대폰 값은 못 냈다기 보다는 어느 놈한테 (대포?) 네.. 사기 당해서.. 지금 명의로 휴대폰이 6개나 돼 있어요.(11)

#### ② 합법적 일자리 제공

미성년자 보호차원에서 취업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로 인해 노숙청소년은 구직이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63) 즉 부모의 취업동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근로의지가 있고 근로를 해야 할 상황임에도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음식점 서빙을 하려 해도 보건증을 만들 수 없어 포기했다거나, '봉사'라 생각하고 밥값 정도만 벌 수 있는 아무 일이나 닥치는 대로 하고 있었다. 노숙청소년에게 근로는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사회기술

⁶²⁾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통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해서는 안 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1호).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1호).

^{63)「}근로기준법」에 의거,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미성년자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등 역량을 키워가는 학습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이들에게 합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근로 자체에 대한 좋은 경험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 · 미성년자고 이제 보호자가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나 당당하게 딱 일할 만 한 게 없고, 일도 못하니까 결국은 막 그런 일(조건만남) 해야 되고, 좀 그런 게 그랬죠. 미성년자.. 부모님 없는 미성년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게 좀 그랬어요.(19)
- · 알바천국이나 찾아보긴 했는데 부모님 동의서가 있어야 되고, 자기 신분을.. 뭐 그런 거 있어야 되고. 거의 미성년자 할 수 있는 게 음식점 서빙 밖에 없는데, 음식점 서빙하려면 보건증이 있어야 되고, 보건증은 또 못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시도도 못해봤죠.(19)
- 그냥 뭐 미성년자니깐 아니면 부모님 전화번호나 아니면 너무 어려서 안될 거 같다고 그러면서.(10)
- · 그냥 좀. 막.. 봉사나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는 봉사 같은 거 하면 봉사시간을 주잖아요. 원래 뭐 가출한 애들이다 그러면 일자리를 못 얻잖아요.. 그니깐 봉사나 그런 거 하면요 밥을 사주거나... 돈을 주거나..(10)

#### ① 직업훈련의 현실화

최근 우리나라는 높은 실업율, 특히 청년실업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중 직업훈련은 역사를 지닌 고용안정정책 중 하나이다. 고학력자도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숙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들은 좋은 일자리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출발점 자체에서 이미 불평등한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들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직업훈련 자체가 생계유지, 구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이 요구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제도가 있지만 신용불량자의 경우 이용이 어렵고 가족관계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소득금액 증명원 등 기본 서류를 필요로하고 있다. 특히 현행 직업학교의 교육내용이 구직, 근로과정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훈련 직종,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 (직업학교에서 배운 건) 전자 그거인데.. 그냥 회사에 가니깐 하는 게 그냥 제가 배운 거는 필요가 없더라구요. 전구 갈고 그냥 납땜하고.. 그거 밖에 없더라구요. 제가 자격증이 있으니깐.. 그걸 쓸 수 있는 데를 알아봤는데 없더라구요. 그런 거는 필요가 없다고.(07)
- ④ 연구질문과 소결
- → 근로에 대한 생각과 전반적인 자립 여건은 어떠한가?

노숙청소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면서도 일당제, 현금지급을 선호하였다. 월급이 제공되는 업종 보다 건설일용직, 택배상하차 등 힘들지만 일당제, 현금지급이 가능한 곳에서 일하고있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당장 하루 쓸 돈이 필요하고, 신용불량자로 통장 자체를 못 만들기때문이었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에는 접근할 수조차 없기 때문이었다.

자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사자의 자립의지가 중요하다. 노숙청소년들은 자립에 대한 열망은 강하지만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알고 이를 실행하는 경우는 찾기 어려웠다. 막연하게나마돈을 벌어서 방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만 할 뿐 어떻게 저축하고 어떻게 자신의 능력을 키워가야할지 방법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이들에게 단순한 일자리 제공은 문제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이다. 부모, 교사 등 성인의 보살핌과 보호 하에 고등교육을 마치고 성인이 된 이후 사회에 진출해도 자립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따라서 노숙청소년에게는 이 과정을 조력하는 '사회적지지' 체계가 중요하며 이러한 지지는 연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의 자립을 방해하는 요소로는 명의 양도에 따른 부채 문제, 임금체불 문제, 핸드폰 등 통신수단의 부재, 학력차별 등 저학력, 비숙련 근로자의 문제 등이 대표적이었다. 우선, 명의 양도에 따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둘째,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이들은 어리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와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기존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 예방 및 구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통신수단의 문제인데 노숙청소년 상당수가 핸드폰이 없었고 이로 인해 대인관계는 차지하고라도 구직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근로의욕이 있고 구직활동을 하는 노숙청소년에게는 쉼터에서 선불폰 등을 임대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저학력, 비숙련 근로자에 해당하는 노숙청소년이 선택할 수 있는 직종, 업종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들은 일반 청소년들이 선택하는 배달,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의 아르바이트 직종도 구하기 어렵다고 하였는데 취업동의서, 보건증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직업훈련도 구직과정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취약계층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교육, 훈련, 구직지원 전반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노숙청소년의 생활안정, 자립기반 마련에 보다 세심한 정책지원이 요구된다.

○ 자립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사회적 지원은 무엇인가? 노숙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요구되는 사회적인 지원은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다. 면접대상자의 응답을 통해 드러난 내용을 일부 살펴보면 첫째, 구직을 위한 통신수단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핸드폰 유무는 구직 시 중요한 기준이었는데 노숙청소년 상당수가 요금체납,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핸드폰이 없었고 이것이 구직 시 치명적인 장애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근로의지를 가지고 있고 구직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쉼터에서 선불폰을 지원하는 등 핸드폰 임대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숙인이라는 낙인문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청소년에게 '노숙인'이라는 낙인은 구직과정에서 자립의지, 노력을 일순간에 무너지게 만드는 낙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특히 공공기 관의 훈련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인식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별도의 정책적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명의 양도에 의한 채무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쉼터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노숙청소년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피해에 대하여 이를 구제하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넷째, 미성년자의 근로활동과 관련하여 법제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들은 장기간의 노숙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로 보호자의 도움은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절대 다수였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 근로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근로를 위해서는 취업동의서, 보건증 등 부모의 동의나 별도의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 청소년쉼터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어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 직무를 수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에도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아 단순노무직종을 전전하는 등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기숙사를 제공하여 생계 걱정 없이 훈련을 이수하고 이후 구직이 가능하도록 현행 취업사관학교 등을 통한 연계, 지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표 V-67 노숙청소년 일과 자립 관련 심층면접 내용 요약

상위 범주	하위 범주	내용 요약
근로 상황	최소한의 생활만을 위한 소득활동	<ul><li>아무리 일을 해도 최소한의 생활만 가능한 소득을 올림.</li><li>저소득, 고위험의 열악한 업종에서 일을 하다 의욕 상실</li><li>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동의 없어서 아르바이트도 못 구함.</li></ul>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	<ul><li>-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많이 사용하지만 벼룩시장과 같은 지역신문과 인력소개소</li><li>소 등의 오프라인도 많이 이용</li><li>- 고용센터나 워크넷 등 공적기관의 역할이 미미함.</li></ul>
자립 여건	자립에 대한 의지	<ul><li>자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비슷하게 나타남.</li><li>자립에 대한 의지가 있더라도 구체적 실천방안은 없음.</li></ul>
	자립방해요소	- 명의대여로 인한 신용불량의 문제 - 임금체불의 문제 - 통신수단의 부재 - 학력차별의 문제
자립 지원 요구	구직을 위한 연락수단	<ul><li>구직을 위한 연락수단으로 핸드폰은 필수품임에도 요금체납이나 신용문제로 핸드폰이 없는 경우가 많음.</li><li>근로의지를 가진 노숙청소년에게 선불폰 등을 임대할 필요 있음.</li></ul>
	노숙인이라는 낙인문제 해결	- 노숙인이라는 낙인이 구직활동에 막대한 지장 - 고용주들의 인식개선활동 필요 - 쉼터에 주소가 되어 있는 경우 불이익 받는 상황의 해결 필요
	명의도용 문제의 해결	<ul> <li>명의를 빌려주고 고통 받는 노숙청소년이 상당수 존재</li> <li>명의대여의 위험성을 알리는 대대적 캠페인 필요</li> <li>사회적약자인 노숙청소년을 배려해서 처벌을 유예하고 신용회복을 도와주는 제도가 필요</li> </ul>
	미성년자 합법적 일자리 제공	<ul> <li>미성년 노숙청소년은 부모동의가 없어서 최소한의 소득활동도 하지 못함.</li> <li>조건만남 등 불법성매매나 유흥업 종사 등의 잘못된 선택도 하게 됨.</li> <li>장기간 노숙하는 청소년들은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이 필요</li> </ul>
	직업훈련의 현실화	<ul> <li>직업훈련이 실제 직장에서 쓸모없는 경우가 많고 훈련받는 기간 중에 생활에 어려움이 있음.</li> <li>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관련 기업으로 연계시스템 구축 필요</li> <li>기숙사 제공이나 생활비 지원 등으로 교육기간 내 생활어려움 해소</li> </ul>

# (3) 관계(생활, 의식)

노숙청소년들에게 주거 및 일자리만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이다. 어쩌면 다분히 부차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관계는 한 사람의 생활에서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노숙청소년의 경우는 청소년기라는 특성으로 인해 성인에 비해 사회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한다. 또한 노숙청소년의 일상생활 및 사회의식은 노숙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일반 청소년들과는 사뭇 다를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이 사회화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에서는 노숙이전의 대인관계 가운데 노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이후 노숙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서의 사회관계, 노숙을 하면서 새롭게 맺게 된 관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① 대인관계: "배제되거나 스스로를 배제시키거나"

면접대상자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부분 가족과의 관계가 노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난한 가정에서 가족과의 관계 단절 및 가족 해체는 노숙을 선택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아동기에 가족이 해체되면 양육시설이나 친인척에게 위탁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적응하지 못해 가출, 노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64) 가족관계만큼이나 청소년 기에 노숙생활을 하게 되는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교에서의 대인관계일 수 있고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도 포함한다.

#### ① 교우관계

대다수의 면접대상자가 학교생활의 경험을 즐겁지 못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특히 왕따를 당하거나 왕따를 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험은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 그 옛날에 초등학교 때요... 왕따 당했었거든요. (그냥 이유도 없이?) 네. 그래서 힘들었어요...그래서 3학년 때 학교를 한 번도 안 갔거든요... 막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놀림 받잖아요. 애들이 끌고서 남자화장실에 보내고...(10)

⁶⁴⁾ 구체적인 가족관계와 노숙에 대해서는 주거 부분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이 장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들이 왕따를 당한 것은 가족과의 관계단절로 인해 학교생활이 원만하지 않았던 것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빈곤, 결손가정이라는 이유 자체로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차별을 받거나 스스로 위축되기도 하였고 반대로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위축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기 위한 방어적인 공격행동이었다. 이러한 행위는 스스로 벽을 쌓고 관계를 단절하여 자신을 다수로부터 배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 '학교부적응'으로 이어졌다.

면접대상자 가운데 어렵게 대학에 진학한 경우도 있었다. 대학생활은 초·중·고교 때와 비교하여 자율적인 교우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학비 걱정, 불안정한 가정환경 등으로 이미 자신감을 상실한 상태로 다른 사람을 만나기가 꺼려지는 등 적절한 교우관계를 맺기 어려웠고 결국 휴학을 선택하였다.

- · 싸움을 좀 많이 하고 다녔죠. (고아원에서 왔다 이것 때문에?) 네. 하루에 한 번씩 싸웠어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싸웠죠.(02)
- · 가족이 없거나 좀 뭔가 집이 못 살면, 좀 막 대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쳐버렸어요. 그 냥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짤려 가지고.(03)
- · 제가 처음 사고 친 게 중학교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친구가 그때 당시에 (양)부모님을 욕해가지고. 그래서 처음 싸우기 시작하게 되었는데...(04)
- · 학교생활 좋진 않았어요. 학교에서 애들 괴롭히고 좀 그런 게 많아서... 괴롭힌 기억밖에 안 나는데.(11)
- · 이렇게 (기숙사) 생활하다가 1년 정도 마치고 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대학교 들어간 거 알아가지고 학교까지 찾아 오셨더라구요 ... (중략) ... 아버지가 어떻게든 해가지고 찾아와 돈 뺏어가지고 ... (중략) ...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06)

#### ① 나빠지는 교사와의 관계

학교적응에 있어 교사의 역할은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면접대상자들 상당수가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 일부는 교사의 지지와 조언을 받기도 하였지만, 대다수는 교사를 폭력을 행사하거나 무관심한 사람들로 기억하였고 일부는 극단적인 혐오감을 느끼는 관계로 인식하거나 일부는 그림자처럼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하였다. 학교생활에서 교사와의 관계는 이들의 학교적응에 도움을 주는 관계라기보다 학교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퇴학, 자퇴의 계기가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공부는 안하더라도 교복 입고 다니고 싶은' 열망을 지니게 하는 동경의 대상이 되는 곳이기도 하였다.

- · 저희 학교 선생님 도움을 받았고요... (중략) ... 학교 선생님은 제가 학교에서 계속 생활하니깐... 여기 (쉼터)는 3시간만 생활해요... 학교는 많이 지내는데... 칭찬도 많이 해주고(20)
- · 선생님들도 솔직히 애들한테, 학업에 관심이 없었던 거 같았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제가 기계과였는데 수업시간에 가서 그냥 논 걸로 기억해요 ... 선생님은 그냥 딱 칠판보고 자기 할 것만 하고 학생들한테는...(04)
- · 선생님과도 많이 싸우고. 그니깐 게임 접속을 하는데 하교시간이랑 맞물리는 거예요. 그니깐 당번인데 째고... 이제 게임하고... 그런 거 때문에 트러블이 있으니깐 선생님이 막 뭐라 그러면 됐다고 안하겠다고... 그냥 그런 식으로 좋게 얘기하고 또 도망가고 게임하고...(07)
- · 담임샘이요, 빰 때리고 그랬어요 ... 옛날엔 가짜 돈이 유명했잖아요. 가짜 돈을 엄청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그거 막 바닥에 뿌리면서요, 차곡차곡 모으라면서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포개가지고 일 어났는데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빰 때리던데요.(10)
- · 학교에서 애들만 괴롭힌 게 아니라 선생님도 괴롭혔어요. 우리는 선생님이 교실을 못 들어왔는데, 우리는 교실에서 담배피지, 술먹지 할 거 다 했어요 ... (중략) ... 저 선생님 한 번 때린 적 있는데 솔직히 선생님이라면 애들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남자선생님이 친구 여동생을 건드려서, 열 받아서 선생님 완전 박살냈는데...(11)
- · 그냥 교복만 입고 싶어요. 학교에 다니면서는 어차피 공부도 안 할 건데 학교 가면은... 공부도 안 할 거 뻔한데...(19)

# ② 사회관계: "노숙은 관계를 바꾼다"

#### ① 노숙을 시작하게 된 계기

단순히 가족, 교우관계, 친인척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해서 바로 노숙생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노숙을 하게 되기까지 결정적인 계기들이 존재한다. 먼저 주변의 사회관계가 모두 단절되어 소외감이 극대화되고 이로 인해 자신이 속해 있었던 곳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다고 인식하게 되는 경우이다. 학교에서의 소외 역시 가출, 노숙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와 함께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와 함께 행동하기로 결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양육시설을 나오거나 집을 나올 때 주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거나 뜻이 맞는 친구가 있을 때 가출, 노숙을 쉽게 결심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게 된다.

- ·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랑 같이 가출해서... 학교 친구랑... (중략) ... 친구 아는 오빠들이 먹을 거 주던 가. 아니면 친구가 뭐... 편의점가서 막 훔쳐오고 그랬어요. 친구랑 같이.(19)
- · 고아원에 들어가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고아원 친구들이랑 세 명이서 뛰쳐나왔어요.(11)
- · 그 다음에 제가 바로 나온 게 아니라 이번엔 그 친구가 나온 거예요(본인이 가출했을 때 집에 머물수 있게 해주었던 친구). 그 친구가 나와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하길래 알았다고. 나도 나가서 도와주

겠다고 해가지고. 집에 제 통장이랑 용돈이랑 싹 다 챙겨 나와가지고, 나 돈 챙겨나왔으니까 오늘 하루, 한 두 달 정도는 뻐길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같이 있다가... (중략) ... 두 달 정도 있다보니까 그 친구 다시 들어가고 그러다가 친구가 다시 집을 나와서 그 다음부터 막 쉼터 다니고.(18)

특히 양육시설이나 보호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던 친구와 함께 가출하는 경우 노숙 이후에도 관계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초기 노숙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작용하게 된다.

- · 옛날 고아원에서 같이 지낸 동생, 걔네 집에서 지냈어요. 한 세 달 정도 있었어요. 일자리를 못 찾아 가지고. 걔네 집에서 지내면서 PC방가고 그랬죠.(02)
- · 오래 알다가... 걔도 가출하는 걸 알고, 아 나도 가출할 테니깐 같이 있자고 ... (중략) ... 돈도 주고요, 잘 곳도 마련해주고, 밥도 주고.(10)

## (L) 노숙으로 단절되는 관계와 유지되는 관계

일단 노숙을 시작하게 된 이후에는 이전에 맺어왔던 대인관계, 사회관계가 상당 부분 단절된다. 이러한 단절은 스스로 단절을 선택하는 경우와 타인에 의해 단절되는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한다. 가족에 대해서도 대다수가 배척하려는 경향과 자신에게 그나마 잘 대해 준 가족성원 한 두명에게는 마음을 열어두는 경우도 동시에 관찰되었지만 노숙 이전에 맺었던 대부분의 관계는 노숙으로 단절되고 이로 인해 도움과 지원을 받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현재 자신의 모습, 생활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친구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욕할 것이라는 생각에 의도적으로 관계를 끊는 경우도 많았다. 반면 추후 직업을 가지게 되거나 상황이 나아지면 연락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다.

- · 친구들도 다 끊었는데요, 지금 이 꼴을 보여주기 싫기도 하고, 솔직히... 그리고 만난다고 해도 애들한 테 손 벌리기도 싫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학생 때부터 알아오던 애들인데, 그런 것도 있고... 솔직히 도와준다는 장담도 없고, 걔네들이. 소문만 이상하게 퍼져버리면 나중에 제 인생이 묻힐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기해서 가자 이랬는데...(04)
- · 아니요, 중학교 때는 친구들 많이 못 사귀고, 고등학교 때 애들... 친구들하고 연락 안 하는데요. (연락 안 하는 이유는 있어요?) 쪽팔리니깐...(13)
- · 만나도 내가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멀어지죠. 이런 거 말하면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만나기 싫어지는... 그거 때문에 그런 거죠.(06)
- · (알던 친구들과) 갈라질 수도 있고 좀 틀어질 수 있겠죠. 네. 그런 건 좀 감안을 해야죠. (오히려 지금 안 만나고 나중에 나아지고 직장 찾으면 그때 만나는 것이 낫다?) 그게 나을 거 같아요.(12)

결국 노숙을 통해 이전의 부정적 대인관계도 단절됨과 동시에 편안하고 좋은 관계도 단절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가정폭력, 아동학대를 경험한 경우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가족들로부터 내몰리고 노숙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해 요청해도 외면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거부, 외면은 심각한 고립감, 소외감으로 이어졌다.

- ·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족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돈 좀 요청했는데 뭐 부모님은 니 알아서 산다면서 왜 전화하냐고... 그래서 됐다고 그리하고...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에요?) 배고팠던 때... 그 다음에 내가 기댈 사람이 없구나... 뭐 이 정도.(07)
- · (새엄마가) '왜 너 애랑 둘이 살지, 왜 이렇게 기어들어왔냐? 내가 너 같았으면 몸이라도 팔아서 애를 키웠다. 내가 너한테 노래방 도우미 삼촌 소개시켜 주지 않았냐? 거기 가서 일하지? 그러니까 저한테 그랬어요.(17)

이들이 느끼는 단절, 소외, 고립은 자살생각, 자살시도 등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으며,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한 경우도 발견되었다.

- · '너는 우리 친척들의 수치다' 그러면서 나가서 연락도 하지 마고, 찾아오지도 말고, 나가서 여기서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살아라 ... (중략) ... 그때는 살기도 싫었고요. 친척들에게 버림받은 날에도 저녁에 자살 시도하고...(06)
- · 내가 왜 이리 사는지 물을 때도 있고... 왜 이래 사나 싶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 (중략) ... 수면 제 한 통 다 털어 넣었는데, 산에서 그랬는데, 깨어보니 병원이고 바닷가에서 그랬는데 깨어보니 병원이고...(11)
- · 말 그대로 자살하고 싶은 생각도 없잖아 있었는데... 쉽게 끊어지는 건 아니더라구요. 이게 올라는 가 봤는데, 어후, 무섭더라구요. 옥상... 아, 죽는 것도 쉬운 게 아니구나 그리 생각했었죠 ... (중략) ... 퇴학당하자마자 좀 있다가.(03)
- · 제가 술을 먹었어요. 혼자 우울해서 먹었나 해가지고... 먹고 나서 뛰어내렸는데 멀쩡하더라구요. 그 게 주공아파트였는데 5층인가 6층일 거예요. 근데 밑에 화단에 떨어지긴 했는데 안 죽었어요. 나무 사이로 떨어져가지고... 정신차리고 혼자 걸어 나왔어요. 옷 탁탁 털고.(04)

#### ① 노숙으로 새롭게 맺는 관계

노숙생활을 하면서 기존의 관계가 단절되더라도 이 과정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노숙으로 새롭게 맺는 관계는 크게 종교기관이나 노숙인쉼터 등 시설 및 기관 종사자, 노숙과정에 서 알게 된 또래나 성인노숙인, 그리고 일터, 온라인, 거리 등에서 만난 일반 성인들로 구분된다(표 V-68).

# 표 V-68 노숙생활로 맺어지는 새로운 관계

	ul O
구 분	내 용
시설 및 기관	- 경찰, 주민 등을 통해 쉼터 등 복지시설로 인계되면서 맺게 된 관계
종사자	- 종교기관을 통해 알게 된 신도, 성직자와의 관계
또래 집단	- 함께 가출 하거나 노숙 전부터 알던 친구들을 통해 연결된 새로운 또래 관계 - 쉼터에서 알게 된 또래, 선후배 관계 - 게임 사이트를 통해 연결된 관계
성인노숙인	- 쉼터에서 함께 생활하는 노숙인과의 관계
일반 성인	<ul><li>직장, 거리에서 알게 된 성인과의 관계</li><li>게임 사이트, 채팅방 등 온라인을 통해 연결된 관계</li></ul>

노숙 이후 새롭게 맺게 된 관계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경우와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경우로 구분되었다. 전자는 숙식을 포함하여 구직 등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존재들이었다.

- · 진짜 스무 살 넘은 형들 중에서 진짜 잘해주는 형들이 있었는데 그 형 집에서 자고 그랬는데, 그 형이 진짜 아빠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거예요.(18)
- · 게임하면서 알던 형인데... 직업군인인데... 게임 내에서 모임이 있거든요. 그거 그 사람들이랑 모여서 막 놀고 일주일 정도 같이 보냈어요 ...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친해졌어요. (중략) ... 일이 잘 안 된다. 힘들다 그러니깐 형님이 밥은 먹고 다니냐고, 5만원 돈 붙여줄 테니깐 계좌번호 알려 달라고 ... (중략) ... 이제 그 형은 저한테 생명의 은인이고, 일단 저의 아버지보다 더 좋아요. 저의 누나만큼 좋아 요. 그 형 없었으면 아마...(07)

특히 노숙인쉼터 종사자, 청소년쉼터 종사자, 공무원(조건부 수급자 지원)을 통해 숙식, 긴급지원, 상담, 취업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었다.

- · 공무원 한 분 계셨고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 일반 주민센터 공무원인데 잠자리도 제공해 주셨는데, 자기 돈으로 사비로 또 구해주시고, 차비도 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도 사주시고 그려셨어요.(06)
- · (쉼터) 원장님이 추천을 해 줘가지고 거기서(아이스크림 공장) 일하게 되었어요.(07)
- · 도움 됐던 걸요? 일단 희망등대에서 있잖아요, 일단은 제가 여기로 그... 소개를 시켜주시면서 있잖아 요. 이제 조건부수급을 몰랐거든요 ... (중략) ... 이제 조건부수급이 되면 이제 그거 이제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이제 제 스스로 방세도 내면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09)
- ㆍ 따지고 보면 여기(쉼터) 담당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었죠. 처음에 왔을 때 상담을 했었으니깐...

(어떤 것을 주로 도와주셨는데요?) 뭐 취업 알선 같은 거. 그런 쪽에 좀 많이 알아봐 주시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니깐 아르바이트 자리도 좀 도와주시고.(12)

다만 쉼터생활 속에서 입소자 간에 문제가 발생하여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고, 쉼터에 대한 선입견, 잘못된 인식으로 입소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종교기관에서 생활할 때는 '봉사'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착취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 · 단체 생활이라는 게 원래 힘든 거잖아요. 서로 맞춰 가려는 게 좀 불편하고 힘든데 ... (중략) ... 여기 자체 선생님이나 이런 건 좋은데 가끔 막 애들하고 트러블 있고 그런 거... 스트레스를 받아도 풀만한데가 없으니까.(19)
- · 애들 사이에요, 가출하면은 쉼터 같은 데 가면은요,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완전 가둬두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소문이 있어서 쉼터는 잘 안 가고 그래요.(10)
- · 거기 가면 뭐라 해야 되나 뭐... 저 또래 같은 애들이... 이상한 꼬투리 잡을 거... 뭐 안 좋은 걸 한다고 하대요.(09)
- · 사람을 너무 차별하니깐. 갑자기 스트레스 받네. 솔직히 다른 사람은 손가락 까닥 안 하는데 (나는 교회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해주는 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 많다고 손가락 까닥 안 하지. 어리면 어리다고 손가락 까닥 안 하지.. 나는 무슨 봉도 아니고...(11)

또래집단의 경우 쉼터에서 새로운 또래를 만나 친해지거나 전부터 알던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을 통해 새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 · (남자친구는 어떻게 만났어요?) 저랑 같이 다니던 친구가 썸타는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랑 저랑 개량 제 남자친구랑 놀러가면서... 어떻게 하다가 같이 놀러가게 됐는데 막 같이 말하는 것도 잘 맞고 그래가지고 사귀게 됐어요.(19)
- · 그냥 학교 선배들이나... 그러다가 알았어요. (건너 건너 알고?) 네. (어떻게 도와주는데?) 만나서 밥을 사준다던가요. 아니면 방을 잡아놓고 가준다거나.(10)
- · 오빠(남자친구)는 아는 오빠 친구에요. 네. 그래서 원래는 아는 오빠가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 오빠는 거기서 끝나고 친구 해가지고 연락하고 안 지는 일 년 넘었거든요.(17)

또래집단은 노숙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주고받았다. 쉼터에서 함께 나와 '가출팸'을 형성하고 구직에 필요한 정보,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 같이 사는 형이 있어가지고. (둘이서 같이 살아요?) 네. 혼자는 유지하기 힘드니깐... 같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 그 형도 여기(쉼터) 있었어요.(03)

- · 믿는 게 아니라 같이 생활하다 보니깐. 아 동생도, 걔도 저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를 때 많이 챙겨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지금도 많이 도와주고요. 배고프면 라면 사주고 그 정도... 겪어 보니깐, 자기도 겪으니깐... 못 먹는 걸 자기도 겪으니깐. 다 주위에 어른들이고 그래서 막 챙겨주는 거죠.(13)
- · 일단 생활이 적응이 되니깐, 사람들하고 인간관계가 좋으니까 더 찾게 되죠... 게임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같이 물어보고 그런 게 좋더라구요. 일자리 같은 경우도... 얼마나 받을 수 있고 다 알아보면 답이 나오니깐.(15)

그러나 '가출팸' 생활은 심리·정서적인 도움을 받는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였고 사기, 집단폭행,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되어 구금시설(소년원)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미혼모가되는 등 범죄의 가·피해 위험에 연루되는 계기가 되는 경로로 작용하였다.

- · 예전에는 술 먹고 친구들 그게... 잘못 만나가지고... 거 있잖아요. 저를 만나면 계속 쏴달라고 하면 내가 돈을 다 내고. 그렇게 하다가 한 달도 안 되게 220만원 다 쓰고... 매번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었거든요.(01)
- · 제가 한참 일하고 이럴 때 잠깐 돈 빌려줬는데... 그거 가지고 돈 갖고 도망가 버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좀 그렇죠, 아무래도. 돈이 적은 액수도 아니고... 제가 이제 친구가 아는 위에 형이 있거든 요.(08)
- · 아, 성폭행 옛날에 있었죠. 지금 같이 지내고 있는 친구가요, 지 아는 언니보고 가출했다고 그러니까요, 그때 그 언니가 무슨 채팅 있다면서 들어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팅 들어가서 19살 오빠를 만났어요... 오토바이를 탔었어요. 그래서 3명이 타고 가고 있었는데요, 편의점에서 제 친구를 내리라고 하고요,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고 무슨 여관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어 그냥 재워주는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 (중략) ... 안 하면 죽일 거라면서, 막...(10)
- · 아는 사람 몇 명을 먼저 만나긴 만났는데, 이제... 좀 그렇게 어울리다 보니깐 한 보름 정도는 어울리다 보니까네... 또 나쁜 길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구치소 몇 번 다녀오고.(09)
- · 같이 다니는 애들이 13명 정도 있었는데. 근데 걔네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애들이 집 가는 애들도 있고, 집 가는 애들 몇 명이랑 나머지는 다 들어갔어요. (어디로요?) 구치소로요... (무슨 일인지 물어 봐도 되나요?) 집단 폭력이랑 성폭행이 관여되어 있더라구요. 저도 폭력은 같이 했었어요. 전 조사만 받고 나왔는데 ... (중략) 그 중 한 명이 2년 전부터 친구였는데, 걔는 다행히 성폭행이 아니라 폭력으로만 들어가 가지고. (2년 전이면 나올 때부터?) 네. 나올 때부터 친구였죠. 같은 학교였어요.(18)
- · 다른 쉼터로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남자/여자 쉼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잘 지내고 있다가 거기서 애기 아빠를 만났어요. 쉼터에서... 그래가지고 또 거기를 나왔죠. 같이 나와서. 밖에서 고시원에서 같이 살았었어요. 둘이, 그렇게 하다가 애기 가지고 그렇게 됐죠.(17)

다음으로 쉼터에서 만나게 되는 성인노숙인의 경우 두렵고 무서운 존재라기보다 대하기 부담없고 편안한 대상으로 인식하였지만 피상적인 관계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동시에 성인노 숙인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존재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 · 편해요. 왜냐하면 이 아저씨들은 생각이 없다고 해야 하나? 그냥 나이 어린 거 많은 거 안 따져요. 진짜 특유의 그거 있잖아요. 어울림... 방도 공짜로 주고 그러니깐, 야 그냥 밥 먹자 막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는 먼저 얘기를 안 꺼내면 거기 자기네들이 얘기를 해도 대답을 안 해주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얘기 안 해요.(04)
- · 솔직히 여기에 빠지면 못 벗어나요. 저기 아저씨들이 여기 있고 싶어서 있겠어요? 못 벗어나니깐... 여기에 빠져들어서 못 벗어나니깐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저도 다르다고 할 수 없어요. 저 아저씨들 과 다르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여기 다시 찾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고 볼 수는 없어 요.(11)

이 외 일터나 거리에서 만나 작은 도움을 받게 되면서 우연히 알게 되는 성인들은 숙식, 일자리 등을 제공하면서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었지만(05번, 07번, 13번), 명의를 도용하여 노숙청소년을 채무자로 만들거나, 미성년 노숙인이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 · (인력사무소) 사장한테 아부 떨죠. 저 보내달라고. 그냥 아부 떨었죠. 막... 사장님 살려달라고, 나 진짜 돈 벌어야 된다고. 막 그랬죠. 그래가지고 자식 같고 그래가지고 보내주더라구요.(05)
- · PC방 사장님하고 친해져 가지고 거기서 좀 청소해 주고. 거기 직원 휴게실이 좀 있거든요. 거기서 잠도 좀 자고. 라면도 끓여 먹고. 시켜먹고...(07)
- · 노숙하다가... 자다가... 갑자기 오셔가지고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사정을 말했죠. 그동안, 그니 깐 애써 주시더라구요. 도와주시더라구요. (어떤 분이에요?) 사장님. 청소시켜 주신 분은 안마 사장님 이었고요, 한 분은 병원에서 벤치에서 자다가... 깨우셨고 자기 일하는 데에...(13)
- · 제 명의로 돈을 뽑아서 준다고. 그 신용을 한다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대출, 제 명의로 대출하고, 차까지 뽑고, 핸드폰도 뽑고... 그래 가지고 그걸 그래도 몇 개월 같이 지내가지고 용돈은 조금씩 받았 는데, 돈은 못 받고 차까지 다 뽑은 다음에 도망가 버리더라구요 ... (중략) ... 제가 그때 확인해 봤는 데 1억 정도 있더라구요.(02)
- · (동생이) 절도인가? (절도, 왜 했어요?) 편의점에서 일했었는데, 월급을 안 받아가지고...(02)

온라인 게임 등 가상공간은 노숙청소년에게도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는 중요한 통로 중 하나였다. 여기에서 접촉하게 되는 이들을 통해 생활에 도움을 받거나 혹은 피해를 당하기도 하는 등 오프라인에서와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가상공간에서 이들은 게임 순위에

따라 우월감, 존재감을 느끼기도 하면서 현실에서 탈피할 수 있어 게임에 과몰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 (지금) 아는 형들은 전부 다 게임에서 아는 형들이에요 ... 정식 모임도 가지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만나는 것도 있고, 만나서 가까우면 술 한 잔도 하고, 같이 겜도 하고, 뭐 ... (중략) ... 게임요? 솔직히 옛날 아이원 전에 했던 게임은 솔직히 전서 1위 해봤어요. 전체 서버 1위 ... (중략) ...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한 30명 정도 ... (중략) ... 딴 세상이에요. 그러니깐 우리가 돈 없이 이렇게... 에 이렇게 해 도... 게임방 가면 또 신세가 달라져요.(11)

## ② 도움이 되었던 관계와 힘들었던 관계

앞에서 노숙생활로 인해 단절되는 관계와 새롭게 맺어지는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자는 노숙이라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스스로 이전 관계를 단절하거나 혹은 배제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고 배제된 경우 극도의 외로움, 소외감으로 자살시도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도 하였다. 후자의 경우 노숙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관계이거나 아니면 서로 악영향을 미치는 관계 중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온라인 가상공간, 오프라인 모두 같은 양상을 보였고 또래집단, 성인노숙인, 일반 성인의 관계 모두에서 나타났으며 긍정적 영향은 숙식제공, 일자리 정보 제공 등에 그쳐 실질적인 문제해결과 자립지원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 정도였으나 부정적 영향의 피해 정도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팀 짜고 나가잖아요? 그럼 또 술 먹고 보면 또 지들끼리 싸워버리고. 그러니깐 그거는 한 달 이상 못 가요. 그거는... 한 달 이상 있을 데가 못 돼요. 팀도 또 서로 맞춰 놓으면 또 술 몇 번 먹고는 싸우 면 이렇게 되어 버리면 다시 해체되어 버리고. 또 새로 맞추고 또 싸우고...(15)

새로운 관계 맺기를 통해 상처, 피해를 입더라도 노숙 이전 대인관계의 단절로 인한 외로움, 소외감, 그리고 노숙생활이 주는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새로운 관계 맺기를 시도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이들 청소년이 노숙 초기에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이 비슷한 또래, 일반 성인들로부터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쉼터 등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아웃리치(out-reach)를 통해 '새로운 관계맺기'와 지원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친구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친구들이 있어야... 혼자 있으면 외로운데. 친구들이 있으

면 재미있고 그런 거고. 공부할 때도 혼자 할 때는 재미 없는데, 여럿이 해야 재미있고, 밥 먹을 때도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는 게 더 맛있고. (친구들 때문에 이번 경우는 힘들고 속상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친구들끼리 있으면서도 계속 좋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좋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그냥 그런대로.(18)

- · (도움 받았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있을까요?) 제 이야기 들어주시는 거요. 남자친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라고 바뀌라고 잔소리 해주는 거?(19)
- · '너 진짜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진짜 할 수 있어?' 똑 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너 진짜 이거 하다가 포기하면 안 돼'. 막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 (중략) ... '열심히 할 수 있어, 너니까. 넌 이거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칭찬하면 오히려 더 많이 버틸 수 있단 말이에요.(18)
- · 목사님이 친구처럼 잘 대해 주셔가지고. 이왕이면 내가 살아야 하는 명분을 주더라구요. 그분은 내가 그분 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일 나가라고 잔소리 안 했어요. 잔소리 한 게 아니라 날 불러놓고 얘기 하는 게... 니 인생 어떻게 하냐고, 지금 니가 돈 한 푼도 없는데, 기술도 배우기 좀 그러면 돈이라도... 사회는 돈이라도 있어야 돼. 이렇게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니깐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는 너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진로를 못 정하겠다... 그러면 돈을 벌어서 돈을 굴려. 어떻게 해서든지.(05)
- ③ 사회의식과 일상생활: "암울한 미래, 낙인찍힌 삶"

여기에서는 노숙 청소년의 하루 일과,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나름의 방식, 그리고 일상생활을 제약하는 문제로서 '중독' 부분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 비전과 인식을 통해 노숙생활이 이들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과 정도를 살펴보았다.

#### ① 하루 일과와 의식주 해결 방식

노숙 청소년들의 일상은 단순하였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루 벌어 이틀 쓰기'의 반복이다. 일을 하는 날은 하루 종일 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일은 하지 않았고, 일하러 가지 않는 날에는 쉼터에서 쉬거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수중에 돈이 조금 있는 경우에는 pc방에 가서 컴퓨터 게임하기, 만화방에 가서 만화 보기 등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일부는 친구들과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구경하기도 하였다. 즉 이들의 하루 일과는 또래 청소년의 여가 보내기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또래 청소년들이 하루 일과 대부분을 학교, 가정에서 보내는 반면 이들은 pc방, 쉼터 등 가정 밖 다른 공간에서 보내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결국 이들의 일상생활은 내용 자체보다는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이 어디인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이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자체가 부정적인 관계에 노출될 위험과 정도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분 석

- · 재작년부턴가 작년부턴가 (복싱을) 하고 싶었어요. 계속. 근데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물건이든 뭐든 금방 없어지거나 그럴 건데... 물건이나 그냥 노는 거는 기억에만 남고 솔직히 딱히 남는 건 없잖아요.(19)
- · 도서관에 가서 공부도 하고. 한 바퀴 산책도 하고. 가만히 생각도 하고. 명상도 하고.(06)
- ㆍ 뭐 돌아다니거나요. 아니면 앉아서 사람 지나가는 거 구경하고 핸드폰 만지고 그래요.(10)

특히 집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당장 먹을 것을 마련하는 것부터 잘 곳, 옷을 갈아입고 빨래를 하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면접대상자들은 쉼터 등 기관에서 제공하는 식사 제공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삼각 김밥 등 팔고 남은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컵라면 등을 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쉼터는 밤에 잠을 자지 않는 사람, 즉 입소자가 아닌 이용자에게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식사는 하루에 한 번만 제공하는 곳도 있어 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더라도 결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를 해결하는 기준은 맛, 영양보다는 얼마나 저렴한가였고 물로 배를 채우는 경우도 있었는데, 면접대상자 상당수가 질병이 있었고 섭식에 문제가 있어 체중이 심각하게 줄어드는 등의 문제를 호소하였다.

- · 밥은 막 몇 천원씩 하니까 컵라면 하나씩 사먹고. 그게 제일 싸게 들어가니까. 돈이... 급식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 이러니까.(06)
- · (식사는 주로 어떤 걸?) 안 먹어요. 뭐 라면 부셔 먹거나요, 아니면 공원 가면 물 있잖아요, 물 마시고. 그냥 물로 배 채워요. (배고프면 어떻게?) 그러면 자꾸 물 먹는 거죠. (건강이 좀 안 나빠져요?) 네. 힘이 좀 빠지고 그래요.(10)
- · 지금도 설사하고 있거든요 ... (중략) ... 장이 안 좋아 가지고, 밥... 밥을 먹어도 속 쓰리고요. (많이 말랐어요) 네. 제가 제 몸무게가 31kg이거든요. 원래 여기 들어올 때가 36~37kg에 들어와... 그 정도 였구요.(13)
- · 이번에 살 엄청 많이 빠져가지고요. 5kg 정도 빠져서 한 50 정도 됐어요... 돈 아끼려고 편의점에서라면 사먹고 계속 이런 식... 밥은 하루에 그 택배일 가서 밥 주잖아요. 거기서 밥 한 끼 먹고 일 끝나고, 라면 한 끼 먹고 자고 이런 식으로.(01)

이와 함께 짐을 보관하거나 맡길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씻고 옷을 갈아입고 빨래하는 등 위생에 신경을 쓸 수 없는 여건이다. 한 번 입을 옷을 일주일, 이 주일씩 입고 새 옷이생기면 버리는 경우도 있고, 냄새, 외관만 봐도 노숙인임을 알아 볼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신경을 쓰지만 곧 자포자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 · 옷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입으면 엄청 오래 입었죠. 그때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기준으로 생각하면 몇일 입고 나가고 빨고 그러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이주일, 막 그런 식으로 그렇게 입고... 그게 좀 냄새가 많이 심하면 이젠 또 다른 거 사러가고 그런 식이었죠. 거의 그냥 포기하다시피 했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누가 냄새가 나던 말던 뭔 상관이냐, 어차피 뭐 난 이런데 거의 자포자기였어요. 그때 당시에.(03)
- · (함께 몰려다니는 그 친구들은 어떻게 만난 사이에요?) 그냥 서울에 있으면 같이 그게 일하다 보면 만나지더라구요. 노가다하고 길거리 다니고 하다보면 저희 노숙자 하면 딱 티가 나기 때문에 바로 알아볼 수 있죠.(06)
- · 대충 내 행동 보고 노숙자인 거 알 거 같아. 막 이런 생각 ... (중략) ... 근데 냄새가 배어 있잖아... 옷을 빨거나 내 옷을 관리해야 하는데 옷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05)
- · 그냥 돌아다니면은 꼴도 막 꾀죄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깐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막 뭐하는 거냐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저번에는 처음 보는 어르신한테 혼난 적도 있었고... 쓰레빠에다가 막 진짜그렇게 가니깐.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지금 인생... 인생 왜 이렇게 사냐고, 어르신이 그러더라구요.(04)

#### ① 중독의 문제

면접대상자들 중 상당수는 스스로가 무엇인가에 중독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일부의 경우 스스로도 중독상태라고 밝히는 경우도 있었는데 '게임중독'이 그 예이다. 사실상면접대상자 대다수가 게임을 접하고 있었는데 노숙생활을 시작 한 후 게임 시간이 더 길어졌다는 차이가 있다. 돈이 있을 경우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돈이 없을 경우 통화 기능이 없는 공기계상태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무료함을 벗어나기 위해 시간 때우기 식으로 게임을 하는 상황이었다. 게임 이 외에 알콜중독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스스로 줄이고 있다고는 하였지만알콜중독은 자신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지지가 필요한 만큼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 · 제일 오래한 적이 PC방에서 한... 한 30시간 넘게 해본 적도 있어 가지고. 밥은 시켜먹지 않고 나가서 먹고.(01)
- · (일 나가서 버는 돈은 어떻게 좀 모아요?) 아뇨. PC방 가죠. 허허허. 파산신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02)
- · 거의 그렇죠. 시간 때우라면 그거 밖에 없으니까... (게임 열심히 하고 나면 허탈하지 않아요?) 허탈한데, 이게 중독성이 있잖아요. 이게 거의 마약 같아가지고. 한번 시작하면 거의 끝을 봐야 돼요. (한번 시작하면 얼마 정도 해요?) 한 3~40시간 ... (중략) ... (몸이) 퍼지죠. 근데 또 몇 시간 자고 나서 그 상태로 또 하니깐 그게 문제죠. 허허. 근데 머리는 알고 있는데 이게 끊어지지가 않죠.(03)
- · 진짜 알콜 중독으로 술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하루에 한 열 병까지 먹은 적이 있었어 요. 술 먹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건데... 깨면 이렇게 그대로고... 술은 안 먹도록 계속 줄여나갔 고요, 좀 줄이고 있고요.(06)

#### ⓒ 미래에 대한 비전 및 사회의식

면접대상자 상당수는 현재의 결핍이 미래의 비전과 포부를 약화시키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소박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생활할 거처를 마련하고 차를 사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소박한 꿈도 실현해 나가기가 매우 어려웠는데 노숙이라는 상황과 함께 맞물려 있는 채무, 비숙련, 저임금의 고된 일자리 등 노력해도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다 보니 지금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좌절을 경험하고 있었다.

- · 첫 월급 타서 뿌듯함을 이제 느끼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해서 살아가면서 이제 졸업도 하고 이제 중학 교, 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야겠죠. 그냥 남들처럼 이제... 차별 있잖아요. 그런 거 차별 안 받고 남들처럼 똑같이 똑같은 시점에서 남녀 차이점을 안 가지고 같은 선에서 출발하는 게.(09)
- · 부자 되고 싶죠.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할 만큼 있으면... 한 오천 만원 생각하고 있어요. 한 오천. 아.. 오천이라기보다는 보증금 월 얼마에 이런 거 보다는 전세가 완빵이라는 거죠. 돈이 안 나가니깐.(05)
- · 언젠가 돈을 좀 모아가지고요, 한 4천만 원 정도? 모아가지고 저는 이제 자동차 사고 팔고, 오피스텔 원룸 얻어가지고 편하게 살고.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눈치 안 보고.(06)
- · 그냥 돈이 있으면 그걸 모아야 되는데... 제가 술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담배 하나만 피거든 요... (중략) ... 근데 안 되더라구요, 안 벗어나지더라구요.(04)

노숙생활에 이르기까지 대인관계, 사회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와 피해를 경험해서인지 장래에 가족, 친인척 등과 함께 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경우는 없었다. 다만 친구와 함께 살겠다는 경우는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그 친구와 친밀하고 각별한 관계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거비용을 줄이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또한 이성 친구는 현재 자신이 처한 처지 때문에 사귀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사회관계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 자체를 부담스럽거나 불쾌하게 느끼는 등 대인기피적 성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한적하고 평범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꿈꾸기도 하고, 성인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을 제약없이 해 볼 수 있겠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기도 하였다.

- · 제가 근처를 안 가요. 여자를... 사귀고는 싶은 데. 제 처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안 가죠. 여자한테로...(02)
- · 딴 사람들이 저한테 어울리려고 하면 내가 멀어지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나는 내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건 이제, 이젠... 사람들이 싫어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더 이상은 용납도 못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 이제 그 사람이 다가오려고 하면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거지요.(09)

- · 사람들 시선 자체가 그래요. 남들이 쳐다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거 자체가 싫어요. 막 좀 보면... 지나가다 쳐다보면 솔직한 말로 동물원의 원숭이 보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눈빛 자체가 싫어요.(11)
- · 제 꿈은 그냥 한적한 시골 같은 데 가서 그냥 집 짓고... 네 혼자 사는 게. (농사짓고요) 네, 뭐 그런 거 ... (중략) ...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냥 돈 벌면서 주위, 그때 여건이 되면 사람들 많이 사귀어서 술 한 잔 할 수도 있는 거고.(13)
- · 성인 됐을 때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쉼터 돌아다니고 얼마나 쪽팔려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것도 있으면서도 그래도 기대가 되는 건, 이제 성인이 되니까 '내가 책임지고 알아서 할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좋다, 기대가 된다' 뭐 그런 식으로 기대가 되기도하고.(18)

면접대상자 대다수는 노숙생활을 상당기간 한 경우라 하더라도 노숙인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이 때문에 병원, 쉼터,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즉 노숙인이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피해를 본다는 생각 때문에 쉼터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 가운데는 실제로 그런 피해 경험을 당한 이후로 이러한 생각이 굳어진 경우가 많았다.

- · 알바를 면접 갔는데, 아무것도 몰라 가지고 그때 쉼터에서 지낸다고 했는데. 쉼터 애들 안 받는다고. 그때 좀 그랬거든요. 쉼터 애들을 왜 안 받느냐고 물어보니깐 예전에 한 번 받으니깐 사고... 사고 친 것도 있고 그래서...(01)
- · 건강 건진 받아도 그렇고, 이게 노숙이잖아요. 그거 이게 이름 앞에 붙거든요. 이름 앞에, 그것도 싫더라구요.. 공짜로 해서 다 가던데, 전 싫더라구요... (중략)... 나도 뭐 일반 사람이 아니고... 일반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라. 무슨 뭐 장애인 취급 같이 뭐, 바보 취급을 그러니깐, 뭐 모르는 사람들은 친하게 지내면 되는데, 사장 같은, 반장 같은 이런 사람들은 깔보더라구요. 그래서 한 번씩 싸웠어요. 많이 싸웠어요. 이눔아 나는 알고 있다 이러면서, 니가 아무리 해봤자 니한테 도움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니까요.(15)

쉼터 생활인이기 때문에 당했던 무시, 낙인은 사회에 대한 시각과 생각을 부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나는 안 된다', '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자포자기에 이르거나, 이러한 세상에 '반격'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거나, 오늘 당장 먹고 잘 곳이 없는데 미래에 대한 생각, 걱정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고착되기도 하였다.

•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이런 인생이다. 어차피 나는 이거 밖에 안 된다. 그냥 그거에 계속 익숙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깐 이걸 벗어날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고. 그게 계속 머리에 남아가지고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03)

- ·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한 반격이라고 봐야죠. 내가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반격... 세상이 이렇게 악하다. 그래서 악하게 살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죠. 사상이... 지금은 아닌데, 그어린 나이에는 그랬죠 ... (중략) ... 나도 모르게 정상적으로 살아서는 도저히 돈을 못 번다, 이 세상은 그렇다 이렇게 인정해 버리니깐. 또 같이 어깨끼리 어울리잖아요 ... (중략) ... 솔직히 유전무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쓰레기였죠. 어떻게 보면.(05)
- ·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싫은 거거든요. 뭘 미리부터 걱정을 하냐고... 눈 앞에 보이는 것도 완전히 힘든데. 그래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잘하고 싶어서, 나중 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07)
- · 그런 걸 걱정해봐야 앞으로 몇 달 뒤에 일어날 일인데, 그냥 저는 이제 몇 달 뒤에 일어날 일 걱정보다는 내일이 이제 또 나한테 어떤 기쁨이 올지, 아니면 어떤 불행이 올 지.. 그게 가장 기대되고 또진짜 두려운 거죠.(09)
- · 자격지심이 되게 심했어요. 나는 노숙자야, 가진 게 없어. 거지야. 나는 끝났어. 나는 절대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만큼이라도 난 살 수가 없어. 난 끝났다. 에라 모르겠다. 나이... 이렇게 되어 버리 니깐. 나도 모르게 흔들리게 되더라구요. 나도 흔들리게 돼요. 그냥 걸어 다녀요. 막 아파트 보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 얼마나 행복할까? 저 아파트를 얻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나가다 보면 막 옷 같은 거 입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저 옷 괜찮다, 저거 쳐다보고 그런 재미로만 살아요.(05)

#### ④ 연구질문과 소결

#### ① 노숙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노숙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를 간략히 정리해보면, 노숙 전 관계는 대부분 단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관계의 단절은 극단적인 외로움, 소외감으로 이어지고 노숙과정에서 '새로운 관계맺기'를 시도하는데 온·오프라인을 통해 또래, 일반 성인들을 만나고 이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범죄의 심각한 가·피해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새롭게 만나게 되는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쉼터, 종교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고 이후 노숙생활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계맺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들의 도움이 잔소리나 구속으로 여겨질 때는 노숙 이전의 가정, 학교에서의 권위적이던 부모, 교사를 떠올리며 시설을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관계는 기관종사자라는 점에서 노숙 초기에 이들을 만나 이후 경로에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아웃리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① 노숙청소년의 일상생활의 특징은 무엇이고 청소년기 발달과 성인기 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노숙청소년의 일상생활은 게임하기, 운동하기 등 일반 청소년의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점이 차이를 보였고 무료한 일상으로 게임에 과몰입하거나 술에 의지하는 경우도 일부 발견되었다. 가정 밖 생활로 특정한 행동이나 문제를 제지하거나 개입하는 사람이 없다보니 게임, 알콜 등에 쉽게 노출되어 중독의 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 특히 이들의 식사 횟수와 내용이 매우 부실하여 현재 질병이나 체중 저하 등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위생에 신경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적극적인 의료, 보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노숙생활을 하면서도 노숙자로 낙인찍히는 것에 두려움, 반감이 크고 이로 인해 쉼터를 통해 지원되는 각종 서비스, 지원에도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들은 미래에 대해 소박한 꿈을 꾸고 있었다. 대부분 좀 더 배워서 안정적인 직장을 얻어 돈을 벌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돈을 벌고 싶은 이유는 집을 구해 독립적으로 살기 위함이 강했는데, 그러한 희망과 현실과의 괴리 때문에 미래에 대해 점점 절망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었다. 이들은 지금 쉼터에서 보고 있는 성인 노숙인의 모습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읽어내면 동시에 이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이들이 이런 하루하루의 삶의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 표 V-69 노숙청소년 관계 관련 심층면접 내용 요약

상위 범주	하위 범주	내용 요약
노숙이전	교우관계	- 왕따를 당하거나 왕따를 한 경험이 있음. - 주로 집안 형편을 이유로 놀림을 받아 싸움을 크게 함. - 대학에서는 경제적 이유, 가정 문제 등으로 대인관계를 넓히지 못함.
대인 관계	나빠지는 교사와의 관계	<ul> <li>교사의 칭찬 등으로 학교생활을 무난히 하는 경우도 있음.</li> <li>교사는 학생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체벌을 가하는 존재임.</li> <li>교사를 폭행한 경우도 있는 등 교사에게도 자신이 골칫거리였음.</li> </ul>
	노숙을 시작하게 된 계기	<ul> <li>소외감, 외로움이 극대화되었을 때</li> <li>함께 가출과 노숙을 할 또래 친구가 있을 때</li> <li>함께 가출을 한 경우에는 노숙 초기 생활에 영향을 미침.</li> </ul>
노숙과	노숙으로 단절된 관계	<ul> <li>이전에 맺어왔던 대부분의 관계가 단절되는 경험을 함.</li> <li>스스로 단절하거나 타의에 의해 단절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전자의 경우는 자신의 처지가 부끄럽기 때문이며, 후자는 친척 등에 의해 내쳐진 경우임.</li> </ul>
포 <del>독</del> 피 사회관계	단절된 관계가 미치는 영향	- 소외감이 더 커지게 되며, 노숙생활을 어렵게 하는 계기가 됨. -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함.
	노숙과 함께 새로 맺어지는 관계	<ul> <li>복지기관이나 종교기관 등의 기관종사자의 실질적인 도움</li> <li>또래집단은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범죄 등에 가담하게 되는 계기가 됨.</li> <li>쉼터에서 만난 성인 노숙인은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li> <li>성인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이들을 이용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줌.</li> <li>게임으로 다른 인간관계를 경험하기도 함.</li> </ul>
	하루 일과	<ul> <li>PC방가서 게임하기, 운동하기, 길 다니며 구경하기, 핸드폰하기 등 일반 청소년들과 여가 시간을 보내는 패턴은 비슷했으나, 주로 길거리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음.</li> </ul>
	먹고 입고 자는 게 가장 큰 문제	<ul> <li>먹는 문제의 해결이 가장 시급했는데, 노숙생활을 하면서 라면이나 물로 끼니를 때우는 등 제대로 먹지 못해 질병을 얻는 경우가 많음.</li> <li>옷을 깨끗하게 입음으로써 노숙인으로 비춰지고 싶지 않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짐을 놓아두거나 빨래할 곳이 마땅치 않아 옷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li> </ul>
사회의식과 일상생활	생활을 제약하는 중독	<ul> <li>주로 게임중독의 문제가 심각했는데 일하러 가지 않을 때, 일해서 약간의 돈이 있을 때 오랫동안 PC방에 머물며 게임을 함.</li> <li>알콜 중독은 게임중독보다는 심하지 않았으나, 돈을 벌어 함께 있던 친구들과 술 마시는데 일당을 써버리는 경우가 있음.</li> </ul>
	소박하지만 암울한 미래	<ul> <li>현재의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 집을 구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 돈을 벌겠다는 욕구가 강했고, 독립적이고 평범한 삶을 소망하고 있었음.</li> <li>그러나 현실에서는 돈이 모이지 않는 것에 대해 좌절하고 있음.</li> <li>미래의 대인관계에 대해서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데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음.</li> </ul>
	사회의식: 낙인찍힌 삶	<ul> <li>노숙자라는 이유로 일터에서 차별을 한다든지, 병원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인식하기도 함.</li> <li>이로 인해 사회적 소외감이 더욱 커지기도 하며, 사회에 대한 자포자기식 불만이 커지기도 함.</li> </ul>

# (5) 지원제도

① 부족했던 지원: "가정에 대한 지원, 노숙 초기 개입"

#### ① 가정폭력에 대한 초기 개입

노숙과 같은 심각한 문제상황을 일정 기간 이상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과거 경험을 회고하는 것은 노숙에 이르기까지의 원인과 계기를 확인하고 이후에 어떤 지원과 개입이 필요한지를 모색하기 위해서이다. 면접대상자들을 통해 파악한 바로는 청소년기에 노숙에 이르는 가장 원인은 빈곤과 가정폭력이었다. 빈곤은 가정 내에 여러 가지 역기능적 문제를 초래하고 아동·청소년기 자녀를 돌보고 보호하는 가정의 기본적인 기능을 상실하여 가족과의 유대가 느슨해져 결국 가정에서 이탈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요인이었다. 폭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마침내 탈출하게 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면접대상자 가운데는 친부, 계모, 형제들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우가 많았는데 어느 누구도 이러한 폭력피해에 대해 상담이나 신고 등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아동학대, 가정폭력에 대한 정부차원의 개입이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피학대아동에 대한 도움과 지원은 미흡하다는 것이 일부 확인되었다. 이들은 심각한 수준의 가정폭력을 경험하면서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학교 교사를 포함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주변인들이 이러한 문제를 왜 인지하지 못하는가? 인지하더라도 개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와 같은 의문과 질문을 토대로 가정폭력, 아동학대 예방 및 개입정책이 개선되어 왔음에도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기출청소년의 경우 노숙생활 초기에 경찰에 의해 처음 발견되어 쉼터 등으로 연계되는 것으로 '선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실상 이 단계에서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경험이 의심될 경우 가정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들이 가정을 탈출하는 것으로 사안이 종결되고 있었다.

#### ① 아웃리치, 노숙 초기 긴급지원

이들이 가장 필요했다고 얘기한 지원은 집을 나온 직후의 도움이었다. 면접대상자들의 경우가출하는 시점에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나온 경우는 전무하였다. 일부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가출시점에 청소년쉼터, 노숙인쉼터등 지원기관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가출 직후 쉼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디에 연락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종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는 경우는 드물었고 이들을 직접 찾아와 도움을 제공하여 받은 경험은 더욱 드물었다. 그동안 가출청소년 대상 아웃리치(out-reach)가 확대되고는 있지만 체감도는 여전히 낮고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면접대상자 중에는 1년 이상 역전에서 노숙을 하는 동안 쉼터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쉼터종사자를 만난 경험이 전혀 없었고 제대 직후 역에서 노숙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다. 노숙과정에서 이들이 접하게 되는 것은 도움과 지원에 앞서 범죄의 손길이었다. 노숙상황에서 채무, 신용불량자로 전략하기 전에 쉼터의 아웃리치 상담원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웃리치 범위를 확대하고 청소년전화 1388과 청소년쉼터에 대한 홍보 강화, 서울시의 노숙인 응급대응콜 1600-9582를 전국적인 망으로 확대하는 등 가출이후 초기 대응과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 ·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상가 계단.. 계단 올라가면 끝에 철문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종이 박스 모아놓고 (어..) 거기서 자고.. 경비가 쫓아내면 "아.. 죄송합니다." 하고 나오고..(07)
- · 그냥 천안역에서 거기서 자고.. 거기서 밥 주는 거 먹고.. 한 1년.. 1~2년 정도.. 1년 정도 살았을 거예요.. 아마..(1년.. 쉼터 같은 데는 안 들어가셨고?) 네.. 그런 데는 몰랐어요.. 그때에.. (천안에도 쉼터 있는데..) 아.. 네.. 그런데 그런 데는 몰라가지고..(1년 정도 주로 역에서만 사셨어요?) 네..(02)

청소년들은 며칠 동안 노숙을 하다가 간혹 일당 벌이 일을 하게 되어 돈이 생기면 하루 끼니를 해결하거나, 잠 잘 곳을 찾기 위해 pc방을 찾는 경우도 많았다. 돈이 떨어지면 다시 노숙을 하고 돈이 생기면 pc방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반복하면서 이 생활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원망, 한탄이 심해지면서 자살충동과 시도가 반복되는 과정에서도 쉼터 아웃리치 상담원의 도움과 지원은 받지 못하였다.

· 집이 없다는 게 힘들어요.. (집이?) 그리고 가족이 없다는 게 힘든 거죠.. (어..) 왜냐하면..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 학교를 가거나 (그렇지..) 아니면 집이 있으니깐 집에 있으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니깐 도움을 받는다거나 그런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대하자마자.. 그냥 빈털터리잖아요.. (아무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어..) 그냥 깜깜하더라구요...(중략)...(어휴..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도?) 없었죠..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진짜?) 아무도 없었어요... (중략)...그때는 뭐.. 그저.. 말 그대로 자살하고 싶은 생각도 없잖아 있었는데... (어.. 에휴..) 쉽게 끊어지는 건 아니더라구요. (어..) 이게 올라는 가봤는데.. 어후.. 무섭더라구요.. (다리? 아니면 옥상?) 옥상.. (어..) 아.. 죽는 것도 쉬운 게 아니구나 그 생각 했었죠..(03)

#### © 시설 입소자의 자립지원

면접대상자 20명 가운데 아동·청소년기를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한 경우가 5명으로 1/4에 달하였다. 또한 이들은 노숙과정에서 청소년쉼터나 노숙인쉼터를 상당 기간 동안 이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이 가운데 일부는 비행, 범죄에 연루되어 소년원, 교도소 생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 뿐 아니라 쉼터는 가정 밖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2차 비행과 범죄로 이행하는 경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면접대상자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교도소, 자립생활관, 노숙인쉼터를 모두 거친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정도로 아동기부터 생활은 안정되지 않았다. 시설에서는 구타, 폭행이 싫어 '탈출'했고 지인의 집(이는 형), pc방, 사우나, 그리고 청소년쉼터를 전전하면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절도로 교도소에 들어갔다 퇴소 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자립생활관을 한 달 이용하고 퇴소하여 이 후 노숙인쉼터에서 생활하다 얼마 전부터 여인숙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여러 부처의 생활시설을 두루 거치면서도 주거가 불안정한 생활은 계속되었고 어떤 시설의 지원도 안정적인 거처를 제공하는데 충분하지 않았다.

· (그게(자립생활관) 제일 도움이 되었다는 거죠?) 안 그랬으면 길바닥에 또 돌아다닐 그런 형편 이었으니..(08)

시설을 퇴소하고 거리에서 생활하고 다시 시설에 입소하고 퇴소하여 거리생활을 반복하는 회전문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시설에서의 지원이 일시적이고 단기적이기 때문이며 준비없이 퇴소하는데 대한 제재장치가 충분히 가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시설에 머물 때는 심신의 안정과 자립에 필요한 생활기술들을 익히고, 퇴소를 원할 경우에는 주거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없을 경우 출구를 마련한 후 퇴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쉼터의 경우 가출청소년에 대한 숙식제공, 심리·정서지원, 자립지원, 주거지원, 퇴소 후 사례관리 등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인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② 필요한 지원: "거처, 일자리, 보호"
- ① 구직지원

면접대상자 대다수가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구직지원을 꼽았고, 좋은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는 욕구가 매우 컸다. 이들은 가출 이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근로 경험이 있었는데, 근로를 통해 생계유지가 되지 않다보니 명의 양도 등으로 채무를 지게 되거나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통장을 만들 수도 없어 저축은 물론 월 급여를 받는 직종에는 진입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가출청소년 대다수가 저학력, 비숙련 상태로 이른바 좋은 직종에서 일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열악하고 취약한 상태로 내몰리기 쉽다는 점에서 가출청소년에게 보다 친화적인 '공공근로' 일자리, 직종을 발굴하고 적극 연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들은 가출 이후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한다는 상당한 의지를 가졌고 실제로 여러 직종에서 일한 경험이 있음에도 이 과정에서 착취와 피해경험이 누적되면서 '일을 해도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여 범죄의 가 피해로 이행하는 양상을 보였다. 현행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보호정책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고용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과함께 가정 밖 청소년의 생계 자립지원을 위한 일자리 지원이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① 홈리스 청년 쉼터

면접대상자 가운데 노숙인쉼터를 이용한 경우 일부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많은 청소년쉼터에 비해 40, 50대 장년층 이상의 연령대가 이용하는 노숙인쉼터가 오히려 이용하기에 부담이 없다고 하였다. 반면 일부는 대안이 없어 노숙인쉼터를 이용하고 있지만 자신들 또래인 20대와 30대까지 이용할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여긴 보통 나이 드신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솔직히 오기가 부담 되요. (그렇죠..) 그러니깐 따로 중간층이나 그니깐 청소년, 요새 10대 애들도 이런 시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2~30대는 이런 시설에 오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2~30대.. 좀.. 그쪽으로 그랬으면 좋겠는데..(11)

면접대상자들 가운데 청소년쉼터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 쉼터의 규칙 규율에 압박감을 느꼈다는 답변이 많았는데 퇴소 시 별다른 제재나 다른 시설 연계지원을 받지는 못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무단 퇴소한 경우가 많지만 쉼터에서 퇴소 한 순간 불안정한 주거와 생계 문제가 겹치면서 위기상황이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쉼터는 주거에 대한 별다른 대안이 없는 청소년의 퇴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그러니까 솔직히 집에 있었을 때는... 솔직히 막 공부 같은 것도 좀 많이 하고 PC방, 노래방, 축구, 농구 이러고 막 놀았는데, 집 나오니까 술, 담배, 뭐 모텔 갈 때도 있고, PC방에서 밤 샐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아예 룸 잡아가지고 술 마실 때도 있고, 오토바이 탈 때도 있고 막 그러니까. 옛날이랑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이 들긴 하죠...(중략)...단기쉼터는 그냥 압박하는 거 그런 게... 답답한 것 때문에 싫었고, 일시쉼터는 괜한 애들이 와가지고 막 시비 걸고 그래서 싸우다보면 쌤들에게 욕까지는 아닌데 꾸중 같은 거? 그렇게 받고, 그게 싫고, 뭐 방 잡으면 애들이 그냥 막 자기도 재워달라는 식으로 막 계속 부탁하고, 또 재워주다 보면 걔네 밥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또 제 사비에서 그거 해가지고 애들 밥 사줘야 되고, 그런 게 막 싫고 그랬었어요(19)

#### © 보호지원

면접대상자 가운데 경계선 지적기능 수준을 보이는 대상자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렸는데 별다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출 이후 노숙을 하기에 이르렀다. 의사소통, 일상생활 전반에서 주변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정도이기 때문에 자립을 위해서는 사실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준한 곳에서 능력에 맞는 수준의 일을 하고 보호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예방과 청소년 가출 예방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가족지원이 예방적 차원에서 우선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경계선 지적기능 수준은 법정 장애인 등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방치될 가능성이 크고, 가출한 경우 장기보호가 필요한 만큼 쉼터뿐 아니라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에서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 (혹시 동생이 많이 때려요?) 네.. (ㅇㅇ씨를? 때려요. 자꾸? 왜? 뭐로 때려요?) 삽.. (응?) 삽...(14)

이와 함께 면접대상자 가운데 가출상태에서 채무로 인해 고통이 배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노숙인쉼터, 청소년쉼터에서 상담을 받아도 법률지원을 포함하여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향후 쉼터에서의 초기 상담 시 이 부분에 대한 상황을 반드시확인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휴대전화가 없을 경우 구직과정에서 많은 불이익과 불편을 겪고 시간제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신용불량이거나 통신요금을 연체한 경우에도 '선불폰'은 개통할 수는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면접대상자 상당수가 고위기 상황에 오랜 기간 노출됨으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불안, 우울 등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충분한 심리상담과 정서행동치료는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② 문화지원

쉼터에서 생활하거나 퇴소 이후 주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무료함을 달래기위해 주로 게임, 인터넷, 술과 담배, 그리고 동년배들과의 어울림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당장 주거와 생계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은 암담한 현실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심심함을 달래기위해, 괴로운 상황을 잊기위해 유희(遊戲)를 찾았지만 그 형태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쉼터에서도 원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안적 형태의 놀이, 활동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적절한 공간과 자원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 · 저는 그냥 모바일 게임만.. 네.. (하루에 게임 얼마정도 해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네.. (음...) 할 게 없으니깐..(13)
- ③ 개선되어야 할 지원: "탈노숙까지 연속적인 지원 필요"

# ① 주거지원

가출청소년은 극단적인 추위와 배고픔을 이겨내기 위해 위기상황에서 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행 청소년쉼터, 노숙인쉼터는 입소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어 사실상 장기적인 주거 대안이라 볼 수 없다. 쉼터를 이용한 청소년 중 일부는 규칙, 규율이 싫어 무단 퇴소하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가 많아 다시 위기상황에서 노출되고 있어 쉼터 입·퇴소가 탈노숙을 위한 주거지원의 출발점으로 작용할 필요가 있다.

쉼터 이용은 일시적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구직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주거가 해결될 경우 일자리 선택의 폭도 넓어질 수밖에 없는데, 노숙청소년은 돈을 벌면 소진할 때까지 pc방에서 생활하며 근로를 하지 않았는데 숙소가 정해지면서부터 일도 더 자주 나가게되고 일부 저축도 가능해진다. 자립에 있어 주거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클 수밖에 없는데 경제활동이 여의치 않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 지금은 어쩔 때에는 오히려 가끔 행복하단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하..) 왜냐면.. 옛날에.. 옛날이 아니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밖에서 노숙하고 밥 한 끼 못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일이라도 있으니 감사한 거죠.. 버니깐.. 조그만 돈 생겨도 감사하게 되더라구요.. 기분 좋아

지고.. (으음..) 그러니깐 오히려 지금은 웃을 때가 더 많아요.. (음..) 진짜로.. 올해 웃음기 있을 때가 많은 거 같아요.. (어..) 힘들어도.. 힘든 게 똑같지만.. 그래도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04)

#### ① 다양한 필요에 대한 대응

청소년들은 가출 이후 숙식 뿐 아니라 구직, 채무, 폭력 가·피해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다면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였다. 쉼터, 아웃리치 상담원이 이들을 만나는 것은 이러한 필요에 대한 지원의 기회라는 점에서 문제와 욕구를 확인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정과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시설에서 직접 제공하지 못하는 지원도 다른 분야의 기관이나 조직들과 협력하여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쉼터 이용 경험자 중 일부는 쉼터에서 얻을 수 있는 지원이 단편적이고 제한적이라고 하였다. 연계가 필요한 부분의 경우 '어디를 가봐라', '이것을 해봐라' 이야기해 주는 정도라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상당수는 쉼터를 통해 다양한 도움과 지원을 받아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포괄적이고 다양한 조언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 여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그 안에 설치된 고용지원센터) 담당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었죠. 처음에 왔을 때 상담을 했었으니깐.. (어떤 것을 주로 도와주셨는데요?) 어.. 이젠.. 뭐.. 취업 알 선 같은 거.. 그런 쪽에 좀 많이 알아봐 주시고.. 아르바이트를 한다 하니깐.. 아르바이트 자리도 좀 도와주시고..(12)
- · (아무도 그런 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말은 설명을 하는데 행동적으로 보여준 사람은 없었죠. 지금까지... 어딜 끌고 나가서 어떻게 좀 넌 정신 좀 차려야겠다. 그런 사람이 좀 필요, 필요했는데. 저한테 그런 사람이 아직까지는 없었어요.(03)

면접대상자 가운데 일부는 쉼터, 노숙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였고 이로 인해 쉼터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노숙인쉼터에서 제공해 주는 서비스 자체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기보다 노숙인, 노숙인쉼터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으로 인해 지원의 취지와 달리 수혜자에게 제대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사회의 편견과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인식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과 장애요소에 대한 확인과 보완 역시 병행될 필요가 있다.

· (노숙인이라는 딱지가..) 그게 마음이 좀 뭔가 계속 걸려요.. (많이 걸리죠.. 이거 때문에 혹시 직 장에서 차별받거나 이런 경우 있어요?) 예전에 한 번 있어요. (어떤 거?) 21살 때... 여기 있다가 알바를 구해... 알바를 면접 갔는데.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때... 쉼터에서 지낸다고... 쉼터 얘들 안 받는다고.... 그때.. 좀 그랬거든요.. (아 그랬어요?) 쉼터 얘들을 왜 안 받느냐고 물어보니깐.. 예전에 한 번 받으니깐 사고.. 사고 친 것도 있고 그래서.(01)

#### ② 치유, 회복 기다려주기

쉼터에 입소한 이후 약 3~4개월 동안 특별한 일과없이 생활하더라도 이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다른 일을 찾는 등 뭔가 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이게 된다. 가출청소년은 가출, 노숙기간 동안 몸과 마음이 상당히 피폐해져 치유와 회복에 사실상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들을 기다려주는 시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뭔가를 독촉하거나 섣불리 성과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일 수 있으므로 쉼터 입소기간은 지원과 지지를 제공하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시기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 · 근데 여기서도 생활을 하다보니깐 사람이 좀 나태해지더라구요. 재워 주고 밥도 주고 그러니깐 사람이 좀 나태해지다보니깐 한 3~4개월 이렇게 지냈는데.. 그 후에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아르바이트도 다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르바이트 구해 갖고 한 달 지내다가.. 나와 가지고 방 잡아가지고 지금 있습니다.(12)
- · "너 진짜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진짜 할 수 있어?" 똑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너 진짜 이거 하다가 포기하면 안 돼." 막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솔직히 사람은 자기가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했어요. 그럼 "열심히 할 수 있어. 너니까. 넌 이거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칭찬하면 오히려 더 많이 버틸 수 있단 말이에요.(18)

면접대상자 상당수가 가정 내 폭력을 경험하였고 가출 이후, 그리고 쉼터에 입소한 이후에도 폭력에 노출되는 정도가 빈번하였다. 쉼터에서 치유와 회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폭력에의 노출을 최대한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시설 내 개인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쉼터를 거점으로 입·퇴소를 반복하면서 생활하는 가출청소년의 문화 자체에 대한 제재와 개입보다는 쉼터를 통해 가출, 노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보호의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 · 쉼터도 힘들고. 집도 힘들고.. 밖에도 힘든 거 같아요. (집, 거리, 쉼터 모두가 힘들다.) 다 힘들어 요...(중략)... 쉼터에 있을 때에도 제가 공부하고 있거든요. (네.) 공부하고 있는데 방해도 많이 받고. 놀림도 많이 받고. 공부한다고. 거의 놀림 받고.(20)
- · 그냥 막연하게 '친구 나올 때 까지 쉼터 돌아다니면서 있어야지.' 이것보단 돈을 벌어놓고 친구들을 기다리면서 친구들이 나오면 "아, 잘 나왔다." 안에 있는 동안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니까 애들 치킨이 피자 같은 거 사주고, 같이 술 먹고, "거기 심심했지?" 하면서 노래방이나 PC방 데려가고...(19)

특히 면접대상자 가운데 시설, 소년원 등에서 폭력과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쉼터 이용을 꺼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에 대한 치유와 회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포괄적, 지속적, 전문적 지원과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 가끔씩 보고 싶은데..또 막상 만나면은 또.. 그게 또.. 나도 모르게 그.. 이상한 길로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이 사람을 괜히 왜 만났을까하면서 또.. 그냥 내자신을 원망하는 거죠.(09)
- · 거기는 이제 처벌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어 누구랑 싸웠어? (어..) 얘를 심하게 때렸어.. (어..) 죽을 만큼 팼어.. (어..) 이걸 처벌해야 하는데 근데 처벌이 안 돼.. 그냥 그 안에서 매로 끝내.. 이걸 그냥 그걸 무마시켜.. (아..) 개네들이.. 그냥 무마시키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 이 윗대가리가.. 원장이... 지금 생각하면 원장도..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교도소도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 (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법인데... 소년원은 안 그래.. 거기는 힘있는 애들이 장악을 해.. 그리고 선생들도 그게 편해.. 거기서 좀 몸 좀 듬직하고 싸움도 잘하고.. 막 좀 그런 애들을 키워요.. 걔들을 반장을 시켜.. 그럼 걔들이 질서를 잡아.. (쯧.. 쯧..) 그러면 소년원은 그렇게 돌아가요.. 그거는 바뀔 수가 없어.. 안바.. 바뀔 수가 없어..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고 통제가 안되기 때문에 그 직원들도 한계가 있고.. (어..) 어떻게 그거를 이해를.. 처음에 못했는데..(05)

#### ②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적 개입과 지원

면접대상자들은 모두 저소득, 빈곤가정 출신이었다. 아동기 때부터 부모의 보호와 지도감독보다는 착취를 경험한 경우가 많았다. 가출 이후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비를 수령하고, 자녀가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입소하면 수급비 액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시설 입소 동의를하지 않는 등 친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최저생계보장 뿐 아니라 자녀양육과 가족기능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확대하고 아동, 청소년의인권,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 · 네.. 그래 가지고 저희 집이 그거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네.. 네..) 원래 돈이 얼마 안됐는데.. 아버지가 술도 많이 드시고.. 그거 뭐지.. 어머니도 병도 있으시고.. 그래 동사무소에 진단서를 떼어가니깐 돈이 좀 늘었어요.. 좀 많이.. 한 80만원 가량이긴 한데.. 그렇게 나와 버리니깐.. 아버지도 그만둬 버리신 거죠.. (아..) 그니깐.. 이젠 돈도 들어오겠다 뭐 그만둬 버리시고 술만 먹고.. 그러니깐 그게 더 몸에 동화된다고 해야 하나? (네..) 동화되어버리니깐 아예 가지도 않고.. 어머니는 스트레스를 자꾸 받고..(12)
- · 제가 그룹홈을 가게 되면은 수급비가 안 나온다고.. (아빠가?) 네.. (아..) 저는 가고 싶은데.. 그 룹홈..(20)

#### ④ 연구질문과 소결

① 지원서비스나 제도에서 도움이 되는 것과 도움이 되지 않은 무엇인가?

면접대상자들을 통해 가정폭력 예방 및 개입정책의 지원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가출 및 노숙청소년을 위한 아웃리치가 매우 부족한 것을 확인하였다. 쉼터 개소수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홍보가 부족하고 쉼터가 재가출 예방과 자립에 기여하는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쉼터는 가출, 노숙청소년의 보호지원에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주거취약계층 청소년의 주거문제 해결책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의 탈노숙, 탈위기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쉼터에서 숙식을 지원하고 있지만 자립지원은 충분하지 않고, 필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지원, 채무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부족한 상황이다.

① 도입하거나 개선해야 할 지원은 무엇이고, 그 서비스 제공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취약계층 가구 단위 가족상담, 가족기능회복 등 양육지원과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이 확대되어야 한다. 즉 가출청소년정책은 가출을 예방하기보다 가출이 발생하는 가정환경에 대한 개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가정폭력에 노출되었을 때 가출을 감행해서라도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위기개입, 피해자 보호, 후속 조치 등의 절차를 개선, 강화하여야 가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집을 나오게 된 경우 이를 조기에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전화 헬프콜 1388, 학교 대상 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가출 위기 시 쉼터를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쉼터에 입소했다면 기간을 채우더라도 주거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섣부른 퇴소는 위기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쉼터를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거 고용, 재정, 일상생활기술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데,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형태보다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참여를 권유하는 형태가 적절하다. 규율, 규칙을 강조하기보다는 방법론 면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한데, 참여를 강요하기보다 필요한 욕구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정 인력배치와 지역 내 위기청소년 관련 인프라 간의 연계 개입이 요구된다.

# 표 V-70 노숙청소년 지원정책 관련 심층면접 내용 요약

상위 범주	하위 범주	내용 요약
		- 가정폭력은 집을 나오는 중요한 계기 -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음.
부족 했던 지원	아웃리치,	<ul> <li>집을 나오면서 바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는 없음.</li> <li>계단, 공원 화장실, 빈집 등 눈에 잘 띠지 않는 곳을 찾음.</li> <li>아웃리치의 도달은 어렵고 이웃과 경비원 등이 도움을 줄 수 있음.</li> <li>장기간 노숙 하면서도 지원 정보가 없어서 범죄에 이용당하기도 함.</li> <li>집이 없고 희망이 없는 생활이 지속되면 심리적 문제 발생할 수 있음.</li> <li>노숙할 처지에 있는 이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반드시 잠자리를 제공해야 하고, 출구(대안) 없이 퇴소시켜서는 안 됨.</li> </ul>
		<ul> <li>시설의 안정적인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 부족</li> <li>시설과 불안정한 거처를 반복해서 이용하는 현상 초래</li> <li>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능력과 조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은 시설 본연의 임무가되어야 함.</li> </ul>
필요한	구직지원	<ul> <li>채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없었음.</li> <li>재정 관련 지원은 파산이나 면책을 넘어서 채무 조정과 상환, 재정 관리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내용이 되어야 함.</li> <li>휴대폰 요금 연체에 대한 대응과 선불폰 등의 지원 필요</li> <li>심리적인 지지의 필요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음.</li> <li>자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미성년자를 위한 소득원 개발 필요</li> </ul>
지원		<ul> <li>청소년쉼터는 못 들어가고, 노숙인시설은 이용자 구성 등이 거북함.</li> <li>일자리 소개, 교육훈련 등에서 청년을 위한 지원은 충분하지 않음.</li> <li>거처와 자립능력 향상 지원이 결합된 지원주택 포이어 도입 필요</li> <li>청소년을 위한 그룹홈 확대 필요</li> </ul>
	보호지원	- 보호고용, 활동보조 등을 결합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해야 할 필요도 있음.
	문화지원	- 대안적 문화와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와 개입 필요
	주거지원	- 거처의 제공은 생활의 안정과 고용에도 긍정적인 도움이 됨. - 자기 집은 더 중요한 자립능력 향상의 계기가 됨.
개선	다양한 필요에 대한 대응	<ul> <li>종합적인 사정과 서비스 연계를 통한 자립지원 필요</li> <li>각자의 독특한 상황과 개개인의 판단과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는 접근</li> <li>편견과 차별의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 방법 개발</li> </ul>
되어야 할 지원	치유, 회복 기다려주기	<ul><li>지지적 자립지원을 위한 서비스 강화</li><li>사생활이 보호되고 대안적 커뮤니티 제공을 위한 여건 조성</li><li>문제를 심화시키는 환경의 일부가 되지 않도록 함.</li></ul>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적 개입과 지원	<ul> <li>가족정책 강화를 통하여 개별적인 여건을 고려한 지원 수단 강구</li> <li>착취적 관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 수단 확보</li> <li>국가가 양육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 마련</li> </ul>

# 3. 청소년쉼터 보호지원 여건 분석65)

#### 1) 조사개요

### (1) 조사대상

청소년쉼터의 운영현황과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여건 및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청소년쉼터 전수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쉼터의 현황과 여건 파악이 목적이므로 응답은 각 쉼터별로 대표자 1인(상근소장 혹은 선임상담원)이 하도록 하고, 법인에서 여러 개의 쉼터를 운영할 경우 각각 응답하도록 하였다.

#### (2) 조사지 개발절차 및 주요 내용

조사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청소년쉼터 관련 선행연구와 2013년 청소년쉼터 평가자료를 검토한 후 정책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조사영역과 주요내용을 구성하였다. 이후 연구자가 개발한 조사문 항에 대하여 전국 청소년쉼터 소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단의 두 차례에 걸친 검토와 예비조사를 거쳐 최종조사지를 확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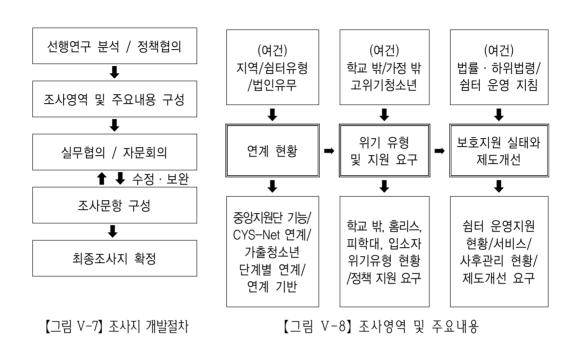
조사영역은 크게 세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청소년쉼터는 고위기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곳이므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지역 특성과 쉼터 유형에 따라 연계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중앙지원기관(hub) 설치 필요성과 주요 기능, CYS-Net과의 상호협력 정도, 가출청소년의 발견(발굴), 보호(입소, 이용), 퇴소(연계) 단계별 관계기관과의 연계정도에 대한 인식 문항을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가출청소년의 위기 유형과 지원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쉼터 입소자 및 이용자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 비율, 노숙경험자 비율, 가정복귀 가능 비율,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 경험 등 위기 청소년의 규모를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쉼터의 상황과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를 파악하고자

⁶⁵⁾ 이 부분은 김지연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함.

하였다. 이에 청소년쉼터에 대한 운영지원 현황과 서비스 유형, 그리고 청소년쉼터 유형 구분에 대한 적절성 문항 등을 포함하였다. 조사지 개발절차와 조사영역 및 주요내용을 도식화 한 것이 그림 V-7, 그림 V-8 이다.



#### (3)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연구진이 이메일 조사와 전화조사 방식을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한국청소년쉼터협의 회로부터 제공받은 전국 청소년쉼터 현황을 토대로 이메일 조사를 실시하고, 회수된 조사지 가운데 재확인이 필요한 문항이 있을 경우 전화조사를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는 2014년 6월 23부터 7월 27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전수가 응답하였고, 분석에도 모두 투입되었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연구목적에 따라 기술통계분석,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 2) 응답자 및 청소년쉼터 일반 현황

먼저 응답자의 일반 현황을 보면, 여성이 74명(67.3%)으로 남성에 비해 2배 정도 많았다. 시설장(40%)의 경우 타 시설의 장을 겸직하거나 비상근인 경우가 있어 선임실무자의 응답률(60%)

이 더 높았고60, 연령대는 40대(37.3%), 30대(32.7%), 50대 이상(16.4%), 20대(13.6%) 순이었다. 현 시설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에서 3년 미만(34.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청소년쉼터 총 근무기간은 5년 이상(45.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만 청소년쉼터 전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소장 혹은 선임실무자도 8.2%에 달하였다(표 V-71).

표 V-71 응답자의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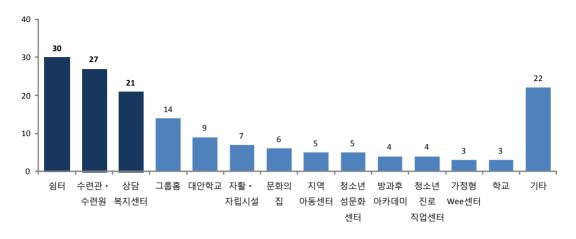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110	100,0	
서변	여성	74	67.3	
성별	남성	36	32.7	
직급	시설장	44	40.0	
식답	선임실무자	66	60.0	
	20대	15	13.6	
CH크디	30대	36	32.7	
연령대	40대	41	37.3	
	50대 이상	18	16.4	
	1년 미만	15	13.6	
현 쉼터	1년~3년 미만	38	34.5	
근무기간	3년~5년 미만	21	19.1	
	5년 이상	36	32.7	
	1년 미만	9	8.2	
청소년쉼터	1년~3년 미만	28	25.5	
근무기간	3년∼5년 미만	23	20.9	
	5년 이상	50	45.5	

다음으로 청소년쉼터의 기본 현황을 보면 지역별로는 경기도(25개), 시설 소유 현황은 전·월세(38.2%)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시설이 '자가'인 경우도 4개(3.6%)에 달하였다. 법인시설인 경우가 10개 중 8개(88.1%)로 사단법인(40%), 재단법인(33.6%), 사회복지법인(14.5%) 순이었다. 법인시설 가운데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는 62.7%에 달하였는데, 타 쉼터(30개), 수련관·수련원(27개), 기타(22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21개) 등으로 나타났다(그림 V-9 참조). 같은 조사에서 종사자는 총 606명으로 이 가운데 정규직은 461명, 비정규직은 145명이며, 조사시점 현재 정규직 종사자가 없는 곳은 2곳이었다(표 V-72).

^{66) 2013}년 청소년쉼터 평가 자료에 따르면 평가 대상 청소년쉼터(n=92)에 상근하는 소장 비율은 일시 46%, 단기 63%, 중장기 67%로 비상근에 비해 상근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여성가족부, 2013b, pp.11~14).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에 따르면 청소년쉼터 소장은 상근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재정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 시설장과 보호·상담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2 참조).

표 V-72

	구분	사례수(개소)	비율(%)
	체	110	100.0
	서울	11	10.0
	부산	6	5.5
	대구	5	4.5
	인천	8	7.3
	광주	4	3.6
	대전	6	5.5
	울산	4	3.6
-104	경기	25	22.7
지역	강원	5	4.5
	충북	5	4.5
	충남	6	5.5
	 전북	5	4.5
	전남	4	3.6
	경북	6	5.5
	경남	5	4.5
	제주	5	4.5
	자가	4	3.6
시설	전 · 월세	42	38.2
시크 소유	법인 소유	29	26.4
고ㅠ 현황	지자체 대여	23	20.9
20	기타	12	10.9
	지자체직영	2	1.8
		16	14.5
법인	사회복지법인		
유무	재단법인	37	33.6
	사단법인	44	40.0
	기타	11	10.0
법인 내	운영 -100명	69	62.7
청소년시설 운영	미운영	41	37.3
	없음	2	1.8
종사자 현황	1~3명	41	37.3
(정규직)	4~6명	56	50.9
(011 -1/	7명 이상	11	10.0
	합계	461	100.0
	없음	53	48.2
종사자 현황	1~3명	47	42.7
	4~6명	8	7.3
(비정규직)	7명 이상	2	1.8
	합계	145	100.0



【그림 V-9】법인시설 운영 청소년시설 현황(개소)

# 3) 분석결과

# (1) 예산구조 및 현황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예산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상보조(matching fund, 정책정률보조)로 지원된다. 2014년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예산(국비)은 약 87억 원(국비)이며 지자체의 보조를 제외할 경우 쉼터 한 개소 당 연간 약 8천만 원 수준의 국비가 지원되고 있다. 청소년쉼터의 세입현황을 살펴본 결과 연간 총 예산 평균은 약 2억 원으로(편차는 약 1억 원),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예산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에 불과하였다. 시설유형별로는 종사자 배치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장기쉼터가 예산규모가 가장작고, 법인의 특성에 따라 예산규모에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표 V-73).

(단위 : 천원)

		쉼터수(개소)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전체	110	43,053	689,500	203,694	98,988		
	서울	11	133,640	689,500	301,907	211,269		
	부산	6	60,000	270,863	187,428	72,998		
	대구	5	114,362	219,937	163,756	49,221		
	인천	8	178,771	349,112	251,479	62,750		
	광주	4	124,682	252,663	185,328	52,607		
	대전	6	167,177	252,250	200,173	31,050		
	울산	4	114,145	212,459	178,040	44,705		
TICH	경기	25	169,591	520,899	259,139	70,702		
지역	강원	5	114,680	200,632	155,014	33,356		
	충북	5	122,900	219,297	169,366	40,096		
	충남	6	99,800	165,000	140,610	27,058		
	전북	5	59,778	186,440	131,384	46,383		
	전남	4	96,392	182,982	147,492	42,080		
	경북	6	104,788	235,988	152,567	47,515		
	경남	5	108,100	186,481	149,018	34,348		
	제주	5	43,053	226,497	124,842	65,749		
	일시(이동형)	6	203,298	252,663	224,152	18,401		
시설	일시(고정형)	18	59,778	339,068	203,158	86,140		
유형별	단기	50	43,053	689,500	235,042	112,653		
	중장기	36	60,000	520,899	157,012	73,342		
	지자체직영	2	104,788	178,771	141,780	52,314		
шоі	사회복지법인	16	43,053	520,899	191,104	112,040		
법인 유무	재단법인	37	114,362	689,500	218,418	107,261		
$\pi \tau$	사단법인	44	59,778	681,550	206,464	97,049		
	기타	11	60,000	252,663	172,655	53,564		

국비 및 광역시·도비 (세입)현황을 보면 정률보조방식으로 인해 총 예산 중 국비의 비중은 평균 37.72%, 광역시·도비는 평균 30.57% 수준으로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서울, 부산, 경기, 충남은 국비 의존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경우 광역시·도비 예산 비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등 편차를 보였다(표 V-74).

표 V-74 청소년쉼터 국비 및 광역시·도비 현황(세입)

		쉼터수		국년	네(%, 천원	)		광역시	·도비(% _,	, 천원)
		(개소)	최소	최대	평균	예산(천원)	최소	최대	평균	예산(천원)
	전체	110	0	100	37.72	71,013	0	100	30.57	66,274
	서울	11	0	72	32.32	78,602	0	100	38.94	157,046
	부산	6	0	50	35.05	74,519	49	100	61.63	104,928
	대구	5	28	50	43.06	68,336	28	50	43.06	68,336
	인천	8	28	50	38.41	97,401	50	70	58.14	144,459
	광주	4	45	50	48.35	89,592	45	50	48.35	89,592
	대전	6	32	50	45.92	92,267	49	55	51.42	103,022
	울산	4	28	48	40.50	70,612	19	48	28.93	52,567
지	경기	25	0	48	23.85	60,963	0	25	12.18	31,313
역	강원	5	42	100	58.30	90,477	0	50	18.30	22,628
	충북	5	44	50	48.04	81,869	13	50	28.10	45,065
	충남	6	0	49	15.67	20,525	0	50	30.27	43,682
	전북	5	40	50	45.65	60,914	0	15	10.70	14,572
	전남	4	45	50	48.75	72,126	23	25	24.50	36,225
	경북	6	37	100	53.80	76,609	0	63	20.40	39,498
	경남	5	45	50	47.42	70,682	0	50	28.32	43,097
	제주	5	38	50	45.04	53,852	0	49	26.48	39,071

자치구 및 법인전입금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자치구 예산은 전체 예산 규모의 약 23.96% 수준을 차지하였는데, 부산, 인천, 광주, 대전의 경우 자치구 차원의 예산지원이 없었고, 경기, 충남, 전북, 전남은 평균(23.96%)을 상회하였다. 전체 예산에서 법인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12%(8,991천원) 수준이었는데 대구(13.76%)가 가장 높았다(표 V-75). 요약하면 서울, 부산, 인천, 대전지역 쉼터의 경우 전체 예산에서 광역사·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 광주는 국비와 광역시·도비 비율이 동일하였다. 반면 경기와 충남은 자치구 예산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 외 지역은 국비 의존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쉼터 운영비 재원 구조에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또한 쉼터의 특성상 법인여부에 관계없이 후원금과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었다.

표 V-75 청소년쉼터 자치구 및 법인전입금 현황(세입)

		쉼터수		자치	: 구(%, 천 [:]	원)		법인	전입금(%,	천원)
		(개소)	최소	최대	평균	예산(천원)	최소	최대	평균	예산(천원)
	전체	110	0	97	23.96	48,837	0	44	4.12	8,991
	서울	11	0	75	21.51	54,258	0	14	2.13	3,838
	부산	6	0	0	0.00	0	0	6	1.73	3,919
	대구	5	0	1	0.12	264	0	44	13.76	26,820
	인천	8	0	0	0.00	0	0	10	3.45	9,619
	광주	4	0	0	0.00	0	0	10	2.50	4,696
	대전	6	0	0	0.00	0	0	2	0.53	957
	울산	4	0	28	13.48	21,711	0	8	2.33	2,888
지	경기	25	21	97	50.93	125,996	0	36	6.93	20,262
역	강원	5	0	50	20.00	37,337	0	4	0.80	1,076
	충북	5	0	35	19.74	36,533	0	12	2.40	3,251
	충남	6	45	52	49.27	69,081	0	10	4.33	6,813
	전북	5	25	50	32.97	43,362	0	20	9.47	10,546
	전남	4	23	25	24.50	36,225	0	3	0.75	972
	경북	6	0	43	20.33	28,754	0	3	1.35	1,834
	경남	5	0	49	19.10	27,584	0	9	3.88	5,981
	제주	5	0	50	19.40	16,240	0	3	1.44	1,907

#### (2) 인력배치 현황

청소년쉼터 종사자 배치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다. 일시는 6인, 단기 및 중장기쉼터는 보호 인원에 따라 4~9인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쉼터 유형별 종사자(정규직) 현원을 파악한 결과 이동형 일시는 평균 5.3명(편차 2명), 고정형 일시와 단기는 4.6명(편차 1.7명), 중장기는 3.3명(편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V-76). 종사자의 수는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 법에서 명시한 종사자 배치기준을 준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쉼터수(개소)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전체	110	0	10	4.19	1.74
일시(이동형)	6	2	8	5.33	2.07
일시(고정형)	18	0	7	4.56	1.79
단기	50	0	10	4.60	1.71
중장기	36	1	9	3.25	1.30

^{*} 주: 정규직 기준임.

쉼터별 종사자의 자격증 소지 현황을 확인한 결과(중복응답) 사회복지사 2·3급 소지자가 평균 2.8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사 1급(1.34명), 청소년지도사 2·3급(1.09명) 순이었다. 반면 청소년상담사 배치는 시설 당 평균 1명에도 미치지 않았다(표 V-77).

#### 종사자 자격증 소지 현황(중복응답) 丑 V-77

(단위 : 명)

	최소값	최대값	시설별 평균	표준편차	총합계		
사회복지사 1급		6	1.34	1.44	147		
사회복지사 2급/3급		7	2.85	1.68	313		
청소년상담사 1급		3	0.09	0.42	10		
청소년상담사 2급/3급	0	3	0.36	0.62	40		
청소년지도사 1급	0	3	0.19	0.52	21		
청소년지도사 2급/3급		7	1.09	1.19	120		
교사		5	0.69	0.99	76		
기타		7	0.37	0.99	41		
Я							

# (3) 청소년쉼터 입소자 이용자 현황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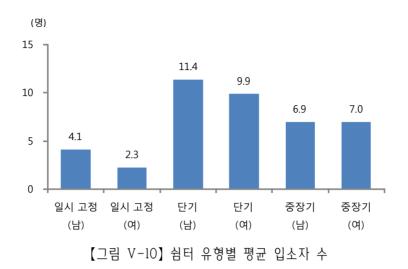
이동형 일시쉼터의 경우 하루 평균 이용자는 평균 약 564명(편차 약 395명)으로 조사시점 현재 이용자는 3,387명에 달하였다. 고정형 일시쉼터의 입소자는 남자청소년은 하루 평균 4명, 여자청소년은 하루 평균 2명이 입소하였고, 이용자는 하루 평균 102명에 달하였다. 남자 단기쉼터의 하루 평균 입소자는 11명, 이용자는 30명, 여자 단기쉼터의 하루 평균 입소자는 9명, 이용자는 5명 정도로 단기쉼터는 남자청소년의 입소, 이용 정도가 높았다. 남자 중장기쉼터의 하루 평균 입소자는 6명, 이용자는 8명, 여자 중장기쉼터의 하루 평균 입소자는 7명, 이용자는 2명 정도였다 (표 V-78, 그림 V-10 참조).

표 V-78 시설 유형별 입소자·이용자 현황

		최소값 (명)	최대값 (명)	평균 (명)	편차 (명)	합계 (명)
일시쉼터 (이동)	일평균 이용자 수	11	1000	564.50	395.31	3,387
OLLIMEI	입소자 남자	0	28	4.11	6.49	74
일시쉼터 (고정)	입소자 여자	0	20	2,28	4.73	41
(1.0)	일평균 이용자 수	0	572	102.44	135.59	1,844
단기쉼터	입소자	4	24	11.35	4.56	295
(남자)	일평균 이용자수	2	140	30.25	47.24	242
단기쉼터	입소자	4	18	9.92	3.26	238
(여자)	일평균 이용자수	1	12	5.11	3.30	46
중장기쉼터	입소자	2	11	6.93	2.19	104
(남자)	일평균 이용자수	1	15	8.00	9.90	16
중장기쉼터	입소자	3	18	7.00	3.19	147
(여자)	일평균 이용자수	2	2	2.00	0.00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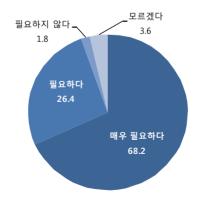
⁶⁷⁾ 입소자는 '1일 이상 숙식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숙박 외 서비스만 이용한 경우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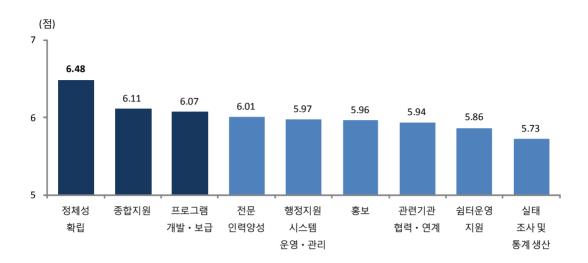


# (4) 중앙지원단 설치 필요 및 기능

'청소년쉼터 기능강화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가칭)청소년쉼터중앙 지원단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긍정응답은 94.6%로 10곳 중 9곳에 달하였다(그림 V-11). 중앙지원기관의 기능 중 시급성 정도를 확인한 결과 쉼터의 정체성 확립(위상 제고, 종사자 권리 향상 포함)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 등 종합지원(사례관리 포함), 프로그램 개발보급(운영매뉴얼 개발 포함), 전문인력 양성(종사자 교육 및 연수 운영 포함), 행정지원시스템 운영관리(실적, 자료 및 정보관리 포함), 홍보(인식개선 사업 포함), 관련기관(단체) 협력연계체계 구축, 청소년쉼터 사업과 운영지원(쉼터평가 포함), 실태조사 및 통계 생산(만족도, 효과성 조사 포함)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V-12).



【그림 V-II】청소년쉼터중앙지원 설치 필요성(%)



【그림 V-12】중앙지원단 기능의 시급성(7점)

# (5) 연계 현황

# ① 단계별 관계기관 연계 정도

가출청소년은 다양한 욕구와 복합적인 문제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기청소년 관련 인프라 간의 연계를 통한 개입 여부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에 가출청소년의 발견(발굴), 보호(입소, 이용), 퇴소(연계) 단계별 쉼터와 관계기관 간 연계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시군구청, Wee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아동복지시설, 복지기관의 경우 전 단계에서 연계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 내 타 쉼터의 경우 각 단계별로 연계가 충분하다는 응답은 절반 이하였다. 지역 내 타 쉼터를 제외하면 발견(발굴), 보호(입소, 이용)단계에서 경찰과의 연계가, 퇴소(연계) 단계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쉼터 퇴소 후 아동복지 시설로 직접 입소하는 경우 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경유하여 입소하는 경우가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쉼터 입소 청소년 10명 중 6명이 초·중·고 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전 단계에서 학교, 교육청(Wee센터)과의 연계 정도는 법원과 보호관찰소를 포함한 법무부산하기관의 경우보다 연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이와 함께「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청소년쉼터는 CYS-Net(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필수 연계기관이며, 상담복지센터는 CYS-Net의 허브기관으로 지역 내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에 있어 긴밀한 연계가 요구된다. 2014년 10월 현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전국 204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자치구 수 대비 약 84%가 설치된 상황이다. 그러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가 충분하다는 긍정응답률은 각 단계별로 20% 수준에불과하였다(표 V-79).

표 V-79 가출청소년 보호단계별 관계기관 연계 현황

(단위 : %)

관계 기관	발견(발	굴)단계	보호(입소,	,이용)단계	퇴소(연	계)단계
선계 기년	미흡	충분	미흡	충분	미흡	충분
시군구청	42.7	8.2	41.8	11.8	53.6	8.2
지역 내 타 쉼터	14.5	37.3	15.5	50.0	21.8	44.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2.7	23.6	34.5	20.0	50.0	12.7
학교	27.3	20.9	26.4	21.8	40.0	15.5
Wee센터	50.9	7.3	54.5	9.1	62.7	6.4
아동보호전문기관	21.8	34.5	20.9	30.0	31.8	23.6
경찰서	12.7	46.4	21.8	36.4	42.7	20.9
아동복지시설	40.9	12.7	40.0	14.5	50.9	14.5
드림스타트센터	71.8	1.8	72.7	3.6	75.5	1.8
복지기관	65.5	3.6	69.1	3.6	70.9	1.8
법원, 법무부 산하기관	32.7	24.5	29.1	26.4	47.3	17.3

^{*} 주: 조사표에서 연계란 정보교환, 대상자 의뢰 및 공동관리, 기관 및 서비스 상호 이용, 공동사업 운영, 업무 관련 회의 및 도움을 주고받는 교류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

# ② 쉼터 유형별 연계 정도

지역 내 쉼터 간 연계 정도를 보면 가출청소년 발견(발굴)단계의 경우 일시(고정형)쉼터는 '충분', 단기 및 중장기쉼터는 '보통'이라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보호(입소)단계와 퇴소(연계)단계에서는 '충분'하다는 긍정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특히 퇴소(연계)단계에서 일시(고정형)쉼터의 경우 타 쉼터와 연계가'충분'하다는 응답률이 유의하게 높았다(표 V-80).

# 표 V-80 지역 내 타 쉼터 간 연계 정도

(단위 : %)

						(근귀 : %
		쉼터수(개소)	미흡	보통	충분	χ ²
	일시(이동형)	6	33.3	33.3	33.3	
발견 (발굴)	일시(고정형)	18	22.2	22.2	55.6	8.510
(글 <i>크)</i> 단계	단기	50	12.0	52.0	36.0	(df=6)
	중장기	36	11.1	58.3	30.6	
	일시(이동형)	6	33.3	16.7	50.0	8.328
보호 (입소)	일시(고정형)	18	22.2	11.1	66.7	
(답조 <i>)</i> 단계	단기	50	12.0	38.0	50.0	(df=6)
L-11	중장기	36	13.9	44.4	41.7	
	일시(이동형)	6	50.0	0.0	50.0	
퇴소 (연계)	일시(고정형)	18	16.7	11.1	72.2	13.154*
(연계) 단계	단기	50	18.0	40.0	42.0	(df=6)
	중장기	36	25.0	41.7	33,3	

^{*} 주: *p〈.05 **p〈.01 ***p〈.001

# ③ 청소년상담복지센터(CYS-Net 포함) 연계 정도

한편 청소년상담복지센터(CYS-Net)와의 상호협력 정도를 질문하였다.68) 각 항목별로 긍정응답률(대체로+매우 그렇다)을 살펴본 결과 '가출청소년 발굴에 도움이 된다(쉼터로 의뢰 정도)' 26.6%,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에 도움이 된다' 27.5%, '지역사회 자원 발굴과이용 시 도움을 받고 있다' 30.3%, '가출청소년(혹은 가족)에 대한 공동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13.8%, '청소년동반자(YC)와 같은 인력지원을 받는다' 15.6%, '정보 공유가 원활하다' 17.5%, '업무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상호협력이 원활하다' 22% 등이었다. 즉 쉼터의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업무에 있어 센터의 지원과 협업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기청소년 관련주요 인프라 간 운영이 분절적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표 V-81). 같은 조사에서 다만 상담복지센터로부터 쉼터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지원을

^{68)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서 청소년쉼터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필수 연계기관(청소년에 대한 일사단 기 또는 중장기적 보호 협조)이다. 그러나 법에서 명시한 CYS-Net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응답한 쉼터(n=95) 가 운데 현재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65.3%, 과거에 참여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6.3%, 참여한 적이 없다는 경우도 28.4%에 달하였다.

요청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은 적 있다'는 쉼터가 10개 중 4개소(41.3%)에 달하였고, '지원을 요청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쉼터도 10개 중 2개(28.4%) 정도였다. '센터에 지원을 요청해 본 적 없다(16.5%)', '지원을 요청했으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6.4%)'는 쉼터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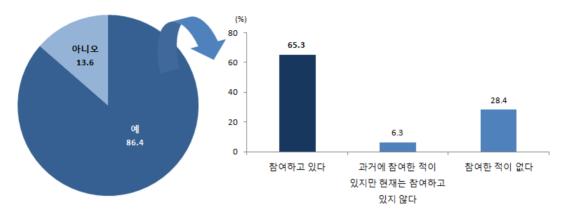
# 표 V-81 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간 상호협력 정도(n=109)

(단위 :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발굴 도움(쉼터에 의뢰)	10.1	23.9	39.4	20.2	6.4
통합지원에 도움 정도	11.0	25.7	35.8	22.0	5.5
지역사회 자원발굴, 이용	11.9	24.8	33.0	26.6	3.7
가출청소년 공동개입	15.6	37.6	33.0	10.1	3.7
YC 등 인력지원	33.0	25.7	25.7	8.3	7.3
원활한 정보공유	14.7	31.2	36.7	13.8	3.7
전반적 상호협력 정도	7.3	22.0	48.6	18.3	3.7

다음으로「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지자체 단체장이 구성·운영해야 하는 CYS-Net 심의기구인 '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지 및 참여 여부를 확인하였다.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쉼터는 청소년쉼터 10개 중 8개에 달하였는데, 현재 참여율은 65.3%에 불과하였다.69)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6.3%), 참여한 적이 없다는(28.4%)는 곳이 10개 중 3개에 달하여 청소년쉼터의 기능과 중요성에 비해 지역사회 내 청소년 지원체계 내에서의 위상과 중요도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그림 V-13).

⁶⁹⁾ 같은 자료에서 현재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쉼터의 경우 연 평균 참여 횟수의 합계를 보면 이동형 일시쉼터는 지금까지 총 6회, 고정형 일시쉼터는 총 21회, 단기쉼터는 총 136회, 중장기쉼터는 총 52회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V-13】 쉼터의 CYS-Net 운영위원회 참여 여부

#### ④ 연계 관련 여건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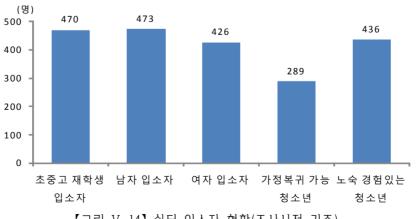
각 쉼터의 업무수행을 기반으로 기관 간 연계와 관련한 항목을 확인하였다. 각 항목별 긍정응답율(대체로+매우 포함)을 보면 '연계 의무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잘 마련되어 있다' 32.7%, '지역 내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조정을 담당하는 기구가 잘 마련되어 있다' 28.1%, '지역 내도움을 주고받을 만한 기관이 충분하다' 30% 수준이었다. '지역 내 쉼터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는 42.7%에 불과하여 청소년쉼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쉼터에서 관할하는 구역 범위가 적절하다'는 33.6%에 불과하였으며, 일시쉼터의 긍정응답률이 유의하게 낮았는데이는 개별 쉼터가 아웃리치 해야 하는 관할 범위가 넓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지원내용을 관리하는 DB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다'는 33.6%에 불과한 반면 '쉼터 압퇴소를 반복하는 청소년을 사례관리하고 있다'는 70.9%로 높게 나타나 사례관리를 포함하여 지원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DB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와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수한 문제나 욕구가 있는 청소년(가족)을 의뢰할 기관이 있다'는 42.7% 수준으로 17개 시·도별 응답률이 차이를 보였다. '대상자를 의뢰받기보다 직접 발굴해야 하는 상황이다'는 29.1%에 불과하였고 일시, 단기, 중장기쉼터 순으로 긍정응답률이 높아 일시에서 대상자의 직접 발굴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일시·단기·중장기쉼터 간 대상자 의뢰가 원활하다'는 48.2%로 절반 이하로 나타났는데일시쉼터, 재단법인의 경우 긍정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V-82).

					(단위 :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연계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잘 마련되어 있다	7.3	24.5	35.5	30.0	2.7
지역 내 연계체계 구축 및 조정 담당기구가 잘 마련되어 있다	10.0	27.3	34.5	24.5	3.6
지역 내 도움을 주고받을 만한 기관이 충분하다	5.5	20.9	43.6	23.6	6.4
지역 내 쉼터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	1.8	25.5	30.0	33.6	9.1
쉼터에서 관할하는 구역의 범위가 적절하다	7.3	28.2	30.9	30.0	3.6
지원 내용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3.6	20.9	41.8	31.8	1.8
쉼터 입·퇴소를 반복하는 청소년을 사례관리하고 있다	0.9	5.5	22.7	52.7	18.2
특수한 욕구나 문제라 있는 청소년(가족)을 의뢰할 기관이 있다	6.4	19.1	31.8	40.9	1.8
대상자를 의뢰받기보다 직접 발굴해야 하는 상황이다		33.6	33.6	19.1	10.0
지역 내 일시단기중장기 쉼터 간의 대상자 의뢰가 원활하다	6.4	14.5	30.9	25.5	22.7

# (6) 위기 유형 및 지원 요구

#### ① 학교 밖, 가정 밖 청소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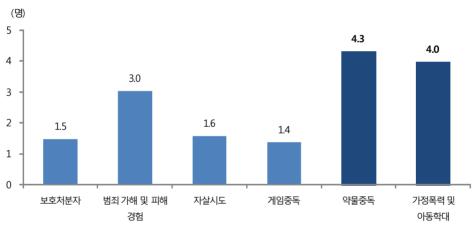
조사시점 현재 쉼터 입소자는 남자청소년 473명, 여자청소년 426명 총 899명이었다. 이 가운데 초·중·고교 재학생은 470명으로 전체 입소자의 52%에 달하였다. '가정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청소년은 전체의 약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복귀보다 퇴소 이후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출청소년이 10명 중 7명에 달하였다. 또한 쉼터 입소자 중 '노숙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약 48%에 달하였다(그림 V-1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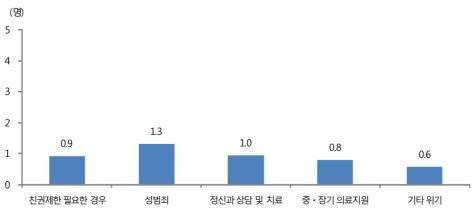


【그림 V-l4】쉼터 입소자 현황(조사시점 기준)

#### ② 위기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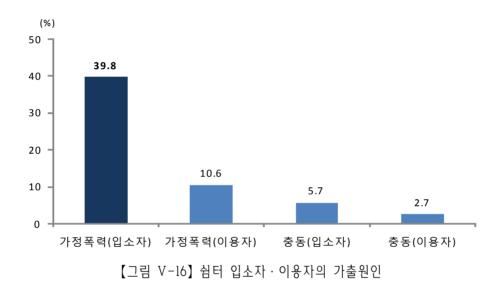
쉼터 입소 청소년의 위기 유형을 파악한 결과(중복응답) 각 쉼터 당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자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포함)는 평균 1.5명, 범죄 가해 및 피해 경험 청소년은 평균 3명, 자살시도(우울증 포함)는 평균 1.6명, 게임중독(인터넷 중독 포함)은 평균 1.4명에 달하였다. 음주, 흡연을 포함한 약물중독의 경우 평균 4명 이상이었고,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 경험도 4명에 달하였다. 부모(보호자)의 친권제한이 필요한 경우는 평균 0.9명, 성폭력, 성매매 등 성범죄의 가해 및 피해 경험은 평균 1.3명으로 나타났다. 도벽, 폭력 등 집단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과적 상담(치료)이 필요한 경우도 평균 1명, 장애와 질병 등 중장기적 의료지원 이 필요한 경우는 평균 0.8명 등이었다(그림 V-1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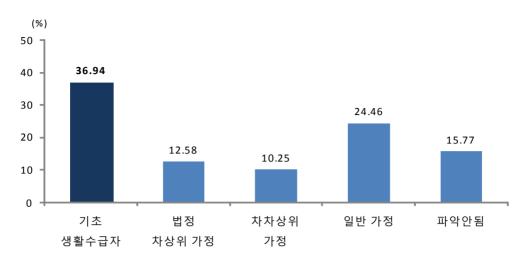
【그림 V-15】쉼터 입소자의 위기 유형(중복응답)

이와 함께 입소자(이용자 포함) 가운데 가정폭력(아동학대 포함)이 가출의 원인 중 하나로 파악되는 청소년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한 결과 입소자의 약 40%, 이용자의 약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순한 호기심, 모험심(예, 사회를 경험해보고 싶다) 등 「소년법」 제4조 3항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충동적'으로 가출한 청소년은 입소자의 약 6%, 이용자의 약 3%에 불과하였다(그림 V-16). 즉 청소년기 가출 상당수는 가정폭력과 같은 가정 내 구조적 문제와 가족 간 유대의 약화에 따른 양육기능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며 일탈, 비행 행위와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가정의 경제적 여건

쉼터 입소 청소년의 경제적 여건을 파악한 결과 기초생활수급가정의 청소년이 약37%로 가장 많았고, 법정 차상위가정 청소년이 약13%, 차차상위가정 청소년이 약10%로 입소자 10명 중 6명 정도가 저소득 빈곤가정 청소년으로 나타났다. 한편 쉼터 입소자 가운데 일반 가정 청소년도 약24%에 달하였고, 경제적 여건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약16% 수준이었다. 기초생활수급비는 가구 단위 지원이므로 자녀가 가출한 경우 수급비가 가출청소년에게 별도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소득·재산 기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되, 주요국의 경우와 같이 부모가 일정소득 이상인 경우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그림 V-1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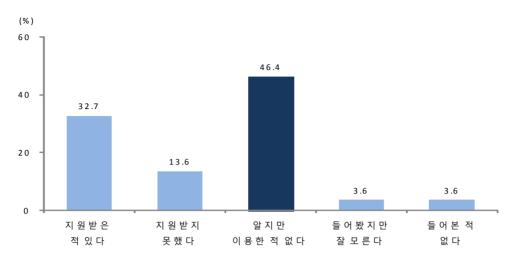


【그림 V-17】 쉼터 입소자 · 이용자의 경제적 여건

### ④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필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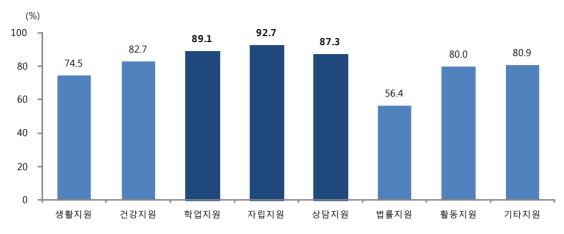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제도'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가출청소년 등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청소년을 위한 복지지원제도로70, 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와 해당 쉼터의 보호청소년에 대한 지원 필요 정도를 확인하였다. 먼저 '알고 있지만 신청(혹은 이용)해본 적은 없다'가 46.4%로 가장 많았고 '특별지원 대상자를 발굴·신청해서 지원받은 적 있다'는 32.7% 수준이었다. 법에 규정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제도 인지율과 이용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특별지원 대상자를 발굴해서 (주민센터 등에) 신청했지만 지원받지 못했다'는 13.6%에 달하였다. 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과 같이 부모와 실제적으로 거주지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특별지원 대상 선정 시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신청 시 대상자 발굴자의 소견서가 첨부됨에도 불구하고 선정에서탈락한 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그림 V-18).

⁷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제도는 동법 제14조를 근거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등 타 법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직업훈련 및 청소년활동지원을 물품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2008년부터 전국 8개 시도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2014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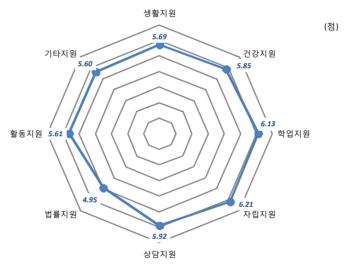


【그림 V-18】위기청소년 특별지원제도 인지 여부

다음으로 쉼터 입소자(이용자) 가운데 각각의 특별지원 필요성 정도를 확인하였다. 현행특별지원은 생활지원을 포함하여 8개 지원 유형으로 구성되며, 다른 법과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더라도 동일 유형이 아닌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쉼터에서 생활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가출청소년의 경우 각각의 지원제도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7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먼저 긍정응답률을 파악한 결과 자립지원(92.7%) 필요성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학업지원(89.1%), 상담지원(87.3%), 건강지원(82.7%), 기타지원(80.9%), 활동지원(80%), 생활지원(74.5%), 법률지원(56.4%) 순이었다. 쉼터 퇴소 후 가정복귀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자립지원 요구가 높고, 가출 전·후로 학업중단이 많고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많아 학업, 상담지원 필요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쉼터에서 숙식지원을 하기 때문에 생활지원(월 49만원 이내 생활비지원)에 대한 필요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타 지원의 경우 18세 이상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쉼터 퇴소 후 주거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용돈지원 등의 의견이 많았다(그림 V-19). 특별지원 각각의 필요성을 7점 척도를 기준으로 도식화한 것이 그림 V-20이다.



【그림 V-19】특별지원 필요 정도(긍정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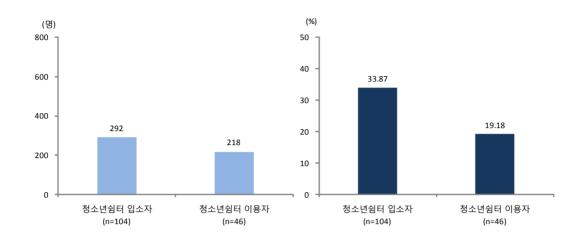


【그림 V-20】특별지원 필요 정도(7점 기준)

한편 해당 쉼터의 월 평균 입소자와 이용자 가운데 특별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어느 정도되는지 파악하였다. 먼저 월 평균 입소자(실인원) 중 약 292명, 즉 월 평균 입소자 10명 중 3명 이상(33.87%)이 특별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나타났다. 쉼터 이용자 가운데 특별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은 약 218명으로 이는 해당 쉼터 이용자의 약20%에 달하는 규모이다(그림 V-21).

V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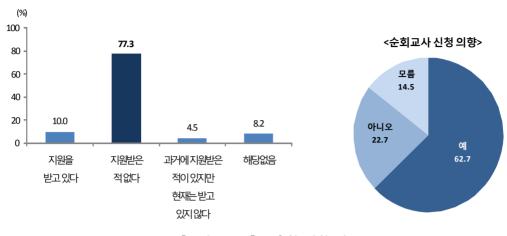
【그림 V-21】쉼터 입소자·이용자 중 특별지원 필요 대상

(7)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와 제도개선 의견

# ① 가출학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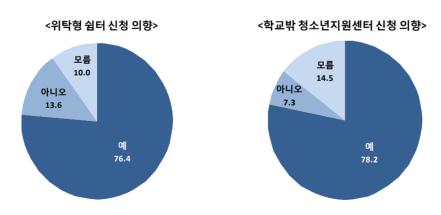
조사시점 현재 이동형 일시쉼터를 제외한 쉼터의 입소자 이용자 가운데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가출학생'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104개 쉼터 입소자(현원) 중 470명으로71) 이는 입소자의 약 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가운데 '가출학생'은 46개 쉼터에서 총 3,885명으로 이는 이용자의 46%에 달하는 수준이며 쉼터 유형별로 보면 이동형 일시쉼터가 3,0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정형 일시쉼터 667명, 단기쉼터 175명, 중장기쉼터 14명 순이었다. 쉼터에서 생활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가출청소년 가운데 절반 정도는 초·중·고 재학생인 상황이고 전체 쉼터 중 초·중·고 재학생이 한 명도 없는 곳은 8.2% 수준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청으로부터 인력이나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는 쉼터는 전체의 10%에 불과하였고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곳은 10개 중 7개 쉼터(77.3%)에 달하였다. 한편 가출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목적으로 지자체나 교육청으로부터 쉼터에 순회교사(혹은 파견교사)를 지원한다면 신청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n=110) 62.7%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고정형 일시쉼터, 중장기쉼터의 경우 순회교사 지원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그림 V-22).

⁷¹⁾ 고정형 일시쉼터 71명(쉼터 당 평균 10.9명), 단기쉼터 241명(쉼터 당 평균 2.6명), 중장기쉼터 158명(쉼터 당 평균 2.6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V-22】 교육청 지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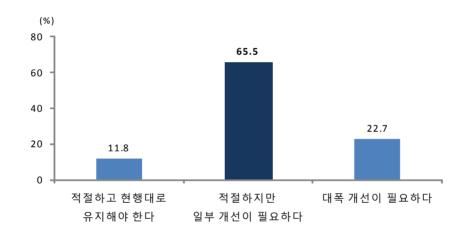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가출학생의 학업중단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위탁형 쉼터를 지정하여 지원한다면 신청할 의향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한 결과(n=110) 긍정응답률이 76.4%에 달하여 가출학생을 위한 특화형 쉼터 운영 요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학교 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명시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지원 한다면 신청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78.2%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중장기 쉼터의 경우 가출학생 위탁형 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모두 긍정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쉼터가 가출청소년의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 다양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요구된다.



【그림 V-23】위탁형 쉼터 및 학교 밖 지원센터 신청 의향

## ② 쉼터 유형 구분 적절성

현행과 같이 입소기간에 따른 쉼터 유형 구분이 적절한지 질문한 결과(n=110) '개선이 필요하다 (일부+대폭 포함)'는 곳이 쉼터 10개 중 8개(88.2%)에 달하였다. 반면 '적절하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11.8%에 불과하였다. 2004년에 이르러「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제정으로 청소년쉼터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래 일시쉼터(드롭인센터) 설치(2004년), 중장기쉼터 설치(2005년), 의료특화 이동형 쉼터 설치(2012년) 등 쉼터 운영형태가 다각화되었다. 그러나 자치구 단위에서 쉼터 유형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유형 구분으로 인한 일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그림 V-24).



【그림 V-24】입소 기간에 따른 쉼터 유형 구분 적절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n=97) 해당하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입소기간을 이유로 입소, 퇴소를 반복하는 일명 '쉼터돌이'가 발생하는 현실문제를 개선해야 한다(73.2%)는 의견이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입소기간 뿐 아니라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 쉼터 유형을 더욱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해서(55.7%), 청소년이 통학, 관계(친구, 종사자) 등을 이유로 타 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50.5%), 쉼터 유형별로 기능, 역할이 일부 중복되어 비효율이 발생해서(46.4%), 아웃리치부터 자립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41.2%), 입소 기간을 적용해 대상자를 다른 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39.2%), 일시, 단기, 중장기쉼터가 모두 설치되지 않아 서비스 공백이 발생해서(38.1%),

법령과 지침이 상이한 문제(30.9%) 순이었다(표 V-83 참조). 현행 일시(고정)의 경우 7일까지 입소가 가능하여 단기와 차별성이 없고, 단기 역시 최장 9개월까지 생활할 수 있어 중장기쉼터, 그룹홈 등과 기능이 구분되지 않으며 현행 중장기쉼터 역시 청소년의 자립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최장 3년 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쉼터 유형별로 제공하는 사업을 보면 단기, 중장기 모두 자립지원, 학업지원, 진로 및 미래설계지원, 퇴소후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등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명시한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도 미흡하여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일시, 단기, 중장기,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전달체계가 사실상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표 V-83 현행 쉼터 유형 구분 개선 사유(중복응답)

(단위 : %)

	쉼터수 (개소)	법령과 지침 상이	입소 기간 외 다른 요소 고려	시설 입소 어려움	인프라 미확보 서비스 공백	쉼터 유형별 기능 역할 중복	쉼터돌이 문제 개선	원스톱 지원 필요	타 시설 입소 거부 ¹⁾	기타 ²⁾
전체	97	30.9	55.7	39.2	38.1	46.4	73.2	41.2	50.5	14.4
일시(이동형)	6	50.0	66.7	33.3	33.3	33.3	83.3	33.3	83.3	16.7
일시(고정형)	17	17.6	64.7	58.8	41.2	29.4	88.2	58.8	64.7	17.6
단기	45	33.3	60.0	44.4	44.4	44.4	77.8	37.8	57.8	4.4
중장기	29	31.0	41.4	20.7	27.6	62.1	55.2	37.9	24.1	27.6

^{*} 주: 1) 12,976**(df=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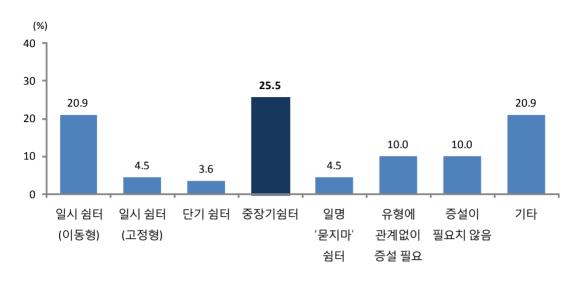
# ③ 추가 설치가 필요한 쉼터

관내(시·군·구)에 추가 설치가 필요한 쉼터를 질문한 결과 중장기쉼터(25.5%)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이동형 일시쉼터와 기타 순이었다. 고정형 일시쉼터, 단기쉼터, 일명 '묻지마 쉼터'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타의 경우 사법형 그룹홈(쉼터), 경계선지적 기능 청소년 쉼터, 치료형 쉼터, 자립지원관(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의 의견을 포함하여입소 기간 외 특화 쉼터 운영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그림 V-25).

^{2) 7.864*(}df=3)

^{3) *}p<.05 **p<.01 ***p<.001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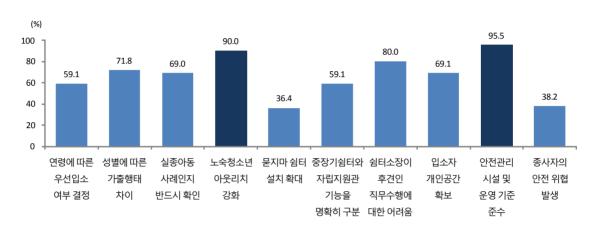
【그림 V-25】관내 쉼터 추가 설치 필요 여부

#### ④ 쉼터 운영 및 업무 추진 관련 의견

쉼터 운영 및 업무 추진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과 의견을 묻고 긍정응답률을 살펴보았다. 먼저 '가출청소년의 연령(19세 미만)에 따라 우선 입소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곳은 5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에서와 달리 운영지침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을 우선 입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며 19세 이상 가출청소년의 쉼터 이용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가출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가출행태에 차이가 있다'의 경우 긍정응답률은 71.8%에 달하였다. '쉼터 입소(이용) 시 실종아동으로 신고 된 사례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경우는 69% 정도로, 쉼터 10곳 중 3곳은 실종아동 사례인지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쉼터를 이용하지 않는 노숙청소년 아웃리치가 강화되어야 한다'의 경우 긍정응답률이 90%에 달하였다. 반면 '일명 묻지마 쉼터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36.4%에 불과하였고, '중장기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기능은 명확하게 구분된다'의 긍정응답률은 59.1%로 나타나 응답자 10명 중 4명은 두 시설 간 일부 기능 중복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쉼터소장이 미성년 가출청소년의 후견인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긍정응답률은 80%에 달하여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쉼터 내에 입소자 개인 공간(방, 사물함)이 확보되어 있다'는 69.1% 수준에 불과하여 쉼터 내 독립적인 개별공간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를 포함한 시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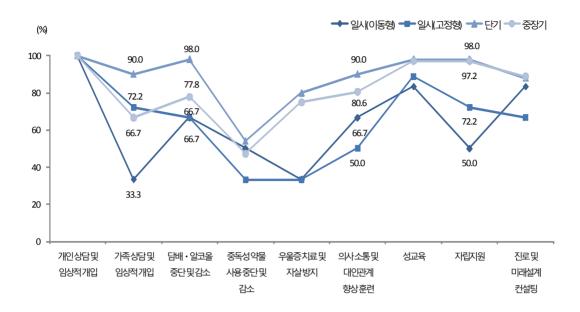
및 운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의 경우 긍정응답률이 95.5%에 달하였다. '신변 위협 등 종사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의 경우 38.2%로 응답자 10명 중 3명 이상이 근무하는 쉼터 환경을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V-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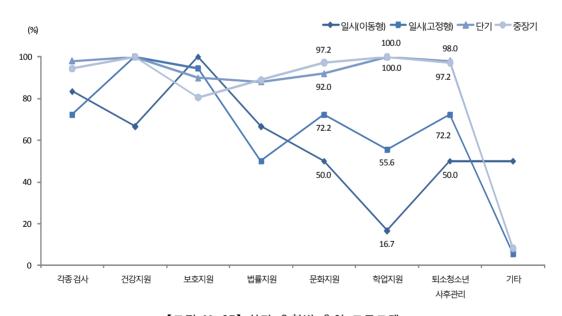


【그림 V-26】 쉼터의 여건 및 환경(긍정응답률)

# ⑤ 쉼터 서비스 및 프로그램

쉼터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쉼터 유형과 관계없이 개인상담 및 임상적 개입제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일시쉼터의 경우 보호지원(숙식 등)과 기타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여 가출청소년의 긴급지원 및 다양한 문제와 욕구에 대응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단기쉼터는 가족상담 및 임상적 개입, 성교육, 자립지원, 진로 및 미래설계 컨설팅, 각종심리검사, 건강지원, 학업지원 프로그램, 퇴소청소년 사후관리 제공 비율이 타 쉼터 유형에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장기쉼터는 문화지원을 제공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것을 제외하면단기쉼터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즉 단기쉼터와 중장기쉼터는 입소기간에 차이를 두고 있지만입소한 청소년들의 특성과 욕구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일부 반영하는 결과라 하겠다(표 V-27).





【그림 V-27】쉼터 유형별 운영 프로그램

# ⑥ 퇴소자 사후관리 및 추가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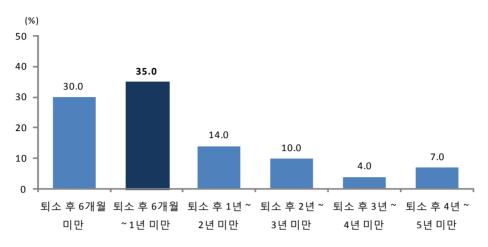
특히 쉼터 한 곳 당 월 평균 퇴소 청소년 8명을 사례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퇴소 청소년 1인당 평균 사례관리 기간은 일시는 퇴소 후 6개월 미만, 단기와 중장기는 퇴소 후 6개월에서 1년 미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표 V-84, 그림 V-28). 사후관리 방법은 전화상담, 온라인상담(89%)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면대면 상담(64%), 사례관리(52%), 자립지원계획수립(34%), 자립지원전담기관 의뢰(28%), 쉼터자체 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23%), 기타(14%) 순이었다. 그러나 퇴소 전 자립기술평가를 실시한다는 응답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1%) 자립준비 여부에 대한 평가 없이 입소기간을 이유로 퇴소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 중장기쉼터만이라도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실태 파악과 퇴소 후 사후관리를 필수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DB 구축과 실태파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퇴소 전 자립계획수립 및 퇴소 청소년 사례관리에 따른 별도의 예산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그림 V-29).

# 표 V-84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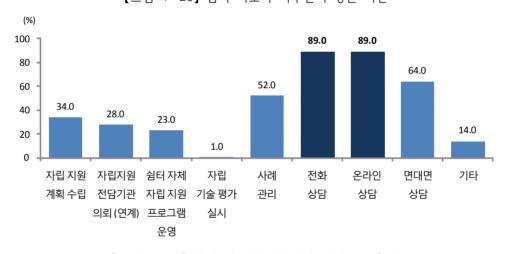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쉼터수 (개소)	최소	최대	평균 (편차)	퇴소 후 6개월 미만	퇴소 후 6개월 ~ 1년 미만	퇴소 후 1년 ~ 2년 미만	퇴소 후 2년 ~ 3년 미만	퇴소 후 3년 ~ 4년 미만	퇴소 후 4년 ~ 5년 미만	x ²
전체	100		90	8.50(15.14)	30.0	35.0	14.0	10.0	4.0	7.0	
일시(이동)	3		6	4.00(2.65)	100.0	0.0	0.0	0.0	0.0	0.0	
일시(고정)	13	1	90	22.38(30.59)	61.5	30.8	0.0	7.7	0.0	0.0	27.633* (df=15)
단기	49		70	9.14(12.63)	32.7	38.8	14.3	8.2	2.0	4.1	(3.7 7 5)
중장기	35		8	2.83(1.58)	8.6	34.3	20.0	14.3	8.6	14.3	

^{*} 주: *p<.05 **p<.01 ***p<.001



【그림 V-28】 쉼터 퇴소자 사후관리 평균 기간



【그림 V-29】 쉼터 퇴소자 사후관리 방법(중복응답)

다음으로 요구도가 가장 높은 서비스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첫 번째 응답은(1~4순위) 개인상담 및 임상적 개입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립지원, 보호지원, 학업지원 및 건강지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쉼터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일시쉼터의 경우보호지원, 기타 서비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단기쉼터의 경우 개인상담 및 임상적 개입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다. 중장기쉼터는 자립지원 학업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등 쉼터 유형별로일부 차이를 보였다(표 V-85, 그림 V-30).

두 번째 응답은(1~4순위) 학업지원, 문화지원, 자립지원 및 보호지원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일시쉼터의 경우 학업·문화·자립지원에 대한 요구는 매우 낮았고 보호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단기쉼터는 고른 분포를 보였는데 학업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문화지원, 자립지원 및 보호지원 순이었다. 중장기쉼터는 자립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고 학업지원 및 문화지원, 보호지원 순으로 나타나 쉼터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표 V-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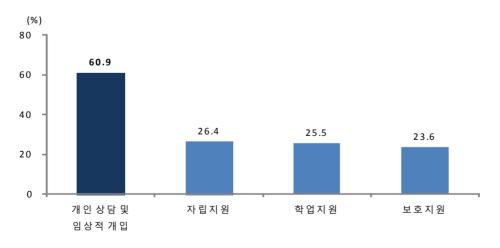
표 V-85 수요가 가장 많은 쉼터 서비스(중복응답, 1~4순위)

(단위 : %)

							(LTI · /0)
선택1 (1~4순위)	개인상담 임상개입	자립 지원	보호 지원	학업 지원	건강 지원	기타	x ²
전체	59.1	10.0	7.3	4.5	4.5	4.5	
일시쉼터(이동형)	50.0	0.0	16.7	0.0	0.0	33.3	
일시쉼터(고정형)	66.7	0.0	16.7	0.0	0.0	5.6	45.937*
단기쉼터	72.0	10.0	6.0	2.0	6.0	2.0	(df=30)
중·장기쉼터	38.9	16.7	2.8	11.1	5.6	2.8	

선택2 (1~4순위)	학업지원	문화지원	자립지원	보호지원	x ²
전체	20.9	17.3	16.4	16.4	
일시쉼터(이동형)	0.0	0.0	0.0	33.3	
일시쉼터(고정형)	11.1	5.6	5.6	38.9	79.839***
단기쉼터	24.0	18.0	14.0	14.0	(df=42)
중 · 장기쉼터	25.0	25.0	27.8	5.6	

^{*} 주: *p<.05 **p<.01 ***p<.001



【그림 V-30】 수요가 가장 많은 쉼터 서비스(중복응답, 1~4순위)

다음으로 정부의 추가예산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를 두 가지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첫 번째 응답은(1~4순위) 자립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우울증 치료 또는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개입으로 나타났다. 이 외 개인상담 및 임상개입, 가족상담 및 임상개입, 건강지원 순이었다. 쉼터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쉼터 유형과 관계없이 자립지원과 위기개입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표 V-86).

두 번째 응답은(1~4순위) 학업지원, 자립지원, 진로 및 미래설계 컨설팅, 건강지원 및 퇴소청소년 사후관리 순이었는데 쉼터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일시쉼터의 경우 자립지원과 퇴소청소년 사후관리, 단기쉼터는 학업지원, 진로 및 미래설계 컨설팅, 중장기쉼터는 학업지원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표 V-86, 그림 V-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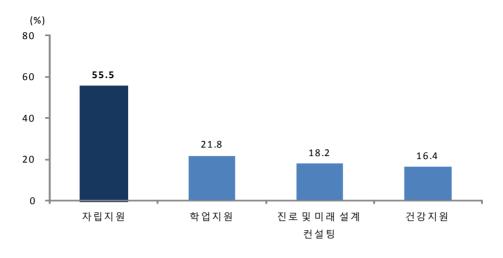
# 표 V-86 정부 추가예산 지원이 필요한 쉼터 서비스(중복응답, 1~4순위)

(단위 : %)

선택1	자립지원	우울증 치료 또는 자살	개인 상담 및	가족 상담 및	건강지원	x ²
(1~4순위)		예방을 위한 (위기)개입	임상개입	임상개입		
 전체	40.0	12.7	7.3	7.3	7.3	
일시쉼터(이동형)	16.7	0.0	0.0	16.7	33.3	
일시쉼터(고정형)	38.9	5.6	16.7	5.6	5.6	49.897
단기쉼터	34.0	20.0	4.0	4.0	10.0	(df=36)
중·장기쉼터	52.8	8.3	8.3	11.1	0.0	

선택2 (1~4순위)	학업 지원	자립 지원	진로 및 미래설계 컨설팅	건강 지원	퇴소청소년 사후관리	x ²
 전체	20.0	15.5	12.7	9.1	9.1	
일시쉼터(이동형)	0.0	33.3	0.0	16.7	33.3	
일시쉼터(고정형)	0.0	16.7	5.6	0.0	11.1	62.834*
단기쉼터	22.0	16.0	18.0	10.0	6.0	(df=42)
중 · 장기쉼터	30.6	11,1	11,1	11,1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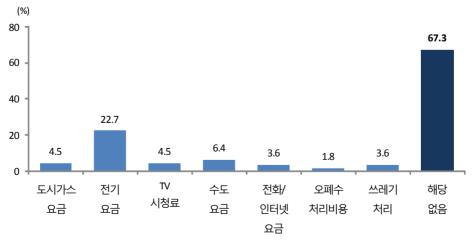
^{*} 주: *p<.05 **p<.01 ***p<.001



【그림 V-31】정부 추가예산 지원이 필요한 쉼터 서비스(중복응답, 1~4순위)

# ⑦ 공공요금 감면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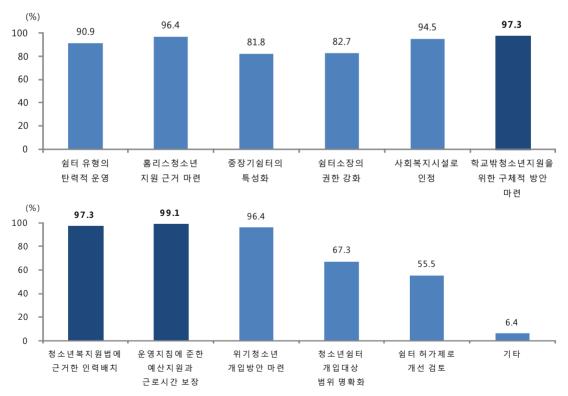
쉼터에서 이용하고 있는 공공요금 감면혜택을 확인한 결과(n=110) 일체의 지원이 없는 곳이 67.3%에 달하였다. 이는 쉼터가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부라도 지원을 받는 경우 도시가스(4.5%), 전기요금(22.7%), TV시청료(4.5%), 수도요금(6.4%), 전화/인터넷요금(3.6%), 오폐수처리비용(1.8%), 쓰레기처리(3.6%)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다(그림 V-32).



【그림 V-32】 쉼터의 공공요금 지원(중복응답)

# ⑧ 제도개선 의견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현행 제도 개선 필요성 정도(필요+매우 필요 포함)를 살펴본 결과 운영지침에 준한 예산지원과 종사자 근로시간 보장(99.1%)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청소년쉼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및 법에 근거한 인력배치(각각 97.3%), 가정복귀가 불가능한 홈리스청소년 지원 별도 근거 마련 및 정신과 치료, 경찰 개입 등이 필요한 위기청소년 개입방안 마련(각각 96.4%), 청소년쉼터를 사회복지시설로 인정(94.5%), 지역규모와 특성을 감안한 쉼터 유형의 탄력적 운영 허용(90.9%)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 친권제한 신청 등 쉼터소장의 권한 강화(82.7%), 중장기쉼터의 다양화·특성화(81.8%), 청소년쉼터 개입 대상인 가출청소년의 범위 규정(67.3%), 청소년쉼터 신고제를 향후 허가제로 개선 검토(55.5%)에 대한 의견이 뒤를 이었다(그림 V-33 참조). 기출청소년을 포함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 책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볼 때 법과 지침에서 명시한 운영 최소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쉼터의 가정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 원칙과 근거를 반영한 지침 개정이 요구된다.



【그림 V-33】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제도 개선(긍정응답률)

이와 함께 현행 운영지침에는 총 예산의 최소 20%를 사업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 10명 중 6명이 저소득 빈곤가정의 청소년이며, 가정폭력 피해경험 이 있는 경우도 10명 중 4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쉼터가 이들을 대안양육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양육비를 국가가 선 지원하되 부모의 소득·재산 정도를 고려하여 양육비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부분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72)

# 4. 시사점⁷³⁾

이 장에서는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정책대상인 가출청소년의 특성과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추진을 위한 청소년쉼터 여건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의 2012년 청소년유해환 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가운데 위기청소년 데이터와 2013년 가출팸 실태조사 데이터에 대한 2차 자료 분석과 전국 5대 주요 도시에서 노숙청소년 20명을 심층면접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전국 청소년쉼터 전수를 대상으로 종사자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1) 정책대상의 특성

먼저, 가출청소년과 노숙청소년(홈리스)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정책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청소년의 가출원인과 가정생활만족도, 가출빈도, 쉼터 이용 특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 자발적인 가출과 탈출을 구별한 후 차별화된 개입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들의 '가정 밖' 상황에 초점을 두고 거리에서 생존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사회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발적인 가출 사례인지, 탈출 사례인지 구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발굴(out-reach)하고 이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개별적인 개입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데 역량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⁷²⁾ 조사시점 현재 쉼터 입소 청소년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은 36.9%, 법정 차상위 12.6%, 차차상위 10.3% 등 10명 중 6명 (59.8%)이 저소득 빈곤가정 청소년으로 나타나 부모의 양육비 지원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는 15.8%, 일반가정 청소년은 24.5%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⁷³⁾ 이 부분은 김지연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함.

두 번째로 가출청소년의 성별 격차를 고려한 개입전략이 필요하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가족관련 이유로 가출한 경우 가족과의 갈등,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 정신건강, 유해환경 접촉 등 모든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였다. 특히 2회 이상 가출한 여자청소년이라면 가정에 대한 별도의 개입없이 가정복귀가 이루어질 경우 반복 가출할 확률이 매우 높다. 여자청소년쉼터에서는 단기, 중장기 등 쉼터 유형에 관계없이 예방적, 문제해결 차원에서의 성교육(피임법 포함)과 심리·정서·관계 회복을 위한 인문학적 접근, 중장기적인 자립계획 수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가출을 한 번 한 경우와 2회 이상 한 경우는 서로 다른 개입이 요구되는 정책대상이라는 점이다. 즉 가출을 2회 이상 했다면 부모에 대한 상담과 개입을 통해 지원, 지지를 기대하기보다 청소년 개인의 자립역량을 키우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반복가출의 이면에는 소위말해 일종의 '계층'의 문제가 존재하였는데 부모의 낮은 학력, 빈곤, 높은 수준의 부모자녀 간 갈등, 자녀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방임 등을 의미한다. 즉 이 경우 가출청소년 뿐 아니라 청소년기 형제, 자매의 가출 역시 충분히 예측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가출 예방을 위한 가족지원과 개입이 요구된다. 또한 학교, 사회에서는 '청소년 가출 예방'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가출해야 할 상황에서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예방적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네 번째로 가출청소년은 비행청소년이 아니다. 이들은 인권, 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별도의 사회적 지원이 없을 경우 정상적인 발달, 성장이 어려운 위기청소년(at-risk youth)이다. 따라서 이들은 선도대상이 아니라 특별한 관심과 개입이 필요한 지원대상이라는 관점에서 세심하고 전향적인 정책설계와 추진이 필요하다.

# 2) 가출청소년의 생활실태

먼저 장기간 가출상황에 있는 노숙청소년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은 노숙이전에 가정에서의 폭력, 학대, 방임을 경험한 후("나올 수밖에 없는 집") 무방비 상태에서 가정에서 벗어나 친구, 친인척 등 기존 사회적 관계망에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고 제도,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도 쉽지 않다. 이로 인해 매우 취약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발굴 노력 없이는 이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 청소년기 가출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안을 조기에 발견, 개입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면밀한 확인과 지원, 적극적인 대안 모색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거리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고픔, 추위, 외로움, 두려움에 고통 받고 몸과 마음이 상해가는 과정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저학력, 비숙련 상태에서 20대 초반에 이미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되어 통장도 만들 수 없어 현금만 받는 일용직 근로를 전전하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위험한' 생활을 하며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셋째, 주거 취약성이 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거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은 청소년의 학업, 구직, 근로, 위생 등 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권 침해의 요소로 작용하였다. 제한적이나마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주거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축, 자립은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유인이 되지 않아 탈빈곤 의지를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가출 이후 인간관계 전반에 변화가 있다. 반복 가출과 노숙생활은 기존의 대인관계를 단절하게 하고 가출생활, 노숙과정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새로운 관계 가운데 긍정적인 관계는 공공기관(청소년쉼터, 노숙인쉼터, 경찰, 관공서 등) 종사자에 불과하였고 가출또래, 일반 성인의 경우 일시적인 숙식제공, 심리·정서적 지지 외에는 범죄의 가피해자로 전략하게 하는 통로(gate-way)로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출, 노숙 초기에 이들을 찾아내어 제도권 내에서 적절한 보호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다섯째, 가출청소년의 관점에서 청소년쉼터의 체질변화가 요구된다. 노숙청소년 가운데 대다수는 가출 초기에 청소년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는데 규칙, 규율을 지키기 어려워 반자발적으로 퇴소하거나 입소기간 등을 이유로 쉼터를 전전하다 결국 노숙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일부발견되었다. 또한 학업, 근로, 수면 등 개별적인 활동공간이 없어 '편하게 생활하기 어려운 곳' 이라는 인식과 일부는 쉼터에서조차 또래 간의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프로그램의 참여 강요 혹은 프로그램이 너무 없어 무료한 것도 쉼터를 떠나는 요인이었는데, 쉼터를 나갈 때 적절한 주거 대안을 마련한 후 퇴소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여섯째, **낙인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회복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들은 기출청소년, 노숙인으로 보이지 않기를 원하며 낙인 때문에 쉼터 입소나 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하지 않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쉼터에 입소한 이후 최소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야 뭔가 해 보고자하는 동기가 생기는 등 치유, 회복을 위해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쉼터는 섣부른 자립지원보다 자립지원의 전 단계로 심신을 단련하고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 (incubator)의 기능이 우선되어야 한다.

# 3) 정책추진 여건

먼저 **가출청소년의 다양한 문제에 조기개입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쉼터의 아웃리치 기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노숙기간이 1년이 넘도록 아웃리치 상담원을 한 차례도 만나지 못한 경우도 발견되었다. 가출기간이 길어지면서 명의양도 등으로 빚을 지거나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가출기간을 줄이는 것이 결국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법과 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운영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4년도 쉼터 운영지원 예산 87억 가운데 국비(중앙)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37.7%, 광역시·도비는 평균 30.5%, 자치구 및 법인전입금은 평균 24% 수준이었다. 그러나 87억 가운데 사업비는 약 22억(25%)에 불과하고, 인건비는 법과 지침에서 명시한 종사자 인력배치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장기적으로 청소년쉼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쉼터 운영지원과 가출예방 및 가출청소년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위해 '(가칭)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입소기간에 따른 쉼터 유형 구분을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법에서 명시한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조속히 설치하여 가출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위기청소년 인프라 간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가출청소년의 발견, 보호, 퇴소(연계) 단계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CYS-Net 필수연계기관인 쉼터 간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프라 간의 연계를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재편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정책효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다 부처 간 사업 운영 방식이 지역에 내려오면 비효율, 소모, 차별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감소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다섯 번째로 **쉼터에서 보호하는 고위기청소년의 양육비 지원이 요구된다.** 쉼터에는 학교 박, 범죄 가·피해, 자살시도, 게임중독, 약물중독,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 정신과적 상담·치료 필요자 등 고위기청소년이 상당수에 달한다. 쉼터가 이들의 대안양육을 담당하고 있고 이들을 양육하는데 따르는 최소한의 양육비가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의식주 외 학업, 치료, 발달을 위한 양육지원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쉼터는 보장시설이 아니므로 입소 시 수급비가 지원되지

않는데 이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낙인을 찍고 수급비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상황을 고려한 양육비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섯 번째로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의 정체성을 정립하여야 한다.** 쉼터는 청소년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과 달리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종사자의 경력 호환이되지 않고, 지자체 단위에서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혜택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동일한 조건, 상황에서 쉼터를 퇴소하는 청소년과 아동복지시설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퇴소하는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에서도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복지시설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운영과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여야 한다.

# 제 $\mathbf{V}$ 장

#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 1. 정책제안 배경
- 2. 정책과제

# 제 **VI** 장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제⁷⁴⁾

# 1. 정책제안 배경

이 연구에서 정책대상인 가출청소년은 '가출'이라는 행위보다는 '가정 밖'이라는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귀가하지 않거나, 상당 기간 동안 일정한 거주지 없이 주거적절성이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정책추진 시 청소년의 가출을 더 이상 비행, 일탈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가정에서 이탈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예방적 접근과 가출 이후 거리에서 생존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사회화를 최소화하는데 개입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가출청소년 보호지원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은 청소년기 가출행위는 사회의 도덕과 법규에 어긋나는 행위라 볼 수 없고 일탈, 비행, 우범으로 낙인하는 것 자체가 결국 범죄로 이행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지위비행 개념을 철폐해야 한다는 것으로 수렴된다. 특히 가출 뿐 아니라 홈리스청소년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들의 다양한 욕구(needs) 충족을 지원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 및 보호자의 책무 정도와 청소년기 가출에 대한 관점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청소년의 가출을 비행으로 접근하고 있는 국가들조차 가정복귀 이전에 부모와 가정환경에 대한 사정(assessment),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예방적 접근은 가출행위의 근절이 아니라 가출의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개입이어야 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인권, 기본권 보장이 가능하도록 정책의 범위와 내용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기 가출의 원인이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예방적 접근을 고려할 경우 국정과제의 범위는 넓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직접 관련된 국정과제인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 가운데 주요 추진계획인 '청소년 위기 예방 프로그램 확대 및 인프라 구축'으로 논의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⁷⁴⁾ 이 장은 김지연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함.

위해 문헌연구와 2차 자료 분석, 심층면접조사와 청소년쉼터 종사자 의견조사, 주요국의 정책사례 검토를 통해 정책대상의 특성과 가출청소년 지원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국회, 정부부처(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현장(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한국소년보호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개별 시설 종사자)의 자문, 정책실무협의, 포럼을 수차례 개최하고, 국회 정책세미나를 통해 이를 보완하였다. 정책과제는 가출청소년 보호지원과 관련한 법제 현황과 현안을 중심으로 ① 관련 법률 제·개정을 통한 정책추진 기반 마련, ②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전달체계 정비, ③ 청소년쉼터 확충및 운영지원 개선, ④ 가정 밖 청소년 지원제도 및 서비스 확대 등 크게 4개 정책과제와 이에 따른 19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정책과제별로 정책방향과 세부 추진과제,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또한 위기청소년 관련 인프라 확충에는 필수적으로 의무지출이 수반됨에 따라 예산 과제에 해당할 경우 소요예산(안)을 포함하였다.

# 2. 정책과제

관련 법률 제·개정을 통한 정책추진 기반 마련

# 1) 정책방향

현행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정책은 청소년기 가출을 비행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향적인 지원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는 만큼 정책대상에 대한 재개념화가 요구된다. 또한 현행 아동, 청소년의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관련법과 주무부처가 이원화되어 있어 현장에서 낭비, 비효율, 소모, 차별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정책효율과 효과를 제고하기위한 조정 및 통합 방안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차별'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법률 정비를 통해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 2) 세부 추진과제

표 VI-l 관련 법률 제·개정을 통한 정책추진 기반 마련 세부 추진과제

		шг	ш	추진시기		주무부처
세부 추진 과제	예산 사업	법률 제 · 개정	신규 개선	단기 (2년)	중장기 (5년)	(지자체 포함)
1-1.「사회복지사업법」개정	_	0	개선	0		보건복지부
1-2.「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	_	0	개선	0		여성가족부
1-3.「소년법」개정	_	0	개선	0		법무부
1-4.「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개정	_	0	개선	0		보건복지부
1-5.「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 특별법」제정 검토	_	0	신규		0	여성가족부

# 1-1. 「사회복지사업법」개정: 청소년쉼터의 사회복지시설 편입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이다. 그러나 「사회복지 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쉼터의 기능, 목적, 대상이「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등)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운영 지원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즉 아동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지만 청소년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기형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로 18대 국회에서 이미「청소년복지 지원법」을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75)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현행 법률에는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 정신보건 등 25개의 각종 법률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가출청소년을 포함한 위기청소년은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포함될 경우 청소년쉼터 운영이 사회복지사업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복지 서비스 최소기준' 준수, 유사시설에 준한 기능보강, 종사자 처우 개선, 전문성 강화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표 VI-2).

⁷⁵⁾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4230 손숙미 의원 대표발의, 2011. 12. 21.)

# 표 VI-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6., 2014.5.20.〉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좌동)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커.「장애아동복지지원법」	터.「청소년복지 지원법」

이와 함께「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동법 제2조 제1항), 쉼터 운영이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될 경우 민간재원이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은 표 VI-3과 같다. 이와 함께 현행 청소년쉼터 운영지침에서 청소년쉼터의 '시설장', '직원'의 결격사유는「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장',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고, 지침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예산과목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a, pp.401~408). 즉 쉼터 운영에 있어 이미 인력, 예산 집행 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현행「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한 청소년복지시설에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 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포함한다. 치료재활센터의 경우 취약계층을 포함한 위기청소년의보호, 치료, 교육, 자립 등을 지원하는 생활시설이라는 점에서 사회복지시설로의 편입이 가능하다. 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 소관인「한부모가족지원법」역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포함되어 있는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류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청소년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별표5)에 의해 각 청소년쉼터에는 청소년상담사를 1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 취지 상 청소년복지시설이지만 '복지'보다 정책대상인 '청소년'에 방점을 두어 청소년지도자를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청소년복지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할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하위법령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면 될 것이다. 현재 쉼터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표 VI-3)과 지자체 차원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에서 제외된다.

※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예시)

· 대구, 종사자 수당 : 1~5호봉 18만원/월, 6호봉~ 20만원/월 · 경북, 종사자 수당 : 장려수당 10만원/월, 자격수당 4만원/월

# 표 VI-3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구분	지원
근거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기부 시 소득공제	- 법정기부금으로 분류하여 100% 전액 세액 공제 ※ 조특법 76조, 소득세법 34조, 소득세법 시행령 79조의2
전기	<ul> <li>일반전기 사용 금액의 20% 감면</li> <li>※ 전기공급 약관(한전과 사용자간 계약)에 사회복지시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할인</li> <li>심야전기요금 할인</li> <li>※ 전기공급 약관(한전과 사용자간 계약)에 사회복지시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할인</li> </ul>
전화	- 장애인복지법상 단체만 할인, 장애인특수학교 50% 감면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가스	- 요금 할인 적용(각 도시마다 차이가 나며 산업용 단가를 적용받음.) ※ 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수도	- 사용한 금액의 30% 할인(시군구 조례로 적용)
건축 신ㆍ증축	- 녹지지역(그린벨트)에서 신설, 증축 용이(개발제한구역특별법) ※ 설치사례 : 광명시, 군포시(국가·지자체가 설치한 경우에 한함.)

^{*} 출처: 조주은(2014), p.93 참조; 산업통상자원부(2014)

# 1-2.「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 :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근거 마련

최근 노숙인의 인권과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2011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정책대상은 18세 이상 노숙인이다. 이에 가정해체, 보호자의 양육능력 상실로 보호와 지도감독이 필요한 '집 없는 청소년'을 청소년쉼터 이용 대상에 적극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일부개정 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76) "가출청소년의 개념을 보다 확대하여 가정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으로 볼 수 있고 현행「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을 통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은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8세 이상 후기청소년 중 가출, 홈리스가 이용할

⁷⁶⁾ 의안번호 2899(2012.12.3 이자스민 의원 대표 발의).

수 있는 시설이라 볼 수 없다. 예로 미국의 경우「가출 및 홈리스청소년법(The 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 PL 108-96)」에서 가출청소년과 홈리스청소년을 모두 정책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정책은 비행청소년 선도가 아닌 기본적인 생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밖 청소년의 권리, 인권 보호의 맥락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가정에서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지원체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가정 위탁보호 지원법안」까이 발의된 바 있는데 쉼터 입소 청소년 가운데 상당수가 가정복귀가 불가능한 홈리스청소년임을 감안할 때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대안양육시설로서 쉼터에 대한 정체성과 지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의 법적근거가 되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 근거를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표 VI-4).

이와 함께 현행 쉼터 운영지침에서 연령에 따른 우선입소 기준을 삭제하고, 입소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기 정도를 고려하여 입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표 VI-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b>가출한</b>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제31조제1호 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① <b>가정 밖 청소년의</b> 좌동
②, ③ 생략	②, ③ 동일

#### 1-3. 「소년법」개정 : 가출의 비행화 낙인 제거

가출행동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시 되는 지위비행(地位非行, status offender)으로 그 자체가 위법행위가 아님에도 범죄의 전조 현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소년법」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 가운데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을 우범사유로 규정하여(동법 제4조) 범죄소년, 촉법소년과 동일하게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호처분의 취지는 차지하고라도 범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 가출을 신체적인 구속을 포함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낙인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UN에서도 강력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출의 비행화로 인해 그간 가출청소년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⁷⁷⁾ 가정위탁보호 지원법안(의안번호: 1902683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2.11.20.)

VI

경찰에 의한 조기발견과 귀가조치를 최우선으로 해 왔다. 이는 가출과 다른 비행과의 높은 상관관계, 청소년기 비행경험과 성인기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에 대한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

경찰은 실종아동을 포함한 가출청소년 발견을 위해 전국 보호시설과 도서지역 및 pc방, 공·폐가, 찜질방 등을 대상으로 일제수색을 실시하고 발견된 가출청소년을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선도를 꾸준하게 전개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결국 공공장소에서 이들을 몰아내게 되고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으로 숨어들어 어느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됨으로써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위험이 크다. 즉 사회적인 불가시성(social invisibility)은 이들의 취약성(vulnerability)을 가속화하는 반면 전문가가 이들을 발견하고 아웃리치 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따라서 가출을 지위비행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일종의 공공보복주의(revanchism)이며 가출청소년이 공공장소에 머물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청소년이 단순히 집이 싫고 밖이 좋아서 생존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장기간 거리를 배회하고 노숙을 택하는 일은 상식적이지 않다. 본 연구에서도 쉼터 입소자 900명 가운데 단순 충동에 의한 가출은 50명에 불과하였고, 충동적인 가출도 가족과의 유대와 지도감독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상황 자체가 위기이다. 따라서 원인에 대한 개입 없이 가출행동 자체를 비행화하는 것은 해결책이라 볼 수 없고 청소년기 가출의 다층성(multitude)을 감안한 섬세한 정책설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현행「소년법」의 우범소년 기준에서 가출청소년의 낙인, 범죄화 관련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표 VI-5).

#### 표 VI-5 소년법 제16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좌동 1. 좌동 2. 좌동 3. 좌동 가. 좌동 나. <b>살제</b> 다. 좌동
②, ③ 생략	②, ③ 동일

# 1-4.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개정 : 후견 권한 근거 마련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률행위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하고,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子)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913조). 이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과지도감독의 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적절한 양육과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는 법률행위 뿐 아니라 근로활동을 포함한 독립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법률」에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직무에 관한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고아가아닌)미성년자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될 수 있다(동법 제3조). 그러나 청소년쉼터는 미성년 청소년의 후견 직무를 행할 수 있는 보호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어보호청소년에 대한 후견 권한의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후견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되며,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3조). 이는 미성년자의 진학, 취업, 진료 등 부모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 법정대리인을 지정하는 취지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가출청소년, 홈리스청소년에 대한 쉼터의 법적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관련법의 일부 개정이 요구된다(표 VI-6).78)

⁷⁸⁾ 쉼터소장이 가출청소년에 대한 후견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모든 쉼터에 상시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 볼 수 없다. 다만 가출청소년이 쉼터 입·퇴소를 반복하거나 입소 이후에도 장기간 연락이 되지 않는 등 후견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후견직무를 위해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는 필요하다.

표 Ⅵ-6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2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다.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정신질환자사회 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 족복지시설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2. "부양의무자"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민법」 제931조 및 제932조에 따라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좌동 가. 좌동 나. 좌동 다. 좌동 라. 좌동 마. 좌동 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청소년복 지시설

## 1-5.「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 특별법」제정 검토

「초·중등교육법」,「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청소년의 학업중단 예방과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 밖 청소년 중 상당수는 가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19세미만 미성년자 가운데 가정에서 이탈하여 대안양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가출팸을 포함한 주거취약 청소년의 규모와 실태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아동복지법」,「청소년복지 지원법」등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한 근거법이 마련되어 있으나 대상 연령, 지원내용등에 편차가 있고 이는 결국 서비스 분절과 대상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UN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과 이들에 대한 대안양육 정도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요구되며, 특별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항목을 요약한 것이 표 WI-7이다.79)

⁷⁹⁾ 특별법 제정 시「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 지원법」,「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가출청소년을 포함하여 보호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요보호아동·청소년 등 법률에서 정한 정책대상과의 중복이 발생할 수 없어 조정이 불가 피함. 이러한 이유 등으로 개별 법률을 우선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함.

표 VI-7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 특별법 제정(안)

현행	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 시행계획수립) 제6조(실태조사) 제7조(가정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제8조(지원의 종류) - 각호(주거지원,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기타지원) 포함 제9조(가정 밖 청소년쉼터 설치) 제10조(가정 밖 청소년쉼터 설치) 제11조(위탁보호) 제12조(비용보조) 제13조(비용의 징수) 제14조(권한의 위탁) 제15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연계) 제16조(비밀유지 의무) 제17조(보험가입) 제18조(사후관리) 제19조(신고의무) 제20조(가정 밖 청소년쉼터 종사자 교육) 제21조(가정 밖 청소년쉼터 평가) 제22조(벌칙 및 양벌규정)

#### 3) 정책과제 추진기반

현행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관련법의 소관부처는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이 포함된다. 여성가족부에 법률의 제·개정을 위한 총괄 조정기능이 없다는 점에서 관련법의 제·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요구된다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는 의원발의 방식 뿐 아니라 부처발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사전에 조율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2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전달체계 정비

#### 1) 정책방향

VI

현행 기출청소년 지원정책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하며, 청소년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국한되고 있다. 즉 기출청소년 보호지원 전달체계 정비는 정책의 취지가 현행 쉼터를 기준으로 중앙, 광역단위, 일선 시·군·구까지 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효율,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기존 여성기족부의 위기청소년 인프라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기출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쉼터 운영은 수요자 관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제도 접근성, 분절 없는 서비스 연속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한다.

## 2) 세부 추진과제

표 VI-8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전달체계 정비 세부 추진과제

	예산 사업	법률 제 · 개정	신규 개선	추진시기		주무부처
세부 추진과제				단기 (2년)	중장기 (5년)	(지자체 포함)
2-1. 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 설치	0	_	신규	0		여성가족부
2-2.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및 지정	0	_	신규	0		여성가족부
2-3. 청소년쉼터 유형 탄력 운영	0	_	개선	0		여성가족부
2-4. 쉼터, CYS-Net 간 연계 강화	0	_	개선	0		여성가족부

# 2-1. 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 설치

현행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 운영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중앙지원 기관(hub)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중앙지원기관은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현황 파악을 통해 국가수준의 보호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청소년쉼터 운영의 효율성 효과성을 제고하여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7개 광역시·도에 광역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광역단위 개별 쉼터 간의 연계 중앙과 개별 쉼터 간의 연계 등의 조정을 담당하도록 한다 광역지원센터는 별도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가출청소년 발견(발굴), 보호(입소), 퇴소(연계) 단계별로 시·도 내 쉼터 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 기능으로 한다. 또한 개별 쉼터와 광역단위 외부 전문가 및 자원 간의 연계를 극대화하여 분절 없는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별도 '설치'가 어렵다면 광역단위에서 법인시설가운데 공모, 지정하는 방식으로 인력, 사업비를 우선 투입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중앙지원센터와 광역지원센터의 주요 기능 및 조직, 인력(안)을 요약한 것이 아래 표 VI-9이다.

# 표 VI-9 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 조직(안)

구분	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청소년쉼터)
관리기관	청소년쉼터(109개)	광역 시·도 내 청소년쉼터
주요기능	가정 밖 청소년 종합지원 체계 구축     프로그램 개발 · 보급     쉼터 종사자 교육 · 연수     가출청소년 DB, 행정지원시스템 운영 · 관리     청소년쉼터 홍보사업     관련 기관 협력 · 연계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가출청소년 실태조사 및 통계 생산     청소년쉼터 운영평가 및 컨설팅 등	· 청소년쉼터 연계·운영 지원 · CYS-Net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참여 · 광역단위 연계기관 발굴·연계 네트워크 구축 · 광역단위 가출청소년 DB관리 · 광역단위 쉼터 유형별 확충 계획 수립 등
	<ul> <li>운영위원회(센터장, 한터협, 외부전문가)</li> <li>센터장(1인)</li> <li>통합지원팀(팀장1인, 팀원3인)</li> <li>DB, 행정지원시스템 운영ㆍ관리</li> <li>프로그램 개발ㆍ보급</li> <li>가출청소년 실태조사 및 통계 생산</li> <li>교육평가팀(팀장1인, 팀원2인)</li> <li>쉼터 종사자 교육ㆍ연수</li> <li>청소년쉼터 운영평가 및 컨설팅</li> <li>대외협력팀(팀장1인, 팀원2인)</li> <li>청소년쉼터 홍보 및 예방사업</li> <li>관련 기관 협력ㆍ연계 네트워크 구축</li> <li>사무행정팀(팀장1인, 팀원1인)</li> <li>행정, 사무, 회계관리</li> <li>※ 인력 13명</li> </ul>	・ 센터장(청소년쉼터 소장 겸직) ・ 청소년지원팀(팀장1인, 팀원2명) - 아웃리치 인력 양성 및 배치 - 청소년 보호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쉼터지원팀(팀장1인, 팀원2명) - 가출청소년 DB 관리(퇴소청소년 포함) - 청소년쉼터 행정지원 -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 대외협력팀(팀장1인, 팀원2인) - 쉼터 공동사업 및 특성화 운영 지원 - 연계 네트워크 구축(CYS→Net 연계 포함) - 예방사업 운영 및 지원 ・ 행정원(1인) ・ 기사(1인, 아웃리치 차량관리) ※ 인력 10명
개수	17	17개
예산(안)	약 24억 ¹⁾	약 5억 ²⁾

^{*} 주: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심사소위원회, p.47, 10명 기준 23억 추계에 인건비(3명) 반영 2) 인건비(약 3억 5천), 사업비(약 1억 5천)를 합한 금액임. 기존 쉼터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비 제외

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의 설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2014b, pp.47~48)에서 '쉼터협의회는 사단법인 이고 별도의 중앙지원기관으로 설치할 경우 관리 효율면에서 불편을 야기할 수 있어 상담복지개 발원(이하, 개발원)의 기능으로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보류'된 바 있다.

그러나 중앙지원기관 설치는 '청소년쉼터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이나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VI

쉼터에 대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타 부처의 중앙지원기관 설치 및 운영 사례를 참고할 때 가출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대책 마련의 계기가될 수 있다(여성가족위원회, 2014a, pp.4~5)'. 다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개정법률안에서 중앙지원기관은 '청소년복지지원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데, 동법을 근거로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개발원과 명칭,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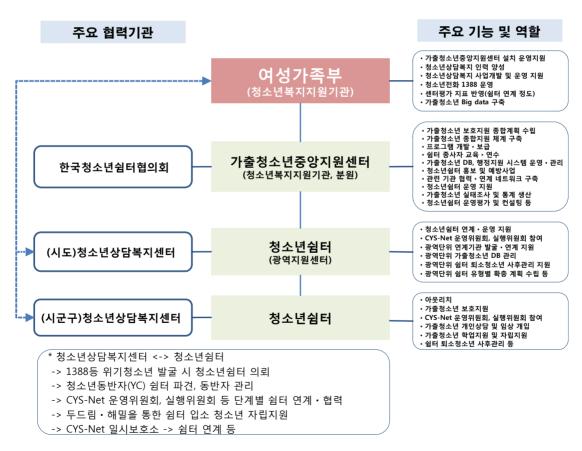
문제는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에 있어서는 현재 개발원이 쉼터협의회에 비해 전문성과 자료를 축척하고 있다 보기 어렵고, 법에서 명시한 개발원의 고유기능에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통합지원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을 두 개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국가재정 건전성,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에 있어효율, 효과 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을 감안할 때 차선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을 하나로 둘 경우 현행 법률에서 개발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을 둘 수 있는데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전북 무주)'이 그 예이다. 따라서 개발원의 정관에서 '청소년복지시설' 통합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확한지에 대한 우선 검토와 이에 따른 현행 법률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표 VI-10).

# 표 VI-10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제22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한다)을 설립한다. 1. 청소년 상담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 2. 청소년 상담・복지 사업의 개발 및 운영・지원 3. 청소년 상담기법의 개발 및 상담자료의 제작・보급 4. 청소년 상담・복지 인력의 양성 및 교육 5.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기관 간의 연계 및 지원 6.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의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사항에 대한 지도 및 지원 7. 청소년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8. 청소년에 관한 상담・복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9. 그 밖에 청소년상담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부수사업	개정안 제22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① 1~8 좌동 9.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통합지원 10. 그 밖에 청소년상담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사업 ②, ③, ④ 좌동
<ul> <li>② 청소년상담원은 법인으로 한다.</li> <li>③ 청소년상담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li> <li>④ 청소년상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li> </ul>	

요약하면 조직도 상 개발원의 분원 형태로 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를 두고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개발원의 기존 인프라와 자원이 쉼터로 원활하게 유입될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특히 중앙지원센터 인력 배치 시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전문성(쉼터 종사 경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쉼터협의회와의 업무 협조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현행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에서 쉼터는 필수연계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참여 정도가 저조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원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허브(hub)라는 점에서 센터, 쉼터 간 연계를 강화하고, 쉼터에 청소년상담사1인을 의무배치해야 하므로(현재 쉼터 당 상담사 0.35명) 센터, 쉼터 간 상담인력 교류, 청소년동반자(YC) 파견지원, 1388로 접수된 가출청소년에 대한 쉼터 즉각 의뢰 종사자 처우 전반에 대한 차별적 요소 해소를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쉼터 입소 청소년 상당수가 가정폭력, 아동학대(방임 포함) 피해자라는점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도 강화되어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도식화한 것이 그림 VI-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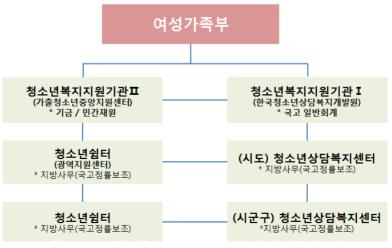
【그림 Ⅵ-1】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 전달체계(I안)

VI

장

두 번째 차선안은 국가 재정건정성을 고려하되 위기청소년 인프라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재B섹터(민간)의 참여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별도 설치하는 안이다. 즉 여성기족부 산하에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을 개발원, 중앙가출청소년지원센터 두 개로 운영하되 후자의 경우 국고에 의한 일반회계가 아닌기금 혹은 민간재원을 활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개발원의 경우 청소년육성기금에 의해 운영지원이이루어졌으나 최근 일반회계로 전환되었고 운영지원 예산은 연간 130억원(2014년의 경우 지방이전비 %억원 포함) 규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청소년육성기금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적절하고, 독일 OFF ROAD KIDS 재단과 같이 대기업의 후원금으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 현재 개발원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의 허브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상은 모든 청소년이다. 즉 개발원은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복지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한다면 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굴, 주거 안정, 기존 상담과 복지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도록 제도 접근성을 강화하는 기능이 주가 될 수 있다. 여기에는 개발원(상담복지지원센터)의 상담, 복지서비스 이용율을 제고하는 것도 포함한다.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일반 청소년과 달리 자발적인 상담복지서비스 이용, 접근이 쉽지 않아 적극적인 발굴(out-reach)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각지대에서 방치될 수밖에 없다. 즉기존의 청소년복지 전달체계가 가정 밖 청소년의 발굴, 접근, 지원에 적합한 수준이라 보기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만 민간재원으로 설치하더라도 독자적인 운영보다는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위상, 초점 대상, 주요 기능 및 역할, 인력 양성 및 교류 등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2안의 논의를 도식화 한 것이 그림 VI-2이다.



【그림 Ⅵ-2】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 전달체계(2안)

### 2-2.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및 지정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청소년복지시설로 청소년자립지원관을 명시하고 있지만 설치가되지 않고 있어 '운영지침 상 불비'에 해당하여 기출청소년 보호지원 전달체계가 사실상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80) 일부 중장기쉼터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조속한법 이행을 통해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의 연속성이 담보될 때 정책 효과성도 제고될 수 있다. 다만 중장기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기능이 부분적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기존 중장기쉼터가운데 일부를 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 지정하거나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립전담요원배치) 부족분을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보호체계의 연속성 측면에서 청소년쉼터에서 제공된 다양한 서비스가 자립, 사회복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성인기 이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19세 이상 성년에 달한 청소년을 핵심 대상으로 정형화된 운영형태보다 이들의 상황과 욕구를 감안한 운영이 요구된다. 이는 19세 이상 청소년으로 이용대상을 제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쉼터를 최소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보호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연속적인 지원을 강조하는 의미이다.

대표적으로 'Foyer'와 같이 주거(housing)와 직업훈련(job training)을 결합한 형태(예, 취업사관학교), 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같이 4~8명 정도의 청소년이 함께 거주하도록 지원하는 형태, 기숙사형(일명 캡슐형쉼터) 등을 들 수 있다. 그룹홈의 경우 장애등급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자립이 어렵고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경계선 지적기능' 청소년 그룹홈을 포함하여 소규모 숙사제로 운영할 수 있다. 기숙사형은 학력취득, 취업(준비)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취지로 임대료에 대한 일부 자부담을 검토할수 있다. 다만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모형은 중장기쉼터 등 기존 쉼터의 전달체계 기능의 재편을 전제로 하는 만큼 예산확보 상황을 고려하되 다양한 형태의 시범운영을 통해 전국확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80) 2014}년 현재 인천시에서 청소년자립지원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비 투입은 없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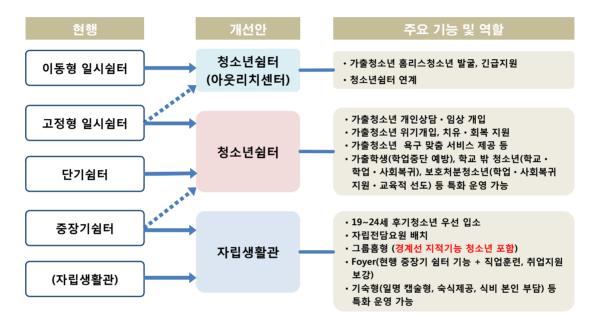
- ※ 청소년자립지원관 주요 대상 및 기능
- ·시설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령 별표3 제1호 다목 참조
- · 입소대상 : (중장기)쉼터 퇴소 예정(퇴소자) 청소년
- · 입소우선순위 : 쉼터 종사자의 소견서를 첨부(자립의지)하고 (중장기)쉼터 예정 및 퇴소자 가운데 19세이상 청소년, 무연고(무의탁) 경계선 지적기능 청소년
- → 현행「아동복지법」아동복지시설인 아동자립지원관의 경우 25세까지 입소
- → 19세 미만 청소년 가운데 쉼터 종사자 등 전문가 추천 시 입소 가능
- · 입소기간 : 6개월을 단위로 심사 후 25세까지 입소
- · 운영형태 :
  - → 공동생활가정형(그룹홈형) : 여러 개의 그룹홈을 쉼터(법인)에서 관리하는 형태, 특화 프로그램 운영 가능
- → FOYER형 : 입소 + 직업훈련, 취업지원 연계형, 작업장 운영 가능 (예, 취업사관학교)
- → 기숙형 : 취업(준비)자, 대학생 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 청소년 대상(일명, 캡슐형). 세탁실, 식당 등 공동사용, 개별공간 제공
- · 지원내용 : 자립전담요원 배치, 개별자립지원계획 수립(자립준비 8대 영역), 생활기술훈련, 자산형성지원, 사후관리

### 2-3. 청소년쉼터 유형 탄력 운영

현행 청소년쉼터 유형 구분에 있어 입소기간을 기준으로 일시,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는 것을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명시한 대로 청소년쉼터 단일 유형을 기반으로 하되 기능에 따라 아웃리치센터(기존의 이동, 고정 일시쉼터)와 청소년쉼터로 구분한다. 즉 기존의 일시쉼터는 아웃리치에 보다 집중하고, 단기 및 중장기쉼터는 입소기간을 지침으로 엄격하게 구분하기보다는 입소 청소년의 상황과 욕구를 고려하여 연장보호, 청소년자립지원관 연계, 가정복귀, 타 시설 연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과 프로그램을 특화하여 지역차원에서 현장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쉼터 유형에 따른 구분, 경계를 희석하여 청소년의 수요와 욕구에 따라 쉼터 운영의 탄력성을 인정한다는 개념이다. 청소년쉼터는 가출, 홈리스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 치유회복, 신체·정신 건강, 학업중단 예방, 교육적 선도 등 위기해소와 자립을 위한 의지, 동기를 갖도록 다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광역단위에서 가출학생(초·중·고 재학생), 학교 밖 청소년(검정고시 준비, 두드림·해밀 프로그램 대상 등), 보호처분 대상 청소년(소년법에 의한 감호위탁 대상 등) 등을 위한 특화 운영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현재 가출경험 청소년 규모 대비 청소년쉼터

개소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특화 쉼터 운영 여부는 추후 '광역지원센터'에서 시·도 내 상황과 광역단위 쉼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한편 일시쉼터의 아웃리치 기능 강화를 위해 아웃리치 인력,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자립지원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자립지원요원'을 추가 배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3-2, 3-3에서 후술). 현행 쉼터 유형별 운영체계에 대한 개선안과 각 체계의 주요기능 및 역할을 도식화 한 것이 그림 VI-3이다.



【그림 Ⅵ-3】청소년쉼터 유형 운영(안)

#### 2-4. 쉼터, CYS-Net 간 연계 강화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쉼터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CYS-Net)와 쉼터와의 연계가 '충분하다'는 응답률은 가출청소년 발견(발굴)단계 23.6%, 보호(입소, 이용)단계 20%, 퇴소(연계)단계 1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에 지원을 요청해본 적 없다', '지원을 요청했으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경우도 전체 쉼터 10개 중 2개에 달하였다. 쉼터 종사자의 주관적 응답이라는 점에서 일부 한계는 있으나 지역 내 위기청소년 허브라 할 수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CYS-Net 필수연계기관이자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시설인 청소년쉼터 간의 연계가 사실상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다만 '센터에 지원을

요청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은 적 있다'는 쉼터도 10개 중 4개에 달하였는데 전달체계를 정비하여 위기청소년 인프라 간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현행 CYS-Net 운영위원회(광역단위 대표 쉼터), 실행위원회(시군구 대표 쉼터)에 청소년쉼터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둘째, 헬프콜 청소년 전화 1388, 1388청소년지원단 등을 통해 가출청소년이 접수된 경우 청소년쉼터(광역지원센터)로 즉시 의뢰하도록 한다. 가출청소년을 쉼터에 의뢰한 건수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평가지표에 실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위기청소년 가운데 가출청소년 보호지원과 관련한 가점(加點)지표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셋째, 현행 CYS-Net에서 일시보호소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행 지역 내 쉼터수와 여건을 감안할 때 일시보호소 운영이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24시간 이내 보호(현행 7일)를 원칙으로 2일 이상 입소를 통한 보호지원이 필요한 경우 쉼터에 의뢰하도록 지침 개정이 요구된다. 다만 쉼터 미설치 지역의 상담복지센터 일시보호소는 제외한다.

넷째, 쉼터에서 수요가 있을 경우 센터의 청소년동반자(YC)를 쉼터로 파견하여 가출청소년이 '찾아가는 상담'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통합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쉼터에서 위기청소년 발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활동과 실적 역시 센터 평가지표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청소년쉼터 표준 운영매뉴얼을 개발하고 여기에 센터와의 연계업무와 처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일선 쉼터에 보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두드림·해밀 등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학업지원, 자립지원에 쉼터 입소 청소년을 적극 포함하여야 한다. 쉼터 입소 청소년에 대한 센터의 통합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 쉼터의 10개 중 2개(27.5%)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외부 기관과의 상호협력은 유사, 중복 사업으로 인한 피로와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기관 간 연계 정도를 쉼터, 센터 평가지표에 각각 반영할 필요가 있다.

#### 3) 정책과제 추진기반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전달체계 정비는 일차적으로 예산확보를 전제로 한다. 2014년도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 국비 규모는 약 87억에 불과하여 정책취지에 맞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중·고교생 10명 중 1명 이상이 가출을 경험하고 있고 청소년의 가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조에 달한다는 일부 연구결과를 참고할 때 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 설치, 청소년자립지 원관 설치,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확대는 미래세대의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달체계를 정비하는 노력은 결국 효율과 편익을 극대화하고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현행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은 국비에 의한 일반회계가 아닌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활동진흥원의 경우 최근 운영비가 육성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안정적 운영 기반이 마련된 예가 있는 만큼 '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는 최소한 일반회계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다만 청소년복지지원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닌 중앙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할 경우 국가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민간재원의 유입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한다. 이 외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쉼터 운영 지원예산의 추가 확보를 위해 경제, 사회개발예산의 일정 비율을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에게 투자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접근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특수목적세 및 각종 부담금 신설, 아동·청소년복지기금 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이 각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어부처에서 독자적, 산발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을 '아동·청소년복지예산' 총액을 각 부처가 사업 영역을 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방식으로의 전환도 검토되어야 한다.

# 3 청소년쉼터 확충 및 운영지원 개선

### 1) 정책방향

가출청소년, 홈리스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부정적 사회화를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성인기 이행을 지원하여 사회적 비용 발생을 감소시킨다. 현행 청소년쉼터의 여건을 고려할 때 예방적접근은 불가능한 수준이며, 아웃리치를 포함한 사후적 개입에도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정책대상의 규모에 따른 전반적인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정책효과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 2) 세부 추진과제

### 표 VI-11 청소년쉼터 확충 및 운영지원 개선 세부 추진과제

		нг	МП	추진	시기	주무부처
세부 추진과제	예산 사업	법률 제·개정	신규 개선	단기 (2년)	중장기 (5년)	(지자체 포함)
3-1. 청소년쉼터 확충 계획 수립	0	_	개선	0		여성가족부
3-2. 아웃리치센터(일시쉼터) 증설	0	_	개선	0		여성가족부
3-3. 자립지원요원 배치	0	_	신규		0	여성가족부
3-4. 법정 인력배치 기준 준수	0	_	개선	0		여성가족부
3-5. 종사자 근로기준법 준수	0	_	개선		0	여성가족부

### 3-1. 청소년쉼터 확충 계획 수립

남미애(2014, pp.48-49)는 청소년 인구 6만 명 당 쉼터 1개 설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최소 60개소에서 99개소까지 증설해야 한다고 추산한 바 있고, 현행 가출청소년의 규모를 고려하면 1천 2백 개 이상 증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가출경험률과 쉼터의 보호율을 추정하여 이를 통해 가출청소년 1천 명 당 쉼터 1개 설치를 기준으로 쉼터 추가 설치수를 추산하였다. 아래 표 VI-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기, 중장기 유형 구분 없이 최소 약 65개소의 증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형 구분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각 쉼터의 초점대상과 특화운영 여부 등은 광역지원센터(청소년쉼터)가 주축이 되어 시·도의 상황과 여건, 수요자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우선적으로 광역단위에 1개소 이상의 설치가 필요하다.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하는 아동복지시설인 '자립생활관'의 경우 전국 12개 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입소대상을 아동복지시설 뿐 아니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까지 확대하여 쉼터를 퇴소한 18세미만 청소년(아동)도 입소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지침에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자립지원관은 19세 이상 24세 이하 후기청소년을 우선입소 대상으로 하여 촘촘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설계가 요구된다.

## 표 VI-12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 보호율 및 증설 수(추정)

(단위 : 명, %, 개소)

	자치구	청소년쉼터						가출	가출	가출	쉼터
지역		일시(22)	일시담당	단기	(50)	중장기	(37)	청소년수	기술 청소년	기술 청소년	^{占니} 증설 ⁴⁾
	(개)	(이동형)	자치구(개)	남	여	남	여	/쉼터개당 ¹⁾ (F=D/E)	발생율 ²⁾	보호율 ³⁾	(기)
전체	251	22(1)	11.4	26	24	16	21	4,409	45.8	1.83	65
서울	25	2(1)	12.5	3	2	1	3	7,718	47.0	0.17	8
부산	16	2(1)	8	1	1	1	1	6,512	51.4	0.09	7
대구	8	1	8	1	1	1	1	4,788	37.5	0.11	5
인천	10	2	5	2	2	1	1	2,774	38.7	0.41	3
광주	5	1(1)	5	1	1	1	1	4,506	54.0	0.19	4
대전	5	2(1)	2.5	1	1	1	1	3,095	47.7	0.32	3
울산	5	_	_	1	1	1	1	2,914	47.7	0.31	3
세종	_	_	_	_	_	_	_	_	_	_	
경기	44	4(1)	11	7	7	1	3	5,450	45.8	0.28	5
강원	18	1	18	1	1	1	1	2,673	45.4	0.28	3
충북	14	1	14	1	1	1	1	2,712	44.0	0.16	3
충남	16	1	16	2	1	1	1	3,692	57.9	0.27	4
전북	15	1	15	1	1	1	1	2,520	34.0	0.25	3
전남	22	1	22	1	1	1	1	4,148	46.8	0.23	4
경북	24	1	24	1	1	1	2	3,402	42.2	0.19	3
경남	22	1	22	1	1	1	1	5,629	43.2	0.37	6
제주	2	1	2	1	1	1	1	1,402	56.1	2.42	1

- * 주: 1) 가출 청소년 규모(추정)를 쉼터 개소수로 나눈 값으로 소수점 이하 버림.
  - 2) 가출청소년 발생율(%)=(가출청소년 수/청소년 인구) × 1,000
  - 3) 가출청소년 보호율(%)=(청소년쉼터 입소 현원/가출청소년 수) × 1,000
  - 4) 중앙지원센터 1개, 광역지원센터 16개(세종제외), 청소년자립지원관(시도별 1개), 일시(자치구별 1개)를 제외한 수치임. 단기 및 중장기 유형 구분없이 가출청소년 1천 명 당 쉼터 1개 증설로 추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3-2. 아웃리치센터(일시쉼터) 증설

이 연구에서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웃리치를 강화하여 가출 이후 이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이를 위해 일시쉼터의 경우 이동형, 고정형 구분 없이 기초자치구별로 가동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물리적 거리를 고려할 때 광역시의 경우 자치구 5개 당 1개 이상 설치가 필요한데 이는 하루에 1개 자치구를

 $\overline{\mathsf{VI}}$ 

아웃리치 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것이다. 다만 예산상의 문제와 가출청소년 발생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시·도 단위의 가출청소년 빅데이터(big data)의 수집, 분석을 통해 아웃리치 초점 지역을 선정하여 우선 증설하도록 한다. 현재 일시쉼터 1개가 감당하는 자치구 수가 평균 11개에 달하고 있고, 도 지역의 경우에도 기초자치구 수, 관할 범위에 관계없이 1개씩 설치되어 있어 아웃리치에서 배제되는 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표 VI-13, 표 VI-14).

# 표 VI-13 일시쉼터 기능 추가에 따른 지원액(2014년)

(단위: 천원)

7 1		일시				
구분		아웃리치	야간보호	의료		
		49,450	65,000	14,717		
국비	(50%)	24,725	32,500	7,358		
인건비	(A)	43,000	43,000	_		
단/	가(연)	21,500	21,500	_		
지원	년인원	2명	2명	_		
사업비	(B)	6,450	22,000	14,717		
운영비	(C)		_	_		

### 표 Ⅵ-14 일시쉼터 유형별 단가(2014년)

(단위: 천원)

O 54		기능유무	중 미어미		
유형	아웃리치	야간보호	의료	총 사업비	국비(50%)
가	_	_	_	143,333	71,667
나	0	_	_	192,783	96,392
다	0	0	_	257,783	128,892
라	0	_	0	207,500	103,750
마	0	0	0	272,500	136,250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기초자치구 수 대비 설치율이 90%에 달한다. 기출청소년의 조기발굴과 긴급보호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쉼터 역시 기초자치구 단위에 설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위기청소년 인프라 간의 협업을 통해 서비스 공백, 분절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011년 쉼터의 기능특화사업으로 찾아가는 거리상담지원, 야간보호 등이 추가되면서 전년 대비 실적이 대폭 증가한 바 있다. 따라서 자치구별 청소년 인구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정형 일시쉼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이동형(차량) 쉼터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이 경우 광역지원센터(청소년쉼터)에서 시·도의 상황을 감안하여 이동형, 고정형쉼터를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일시쉼터는 아웃리치센터의 개념으로 기초자치구에 모두 설치할 경우 229개소, 기초자치구 5개 당 1개를 설치할 경우 46개소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 또한 현재 일시쉼터 1개가 담당하고 있는 기초자치구 수는 평균 11개로, 담당 자치구 수를 최소 10개 이하로 줄일 경우 일시쉼터 7개의 증설이 필요하다.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은 지자체 매칭(50%)으로 지원되므로 최소 7억 2천 1백만 원, 최대 256억 6천 5백만 원의 국비가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 아웃리치센터(일시쉼터) 증설 수에 따른 소요예산을 추산한 것이 표VI-15이다.

### 표 VI-15 아웃리치센터(일시쉼터) 증설 수 및 소요예산 추산

구분	산출근거
아웃리치센터(이동형 일시쉼터) ²⁾	224,152천원/1개소 * 229개소 = 51,330,808천원
아웃리치센터(고정형 일시쉼터) ³⁾	203,158천원/1개소 * 46개소 = 9,345,268천원
아웃리치센터(고정형 일시쉼터) ⁴⁾	203,158천원/1개소 * 7개소 = 1,442,106천원

- * 주: 1) 단가는 각 쉼터 유형별 세입 평균을 기준으로 함.
  - 2) 기초자치구(251개) 단위별 설치 기준 추산
  - 3) 기초자치구 5개 당 1개 아웃리치센터 설치 기준 추산
  - 4) 기초자치구 10개 당 1개 아웃리치센터 설치 기준 추산(현행은 약 11개)임. 이 경우 서울 1개, 경기 1개, 강원 1개, 충북 1개, 충남 1개, 전북 1개, 전남 1개 등 7개 추가 설치 필요 추산

#### 3-3. 자립지원요원 배치

현행 법률과 지침에서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자립지원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15세 이상에 달한 아동은 '개별자립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시설에 자립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쉼터의 경우 19세 미만 청소년을 우선입소하도록 하고 있나 전체 정원 중 19세 이상 후기 청소년은 약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자립,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중장기쉼터에 자립지원관의 우선 설치와 현 중장기쉼터에 자립지원요원 1인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중장기쉼터는 자립에 앞서 회복, 치유에 초점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쉼터 중 일부가 자립지원관으로 기능을 변경할 경우에 한하여 자립지원요원 1인을 우선 배치할 수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광역단위에 최소 1명 이상은 배치하도록 하고, 광역지원센터에서 인력운용을 담당하여 지역 내 중장기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순회하면서 자립지원 대상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 중장기쉼터에 자립지원요원1인을 각각 배치할 경우 약 8억 4천만 원, 광역단위에 청소년자립 지원관 1개소를 설치하거나, 시·도별 중장기쉼터 1개소를 자립지원관으로 지정하여 요원 1인을 배치할 경우 약 3억 6천만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자립지원요원은 쉼터에서 치유, 회복을 통해 자립능력과 욕구가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와 자원 연계, 개별자립지원계획 수립, 종사자 대상 교육 등을 담당한다. 현행「아동복지법」과의 형평성과 연계성을 고려할 때 자립지원 대상 청소년의 연령은 15세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자립지원요원 배치에 따른 소요예산과 자립지원요원의 역할을 요약한 것이 표 VI-16이다.

표 Ⅵ-16 자립지원요원 배치 소요예산 및 역할(안)

 구분	산출근거
중장기쉼터 ¹⁾	22,800천원/1명 * 37개소 = 843,600천원
<u>청소년자립지원관²⁾</u>	22,800천원/1명 * 16개소 = 364,800천원
자립지원요원의 역할 ³⁾	<ul> <li>· 청소년의 적성 및 욕구 파악, 자립능력, 수준 등 역량 평가</li> <li>· 정기적 진로상담,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li> <li>· 자립에 필요한 주거, 취업, 자산형성, 정서지원 등 공적서비스 및 지역 내 후원 자원 연계</li> <li>· 15세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 실시</li> </ul>
자립준비 8대 영역 ⁴⁾	· 일상생활기술 : 일상생활에 필요한 세탁, 청소, 예의범절, 요리하기 등 (세탁, 청소, 영양, 음식, 장보기, 주방용품, 요리, 문화, 식사예절) · 자기보호기술 : 개인위생관리, 응급처치방법, 성교육, 약물중독교육 등 (위생, 응급, 건강, 여가시간, 성, 법, 안전) ·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 지역 내 자원 조사, 활용 (대중교통, 관공서, 여행, 운전, 도서관, 자원봉사) · 돈관리기술 : 경제관념, 효율적 용돈관리 등 (구매, 환불, 비교쇼핑, 지출계획, 저축, 신용카드) · 사회적기술 : 대인관계 등 사회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기 등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갈등, 분노관리, 우정, 의사결정, 문제해결, 예절) ·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 : 진학 및 직업탐색 (직업, 진로계획, 이력서작성, 면접) · 직장생활기술 : 이력서 작성, 직장생활하기 등 (고용유지, 이직, 권리와 의무, 직장 내 의사소통, 기본업무 능력) · 거주지 마련하기 : 집구하기, 계약, 이사 등 거주지 마련방법 습득 (집구하기, 임대계약, 법적관리, 룸메이트, 에너지절약, 집관리, 이사계획)

^{*} 주: 1) 연봉하한액 기준(상한액은 39.600천원)이며 기말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기타 제수당 포함,

²⁾ 시도별 1개소 설치 기준(세종시 제외)

^{3)「}아동복지법」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참조

⁴⁾ 아동자립지원사업단, http://www.jarip.or.kr/adong/sub03 2 1.asp?menuCategory=3 (인출일: 2014.11.11.)

#### 3-4. 법정 인력배치 기준 준수

청소년쉼터 배치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법정 배치기준은 준수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동형 일시쉼터는 평균 5.3명(편차 2명), 고정형일시쉼터와 단기쉼터는 4.6명(편차 1.7명), 중장기쉼터는 3.3명(편차 1명)에 불과하였다. 따라서최소한 법정 배치기준은 준수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일시쉼터는 최소 1명 이상, 단기쉼터는최소 1명에서 최대 5명, 중장기쉼터는 1명 이상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쉼터 유형에 따른인력배치보다는 고위기청소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입소, 이용자 수 대비 적정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 ※ 청소년쉼터 적정 인력 기준

- 현행 : 일시 6인, 단기(10인 미만) 4인, 단기(10∼15인 미만) 5인, 단기(15∼20인 미만) 8인, 단기(20∼25인 미만) 9인. 중장기쉼터 4인. 청소년자립지원관 3인
- 선행연구 : 일시 12인, 단기 11~12인, 중장기 5인(정익중 외, 2009)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 성매매 여성지원시설 종사자 수는 15~20인 미만의 경우 종사자 7명(시설장, 사무국장, 상담원 3명, 사무지원 1명, 취사원 1명), 20인 이상인 경우 9명 수준임
-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 보호소년 약 100명 당 직원 80명 수준으로 배치
- 개선(안) : 일시, 단기, 중장기쉼터 유형 구분없이 보호소년 5명당 종사자(보호·상담원) 1인 배치(현행 지침 준수)
- ※ 출처: 남미애, 2014, p.62 참조

이 연구에서 쉼터 유형별 상담원 1인당 일 평균 담당 청소년수를 산출해 보면 이동형 일시쉼터는 약 141명, 고정형 일시쉼터는 약 25명, 단기쉼터는 약 12명, 중장기쉼터는 약 7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법정 인력배치 기준은 상담원 1인당 담당 청소년의 수를 약 5명으로 산정한 것임을 감안할 때 이를 준수한 인력의 추가 배치가 우선 이루어져야 하고 이후 상담원 1인당 담당 사례수에 따라 추가 배치가 요구된다. 쉼터 유형별 상담원 1인당 담당 청소년 수에 대한 산출근거는 아래와 같다(표 VI-17).

### 표 VI-17 쉼터 유형별 상담원 l인당 담당 청소년 수

구분	산출근거
이동형 일시쉼터	· 일 평균 이용자 약 564.50명(편차 395.31명) · 상담원 1인당 약 141명 담당
고정형 일시쉼터	·일 평균 입소자 약 11명(남, 여), 이용자 102.44명(편차 135.59명) ·총 113.44명 / 상담원 4.6명 = 약 24.66명 / 상담원 1인
단기쉼터	·일 평균 입소자 약 21명, 이용자 약 35명(편차 47.24명) ·총 56명 / 상담원 4.6명 = 약 12.17명 / 상담원 1인
중장기쉼터	·일 평균 입소자 약 14명, 이용자 약 10명(편차 0명) ·총 24명 / 상담원 3.3명 = 약 7.27명 / 상담원 1인

^{*} 주: 쉼터 유형별 일 평균 이용자 및 상담원 수는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적용한 것임(3장 참조).

한편 현행 법정 배치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할 경우 쉼터 유형별 소요 인건비를 산출한 것이 표 V-18이다. 최소 약 190억 원이 소요되며 지방 매칭비를 고려할 때 국비(중앙)로 인건비만 최소 95억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4년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예산 (국비)총 액은 87억에 불과한데 이 중 25%를 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어 최소인력 배치 기준과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함께 현행 쉼터 운영지침을 근거로 쉼터 유형별 소요 인건비 총액을 산출하였는데 단기쉼터(10 인 미만)를 기준으로 현행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을 적용한 결과 약 3천 8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청소년쉼터에서 보호지원하는 고위기청소년의 특성은 차치하고라도 같은 생활시설임에도 청소년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 간에 인건비 격차는 결국 유사 동종업간 차별일 수 있고, 결국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임금 격차의 해소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표 VI-18).

# 표 VI-18 현행 쉼터 유형별 소요 인건비 산출

(단위 : 개소, 원)

				\L II · · /II—, L:/
	쉼터 유형	쉼터수 (개소)	인건비 (쉼터 개 당)	합계
	전체	109		19,793,257,725
일시	이동형	5	199,639,938	998,199,690
쉼터 ²⁾	고정형	17	199,639,938	3,393,878,947
	10인 미만	3	138,092,329	414,276,987
단기	10인 ~ 15인 미만	22	168,866,128	3,715,054,816
쉼터	15인 ~ 20인 미만	21	241,573,436	5,073,042,156
	20인 ~ 25인 미만	4	272,347,239	1,089,388,956
	중장기쉼터	37	138,092,329	5,109,416,173

^{*} 자료: 산출근거는 현행 청소년쉼터 운영지침의 인건비 기준을 적용함.

^{*} 주: 1) 아웃리치 인력 포함 이동형 쉼터를 제외한 법정 인력배치 기준을 적용함

²⁾ 일시쉼터의 경우 이동형, 고정형 인건비를 동일하게 적용함.

³⁾ 조사 이후 1개소 폐쇄로 총 109개소 기준으로 산출함.

# ※ 청소년쉼터 소요 인건비 산출

# O 단기쉼터(10인 미만) 인건비 산출근거

		하모		사초내업	(닌위 · 현)
71		<u>항목</u>	1110	산출내역	
관_	항	목	내용	71H7/45=H\ 0.040.444.V4H\ V407II 9I	0.4.000.000
			소장	기본급(15호봉) 2,019,141×1명×12개월	24,229,692
		월급여	상담원	기본급(5호봉) 1,167,445×2명×12개월	28,018,680
			행정/취사원	기본급(3호봉) 911,425×1명×12개월	10,937,100
				합계	63,185,472
				기말수당 2,019,141×1명×200%	4,038,282
			소장	가계지원비 2,019,141×1명×250%	5,047,852
				명절휴가비 2,019,141×1명×100%	2,019,141
				초과근무수당 14,491×1명×57시간×12개월	9,911,844
				합계	21,017,119
		제수당	상담원	기말수당 1,167,445×2명×200%	4,669,780
				가계지원비 1,167,445×2명×250%	5,837,225
				명절휴가비 1,167,445×2명×100%	2,334,890
				초과근무수당 8,378×2명×57시간×12개월	11,461,104
사 무	인			합계	24,302,999
두 비	건		행정/취사원	기말수당 911,425×1명×200%	1,822,850
-,	비			가계지원비 911,425×1명×250%	2,278,562
				명절휴가비 911,425×1명×100%	911,425
				초과근무수당 6,541×1명×57시간×12개월	4,474,044
				합계	112,979,634
				국민연금 117,992,471×2.945%	3,474,878
				국민건강 117,992,471×4,50%	5,309,661
			4대보험	장기요양 5,309,661×6.55%	347,782
		4대보험		고용보험 72,745,660×0.80%	581,965
				산재보험 72,745,660×0.76%	552,867
				합계	10,267,153
			퇴직적립금	퇴직적립금 117,992,471×1/12	9,832,705
		퇴직적립금		합계	9,832,705
				 소계	133,079,492

^{*} 주: 1) 소장 1, 상담원 2, 행정/취사원 1, 4인 기준

²⁾ 예산 단가가 현행 지침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실제 편성된 예산과 차이가 있음.

# O 단기쉼터(10~15인 미만) 인건비 산출근거

	항 =	 목	산출내역	(닌위 · 현	
관 항	목	<u>.</u> 내용	"		
		소장	기본급(15호봉) 2,019,141×1명×12개월	24,229,692	
	01 7 01	상담원	기본급(5호봉) 1,167,445×3명×12개월	42,028,020	
	월 급여	행정/취사원	기본급(3호봉) 911,425×1명×12개월	10,937,100	
			합계	77,194,812	
			기말수당 2,019,141×1명×200%	4,038,282	
		1 71	가계지원비 2,019,141×1명×250%	5,047,852	
		소장	명절휴가비 2,019,141×1명×100%	2,019,141	
			초과근무수당 14,491×1명×57시간×12개월	9,911,844	
			합계	21,017,119	
		상담원	기말수당 1,167,445×3명×200%	7,004,670	
			가계지원비 1,167,445×3명×250%	8,755,837	
	제수당		명절휴가비 1,167,445×3명×100%	3,502,335	
			초과근무수당 8,378×3명×57시간×12개월	17,191,656	
살 인			합계	36,454,498	
무건비			기말수당 911,425×1명×200%	1,822,850	
미비		해저/치미이	가계지원비 911,425×1명×250%	2,278,562	
			행정/취사원	명절휴가비 911,425×1명×100%	911,425
			초과근무수당 6,541×1명×57시간×12개월	4,474,044	
			합계	9,486,881	
			국민연금 144,153,310×2.945%	4,245,314	
			국민건강 144,153,310×4.50%	6,486,898	
	4대보험	4대보험	장기요양 6,486,898×6.55%	424,891	
	4대모임		고용보험 98,906,499×0.80%	791,251	
			산재보험 98,906,499×0.76%	751,689	
			합계	12,700,043	
	퇴직	퇴직적립금	퇴직적립금 144,153,310×1/12	12,012,775	
L	적립금		합계	12,012,775	
			소계	168,866,128	

^{*} 주: 1) 소장 1, 상담원 3, 행정/취사원 1, 5인 기준

²⁾ 예산 단가가 현행 지침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실제 편성된 예산과 차이가 있음.

# O 단기쉼터(15~20인 미만) 인건비 산출근거

		<u></u> 항 목		산출내역	(닌위·현)				
<u></u> 관	항	목	내용	건글네 그					
_		7	<u>'</u>	'	소장	기본급(15호봉) 2,019,141×1명×12개월	24,229,692		
			상담원	기본급(5호봉) 1,167,445×5명×12개월	70,046,700				
		월 급여	행정/취사원	기본급(3호봉) 911,425×1명×12개월	10,937,100				
			00,1112	합계	105,213,492				
				기말수당 2,019,141×1명×200%	4,038,282				
				가계지원비 2,019,141×1명×250%	5,047,852				
			소장	명절휴가비 2,019,141×1명×100%	2,019,141				
				초과근무수당 14,491×1명×57시간×12개월	9,911,844				
				· 합계	21,017,119				
				기말수당 1,167,445×5명×200%	11,674,450				
		제수당	상담원	가계지원비 1,167,445×5명×250%	14,593,062				
				명절휴가비 1,167,445×5명×100%	5,837,225				
				초과근무수당 8,378×5명×57시간×12개월	28,652,760				
사	인			합계	60,757,497				
무 비	건			기말수당 911,425×2명×200%	3,645,700				
-1	비		-U-T-1/-1-11-01	가계지원비 911,425×2명×250%	4,557,125				
							행정/취사원	명절휴가비 911,425×2명×100%	1,822,850
				초과근무수당 6,541×2명×57시간×12개월	8,948,080				
				합계	18,973,755				
				국민연금 205,961,863×2.945%	6,065,576				
				국민건강 205,961,863×4.50%	9,268,283				
		4대보험	4대보험	장기요양 9,268,283×6.55%	607,072				
		4대모임		고용보험 160,715,052×0.80%	1,285,720				
				산재보험 160,715,052×0.76%	1,221,434				
				합계	18,448,085				
		퇴직 적립금	퇴직적립금	퇴직적립금 205,961,863×1/12	17,163,488				
		되역 역립급		합계	17,163,488				
				소계	241,573,436				

^{*} 주: 1) 소장 1, 상담원 5, 행정/취사원 1, 8인 기준

²⁾ 예산 단가가 현행 지침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실제 편성된 예산과 차이가 있음.

# O 단기쉼터(20~25인 미만) 인건비 산출근거

		하모		사초내여	(21 - 6)
	-1	항목	LII.O	산출내역	
관	항	목	내용		0.4.000.000
			소장	기본급(15호봉) 2,019,141×1명×12개월	24,229,692
		월급여	상담원	기본급(5호봉) 1,167,445×6명×12개월	84,056,040
			행정/취사원	기본급(3호봉) 911,425×1명×12개월	10,937,100
				합계	119,222,832
				기말수당 2,019,141×1명×200%	4,038,282
			소장	가계지원비 2,019,141×1명×250%	5,047,852
			_0	명절휴가비 2,019,141×1명×100%	2,019,141
				초과근무수당 14,491×1명×57시간×12개월	9,911,844
				합계	21,017,119
				기말수당 1,167,445×6명×200%	14,009,340
		제수당	상담원	가계지원비 1,167,445×6명×250%	17,511,675
				명절휴가비 1,167,445×6명×100%	7,004,670
				초과근무수당 8,378×6명×57시간×12개월	34,383,312
사	인			합계	72,908,997
무 비	건			기말수당 911,425×2명×200%	3,645,700
•	미비비		행정/취사원	가계지원비 911,425×2명×250%	4,557,125
				명절휴가비 911,425×2명×100%	1,822,850
				초과근무수당 6,541×2명×57시간×12개월	8,948,080
				합계	18,973,755
				국민연금 232,122,703×2.945%	6,836,013
				국민건강 232,122,703×4.50%	10,445,521
		4 EU LU = I	4대보험	장기요양 10,445,521×6.55%	684181
		4대보험		고용보험 186,875,892×0.80%	1,495,007
				산재보험 186,875,892×0.76%	1,420,256
				· 합계	20,880,978
		-1-1-1-1-1	퇴직적립금	퇴직적립금 232,122,703×1/12	19,343,558
		퇴직 적립금		합계	19,343,558
				소계	272,347,239

^{*} 주: 1) 소장 1, 상담원 6, 행정원 1, 취사원 1, 9인 기준

²⁾ 예산 단가가 현행 지침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실제 편성된 예산과 차이가 있음.

# O 단기(10인미만), 중장기쉼터 인건비(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적용)

_					(セカ・セ			
항 목				산출 내역				
관	항	목	내용					
			소장	기본급(15호봉) 3,513,000×1명×12개월	42,156,000			
		월 급여	상담원	기본급(5호봉) 1,785,000×2명×12개월	42,840,000			
			행정/취사원	기본급(3호봉) 1,785,000×1명×12개월	21,420,000			
				합계	106,416,000			
				가족수당 60,000×12개월	720,000			
			소장	명절휴가비 3,513,000×1명×120%	4,215,600			
				초과근무수당 25,212×1명×57시간×12개월	17,245,000			
				합계	22,180,600			
		제 수당	상담원	가족수당 60,000×2명×12개월	1,440,000			
	인 건 비			명절휴가비 1,785,000×2명×120%	4,284,000			
				초과근무수당 12,811×2명×57시간×12개월	17,525,448			
사			합계		23,249,448			
무			행정/취사원	가족수당 60,000×12개월	720,000			
비				명절휴가비 1,785,000×1명×120%	2,142,000			
				초과근무수당 12,811×1명×57시간×12개월	8,762,724			
				합계	11,624,724			
				국민연금 163,470,772×2.945%	4,814,214			
				국민건강 163,470,772×4.50%	7,356,184			
		4대보험	4대보험	장기요양 7,356,184×6.55%	481,830			
				고용보험 99,134,172×0.80%	793,073			
				산재보험 99,134,172×0.76%	753,419			
			합계		14,198,720			
		티지 저리그	퇴직적립금	퇴직적립금 163,470,772×1/12	13,622,564			
		퇴직 적립금		· 합계	13,622,564			
				소계	191,292,056			

^{*} 주: 1)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 안내 지침 준용, 소장 1, 상담원 2, 행정원 1, 취사원 1, 4인 기준 2) 예산 단가가 현행 지침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실제 편성된 예산과 차이가 있음.

# O 청소년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비교

종사자 연봉		산출 내역				
		기본급(15호봉) 2,019,141×1명×12개월	24,229,692			
		기말수당 2,019,141×1명×200%	4,038,282			
	٨	가계지원비 2,019,141×1명×250%	5,047,852			
	소장	명절휴가비 2,019,141×1명×100%	2,019,141			
		초과근무수당 14,491×1명×57시간×12개월	9,911,844			
		합계	45,246,811			
		기본급(5호봉) 1,167,445×1명×12개월	14,009,340			
		기말수당 1,167,445×1명×200%	2,334,890			
청소년	11-101	가계지원비 1,167,445×1명×250%	2,918,613			
복지시설	상담원	명절휴가비 1,167,445×1명×100%	1,167,445			
		초과근무수당 8,378×1명×57시간×12개월	5,730,552			
		합계	26,160,840			
	취사원	기본급(5호봉) 1,167,445×1명×12개월	10,937,100			
		기말수당 1,167,445×1명×200%	1,822,850			
		가계지원비 1,167,445×1명×250%	2,278,563			
		명절휴가비 1,167,445×1명×100%	911,425			
		초과근무수당 8,378×1명×57시간×12개월	4,474,044			
			20,423,982			
		- 총합계	91,831,633			
		기본급(15호봉) 3,513,000×1명×12개월	42,156,000			
		가족수당 60,000×12개월	720,000			
	소장	명절휴가비 3,513,000×1명×120%	4,215,600			
		초과근무수당 25,212×1명×57시간×12개월	17,245,008			
		합계	64,336,608			
		기본급(5호봉) 1,785,000×1명×12개월	21,420,000			
		가족수당 60,000×1명×12개월	720,000			
사회	상담원	명절휴가비 1,785,000×1명×120%	2,142,000			
복지시설		초과근무수당 12,811×1명×57시간×12개월	8,762,724			
		합계	33,044,724			
		기본급(5호봉) 1,785,000×1명×12개월	21,420,000			
		가족수당 60,000×1명×12개월	720,000			
	행정원 /	명절휴가비 1,785,000×1명×120%	2,142,000			
	취사원	초과근무수당 12,811×1명×57시간×12개월	8,762,724			
		합계	33,044,724			
		총합계	130,426,056			

주 : 청소년복지시설 예산 단가의 경우 현행 지침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실제 편성된 예산과 차이가 있음.

VI

## 3-5. 종사자 근로기준법 준수

쉼터는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시설장, 행정·취사원을 제외하면 일시쉼터는 4인, 단기쉼터는 최소 2인에서 최대 6인, 중장기쉼터는 2인의 상담원이 교대로 24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위기청소년에 대한 위기개입과 상시적 개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쉼터의 특성상 최소 2인 이상이 상시근무 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할 때 근로시간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일시쉼터 8개소에 대한 야간보호 예산(6천 5백만원/1개소 * 50%)만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초과, 야간, 휴일 근로 시에 대한 수당을 편성하고 교대인력을 배치해 나가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현재 여건 상 교대인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쉼터 상담원이 교육·연수, 휴가,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남은 상담원이 이를 감당하거나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현행 사업지침 등에서 근로기준법 준수를 명확히고지하고 있으므로, 현장에서 지침 이행이 가능하도록 시간 외 수당 지급 등 인건비 증액반영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개별 쉼터에 1인 이상 배치해야 하는 청소년상담사 배치도 평균 0.4명(2, 3급 포함)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쉼터 인력 충원 전 단계로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청소년지도 자를 대상으로 교대인력을 양성하고 각 시·도별로 인력풀을 구성하고 배치하여 쉼터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청소년동반자(YC)의 경우 반일제(6사례/YC 1인당), 전일제(12사례/YC 1인당) 운영사례가 있으므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충할 경우 2016년까지 최소 20%, 매년 20%씩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 쉼터의 보호상담원 교대인력 소요 및 산출근거를 요약한 것이 표 VI-19이다.

표 VI-19 쉼터 보호상담원 교대인력 소요(안)

구분	산출근거
아웃리치센터(일시쉼터)	현) 4명/쉼터별 → 개선) 최소 6명/쉼터별 * 22개소 = 최소 44명
단기, 중장기쉼터	현) 2∼6명/쉼터별 → 개선) 최소 6∼10명/쉼터별 * 87개 최소 348명
교대인력 배치계획	2016년 20% 배치(78명) → (2020년) 348명 배치
교대인력 배치 우선순위(안)	청소년상담사 미배치시설 〉상담원 1인당 적정 사례수 〉 상담원 1인당 평균 근로시간 〉지역특성 및 여건 등
교대인력 배치 소요예산 ¹⁾	22,800천원/1명 * 348명 = 7,934,400천원

^{*} 주: 연봉하한액 기준(상한액은 39.600천원)이며 기말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기타 제수당 포함,

#### 3) 정책과제 추진기반

쉼터 확충 및 운영지원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선결과제이다. 특히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등 전달체계의 우선 정비를 통해 쉼터 확충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설 증설 및 배치기준, 인력 보강에 대한 연차별 세부 계획을 도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현행「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 비해「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한 청소년복지시설 인프라 전반이 취약한 상황이므로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에 대한 연속적인 보호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별 해소, 균형 있는 정책추진이 요구된다.

2014년도 일반회계로 편성된 청소년정책 예산은 660억 규모로, 이 가운데 '청소년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은 47억(청소년복지지원(자립지원) 25억, 청소년폭력 및 가출예방 2억 포함)에 불과하다. 일반회계 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약 500억원, 청소년육성기금 약 880억으로 일반회계보다기금에 의존하는 구조이다. 청소년육성기금은 2013년 말을 기준으로 583억원의 자산이 조성되었으나, 2014년 연말을 기준으로 가용재원은 약 122억원으로 가용재원의 부족이 전망되고 있다. 청소년육성기금에 의한 '청소년사회안전망 강화' 예산 가운데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87억,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예산이 약 270억원 정도이다(CYS-Net 구축, 약 120억, 청소년동반자약 60억, 청소년전화 1388 운영 약 9억, 사이버상담센터 운영 약 11억, 청소년특별지원 약 14억, 북한이탈 및 다문화청소년 지원 약 18억,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약 42억 등 포함). 따라서 기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정책의안정적인 추진이 어려운 구조이다. 단기적으로는 기금운용계획 편성 시 가출 및 위기청소년보호지원 수요 증가를 감안한 예산 증액 노력이 요구된다.

# 4 가정 밖 청소년 지원제도 및 서비스 확대

## 1) 정책방향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가출청소년은 가정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이며, 신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의 증가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규모는 감소하지 않는 상황이다.

장

따라서 가출청소년 보호정책은 비행청소년 선도가 아닌 가정 밖 청소년의 인권, 기본권을 보장하는 대안양육의 개념에서 정책추진이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련 서비스가 최소기준 을 충족할 수 있도록 내실화를 도모한다.

### 2) 세부 추진과제

표 VI-20 가정 밖 청소년 지원제도 및 서비스 확대 세부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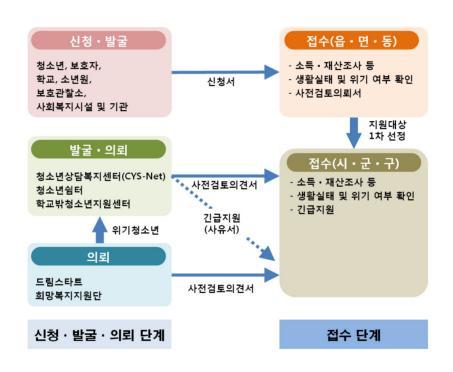
		ше	A17	추진시기		주무부처
세부 추진과제	예산 사업	법률 제 · 개정	신규 개선	단기 (2년)	중장기 (5년)	(지자체 포함)
4-1.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수혜율 개선	_	_	개선	0		여성가족부
4-2. 가정 밖 청소년 최저양육비 지원	0	_	신규		0	여성가족부
4-3. 가정 밖 청소년 주거지원 확대	0	_	개선	0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4-4. 가정 밖 청소년 학업중단 예방 지원	_	_	개선	0		여성가족부 교육부
4-5. 청소년복지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도입	_	_	신규		0	여성가족부

#### 4-1.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수혜율 개선81)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가출청소년과 같이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 청소년을 위한 복지지원 제도로 운영주체는 자치구 (시·군·구)이다. 이 연구에서 조사시점 현재 쉼터 입소자(이용자 포함) 가운데 특별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약 4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립, 학업, 상담지원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그 동안 특별지원은 전국 8개 시·도에서 제한적으로 추진되어 연평균 수혜자가 약 900여 명에 불과하여 위기청소년 규모 대비 수혜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2014년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 만큼 제도 수혜율 개선과 가출, 홈리스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⁸¹⁾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월 49만원 이내, 건강지원 연 200만원 이내, 학업지원 수업료, 학교운영비는 월 15만원, 검정고시는 월 30만원 이내,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내, 상담지원 월 20만원 이내(심리검사비 년 25만원 별도),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내. 활동지원 월 10만원 이내. 기타지원은 타 유형의 지원액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쉼터를 대상으로 제도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쉼터의 사업비 범위 밖에서 개별 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 '사전검토서'를 제출하고 필요 시우선 '긴급지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쉼터 입소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타 제도의 지원을 받더라도 동일 지원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 수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 발굴 및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현재 쉼터가 광역단위로 설치된 만큼 그림 VI-4와 같이 특별지원 신청 시 읍·면·동이 아닌 시·군·구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그림 VI-4).



* 출처: 김지연 외(2014). 발간예정보고서, p.109.

【그림 Ⅵ-4】청소년쉼터 특별지원 신청 경로 개선(안)

### 4-2. 가정 밖 청소년 최저양육비 지원

2014년도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중앙)예산 가운데 25%를 사업비로 편성하고 있어 인건비, 운영비 외 사업비는 약 22억 규모이다. 표 VI-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간 쉼터 입소자(연

장

인원)가 약 591,300명임을 감안하면 입소자 한 명당 일 평균 보호비용은 약 3,720원 즉 월 평균 약 111,618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쉼터 이용자(연 인원) 약 1,865,150명에게 의식주 및 의료 등 일체의 서비스에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를 가정한 것임을 감안하면 쉼터 입소자에 대한 일체의 보호비용은 월 10만원에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

표 VI-21 청소년쉼터 유형별 보호인원 및 보호비용 산출

구분	산출근거				
이동형 일시쉼터	이용자 564명/일 평균 * 365일 * 5개소 = 1,029,300명				
고정형 일시쉼터	이용자 102명/일 평균 * 365일 * 17개소 = 62,050명 입소자 6명/일 평균 * 365일 * 17개소 = 37,230명				
단기쉼터	이용자 35명/일 평균 * 365일 * 50개소 = 638,750명 입소자 20명/일 평균 * 365일 * 50개소 = 365,000명				
중장기쉼터	이용자 10명/일 평균 * 365일 * 37개소 = 135,050명 입소자 14명/일 평균 * 365일 * 37개소 = 189,070명				
입소자 1인당 보호비용 ²⁾	쉼터 연인원 : 이용자 1,865,150명, 입소자 591,300명 사업비 22억, 입소자 1인당 보호비용(1일) 약 3,720.6원				

^{*} 주: 1) 일 평균 이용자. 입소자는 이 연구의 조사결과를 반영한 것임.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을 보면 부부합산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15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에 대한 월 평균 양육비는 608,000원, 18세 이상 21세 미만의 자녀의 월 평균 양육비는 959,000원이다. 이는 예체능 교습비 등 교육비, 중증 질환과 장애로 인한 고액 치료 등 개별 가족의 특수 지출 요소를 제외한 것으로 부모의 소득이 많을수록 양육비는 증액하기 때문에 청소년기 자녀양육에 최소한 60~90만원이 소요된다는 의미이다(표 VI-22). 이 기준은 한부모가정인 경우 자녀의 최저생계와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비양육친부모의 양육비 이행 강제를 목적으로산정한 것으로, 소득과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부모로서 응당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양육비용이다. 즉 쉼터는 부모 양자를 대신하여 대안양육을 일부 담당한다는 점에서 보호비용에 최저양육비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부모의 재산·소득수준을 감안하여 국가가 선 지원할 수 있으나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 급식단가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명시한 시설 급식사업 지원 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²⁾ 사업비는 2014년을 기준으로 함.

### 표 Ⅵ-22 양육비 산정기준(2014.5.30일 기준)

(단위 : 원)

							(EII · E
부부합산 소득 자녀나이	0 ~199만원	200만원 ~299만원	300만원 ~399만원	400만원 ~499만원	500만원 ~599만원	600만원 ~699만원	700만원 이상
0세 이상 3세 미만	526,000	653,000	761,000	906,000	1,012,000	1,106,000	1,526,000
- 3세 이상 6세 미만	490,000	705,000	878,000	1,008,000	1,238,000	1,334,000	1,759,000
	533,000	708,000	902,000	1,059,000	1,202,000	1,371,000	1,906,000
12세 이상 15세 미만	604,000	755,000	947,000	1,095,000	1,305,000	1,520,000	2,046,000
 15세 이상 18세 미만	608,000	844,000	1,115,000	1,204,000	1,424,000	1,668,000	2,270,000
18세 이상 21세 미만	959,000	1,185,000	1,303,000	1,361,000	1,728,000	1,974,000	2,221,000

^{*} 출처: 서울가정법원(2014), p.1.

쉼터는 보장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동복지시설과 달리 입소와 동시에 청소년에게 수급비가 지원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청소년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들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여 수급비를 지원하는 것은 청소년이 수급자라는 낙인(stigma)을 일부 감수해야 하고, 성인기의 탈빈곤을 위해 자립, 자활 등 별도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최선책이라볼 수 없다. 따라서 쉼터의 사업비는 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의 생활교육, 주거, 의료, 문화 등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 수준, 즉 부모의 소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전제로 18세 미만은 월 60만원, 19세 이상 21세 미만은 월 95만원 내외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양육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가 관건인데, 위 기준은 부모가 소득, 재산이 전혀 없어도 반드시 부담해야 할 최소 양육비를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되어 내년 3월 25일 시행에 들어가며 이를 근거로 '양육비 이행 지원기관'이 설치될 예정이다. 즉 쉼터 소장이 법정대리인이면서 부모가 양육비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을 통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구상권청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 : 표준양육비를 가산 및 감산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리를 거쳐 양육비를 결정하는데, ① 거주 지역(도시는 가산, 농어촌은 감산), ② 자녀수(자녀 1인 10% 가산, 자녀 3명 이상 20% 감산), ③ 고액의 치료비(중증 질환, 장애, 특이 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 개호비, 활동보조비 등), ④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휴학비, 예체능 등 특기 교습비), ⑤ 부모의 재산상황 등임.

장

다만 가출청소년의 경우 개인 및 부모의 신상정보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거나 쉼터 입퇴소를 반복하는 경우도 많아 양육비 산정과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친권을 포기하는 경우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추진이 요구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이하 "미성년 자녀"라 한다)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2. "양육비 채무"란 「민법」 제836조의2 및 「가사소송법」상의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
- 3. "양육부·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 4. "비양육부·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 5.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6. "양육비 채무자"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비양육부·모의 부모가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양육부·모의 부모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① 제11조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u>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한다)을</u>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청을 받은 이행관리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은 6개월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긴급지원을 종료한다.
- ④ 긴급지원의 대상, 금액, 지급시기 등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의 행사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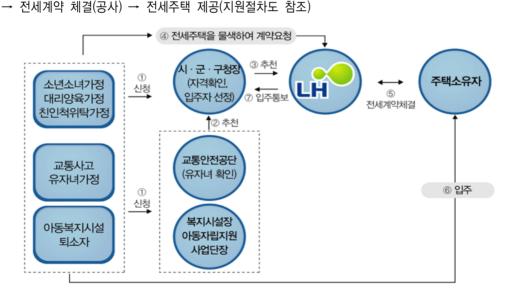
다만 쉼터의 특성 상 청소년의 입퇴소가 반복되어 실제적인 양육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 설정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 교육, 주거, 의료, 문화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행 쉼터의 사업비가 1인당 보호비용을 기준으로 할 때 최소 6배 이상 증액이 요구된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이행을 위해 쉼터 입소 청소년에 대한 최저양육비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 4-3. 가정 밖 청소년 주거지원 확대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에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특히 중장기쉼터와 추후 설치될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입소 청소년이 주 대상일 수 있는데, 현행 지원제도에서 쉼터 퇴소(예정)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청소년복지시설이 사회복지시설에 편입될 경우 시설 퇴소아동에 준한 전세주택지원 신청자격이 부여될 수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아동복지시설과의 차별이 해소되어야 한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경우 청소년쉼터 중 일부가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운영기관은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신청을 돕고, LH와 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호별로 임대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현행 광역단위 중장기쉼터 1개소를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시범운영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 ※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전세주택지원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 가정위탁아동(대리양육, 친인척),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만23세 이하, 해당 지자체에 신고된 복지지설의 장,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장 이 추천한 자에 한함.
- 지원대상자(법정대리인)가 해당 복지시설의 장 또는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의 장에게 신청 → 신청서 (지자체) → 지원대상가정 자격, 주거실태 조사 및 확정(지자체) → 공사로 대상아동 추천(지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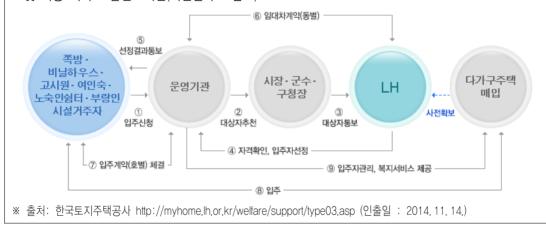


※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myhome.lh.or.kr/welfare/rent/poor01.asp (인출일 : 2014.11.14.)

장

####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쉼터, 부랑인 복지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간 다른 시설 거주기간 합산 산정), 법무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범죄피해자
- 임대기간 2년(2년 단위 9회 연장), 최장 20년간 거주
-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전부 무주택자로,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토지)5천만원 이하(개별공시지가 기준), 자동차 보유요건을 충족하는 자(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약 150만원, 2013년 기준)
- 사업유형 :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유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사업**, 국민임대 등
- 운영기관 : 주거지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재단이 선정한 기관
- 지원대상 주택 :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자활의지가 높고 자립준비를 갖추 자 추천 → 입주자 선정 → 사업시행자 통보 → 입주자 선정, 입주 및 각종 서비스 알선·지원(지원절차도 참조)



한편「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퇴소아동과 기초생활수급 대상 아동에게 만 25세까지 숙소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시설(전국 12개)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중장기쉼터를 퇴소한 경우에는 위 자립지원시설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한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가출청소년의 주거 및 자립지원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중장기쉼터 퇴소 후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시·도 단위에 최소 1개소 이상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

둘째, 자립지원시설 운영은 지방사무이므로 자립지원시설이 설치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의 경우 시·도 차원에서 지침 변경을 통해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퇴소자도 자립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현행 가정형 Wee센터(교육부), 청소년회복센터(지방법원)의 경우 가정 밖 청소년의 대안양

육시설이나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 이들 시설의 특성을 감안할 때 쉼터 특성화 다양화 차원에서 운영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유사목적의 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 근거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청소년회복센터를 아동복지시설 유형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발의되기도 하였다(표 VI-23). 다만 각 시설별로 소관부처가 상이하고 설치 목적, 주요대상, 추진방향 등에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 법 내에서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지, 각 지자체에서 조례 등으로 별도의 관리·감독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전제로 한다.

표 VI-2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좌동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신설	4의2. 보호소년 전담 공동생활가정: 「소년법」 제32조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같은 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8. (생략)	5.~8. 현행과 같음
2 · 3	②·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송호창(20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호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1889)

위의 개정법률안은 시설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은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에 대하여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시설에 편입될 경우 18세 이상 청소년이 대상에서 누락되게 된다. 또한 현재 청소년회복센터는 모두 개인시설이라는 점에서 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마찬가지로 기능보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보호의 질 담보에 일부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현재 쉼터 입소자 가운데 보호처분 경험이 있거나 보호처분 중인 경우가 상당수임을 감안할 때 법안 통과여부와 관계없이 보호처분(감호위탁) 대상 청소년을 위한 특화형 쉼터를 지정 운영하거나 쉼터와 청소년회복센터 간의 역할 기능 구분이 요구된다.

가정형 Wee센터는 2014년 현재 전국 8개 시·도에 15개 센터가 운영 중인데 '가출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초·중·고교 재학생만 입소한 쉼터와 대상이 동일하다. 가정형 Wee센터는

장

교육부, 교육청 단계에서 가정 내 위기로 가출하거나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에게 기숙형 형태로 상담치료를 제공한다. 또한 가족치료와 부모교육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쉼터, 센터 간 지원내용과 서비스에 편차,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쉼터가 보호 중인 재학생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지원(학업중단예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변경될 경우 기존의 통합적인 지원에서 생계, 의료, 교육, 주거로 분리된다. 따라서 쉼터 입·퇴소 청소년 가운데 주거급여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읍·면·동에 적극 신청할 수 있도록 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도개선에 따른 홍보, 교육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쉼터에 입소하지 못하거나 입소를 원하지 않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예로 프랑스의 경우 '주거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청소년, 청년을 포함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목적의 주거수당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 ※ 프랑스의 주거수당

- 주거수당(Les allocations de logement): 프랑스 국적자에 한 해 자녀 출산과 동시에 주거수당 수급권이 생기며 미혼모의 경우 임신 5개월부터 주거수당 수급이 가능함. 수당액은 자녀 수, 소득, 주거비(월세), 집을 소유한 경우 은행 상환액 등에 따라 변동되며 호텔, 하숙, 유사 시설 거주시에도 지급함. 단, 이 경우 월 평균 주거비의 2/3만을 주거비로 인정함. 주거수당은 가족의 형태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
- ① 개별지원수당(APL: aide personnalisee au logement): 국적, 자녀 유무, 직업에 관계없이 수급이 가능하며. 소득수준과 주거지역. 거주비용. 가족 형태. 직업유무 등에 따라 주거수당 액수는 차이가 있음.
- ② 가족 주거수당(ALF: allocation de logement a caractere familial): 개별 가족수당을 수급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거나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급여수준은 자녀 수, 가족 소득수준, 거주비용, 거주지 등에 따라 달리 지급
- ③ 사회적 주거수당(ALS: allocation de logement a caractere social): 자녀가 없는 가족(저소득 퇴직자, 장애인, 청년층 근로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급여수준은 주거비, 소득 수준, 독신 등 가족 구성 형태 등에 달리 지급
- 한부모가족(미혼모가족 포함)의 경우 활동적 연대수당(RSA) 수급자인 경우에도 위의 주거수당을 일부 공제하고 지원 가능(공제액은 1인 가족 56.04유로, 2인 가족 112.08유로, 3인 이상 가족 138.70유로)
- 출산 시 산부인과 소속 사회복지사가 산모가 퇴원할 경우 거주지를 확인하고, 거주할 곳이 없을 경우 모자센터(centre maternel), CHRS(사회재통합과 거주를 위한 센터), 긴급전화 115센터(SAMU social) 등에 연락하여 거주지 제공
- 2007년 3월부터 시행된 DALO 법(la loi DALO: Droit au logement opposable)을 근거로, 거주지가 없거나 주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들에게 국가가 정해진 기간 내 적절한 거주지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행정재판을 통해 주거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음.
- ※ 출처: 김지연 외 (2013). p.312.

현행 청소년복지정책 내에서 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통해 일부 가능한데, 생활지원 영역에서 주거를 위한 실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또한 전세, 월세 주택임차대금 지원, 임대아파트 우선 입소 지원 등 현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제공되는 주거지원제도가 청소년복지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후속 업무협의가 요구된다.

### 4-4. 가정 밖 청소년 학업중단 예방 지원

쉼터 입소자 10명 중 4명이 초·중·고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나타났다. 즉 쉼터는 이미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쉼터 입소자의 학업중단 예방, 혹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에 대한 별도의 운영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내실 있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 올해「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내년 5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쉼터 입소자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학교 밖 지원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동법 제12조). 즉 학교 밖 지원센터 전달체계 구축과정에서 사군·구단위의 센터로 현행 단기쉼터, 중장기쉼터의 진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법에서 명시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의 경우 쉼터의 기존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쉼터 사업의 전문성 제고 기능 특화 방안이 될 수 있다. 다만 대상이 특정된다는 점에서 쉼터의 전달체계의 개편이 전제되어야 하고, 광역 및 시·군·구 단위의 학교 밖 지원센터 설치 계획과정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4-5. 청소년복지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도입

가정 밖 청소년 최저양육비 지원과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복지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도입이 요구된다. 현행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서비스 최저기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여기에는 시설이용자의 권리, 시설의 환경, 시설의 운영, 시설의 안전관리, 시설의 인력관리, 지역사회와의 관계,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최저기준' 확보 가이드라인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쉼터가 개인운영시설이라 하더라도 공공재에 대한 인식, 입소 청소년의 인권과

사회권 보장을 최우선한다는 것을 전제로 시설의 환경과 운영, 안전, 인력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여 야 한다. 현행 쉼터의 경우 지침에서 서류비치, 안전관리, 청소년 인권보호, 입소 및 퇴소관리, 지역자원 관리 및 사업 홍보 강화, 평가 항목을 포함하고 있지만 각 항목에 대한 개별 지표와 최저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 ※ 아동복지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시설종별 공통)

- 1. 시설 이용자의 인권
- 1-1. 비밀보장(이용아동의 비밀보장)
- 1-2. 정보제공(서비스선택 정보제공, 시설이용 아동의 권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자기결정권)
- 1-3. 고충처리(고충처리방침, 고충처리기간, 진정함의 설치와 운용)
- 1-4. 차별금지(동등한 참여와 합리적 배려)
- 1-5. 참정권보장(시설 이용자의 참정권 보장)
- 1-6. 자치활동(자치활동의 보장)
- 1-7. 인권교육(아동학대 및 괴롭힘 방지)
- 2. 시설의 환경
- 2-1. 시설의 설치와 운영 (시설의 설치, 시설의 내외부 환경)
- 2-2. 편의시설(편의시설 설치)
- 3. 시설의 운영
- 3-1. 법인이사회(법인이사회 구성 · 운영)
- 3-2.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
- 3-3. 사업계획(사업계획 수립·운영, 사례관리,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 3-4. 행정관리(문서 및 아동관리)
- 3-5. 재무관리(회계의 투명성, 회계의 전산화)
- 4. 시설의 안전관리
- 4-1. 시설의 안전
- 4-2. 아동 안전(아동 안전관리)
- 5. 시설의 인력관리
- 5-1. 인력의 충분성(종사자의 자격과 자질)
- 5-2. 인력 개발(종사자 훈련과 개발, 고충처리 및 근무환경 개선 노력)
- 6. 지역사회와의 관계
- 6-1. 후원금 개발(후원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 6-2. 자원봉사자(자원봉사자 관리)
- 6-3. 지역사회 연계(지역사회 연계사업)
- 6-4. 홍보(홍보활동)
- 7.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 7-1. 서비스의 합목적성
- 7-2. 서비스 제공 과정과 절차
- 7-3. 서비스 결과(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성과 측정)

※ 출처: 김지연 외 (2013), p.160.

먼저 '입소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정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적정 수준의 양육비 확보(생존권), 건강검진실시(건강권), 학습지원(학습권), 주거지원(주거권),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발달권)와 관련한 내용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시설의 안전관리' 영역에서는 '실종아동' 사례에 대한 개입절차, '아동학대' 사안의 개입과정, '실종'으로 신고된 사례이나 청소년 본인이 가정복귀를 원하지 않거나 '학대의심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업무 지침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이 과정에서 경찰(지구대),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업무협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포함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현행 지침에는 '정원 초과를 이유로 입소를 거부할 수 없고 불가피하게 입소를 거부할 경우 쉼터 운영일지에 기록하고 처리하되 타 쉼터 또는 관련기관 인도에 만전을 기하여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유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쉼터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입소자 간의 안전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원을 초과하면서까지 입소자를 받기가 쉽지 않고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우며 이에 대한 보호 원칙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침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례 판정기준을 마련하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개별 시설의 역할로 보기 어렵고, 이동성이 많은 가출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전국 공통의 표준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만 아동복지시설과 달리 입·퇴소가 빈번한 쉼터의 특수성과 쉼터 전달체계 개편 등을 고려하여 쉼터의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을 위한 중장기적인 논의, 합의 과정이 소요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쉼터 표준운영매뉴얼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쉼터 서비스 최저기준 고려사항(예시)
- 시설의 안전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피난기구 등 시설 실정에 맞는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장비의 설치·구비 범위 마련(사회복지시설에 준해 적용하도록 지자체 의무로 규정 필요)
- 아동의 안전
- · 입소거부 사례 구체화 및 대안 마련, 아동학대 의심사례 처리기준, 실종사례 처리 기준, 쉼터 퇴소 및 원가정 복귀 체크리스트
- ㆍ 명의양도로 인한 사기 피해자. 신용불량자(통장. 핸드폰을 개설하지 못할 경우) 지원절차
- · 입소거부 사례(①폭력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시설에 있게 되는 경우, ②성매매 등으로 다른 청소년을 위험에 빠드리는 경우, ③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일반청소년과 단체생활이 힘든 경우, ④ 기타 입소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등)에 대한 대응절차 명시

#### 3) 정책과제 추진기반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은 지방사무임으로 인해 중앙 부처차원의 예산 확보 노력도 중요하지만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과 의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쉼터 운영지원은 정률보조방식이므로 가정 밖 청소년 지원제도 및 서비스 확대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의무적인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전환은 사회복지정책이 다루는 사회문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즉 저출산·고령화, 양극화·불평등 심화, 신빈곤층의 등장과 가족기능 변화, 복지에 대한 일반시민의 기대는 '신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되어 이제 기존의 복지재원 마련 방식도 한계에 달하였다. 서구 주요국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투자전략'의 일환으로 빈곤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노동유연성이 취약한 취약계층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 지 오래다. 즉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정책은 이들이 사회적 위험에 적응하고 시민으로서 노동 의무를 이행하는 등 발전의 선순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이 기반을 이룬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이들이 생애준비(life readiness)를 할 수 있도록 도와 결국 장래에 발생할 사회적 부담의 발생을 예방하고 미래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우리사회의 양극화·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의 균열을 막기 위해서도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결국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기회 재분배를 위한 전향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이상에서 논의한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정책과제별 추진계획(안)을 요약한 것이 표VI-24이다.

# 표 VI-24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정책과제 추진계획(안)

		예산	법률	신규	추진시기 ¹⁾		주무부처 (지자체 포함)
국정과제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			제·개정	개선	단기 (2년)	중장기 (5년)	
	1-1.「사회복지사업법」개정		0		0		보건복지부
1. 관련	1-2.「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		0		0		여성가족부
관련 [ 법률 ]	1-3.「소년법」개정		0		0		법무부
제 · 개정	1-4.「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개정		0		0		보건복지부
	1-5.「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 특별법」제정 검토		0	신규		0	여성가족부
2.	2-1. 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 설치	0		신규	0		여성가족부
∠. 전달	2-2.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및 지정	0		신규	0		여성가족부
체계	2-3. 청소년쉼터 유형 탄력 운영	0			0		여성가족부
정비	2-4. 쉼터, CYS-Net 간 연계 강화	0			0		여성가족부
3.	3-1. 청소년쉼터 확충 계획 수립	0			0		여성가족부
3. 쉼터 확충	3-2. 아웃리치센터(일시쉼터) 증설	0			0		여성가족부
및	3-3. 자립지원요원 배치	0		신규		0	여성가족부
운영 지원	3-4. 법정 인력배치 기준 준수	0			0		여성가족부
개선	3-5. 종사자 근로기준법 준수	0				0	여성가족부
	4-1.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수혜율 개선				0		여성가족부
4.	4-2. 가정 밖 청소년 최저양육비 지원	0		신규		0	여성가족부
지원 제도 및	4-3. 가정 밖 청소년 주거지원 확대	0			0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서비스 확대	4-4. 가정 밖 청소년 학업중단 예방 지원				0		여성가족부 교육부
	4-5. 청소년복지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도입			신규		0	여성가족부

^{*} 주: 단기 정책과제는 기존 정책 내에서 1~2년 내 즉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중장기 정책과제는 조정·연계·신규 추진이 요구되어 5년 내 추진 필요 과제를 기준으로 함.

# 참 고 문 헌

# 참 고 문 헌

- 경찰청 (2012). **경찰청 브리핑: 12년 제3회 전국보호시설 및 도서지역 일제수색 결과.** http://www.police.go.kr/portal/bbs/view.do?bbsId=B0000011 &nttId=8521&menuNo=200067에서 2014년 3월 13일 인출.
- ____ (2013). **2013** 경찰백서 (11-1320000-000044-10).
- ____ (2014). 내부자료 (2014년 3월 6일 정보공개 청구)
- 교육통계서비스 (2013). 중·고등학생 현황. http://kess.kedi.re.kr/index에서 2014년 4월 7일 인출.
- 국가인권위원회 (2012). 국가인권위원회 2012년 여성가출청소년 인권상황 현장조사 보고서: '보호' 논리에서 사회적' 안전망' 구축으로 (11-1620000-000427-01).
- 김용길, 조윤오, 백혜정, 서보람, 정정숙, 장하림 (2011). **가출청소년 가정복귀 지원 결과보 고서** (2011-53).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 김은영, 송민경 (2009). 단기쉼터 이용 가출청소년의 귀가 결정요인에 관한 생존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6(1), 343-370.
- 김지연, 이경상 (2013). **201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평가 (연구보고 13-R36).**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연, 황여정, 이준일, 방은령, 강현철 (201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연구Ⅱ**,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연, 김동일, 김태완, 윤철경 (2014).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제도개선 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발간예정보고서.
- 김지혜 (2005a). 가출 청소년의 비행화 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 (2005b). 가출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 **한국청소년연구** 16(2), 207-234.
- _____ (2006). 청소년 가출에 따른 인권침해 연구. **아동권리연구** 10(1), 73-93.
- _____ (2013). 가출의 비범죄화. 소년보호연구 제23호, 35-60.
- 김진숙, 김현아 (2008). 청소년의 가출경험과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인간발달연구, 15(1), 73-94.

김춘진 (2012). 가정위탁보호 지원법안(의안번호: 1902683).

김향초 (2001). 가출청소년의 이해와 개입방법. 서울: 나눔의 집.

남미애, 홍봉선, 육혜련, 김은경 (2012).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내실화 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남미애 (2014). 청소년쉼터 실태 및 개선방안. 2014 청소년쉼터 실태와 운영방향 세미나 & 2014 청소년쉼터 주간 기념식 자료집, 9~72.

류종훈 (2005). 가출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2, 1-19.

문재우 (2012). 우리나라 청소년의 가출충동과 가출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보건 연구**, 38(1), 19-34.

민현주 (2014).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6068).

박명숙 (2006). 청소년 가출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3(1), 85-106. 박윤희, 이상균 (2010). 청소년가출의 장기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리뷰**, **15**, 157-186.

방은령 (2007). 청소년가출과 가족.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

백혜정, 방은령 (2009). **청소년 가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연구보고 09-R08)**.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변혜정, 김효정, 이진영, 황유나 (2012). 가출십대여성 실태조사: 서울 · 경기지역 쉼터거 주자를 중심으로. 십대여성의 안전·건강·역량강화를 위한 토론회: 십대여성의 가출 과 폭력피해 실태, 2-145.

보건복지부 (2013). 아동분야 사업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2014).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가스안전 과, 2014.9.25).

서울가정법원 (2014).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서울시 (2012). 가출십대여성 실태조사: 서울 · 경기지역 쉼터거주자를 중심으로. 서종균, 김준희, 박효영, 김윤이, 김태완, 김종대 외 (2011). **주거취약계층 전국실태조사** (11-1352000-000548-01).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도시연구소.

세계빈곤퇴치회 (2012). 「가출-팸」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 의견 수렴조사.

손숙미 (201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4230).

- 송호창 (20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1889).
- 아동자립지원사업단 홈페이지. 자립지원 시설 현황 참고.
  - http://www.jarip.or.kr/adong/sub02_4.asp?menuCategory=2에서 2014년 11월 11일 이출.
- 안전행정부 (2014).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에서 2014년 4월 7일 인출.
- 여성가족위원회 (2014a).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의원 대표발의) 검 토보고. 2014년 2월.
- 여성가족위원회 (201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의원 대표발의) 검토 보고. 2014년 2월.
- ______ (2014b).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의원 대표발의) 법 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2014년 2월 19일.
- 여성가족부 (2012). 2012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 _____ (2013a). **2013** 청소년백서.
- _____ (2013b). **2013** 청소년쉼터 종합평가.
- _____ (2014a). **2014**년도 청소년사업 안내.
- _____ (2014b).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개요, http://www.mogef. go.kr/korea/view/intro/intro01_05.jsp에서 2014년 11월 11일 인출.
- _____ (2014c). 내부자료(청소년자립지원과).
- 유서구, 김응수, 김윤나, 서보람, 강현우 (2012). **가출팸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발굴** 결과보고서 (2012-46).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 유성경, 이소래, 송수민(2000). **청소년 비행예방 및 개입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비행수준별, 유형별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분석.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윤선미, 이나영 (2012). 청소녀의 가출 후 경험 연구: 경계들 사이의 생존 지대를 찾아. 한국여성학, 28(4), 119-171.
- 이자스민 (2012). 청소년복지지원법 법률개정안(의안번호: 2899).
- 이용교 (2003). 청소년쉼터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5(2), 5-17.
- 정규석, 김영미, 김지연 (2013). 청소년복지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익중, 백혜정, 박현선, 천창암, 박현동 (2009). 청소년 쉼터 운영모형 개발을 위한

- 연구 (연구보고 09-R2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주은 (2014).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방행과 입법과제에 대한 토론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책세미나 자료집: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출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88-93.
- 천종호 (2014). 미발간 집필자료.
- ____ (2014). 청소년회복센터 현황 인터넷자료 http://cafe.daum.net/mansaboy에서 2014년 8월 25일 인출.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14). 내부자료 (2014.3.1.~3.31. 월 통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NYPI 청소년 해외동향리포트 독일. 독일의 가출청소년 대처방안. http://www.nypi.re.kr. 2014년 7월 28일.
- 한국토지주택공사 (2014). 소년소녀가정등 전세주택지원 http://myhome.lh.or.kr /welfare/rent/poor01.asp에서 2014년 11월 14일 인출
- _____ (2014)/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사업 http://myhome.lh.or.kr/ welfare/support/type03.asp 에서 2014년 11월 14일 인출
- 현안나 (2008). An integrated analysis of a U.S. policy targeting runaway and homeless youth: The 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 (PL 108-96). 사회복지정책, 33(6), 281-309.
- 홍봉선 (2013). 가출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가출청소년 권리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대책 토론회 자료집, 19-55.
- Chun, J. & Springer, D.W. (2005).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in Runaway Youths-An Application of Concept Mapping. *Brief Treatment and Crisis Intervention*, 5(1), 57-74.
- Dunford, F. W. & Brennan, T. (1976). A taxonomy of runaway youth. *Social Service Review*, 50(3), 457-470.
- English, C. J. (1973). Leaving home: A typology of runaways. *Trans-Action*, 10, 22-24. Fernandes-Alcantara, A. L. (2013). Runaway and homeless youth: Demographics and program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 Report for Congress* (Vol. 7-5700).
- George, H., & William, B. (2013). "Necessary, But Not Sufficient: The McKinney-Vento Act and Academic Achievement in North Carolina", *Children & Schools* 34(3): 179-185.

- Gibson, K. E. (2011). Street Kids: Homeless Youth, Outreach, and Policing New York's Streets. NYU Press.
- Gilbert, N. & Terrell, P. (2002).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Boston, MA: A Pearson Education Company.
- Hammer, H., Finkelhor, D., & Sedlak, A. J. (2002, October). Runaway/ thrownaway children: National estimates and characteristics *NISMART Bulletin Series* (Vol. NCJ 196469, pp. 1-11). Washington, DC: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 Homer, L. E. (1973). Community-based Resource for Runaway Girls. *Social Casework*, 54(8), 473-479.
- Jones, L. P. (1988). A typology of adolescent runaways.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5(1), 16-29.
- Karger, H. J. & Stoesz, D. (2002). *American Social Welfare Policy: a pluralist approach*. Boston, MA: Allyn & Bacon.
- Miles, B. W. & Okamoto, S.K. (2008). The social construction of deviant behavior in homeless and runaway youth. *Child Adolesc Soc Work J*, 25, 425-441.
- National Alliance to End Homelessness (2011). National RHYA Program Utilization에 서 2014년 4월 7일 인출.
- _____ (2012). A History of 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 Funding에서 2014년 3월 31일 인출.
- National Law Center on Homeless & Poverty (2012). Alone without a home: a state-by-state review of laws affecting unaccompanied youth. http://www.nlchp.org/Alone_Without_A_Home에서 2014년 11월 11일 인출.
- Nebbitt, V. E., House, L. E., Thompson, S. J. & Pollio, D. E. (2007). Successful Transitions of Runaway, Homeless Youth from Shelter Care. *J Child Fam Stud*, 16, 545-555.
- Pergamit, M. R. (2010). On the lifetime prevalence of running away from home.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 Pegamit, M., Ernst, M., Benoit-Bryan, J., & Kessel, J. (2010, May). Why they run: An in-depth look at America's runaway youth: National Runaway Switchboard. Pollio, E. P., Thompson, S. J., Tobias, L., Reid, D. & Spitznagel, E. (2006). Longitudinal

- Outcomes for Youth Receiving Runaway, Homeless Shelter Services. *J Youth Adolescence*, 35, 859-866.
- Rees, G. (2011). STILL RUNNING 3: Early findings from our third national survey of young runaways. The Children's Society. makerunawayssafe.org.uk.
- Rew, L. (2002). Relationships of sexual abuse, connectedness, and loneliness to perceived well-being in homeless youth. *Journal for Specialists in Pediatric Nursing*, 7, 51-63.
- Sanchez, R. P., Waller, M. W., Greene, J. M. & M.A. (2006). Who Runs? A Demographic Profile of Runaway Youth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9, 778-781.
- Shellow, R., Schamp, J. R., Liebow, E., & Unger, E. (1967). Suburban runaways of the 1960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32(3), 1-51.
- Slensnick, N. (2004). Our runaway and homeless youth: A guide to understanding. Westport, CT: Praeger.
- Toro, P. A., Lesperance, T. M., & Braciszewski, J. M. (2011, September) The heterogeneity of homeless youth in America: Examining typologies. *Research Matters*: National Alliance to End Homelessness.
-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7).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CRC/C/GC/10). General Comment No.10.
- UN General Assembly (1990). 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The Riyadh Guidelines(A/RES/45/112). U.N.Doc.
- _____ (1994). The plight of street children(A/RES/49/212), U.N.Doc.
- UN Human Rights Council (2011). Resolution 16/12 Rights of the child: a holistic approach to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of children working and/or living on the street(A/HRC/RES/16/12), U.N.Doc.
- Volpi, E. (2002). Street Children: Promising Practices and Approaches. WBI Working Papers (No. 37196).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Zide, M. R., & Cherry, A. L. (1992). A typology of runaway youths: An empirically based definition.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9(2), 155-168.

#### 참고 법률 및 하위법령

「근로기준법」,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 「사회복지사업법」,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 「아동복지법」,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

「청소년보호법」,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

「청소년복지 지원법」,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

「초·중등교육법」,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

#### 해외사례 관련 문헌 및 자료

#### (미국)

- O http://www.1800runaway.org/learn/research/2013_nrs_call_statistics
- ${\tt \bigcirc http://www.1800runaway.org/youth/referrals}$
- $\ \ \, \cap \ \, \text{http://www.acf.hhs.gov/programs/fysb/programs/runaway-homeless-youth}$
- O http://www.benefits.gov/benefits/benefit-details/625
- ${\tt \bigcirc\ http://www.billwilsoncenter.org/services/all/runaway.html}\\$
- O http://www.missingkids.com/Runaway
- ${\color{gray} \bigcirc \ } http://www.ncsl.org/research/human-services/homeless-and-runaway-youth.aspx$
- http://www.rhyttac.net/sites/default/files/resources/Unaccompanied%20Youth%20 InterventionModel.pdf
- O National Runaway Safeline Homepage (http://www.1800runaway.org)
- POLICY BRIEF: 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 (Last Reauthorized in 2008, P.L.110-378)
   http://www.nn4youth.org/system/files/RHYA%20Policy%20Paper%202014_0.pdf

(프랑스): H. R. Kim-Lescarret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학교) 원고에서 참고

Phenomene des enfants des rues en France? : http://citoyendesrues.wordpress.com

Dossiers sur la violence : http://www.jeunesviolencesecoute.fr

46.000 jeunes ont fugue l'annee derniere :

http://www.europe1.fr/france/46-000-jeunes-ont-fugue-l-annee-derniere-1903535/

La fugue chez les ados : le phenomene :

http://www.plurielles.fr/parents/la-fugue-chez-ados-le-phenomene

Disparition mineur/majeur:

http://www.116000enfantsdisparus.fr/sinformer/que-dit-la-loi-francaise.html

Fugue: http://www.116000enfantsdisparus.fr/votre-enfant-a-disparu/fugue.html

Fugue: un message?

http://www.jeunesviolencesecoute.fr/espace-parents/dossiers-sur-la-violence/

L'errance des jeunes en Ile-de-France : http://www.mipes.org/

Le portrait jeunes : http://www.jeunes.gouv.fr

Protection de l'enfance : Proteger les enfants en danger : http://droits-enfants.fr/

Quand les adolescents fuient le domicile familial : http://www.lematin.ma/journal/

Quel est le portrait du SDF aujourd'huiu en France? :

http://www.latribune.fr/actualites/economie/france/20130822trib000781220/

DREES, "Eches et retard scolaire des enfants heberges par l'aide scolaire a l'enfance", Etudes et resultats, n. 845 juillet 2013, http://www.drees.sante.gouv.fr

Laurence Giovannoni, "La demissiom parentale, facteur majeur de delinquance : myth ou realite?", Societe et jeunesse en difficulte (en ligne), n 5. Printemps 2008, URL : http://sejed.revues.org/3133

Ludovic Jamet, "Les mesures de placement de mineurs delinquants: entre logiques institutionnelles et stigmatisation du public", Societe et jeunesse en difficulte (en ligne), n 9. Printemps 2010, URL: http://sejed.revues.org/6689

Emilie Potin, "Vivre un parcours de placement. Un champ des possibles pour l'enfant, les parents et la famille d'accueil", Societe et jeunesse en difficulte (en ligne), n 8. Automne 2009, URL: http://sejed.revues.org/6428

(독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 전지현(독일 튀빙엔대학교 박사수료) 원고에서 참고 Patio13, http://www.strassenkinderreport.de/index.php?user_name=&goto=209#armut Schüßler, Michael (2006). Selig die Straßenkinder - Perspektiven systemtheoretischer Sozialpastoral, Ostfildern: Matthias-Grünewald-Verlag.

BMA -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Hg.): Lebenslagen in Deutschland. Der 3. Armuts- und Reichtumsbericht der Bundesregierung, Bonn 2008.

Off Road Kids, http://offroadkids.de/kurz-buendig.html

IGFM, http://www.igfm.de/menschenrechte/hilfe-fuer-den-notfall/inobhutnahmen-und-notschlafstellen/STERN, Es ist etwas faul in deutschen Familien 2013년 8월 7일 기사 IJAB, http://www.kinder-jugendhilfe.info/

(일본) : 최현주(일본 히토츠바대학 대학원 박사수료) 원고에서 참고

警察廳(2013)「平成24年警察白書」

警察廳(2014)「平成25年警察白書」

警察廳生活安全局少年課(2014)「少年非行情勢(平成25年1~12月)」

警察廳生活安全局長 2008年10月17日 「不良行爲少年の補導について」の制定について 警視廳生活安全部少年育成課 (2013) 「少年非行の傾向(平成24年)」

厚生省兒童家庭局長 (1997) 「兒童虐待等に關する兒童福祉法の適切な運用について」 厚生勞働省効用均等・兒童家庭局長通知 2012年3月29日 「兒童自立支援施設運營指針」 少年非行防止法制に關する研究會 (2004) 「少年非行防止法制の在り方について (中間報告」 東京都福祉保健局 (2011) 「東京都における兒童養護施設等退所者へのアンケート調査報告書」 内閣府 (2014) 「平成25年版子ども・若者白書」

文部科學省(2010)「生徒指導提要」

http://www.mext.go.jp/b_menu/houdou/22/04/1294538.htm (2 0 1 4 . 3 . 3 0) 厚生勞働省 「子ども虐待對応の手引き」

http://www.mhlw.go.jp/bunya/kodomo/dv12/00.html (2014.3.30) 警察廳少年警察活動規則

http://law.e-gov.go.jp/htmldata/H14/H14F30301000020.html (2014.3.30) 厚生勞働省 (2005) 見童相談所運營指針の改正について:第5章 一時保護

http://www.mhlw.go.jp/bunya/kodomo/dv-soudanjo-kai-honbun5.html (2 0 1 4 . 4 . 2 0) 神奈川縣警察 STOP! THE 少年非行

http://www.police.pref.kanagawa.jp/mes/mesd1007.htm (2 0 1 4 . 4 . 2 0)

- (국내): 김지연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소연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집필 원고에서 참고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7).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 쉼터** 실태조사.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8). 2008년도 청소년쉼터 운영지침. 서울: 보건복지부.
- 박주연 (2014). 노숙인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과제. 이슈와 논점.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부 (2009). 아동·청소년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 여성가족부 (2011). 가출청소년가정복귀지원결과보고서 (2011-53).
- 유성경, 이소래, 송수민 (2000). **청소년 비행예방 및 개입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천종호 (2013).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경기도 : 우리학교.
-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5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Hall.
- Major, B. & Eccleston, C. P. (2005). Stigma and social exclusion. *The social psychology of inclusion and exclusion*, 63-87.
- Tabachnick, B. G. & Fedell, L. S. (2007).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5th ed.). Boston: Pearson.
- U.S. House of Representatives, Education and Labor Committee. (1992). Legislative history,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amendments. *U.S. Code of Law and Administrative News, House Report* No. 102-756.

부 록

## 부 록

#### 1 설문지(청소년쉼터 종사자)

이 조사의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 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 여건 조사

안녕하세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 "**기출청소년 보호** 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쉼터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진 지 올해로 10년입니다. 최근에는 '청소년가출예방지원센터'성치·운영을 골자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등 가출청소년을 둘러 싼 정책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에 쉼터의 가출청소년 보호와 지원 여건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u>쉼터별로 대표자 1인(시설장 혹은</u> 선임실무자)이 작성하고, 법인에서 여러 개의 쉼터를 운영할 경우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 결과는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의 규정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2014. 7.

#### 

먼저, 조사표 작성자 및 쉼터 관련 일반사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기재 혹은 표시 해 주십시오.

선문 1. 작성자 성별	① 여성② 남성	선문 2. 3	작성자 연령	만	세
선문 3. 작성자 직급	① 시설장② 선임·	실무자			
선문 4. 작성자 근무기간	현 <b>시설</b> 년개월 / 현	선 시설 포함 경	청소년쉼터 총	근무기간 _	년개월
선문 5. 시설 소유 현황	① 자가② 전·월세	③ 법인 소	유 ④ 지자	체 대여	⑤ 기타
선문 6. 법인 유무	① 지자체직영②사회	복지법인	③재단법인	_④사단법인	⑤기타
선문 7. 법인 특성	① 법인산하 타 청소년시· * 구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 문회			3.5	
	① 일시쉼터 (□ 이동형	□ 고정형)	② 단기쉼터	③ 중	장기쉼터
선문 8. 시설 유형 및 대상자 현황 (조사시점 현재 기준)	입소자 ① 남자명 ② 아용자(입소자 제외) 월 평균	여자명 남약명	□ ① 남자 ☞ 입소자 : 이용자(입소기	다쉼터 □ ② 다 제외): 월	) 여자쉼터 명 평균 약명
	<b>※입소자</b> : '1일 이상 숙식'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한	· 경우, <b>이용자</b> : <u>술</u>	<u> </u>	<u> </u>
선문 9. 종사자 현황	정규직 명, 비정규	직	_ 명 (자원봉시	사자 제외)	
선문 10. 소재 지역	① 대도시② 중소도	E시③ 농1	산어촌		
선문 11. 종사자 자격증 소지 현황	<ul> <li>병 1명의 직원이 여러 개의</li> <li>명 ① 사회복지사 1급</li> <li>명 ③ 청소년상담사 1급</li> <li>명 ⑤ 청소년지도사 1급</li> <li>명 ① 교사(유치원, 보육</li> </ul>	=	명     ② 사회       명     ④ 청소나       명     ⑥ 청소나	복지사 2급 또 본장담사 2급 년자도사 2급	또는 3급 또는 3급
선문 12. 예산 현황 <u>(2013년 기준)</u>	세입 천원 / 법인전입금 %, 후원금 ※ 지방비 별도 운영비 지원 예) 야단근무자 당직수당 등	국비% %, 자: 현황(구체적으로	6, 광역시·도비 체수입%	%, A	l·군·구%,

※ 보고서 발간 후 최종 파일을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____신청함, ___신청하지 않음※ 본 연구와 관련하여 조사표 외 별도 의견개진(자문회의 참석 등)이 가능함. ____가능함, ___가능하지 않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

#### ◎ (가칭)청소년쉼터중앙지원단 및 타 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 (가정)청소년쉼터중앙지원단은 정부의 기출청소년 보호지원 정책 추진 지원과 청소년쉼터 운영지 원을 담당하는 중앙지원기구를 의미합니다. 유사시례로 지역이동센터중앙지원단, 이주배경청소년지원 센터(무지개센터), 여성긴급지원중앙지원단 등이 있습니다.

문 1 청소년쉼터 기능강화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가칭)청소년쉼터중앙 지원단의 설치·문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 ② 필요하다
- ③ 필요하지 않다
-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⑤ 모르겠다

#### 문2 (가칭)청소년쉼터중앙지원단의 기능 중 각각의 <u>시급성</u> 정도에 √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시급 하지 않음	$\leftarrow$		보통	5	$\rightarrow$	매우시급
1) 청소년쉼터 사업과 운영지원(쉼터평가 포함)	1	2	3	4	5	6	7
2) 전문인력 양성(종사자 교육 및 연수 운영 포함)	1	2	3	4	5	6	7
3) 관련기관(단체) 협력·연계 체계 구축	①	2	3	4	5	6	7
4) 프로그램 개발·보급(운영매뉴얼 개발 포함)	1	2	3	4	5	6	7
5) 실태조사 및 통계 생산(만족도·효과성 조사 포함)	1	2	3	4	5	6	7
6) 행정지원시스템 운영 관리(실적, 자료 및 정보관리 포함)	①	2	3	4	5	6	7
7) 홍보(인식개선 사업 포함)	1	2	3	4	5	6	7
8) 쉼터퇴소청소년 자립 등 종합지원(사례 관리 포함)	1	2	3	4	5	6	7
9) 쉼터의 정체성 확립(위상 제고, 종사자 권리 향상 포함)	①	2	3	4	5	6	7
10) 기타( )	①	2	3	4	5	6	7

문 3 쉼터가 위치한 지역(군 또는 구) 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 문 3-1로 이동)

② 아니오 (BF 문 4로 이동)

③ 모름 (☞ 문 4로 이동)

문3-1.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상호협력 정도는 어떠합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혹은 CYS-Net)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출청소년 발굴에 도움이 된다(쉼터로 의뢰 정도)	1	2	3	4	⑤
2)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에 도움이 된다	1	2	3	4	(5)
3) 지역사회 자원 발굴과 이용 시 도움을 받고 있다	①	2	3	4	(5)
4) 가출청소년(혹은 가족)에 대한 공동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①	2	3	4	(5)
5) 청소년동반자(YC)와 같은 인력지원을 받는다	①	2	3	4	(5)
6) 정보 공유가 원활하다	①	2	3	4	(5)
7) 업무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상호협력이 원활하다	①	2	3	4	5

문3-2. 청소년상담복지센터(CYS-Net)에서 구	쉼터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① 지원을 요청해서 서비스를 제공받	은 적 있다
② 지원을 요청하면 서비스를 제공받	을 수 있다
③ 지원을 요청해 본 적 없다	
④ 지원을 요청했으나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했다
⑤ 기타(	)
문 4 귀하는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CYS	-Net) 관련 심의기구인 <u>운영위원회</u> 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CYS-Net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별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기구인 CYS-Net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예 (☞ 문 4-1로 이동)	② 아니오 (157 문 5로 이동)
문 41. 귀 쉼터는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고 있습니까?
① 참여하고 있다	
 ② 과거에 참여한 적이 있지만 형	현재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 ☞ 연 평균 회
③ 참여한 적이 없다	

문 5 귀 쉼터는 기출청소년 보호지원에 있어 각 단계별로 관계기관과 <u>연계</u>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연계란 정보교환, 대상자 의뢰 및 공동관리, 기관 및 서비스 상호 이용, 공동사업 운영, 업무 관련회의 및 도움을 주고 받는 교류 일체를 포함합니다.

관계기관	문 51. 기출청소년 발견(발굴)단계			문 52. 가출청소년 보호(입소,이용)단계					
현세기한	미흡	보통	충분	미흡	보통	충분	미흡	보통	충분
1) 시·군·구청(희망복지지원단 포함)	1	2	3	1	2	3	①	2	3
2) 지역 내 다른 쉼터	1	2	3	1	2	3	1	2	3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포함)	1	2	3	1	2	3	1	2	3
4) 학교	1	2	3	1	2	3	1	2	3
5) Wee센터(교육청)	1	2	3	1	2	3	1	2	3
6) 아동보호전문기관	1	2	3	1	2	3	1	2	3
7) 경찰서(파출소, 철도경찰 등)	1	2	3	1	2	3	1	2	3
8) 아동복지시설(그룹홈, 양육시설 등)	1	2	3	1	2	3	1	2	3
9) 드림스타트센터(위스타트 포함)	①	2	3	1	2	3	1	2	3
10) 복지기관(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1	2	3	1	2	3	1	2	3
11) 법원, 법무부 산하기관(보호관찰소 등)	1	2	3	1	2	3	1	2	3
12) 기타( )	①	2	3	1	2	3	1	2	3

문6 다음은 기관 간 연계 강화 요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 쉼터의 업무수행 현황을 기반으로 각각의 항목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배우 그렇다
1) 연계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잘 마련되어 있다	①	2	3	4	5
2) 지역 내 연계체계 구축 및 조정 담당 기구가 잘 마련되어 있다	①	2	3	4	5
3) 지역 내 도움을 주고받을 만한 기관이 충분하다	①	2	3	4	5
4) 지역 내 쉼터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	①	2	3	4	5
5) 쉼터에서 관할하는 구역의 범위가 적절하다	1	2	3	4	5
6) 지원 내용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①	2	3	4	5
7) 쉼터 입·퇴소를 반복하는 청소년을 사례관리하고 있다	1	2	3	4	5
8) 특수한 욕구나 문제가 있는 청소년(기족)을 의퇴할 기관이 있다	1	2	3	4	5
9) 대상자를 의퇴받기 보다는 직접 발굴해야 하는 상황이다	①	2	3	4	5
10) 지역 내 일시 단기 중장기쉼터 간의 대상자 의퇴가 원활하다	1	2	3	4	5

#### ☺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7 귀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특별지원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에 따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의료급여법」,「시회복지시업법」등 타 법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시각지대의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직업훈련 및 청소년활동지원을 물품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① 특별지원 대상자를 발굴 신청해서 지원받은 적 있다
- ② 특별지원 대상자를 발굴해서 (주민센터 등에) 신청했지만 지원받지 못했다
- ③ 알고 있지만 신청(혹은 이용)해 본 적은 없다
- ④ 들어봤지만 잘 모른다
- ⑤ 들어본 적이 없다

문용 쉼터 입소자(이용자) 가운데 각각의 특별지원 필요성 정도에 각각 √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필요 하지 않음	$\leftarrow$		보통		$\rightarrow$	매우 필요
1) 생활지원(의복·음식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1	2	3	4	5	6	7
2) 건강지원(건강검진,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1	2	3	4	(5)	6	7
3) 학업지원(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검정고시 교육비)	1	2	3	4	5	6	7
<ol> <li>자립지원 (지식·기술·기능습득비, 진로상담, 직업체험,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li> </ol>	1	2	3	4	5	6	7
5) 상담지원(본인 및 가족 상담비, 심리검사비, 상담프로그램비)	1	2	3	4	5	6	7
6) 법률지원(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1	2	3	4	(5)	6	7
7) 활동지원(수련·문화·특기·교류활동비)	1	2	3	4	(5)	6	7
8) 기타지원(외모 및 흉터 교정, 교복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등)	(I)	2	3	4	(5)	6	7
9) 기타( )	1	2	3	4	(5)	6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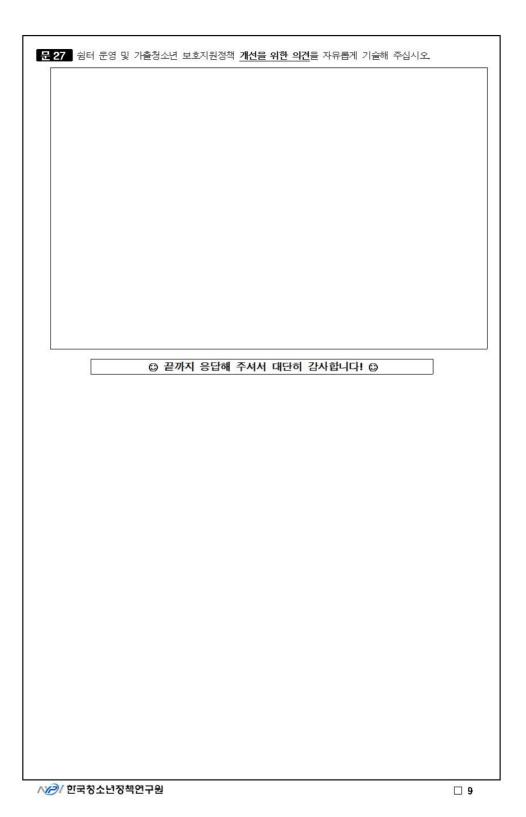
문 9 입소자(이용자) 기운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하루 평균 입소자(실인원) 중 약명 (약%) (대상자가 없거나 파악이 안 되는 경우 "O")
월 평균 이용자 중 약명 (약%) (대상자가 없거나 파악이 안 되는 경우 "0")
문 10 입소자(이용자) 가운데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몇 명입니까?
하루 평균 입소자(실인원) 중명 (약%) (대상자가 없거나 파악이 안되는 경우 "0") 월평균 이용자 중명 (약%) (대상자가 없거나 파악이 안되는 경우 "0")
문 11 (입소자, 이용자 중 가출학생이 있는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인력, 예산 등)지원이 있습니까? ① 지원을 받고 있다 ② 지원받은 적 없다 ③ 과거에 지원받은 적이 있지만 현재는 받고 있지 않다 ④ 해당없음
문 12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쉼터에 순회교사(혹은 파견교사)를 지원한다면 신청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
문 13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기출 학생(기출한 초·중·고교생)'의 학업중단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위탁형 쉼터를 지정하여 지원한다면 신청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
문 14 (지자체 및 교육정에서) '학교 박 정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한 학교 <b>밖 정소년 지원센터</b> 를 지성하여 지원한 다면 신청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
문 15 현행과 같은 <u>입소 기간에 따른 쉼터 유형 구분</u> 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적절하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NF 문 16으로 이동) ② 적절하지만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 (NF 문 15-1로 이동) ③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 (NF 문 15-1로 이동)
문 15-1. (개선이 필요하다면) 해당하는 이유를 <u>모두 선택</u> 해 주십시오.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복지시설에 '청소년쉼터' 유형 구분이 없기 때문에(법령과 지침이 상이하여) ② 입소 기간 뿐 아니라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 쉼터 유형을 더욱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해서 ③ 입소 기간을 적용해 대상자를 일시에서 다른 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④ 일시, 단기, 중장기쉼터가 모두 설치되지 않아 서비스 공백이 발생해서 ⑤ 쉼터 유형별로 기능, 역할이 일부 중복되어 비효율이 발생해서 ⑥ 입소 기간을 이유로 입소, 퇴소를 반복하는 일명 '쉼터돌이'가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해서 ⑦ 쉼터에서 아웃리치부터 자립지원까지 원스톰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⑥ 대상 청소년이 통학, 관계(친구, 중사자 등) 등을 이유로 타 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⑨ 기타 (구체적으로:

문 16 관내(시·군·구) 추가 설치가 가장 필요한 쉼터는 무엇!	입니까? (1	개 선택)					
① 일시쉼터(이동형)		·  쉼터(고정	형)				
③ 단기쉼터	쉽터 ④ 중장기쉼터						
⑤ 일명 '묻지마' 쉼터	지마' 쉼터 ⑤ 유형에 관계없이 중설 필요						
⑦ 중설이 필요치 않음		1001					
⑧ 기타 (구체적으로:		.)					
문 17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성 정	성도에 각각	∤ √표 해	주십시오	6			
문항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1) 지역 규모, 특성을 감안하여 쉼터 유형의 탄력적 운영 허용	①	2	3	4	5		
2) 가정복귀가 불가능한 '홈리스청소년' 지원 별도 근거 마련	①	2	3	4	5		
3) 중장기쉼터의 다양화(특성화)	①	2	3	4	5		
4) 친권제한 신청 등 쉼터소장의 권한 강화	①	2	3	4	5		
5) 청소년쉼터를 사회복지시설로 인정	①	2	3	4	5		
6) 쉼터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①	2	3	4	5		
7)「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한 쉼터 인력배치	①	2	3	4	5		
8) '운영 지침'에 준한 예산지원과 종사자 근로시간 보장	①	2	3	4	5		
9) 정신과 치료, 경찰 개입 등이 필요한 위기청소년 개입방안 마련	①	2	3	4	5		
10) 청소년쉼터 개입 대상(가출청소년)의 범위 명확히 규정	①	2	3	4	5		
11) 청소년쉼터 신고제를 향후 허가제로 개선 검토	<b>①</b>	2	3	4	5		
12) 기타 ( )	①	2	3	4	5		
☺ 쉼터 운영 및 기출청소년 지원 제도에	관한 질	문입니	-1		0		
문 18 조사 시점 현재 입소자는 총 몇 명입니까? (입소자 0)	명인 경우	☞ 문 20번	이를 이동	av.			
				7			
① 남자 청소년:명 ② 여자 청소년:명		ALCOHOLD BUILDING		NOT THE REAL PROPERTY.	Medical		
문18-1 전체 입소자 중 <b>가정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b>	정소년은	대략 얼마	나 됩니까	-? 약	명		
문18-2 전체 입소자 중 노숙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대략	얼마나 됩	니까? 약		명			
문18-8 전체 입소자 중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은 대		acon account .	1명이 여리	네 개의 위	기상황 에		
놓인 경우 위기 유형별로 각각 포함하여 명 수를 기	CONTRACTOR SECUR		T. OF	nı			
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자(보호자 감호 위탁, ② 범죄 가해 및 괴해 경험 약명	수상병령,	모오산설	중) 약_				
③ 자살시도(우울중 포함) 약명							
④ 게임중독(인터넷 중독 포함) 약명							
③ 약물중독(음주, 흡연 포합) 약명							
⑥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 경험 약							
① 부모(보호자)의 친권제한(박탈 포함)이 필요한 경							
⑧ 성폭력, 성매매 등 성범죄 가해 및 피해 경험 약	200 mars 100	- 100 April 100	=1 =1 A	O.L	n.		
<ul><li>③ 도벽, 폭력 등 집단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과</li><li>⑩ 장애, 질병 등 중·장기적 외료지원이 필요한 경우</li></ul>			.안 경 <b>丫</b>	딱	0		
<ul><li>● 장애, 설명 등 등·장기식 되묘시원이 결료한 경투</li><li>● 기타 위기(구체적으로:</li></ul>							
☞ ① ~ ⑪ 번 위기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가출청소!							
10 to							

<b>-</b> 10	(O) A TL7L O  - 7	법으) 기저이 건	데저 어거리 괴러를		에 속하는 비율은 (	네라 어떠하나 1개년
正 19	The second secon	The second secon		1억 나눔의 감구	-에 국어는 미필슨 (	내약 어떠합니까?
	<ol> <li>기초생활수급</li> </ol>					
	2) 법정 차상위 :	(1000m)	7000			
	3) 차차상위 가정	: 약	%			
	4) 일반 가정:	약	%			
	5) 파악안됨:	약	%	함계	100%	
문 20	현재 쉼터에서 0	용하고 있는 공	공요금 감면혜택 !	모두에 표시해 결	주십시오.	
① E	시가스요금	② 전기요금	③ TV시	형료	④ 수도요금	1
⑤ 전호	화 인터넷 요금	⑥ 오페수처리	비용 ① 쓰레기	처리(종량제 등	루투) ⑧ 해당없음	+
				5 23 ATTOORNESS (2) (4	* 1016 Sec. 10.0000386627	
문 21	현재 인수자(이용	지) 중 기정폭력	년(아동한대 포함)이	기출의 원인 등	중 하나로 파악되는	청소년은 대략 얼마
나 됩니까	the se mediate room and room and	1, 0 - 10 1	( 10 1 1 = 2)		0 1 1 1 1 1 1	0
		0/ /OLATI	레이 이유지 조 여	)t n/ /=l	ILINO HO MAIN	
답조	자 중 약	% (답소사	세피) 이용사 중 =		1강화물 경구 이)	
0	Properties and second second	a se man management				[법」제4조 3항에 해
당하는 정	성당한 이유 없이'	충동적으로 가출	한 청소년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	
이스	자 중 약	사 (이스지	제이 이유지 주 역	0/ (a)	[다이르 겨오 "ŋ")	
HI	-/107	w (BTM	(11-1) 10/1 0 -	¬ /0 ( o	IONE OT U)	
군 23	나음 문항 각각에	대하여 현재 원	램터 상왕 및 의견(	기 일지하는 곳(	게 √표 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기출청소년의 연령(19세 미만)에 따라 우선입소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①	2	3	4	5
2) 기출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가출행태에 차이가 있다	1	2	3	4	9
3) 쉼터 입소(이용) 시 '실종아동'으로 신고된 사례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1	2	3	4	6
4) 쉼터를 이용하지 않는 노숙청소년 아웃리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1	2	3	4	5
5) 일명 '문지마 쉼터'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6) 중장기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기능은 명확하게 구분된다	1	2	3	4	5
7) 쉼터소장이 (미성년)가출청소년의 '후견인'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1	2	3	4	5
8) 쉼터 내에 입소자의 개인공간(방, 사물함 등)이 확보되어 있다	1	2	3	4	5
9) 안전관리를 포함한 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1	2	3	4	5
10) 신변 위협 등 종사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1	2	3	4	5

w 런 O U-1도 센터제가 제코의도 기비가 제 OAN에 U-1로 제	100 원이 되기 중 배우근 세계의 조기가요
※ 다음 보기는 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입니다. 보기표 내	18을 확인 하신 우 <u>면호를 <b>기세</b></u> 해 주십시오.
① 개인 상담 및 임상적 개입	⑩ 각종 검사(심리검사, 적성 검사 등)
② 가족 상담 및 임상적 개입	① 건강지원(약품지원, 건강진단,
③ 담배 또는 알콜 사용 중단 및 감소를 위한 개입	
보 ④ 중독성 약물 사용 중단 및 감소를 위한 개입	② 보호지원(긴급구조 등)
⑤ 우울증 치료 또는 자살방지를 위한 (위기)개입 기 ⑥ 의사소통 향상 및 대인관계 향상 훈련	③ 법률지원(조사동행, 변호지원 등) ④ 문화지원(동아리활동 등)
표 ⑦ 성교육(피임법 등 포함)	(B) 학업지원
③ 자립지원(직업·취업정보제공, 취업지원, 직업훈련	
지원 등)	① 기타( )
⑨ 진로 및 미래설계 컨설팅	
문 24 현재 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모두 골라 그 번	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문 24-1. 문 24 에서 (16번 퇴소청소년 사후관리를 선택한 경	우) 한 달 평균 사후관리 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약명	
문 24-2. 문 24 에서 (16번 퇴소청소년 사후관리를 선택한 경	우) 사후관리 기간은 <u>평균</u> 얼마나 됩니까?
① 퇴소 후 6개월 미만	② 퇴소 후 6개월 ~ 1년 미만
③ 퇴소 후 1년 ~ 2년 비만	④ 퇴소 후 2년 ~ 3년 비만
⑤ 퇴소 후 3년 ~ 4년 비만	⑥ 퇴소 후 4년 ~ 5년 비만
③ 퇴소 후 5년 이상	
**************************************	
문 24·3. 문 24 에서 (16번 퇴소청소년 사후관리를 선택한 2	경우) 퇴소 전·후의 사후관리 방법을 <u>모두 선택</u> 해
주십시오.	
① 자립지원계획 수립	② 자립지원전담기관 외뢰(혹은 연계)
③ 쉼터 자체의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④ 자립기술평가 실시
⑤ 사례관리	⑥ 전화상담
⑦ 온라인상담(전화상담, 문자상담, 채팅상담 등)	⑧ 면 대 면 상담
③ 기타 (구체적으로:	
문 25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 중 수요가 가장 많은 서비스를 두	<b>가지만 골라</b> 그 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u> </u>
문 26 (중앙, 지방)정부의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를	<b>두 가지만 골라</b> 그 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u> </u>



355

#### Abstract

#### Research on Runaway Youth Protective Support Status and Policy Project

The primary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examine runaway youth protective support and to produce the promotion work for policy improvement for an issue of runaway youth.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there are four contents of the researches. First content is to analyze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runaway youth, and the second one is to provide the support for runaway youth.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and demand of the protective support for runaway youth is the third content, and the last content is to draw the policy project for the protective support of the runaway youth.

For fulfilling the four contents, numerous research methods were practiced. The comprehension of a recent trend of research by closely examining the preceding researches in both domestic and foreign institution was conducted. In addition, the classification and characteristics on groups of runaway youth through the analysis based on secondary source were also a part of the research method. The depths interview on homeless youth, management of field expert forum, expert's counsel, council of policy, seminar on policy were the followed methods.

The followings are the major research results. For pushing the policy related to the range of applied objects and methods of approach, a situation of a person is 'out of home' should be more focused and concerned than the delinquency prevention. Furthermore, the approach should be done by the prevention on discrimination and stereotype on runaway youth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ir human and social rights.

By analyzing the present condition on the policy, the governmental budge is exclusively limited within the management of youth shelter, even though it has been spent on the policy of protective support for runaway youth for ten years. The present condition

clearly demonstrates that there is the need of improving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policy propulsion through the enlargement of the aid to management in youth shelter and the reorganization of delivering method. There are also additional requirement to improve the degree of aids and policy; the expansion of youth shelter and arrangement of proper workforce, establishment of a central support organization and independent support system, and reinforcement of outreach function are included.

In the consideration of the international tendency related to the protective support for runaway youth, the provisions of extended support, guarantee on education, housing assistance, self-sufficiency assistance, and management of the related cases should be practiced until the age of 24 in order for youth to overcome the danger and poverty.

Especially, the homeless youth still suffer in places where there are no rights to live due to the lack of proper policy to protect them and their rights. Therefore, the youth shelter should be more enhanced in order to protect them and provide a safe place to stay. The intervention strategies like outreach, consolidation of advertising, aid for recover in the entry, and consideration for different gender are the major demands.

The protective support and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for runaway youth prevent the social disparity that were formed by polarization and inequality. It affects the youth to not have social burdens in future and strengthens the competitiveness for the future society. It will eventually contribute to the gain for the entire community.

Based on the research and its results, several suggestions are given. The foundation for pushing policy, through the reform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s to exercise. The maintenance on the delivery system for the protective support for runaway youth, enlargement of youth shelter, improvement on aids for the management, systematic support for the youth who are out of home, and expansion on related services are also the suggestions for the wellness of runaway and homeless youth.

Keywords: Runaway youth, homeless youth, youth who is 'out of home', youth shelter, facilities for youth welfare

## 20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14-R0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안선영·황여정·이수정·이로사
- 14-R0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 임희진·송병국
- 14-R03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I / 이경상·박선영·조남억
- 14-R04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임지연·김정주·김정숙
- 14-R05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연구 / 박영균·조흥식
- 14-R06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1) : 총괄보고서 / 김형주·권재기
- 14-R06-1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2) : 조사결과 자료집 / 김형주
- 14-R07 청소년 사이버불링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이창호·신나민
- 14-R08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 이유진·이창훈·강지명
- 14-R09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김승경·송미경
- 14-R10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김지연·정소연
- 14-R11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미디어교육 제도화 방안 연구 / 배상률
- 14-R12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정숙·조혜영·이태주·이덕난
- 13-R13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대응방안 연구 / 성윤숙·손병덕
- 14-R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W : 총괄보고서 / 김경준·김희진·이민희·김윤나
- 14-R14-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IV : 한국의 유엔이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실태 / 김경준·이호균· 서여정·김광혁·김형욱·윤상석·박병식·이석구
- 14-R14-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201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경준·김희진
- 14-R14-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청소년 인권 의식에 관한 구조 분석 / 천정웅
- 14-R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 지역사회 진단·분석 / 김지경·하헌주·김옥대
- 14-R15-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 계획 수립 / 김영한·임영식·김민
- 14-R16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총괄보고서 / 양계민·신현옥·박주희
- 14-R16-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박주희
- 14-R17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 오해섭·맹영임
- 14-R17-1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 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의견조사 / 오해섭·맹영임·문호영
- 14-R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V : 사업보고서 / 이종원·황진구·모상현·정은주·강현철·한영근·허효주· 문은옥·이영화
- 14-R18-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V : 기초분석보고서 I 청소년 생활시간 추이 분석 / 정은주
- 14-R18-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V : 기초분석보고서 II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 및 추이 분석 / 모상현
- 14-R18-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V : 기초분석보고서III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참여 실태와 추이 분석 / 황진구·허효주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I / 윤철경·서정아·유성렬·조아미 (자체번호 14-R1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2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 데이터 분석 보고서 / 윤철경·서정아·유성렬·조아미 (자체번호 14-R19-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3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 김지영·전영실·박성훈 (자체번호 14-R19-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 : IEA ICCS 2016 총괄보고서 / 성은모·백혜정·진성희 (자체번호 14-R20)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 : IEA ICCS 2016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성은모 · 백혜정 · 진성희 (자체번호 14-R20-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 : IEA ICCS 2016 사회참여역량측정 도구개발 / 김태준 (자체번호 14-R20-2)

#### 수 시 과 제

- 14-R21 청소년보호의 시대적 중요성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 / 이유진·배규한
- 14-R22 청소년분야 자격제도 개선 방안 연구 / 모상현·이진숙
- 14-R23 청소년지도자 인권의식 함양방안 / 김희진
- 14-R24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정책리포트 발간) / 백혜정·임희진
- 14-R25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배상률
- 14-R26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 (정책리포트 발간) / 황진구
- 14-R27 청소년정책연구 동향 분석 및 과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5년간의 연구과제 분석을 중심으로 / 김정숙

#### 수 탁 과 제

- 14-R28 디지털교과서 활용 행태 및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 성은모
- 14-R29 근로청소년 유형 분석 및 유형별 정책지원 방안 연구 / 김지경·박창남
- 14-R30 학교 밖 위기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진로 실태조사 / 김지경·이상준
- 14-R31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기본계획 수립연구 / 김영한
- 14-R32-1 청소년 경찰학교 시범운영 지원 / 성윤숙·안선영·정은주
- 14-R32-2 청소년 경찰학교 시범운영 인프라 구축 지원 / 성윤숙·안선영·정은주
- 14-R33 템플스테이 가족 및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 / 조혜영·양계민
- 14-R33-1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활용편 : 템플스테이 가족 및 청소년 프로그램 매뉴얼 / 조혜영·양계민
- 14-R34 2014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한·이유진

- 14-R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 / 김지경·김지연·김정주
- 14-R36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탐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윤철경·김혁진·김범구·정다정
- 14-R36-1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탐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체험) 프로그램 / 윤철경·하시연
- 14-R37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 총괄보고서 / 성은모
- 14-R37-1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 통일체험 활동 운영매뉴얼 / 성은모
- 14-R38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평가 체계개발 및 프로그램 분석 / 양계민
- 14-R39 지역아동센터아동패널조사2014 / 황진구·이종원·김희진
- 14-R40 2014년도 공동생활가정평가 사후관리 / 김지연·이경상
- 14-R41-1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예방매뉴얼(1-1) / 윤철경·황여정·김승경·맹영임
- 14-R41-2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숙려제 매뉴얼(1-2) / 윤철경·황여정·김승경·맹영임
- 14-R41-3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교 밖 진로 가이드북(1-3) / 윤철경·황여정·김승경·맹영임
- 14-R41-4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진단도구 개발(1-4) / 정제영·강태훈·류성창·변수용
- 14-R42 2014 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김경준
- 14-R43 대안교육포럼 / 윤철경 · 오해섭 · 백혜정 · 김희진
- 14-R44 2014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 임희진·백혜정·김희진·황여정
- 14-R45 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모델 확대 방안 / 황진구
- 14-R46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제도개선 방안 연구 / 김지연·김동일·김태완·윤철경
- 14-R47 고용차별예방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 성은모
- 14-R48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 및 정책에 관한 연구 / 이창호·윤철경·최금해·김옥태
- 14-R49 2014년 또래조정사업 / 서정아 · 김영한 · 이유진
- 14-R50 2014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돌봄 연계 모형 개발 연구 / 양계민
- 14-R51 청소년우대정책관련 하위법령 개정추진 기초연구 / 이창호·조혜영·김용훈
- 14-R52 신고·인증제 정착을 위한 청소년수련활동 개념 정립 및 분류 체계 연구 / 임지연·김민
- 14-R53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 / 성은모
- 14-R54 약물사이버중독 안전내용체계안 개발연구 / 이창호·왕석순
- 14-R55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검정교과목정비 및 표준교수요목에 관한 연구 / 김경준·오해섭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4-S01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 동계합숙연수 | (1/6~10)
- 14-S02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 동계합숙연수॥ (1/13~17)
- 14-S03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공청회 (1/21)
- 14-S04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원집중 연수 (2/4~7)
- 14-S05 미래연구에서의 시나리오 방법론 (2/20)
- 14-S06 제1차 2013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4)
- 14-S07 제2차 2013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11)

- 14-S08 학업중단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 일본의 최근동향 (3/13)
- 14-S09 STATA를 이용한 공간분석의 기초 (3/21)
- 14-S10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방법론 (3/26)
- 14-S11 청소년경찰학교 시범운영 워크숍 (4/3~4)
- 14-S12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교 학교장 특별연수 (4/14~16)
- 14-S13 학업중단예방 시·도 담당자 워크숍 (4/11~12)
- 14-S14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의 의미와 연계과제 (4/23)
- 14-S15 행복한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진단지표 (4/29
- 14-S16 복잡표본조사에서 가중치 산출 (5/8)
- 14-S17 다문화시대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시민교육 (5/12)
- 14-S18 시군구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5/27)
- 14-S19 지역사회 지표를 통한 청소년 정책개발 및 정책의 실제 활용 (5/26)
- 14-S20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플릿트러닝의 적용 가능성 (5/26)
- 14-S21 청소년보호의 시대적 중요성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모색을 위한 정책워크숍 (5/30)
- 14-S22 위기청소년을 위한 숲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모색 (5/30)
- 14-S23 청소년 통일 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Action Learning의 적용가능성 (5/29)
- 14-S2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모색 (6/13)
- 14-S25 Mplus를 활용한 자료분석 (7/4)
- 14-S26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 데이터 분석 세미나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7/11)
- 14-S27 질적연구방법론 : CQR (7/21)
- 14-S28 가정폭력사건의 회복적사법 도입가능성 (7/29)
- 14-S29 2014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자격 하계합숙연수 (7/22~25)
- 14-S3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우수사례(중등) 발표 워크숍 (8/7. 8/10)
- 14-S31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8/29)
- 14-S32 표본조사의 올바른 모수 추정법 (8/14)
- 14-S33 학업중단 다수발생 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 (8/21)
- 14-S34 청소년경찰학교 시범운영 담당자 2차 워크숍 (8/28~29)
- 14-S35 대안교실 담당 교원 심화연수 (8/18~22)
- 14-S36 질적연구방법론 : 근거이론 (8/29)
- 14-S37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영역별 정책방안 도출 (9/19)
- 14-S38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출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9/19)
- 14-S39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 역량 강화 방안 (9/30)
- 14-S40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4 대안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방향 : 정책과 실천 (9/25~26)
- 14-S41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 방안 탐색 공동세미나 (9/25)
- 14-S42 학교 사이버불링 실태와 대책방안 토론회 (11/3)
- 14-S43 제4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0/30)
- 14-S44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간평가 및 정책토론회 (11/12)
- 14-S45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11/7)
- 14-S46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11/17)
- 14-S47 국회다정다감포럼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11/07)
- 14-S48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에 대한 전문가워크숍 (11/29)

####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1호(통권 제72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2호(통권 제73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3호(통권 제7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4호(통권 제75호)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기타 발간물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1호 :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2호 :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강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3호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4호 :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5호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방안 연구 - 보수체계를 중심으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6호 :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3호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4호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 2013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5호 :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6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7호 :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8호 : 한중일미 4개국 청소년의 과학에 관한 의식조사 : 주요 연구결과

#### 집필진

유동철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영아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임세희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종균 (전.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H. R. Kim-Lescarret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학교 유럽문화연대연구소 연구위원)

강찬수 (대구광역시청소년쉼터)

고승덕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이사장)

김은녕 (성남시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소장)

김영재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연구관)

김차연 (법무법인 동천 변호사)

김태훈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주무관)

남미애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성호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박용석 (경북청소년남자쉼터 소장)

박준현 (한국소년보호협회 팀장)

송준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과장)

신경희 (광주광역시청소년일시쉼터 소장)

신혜령 (아동자립지원사업단 단장)

안수경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소장)

오재진 (대전광역시중장기청소년남자쉼터 소장)

윤용범 (법무부 소년과 서기관)

이 혁 (법무부 소년과 계장)

전지현 (독일 튀빙엔대학교 교육학과 박사수료)

정경은 (초당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정숙 (목포유달단기여자청소년쉼터 소장,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회장)

정진현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사무관)

천종호 (창원지방법원 판사)

최현주 (일본 히토츠바대학 대학원 사회학연구과 박사수료)

한미경 (미국 산호세주립대 교수)

현시웅 (대구시노숙인지원센터 소장)

현안나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가나다 순)

## 감 수

이금순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과장)

# 윤 문

옥수선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연구보고 14-R10

####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인 쇄 2014년 12월 24일

**발** 행 2014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빛 전화 02)503-322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018-2 93330